



2017. 6

—
연구위원
안영규

독일 집회법 연구

법무연수원
INSTITUTE OF JUSTICE

발 간 사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 헌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야말로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핵심 요체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기여하고, 또한 타인과의 의견교환을 통하여 공동으로 인격을 발전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회·시위의 자유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사의 획을 긋는 역사적 순간과 고비마다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과도할 경우 타인의 자유와 권리와 충돌하고 공공의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명국가들은 예외없이 여기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눈부신 민주주의의 성장과 시민의식의 성숙에 힘입어 평화적 집회·시위문화가 정착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외국의 집회·시위 관련 법령을 소개한 사례들은 있었으나, 이번 연구는 독일 연방 및 주의 집회·시위 관련 법령을 망라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치라는 뼈아픈 과거를 가진 독일은 전후에 네오나치 등 극단주의자들의 발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해법을, 그리고 통독 후에는 사회 통합을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왔고, 그 결과물로서 많은 지혜들이 독일의 집회·시위법제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독일의 경험은 우리에게도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특히, 독일 연방과 각 주의 집회 관련 법령의 전문과 그 번역문은 학계와 실무에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 합리적 집회·시위문화의 정착에 일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와 집필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안영규 연구위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 6.

법무연수원장 김희관

목 차

제1장 서 언	1
제1절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6
제2장 독일 집회법의 연혁	9
제1절 연방 집회법의 제정과 발전	11
제2절 연방제 개혁법 이후의 발전	16
제3장 독일 연방 및 주 집회법 해설	21
제1절 연방 집회법	23
제1항 개설	23
제2항 주요 내용	28
1. 총칙	28
2. 옥내공개집회	32
3. 옥외공개집회	39
4. 형벌 및 범칙금 규정	53
5. 종결규정	57
제2절 바이에른 집회법	59
제1항 개설	59
제2항 주요 내용	68
1. 총칙	68
2. 옥내집회	83

3. 옥외집회	87
4. 평화구역	98
5. 형벌 및 범칙금 규정	99
6. 종결규정	100
제3절 니더작센 집회법	104
제1항 개설	104
제2항 주요 내용	105
1. 총칙	105
2. 옥외집회	109
3. 옥내집회	118
4. 주 의회를 위한 평화구역	123
5. 형벌 및 범칙금 규정	124
6. 종결규정	124
제4절 쉴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	126
제1항 개설	126
제2항 주요 내용	129
1. 총칙	129
2. 옥외집회	138
3. 옥내집회	148
4. 범죄행위, 질서위반행위, 몰수, 비용	153
5. 종결규정	153
제5절 작센-안할트 집회법 및 작센 집회법	156
제1항 개설	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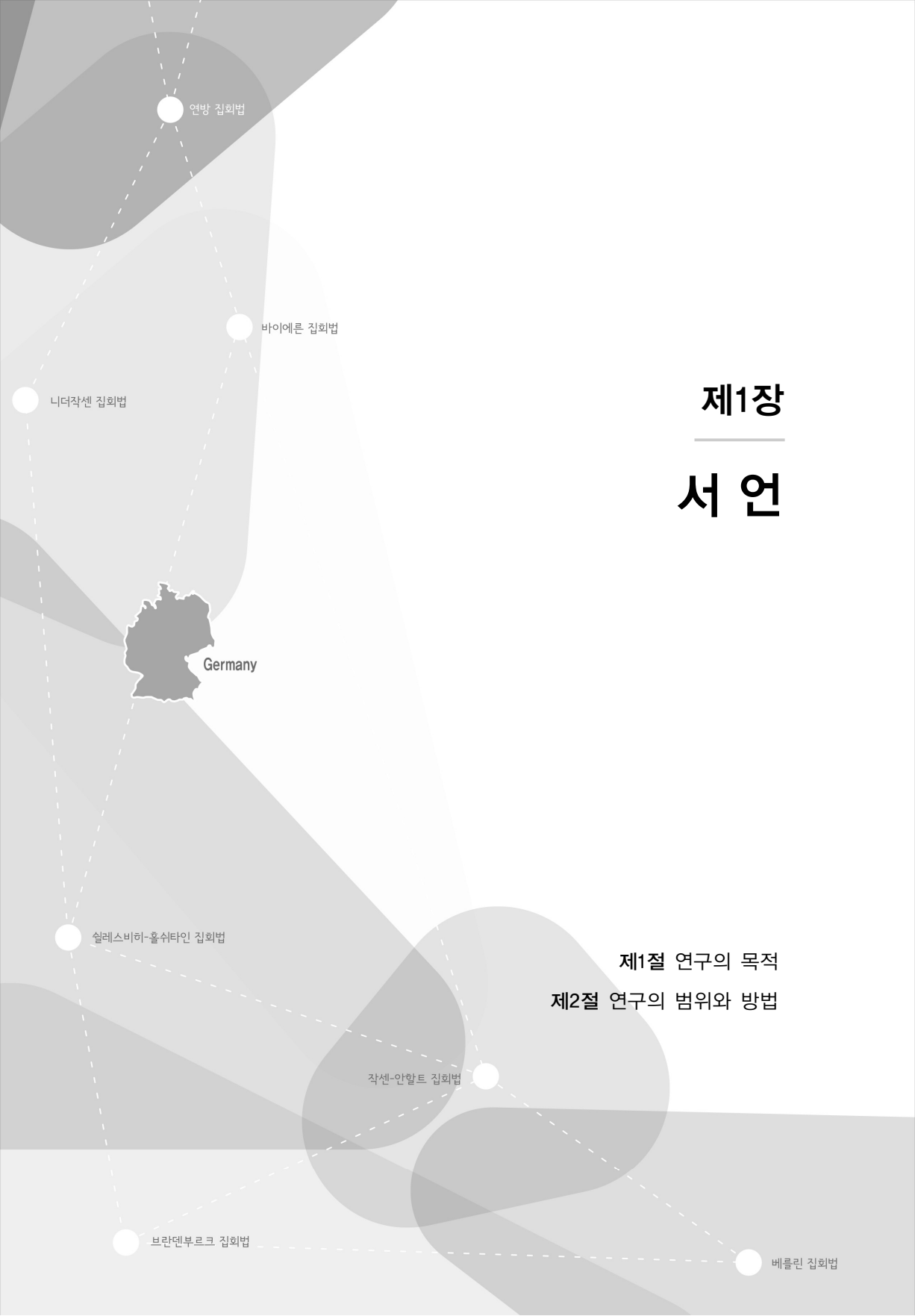
목 차

제2항 주요 내용	158
1. 작센-안할트 집회법	158
2. 작센 집회법	163
제6절 브란덴부르크 집회법 및 베를린 집회법	168
제1항 개설	168
제2항 주요 내용	169
1. 브란덴부르크 집회법	169
2. 베를린 집회법	172
제4장 독일 집회법의 시사점	175
제1절 개설	177
제2절 시사점	179
1. 집회의 정의 규정	179
2. 집회의 평화성	180
3. 집회 관련 촬영·녹음	181
4. 집회의 사전 제한 및 금지	182
5. 추모장소 및 추모일 집회 금지	184
6. 호신장구 및 변장 금지	185
제5장 결 어	187
참고문헌	193

첨부 - 집회법 번역문 및 원문

203

1. 연방 집회법	205
2. 집회법초안	240
3. 브란덴부르크 집회법	270
4. 바이에른 집회법	275
5. 작센-안할트 집회법	316
6. 견본법률안	352
7. 니더작센 집회법	395
8. 작센 집회법	434
9. 베를린 집회법	474
10. 쉘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	479



제1장

서 언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1장 서 언

제1절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제국주의 일본의 통치와 동족상잔의 참화를 딛고 단기간 내에 압축 성장으로 산업화에 성공하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권위주의적 통치 시대를 거쳐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민주화도 함께 달성하는 세계사에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역사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소득 분배의 불평등, 지역 간 불균형, 환경 문제 등 여러 문제점들이 아울러 나타났고,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하였으나 국민 의식의 발전은 산업화와 민주화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불균형도 초래되었다.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던 역사적인 집회들은 우리 사회의 발전에 원동력이 되고 노사관계 발전의 기초가 되기도 하였으나,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 보다는 물리력이나 다중의 위력을 동원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경향이 만연되었고, 그것은 이념 대결이나 커다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었다. 다양한 이익집단의 등장, 사회구성원들의 직접적인 정치참여 욕구 분출, 이념이나 계층 대립의 첨예화 등으로 노사분규나 집회가 빈발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과격한 행동도 점차 수위가 높아지게 되고 그것이 관행화되다시피 함에 따라 그때마다 공권력과 시위대의 물리적 충돌로 인하여 막대한 국가적·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여 왔다.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과 이를 집회나 시위 등 집단행동을 통하여 달성하는 것은 우리 헌법 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은 오로지 평화적·비폭력적 의사표현이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집단적 의사표현의 수단으로서, 평화적 수단을 사용한 의사표현은 헌법적으로 보호되지만 폭력을 사용한 의사표현은 보호되지 않는다.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함에 따라, 평화적 집회는 그 자체로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에 대한 위협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되고,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중의 불편이나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 위험은 집회의 자유의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나 제3자에 의해 수인되어야 한다. 폭력과 불법이 난무하는 집회 등 불법집단행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큰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낭비를 불러오는 만큼 반드시 시정하여야 한다. 민주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 확립과 다양한 가치의 존중, 민주시민의 자질로서의 준법의식 함양과 타인의 권리 존중, 민주주의적 갈등 해결의 핵심적 요소인 대화와 타협에 의한 합리적인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통해 집회문화를 발전시키고 나아가 건강한 민주 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불법적 특히 폭력적 집회 등 불법집단행동을 퇴출시키고 집회문화의 질적인 변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기본권이라 하여 그것이 언제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헌법 원리나 법률에 의해서 제한이 가능한 바, 특히 집회 등 그 외부 효과가 큰 권리는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저해하고 타인의 권리 혹은 법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이나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사회적 합의의 문제인데, 그에 따라 사회가 용인하는 것으로 합의된 집회는 기본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 합의된 집회에 대한 법적 제재도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집회 중 어떤 것이 불법이고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인가는 그 사회의 법령과 제도에서 정해지므로 그러한 견지에서 선진화된 집회문화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법령이나 제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 법제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집회법에 확립된 여러 제도들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우리 집회법이나 집회문화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 집회법의 해석·운용과 집회문화의 개선에 일조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독일에서 집회에 대한 규율은 집회법과 부수 법령 및 그 하위 법령뿐만 아니라 경찰법 등 일반 행정법령, 형법 등 형사법령, 나아가 질서위반행위 규제 법령 등에까지 미치고 있어 그 범위를 일률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가능하다면 이를 모두 검토하는 것이 독일 제도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필요하다 할 것이지만 능력과 시간의 제약으로 인하여 연구 범위를 적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어 우선 독일 집회법만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기로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독일 연방 및 주에서 법률로 제정된 집회법만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하고 관련 법령은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간단히 검토하기로 한다. 집회에 대한 규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집회법에 대한 연구만으로도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일응 판단되나 혹 본 연구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에 보완할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우선,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 학계의 독일 집회법에 관한 연구나 소개를 찾아보니 모두 독일 집회법 규정 중 특정 부분 예컨대 복면 금지 규정 등 특정 규정에 대한 학술적 연구나 소개에 그친 것이었고 독일 집회법 규정 전체를 연구하거나 소개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더욱이 독일의 집회법 현황을 조사해 보니 현재 독일에는 연방 및 주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8개의 집회법과 관련 당국과 학계에서 주의 집회법 제정 시 참고자료로 삼을 목적으로 만든 집회법초안과 견본법률안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를 망라하여 연구하거나 소개한 자료는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위 10개 법률 및 법률안 전문을 번역하여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각각의 조문에 대한 해석과 비교 분석을 하는 방식이 독일 집회법을 전체적, 통일적으로 이해하기에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그렇게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¹⁾ 그런데 본 연구에서 한정된 시간에 방대한 내용을 다루다보니 독일 집회법의 쟁점 모두에 대하여 같은 비중으로 연구를 하지 못하고 일부에 대하여는 단순한 소개에 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향후 독일 집회법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해 본다. 이하에서는 먼저 독일 집회법의 연혁을 살펴 보고, 이어 각 집회법의 내용 해설, 시사점, 결어의 순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1) 독일 법률 및 문헌을 번역, 해석함에 있어 정확성과 일관성에 특히 유념하여 그 본래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간혹 중전의 번역과 다른 용어를 선택한 경우도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필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혹여 오역이나 오독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필자의 능력 부족에 기인한 것이므로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따끔한 비판과 가르침도 아울러 주시기 바란다.

연방 집회법

바이에른 집회법

니더작센 집회법



Germany

실레시비히-홀슈타인 집회법

작센-안할트 집회법

브란덴부르크 집회법

베를린 집회법

제2장

독일 집회법의 연혁

제1절 연방 집회법의 제정과 발전

제2절 연방제 개혁법 이후의 발전

제2장 독일 집회법의 연혁

제1절 연방 집회법의 제정과 발전

독일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9년 5월 23일 독일연방 공화국(서독)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고 한다)이 공포되었고, 그 제8조에서 집회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이 다음과 같이 규정된 후 지금에 이르고 있다: “① 모든 독일인은 신고나 허가 없이 평화적으로 그리고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집회할 권리를 가진다. ② 옥외집회의 경우에는 이 권리가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다.”²⁾

그리고 위와 같은 집회의 자유에 관한 헌법 상의 기본권을 법률적으로³⁾ 보장하기 위하여 1953. 7. 24. 연방 차원의 ‘집회 및 행진에

2)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Art. 8.

(1) Alle Deutschen haben das Recht, sich ohne Anmeldung oder Erlaubnis friedlich und ohne Waffen zu versammeln.

(2) Für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kann dieses Recht durch Gesetz oder auf Grund eines Gesetzes beschränkt werden.

3) 근대 독일은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우려하여 집회의 자유를 금지시켜 오다가 1848년 3월 혁명을 계기로

관한 법률(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BGBl. I S. 684, 이하 '연방 집회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였다.⁴⁾

그러나 그 이전에도 이미 1849년의 프랑크푸르트 제국 헌법(바울교회 헌법) 제6장 제8절 제161조에서 집회의 자유가 규정되었는데, 그 제1문은 기본법 제8조 제1항과 문장 상으로 거의 일치하고, 그 제2문에서는 법률에 의한 옥외집회의 신고의무 및 공공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있는 경우 집회금지를 담고 있었으나,⁵⁾ 이는 결국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어진 1871년의 독일제국 헌법(이른 바 비스마르크 헌법)에서는 기본권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독일에서 실질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헌법 상의 기본권으로 최초로 규정한 1919년 바이마르 헌법 제123조에서는 위 바울교회헌법 상의 규정을 거의 그대로 계수하였으나, 기본법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옥외 집회에 대한 신고 의무가 삭제되었다.⁶⁾

독일에서 집회의 자유권 행사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시민과 국가의 긴장관계에서 전형적인 양면성을 나타내었다. 한편으로는 정치적 의사소통이 막힌 억압된

'독일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법률'에서 최초로 법률 차원에서 집회의 자유를 규정하였다고 한다. 이용, 불법집단행동 규율의 비교법적 분석 -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법집행기관 및 사법부의 태도 비교 -, 법무연수원, p. 187 참조.

4) 독일은 우리나라와 달리 '집회'와 병렬하여 '시위'를 별도로 규율하는 사례는 없고, 연방 집회법과 일부 주 집회법에서 '집회'와 병렬하여 '행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행진'은 이른 바 '움직이는 집회'로서 '집회'의 개념에 포함되므로 이를 특별히 구별할 필요성이 없는 한 단순히 '집회' 또는 '집회법'으로 부르기로 한다.

5) Dürig-Frindl-Enders, Versammlungsrecht : Die Versammlungsgesetze des Bundes und der Länder, Kommentar, C.H.Beck, 2016, p. 3.

6) ibid. p. 4.

시민의 의사표출의 수단으로 나타났는데(예컨대, 1848년 3월 혁명 이전의 프로이센, 동독 말기), 특히 동독 시민들의 ‘1989년 월요집회(Die Montags-Demonstrationen von 1989)’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고 그것이 결국 통일의 밑거름이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가 대중선동을 위하여 집회를 도구화하기도 하였다(예컨대, 나치, 동독 등 권위주의 통치 시대).

연방 집회법 제정 이후 독일은 네오나치 정당(NPD) 등 극우단체, 적군파, 좌파 학생운동 단체 등 극좌단체, 원전 반대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들의 끊임없는 집회에 직면하고 이를 연방 집회법으로 규제하다가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방 집회법을 여러 차례 개정하였는데 때론 그러한 개정이 기본법 제8조와 충돌을 일으켜 위헌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가 연방 집회법을 통해 침해되었다거나 독일에서 집회의 자유 역사는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걸림돌로 작용한 요소들을 하나하나 치워가는 과정을 밟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⁷⁾

그러나 독일 통일의 계기가 된 ‘월요집회’, ‘아랍의 봄’을 촉발시킨 군중시위 등이 상기시키듯이 정치체제에 심각한 변동을 초래하는 ‘익명의 가두 권력(die anonyme Macht der Straße)’은 항상 정부나 당국을 놀라게 하거나 위협하여 온 것이 역사적 진실이다. 공개집회에 대한 입법자의 공포는 언제나 적어도 헌법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7) 남경국, “집회의 자유의 보장과 제한가능성의 경계: 독일 헌법 제8조와 집회법의 충돌과 그 해결과정을 중심으로”, 서강법학 제11권 제1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6, p. 4.

규제의 강화를 초래하였다.⁸⁾ 결론적으로, 연방 집회법은 한편으로는 옥외공개집회에 대한 근본적 불신과 그에 따른 엄한 규율의 필요성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적, 국가적 및 정치적 생활의 영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집회에 대한 형성적 규정의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양면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다.

그러던 중 '2006년 8월 28일 연방제 개혁 법률(Das Gesetz zur Änderung des Grundgesetzes v. 28. 8. 2006, BGBl I S. 2034,⁹⁾ 이하 '연방제 개혁법'이라 한다)'에 의한 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집회법에 관한 입법 권한이 연방과 주의 경합적 입법권한에서 주의 전속권한으로 변경됨으로 인하여¹⁰⁾ 지금까지 법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행사되어 온 연방의 입법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었고, 그에 따라 연방 집회법은 이후 개정이 불가함은 물론 더 이상 독일 전체를 규율하는 법률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 독일의 각 주에서는 연방 집회법을 계속 적용하거나 독자적인 집회법을 제정하는 선택권을 가지게 되었고, 연방 집회법은 기본법 제125a조¹¹⁾에 따라 모든

8) Dürig-Frindl-Enders, *ibid.*, p. 4. 그 대표적인 사례가 후술하는 바와 같이 1989년 연방 집회법의 '호신 장구 및 복면 금지규정' 도입이라고 한다.

9) https://www.bgbl.de/xaver/bgbl/start_xav?startbk=Bundesanzeiger_BGBl&bk=Bundesanzeiger_BGBl&start=/%5B%attr_id=%27bgbl106s2034.pdf%27%5D#__bgbl_%2F%2F%5B%40attr_id%3D%27bgbl106s2034.pdf%27%5D__1483406489447

10) 연방과 주의 경합적 입법사항을 열거한 기본법 제74조 제1항의 제3호에서 결사법과 함께 규정되어 있다가 삭제되었다.

11) 기본법 제125a조 제1항 : 연방법으로 제정되었지만 제74조 제1항이나 제75조 제1항의 개정을 이유로 더 이상 연방법으로써 제정될 수 없는 법은 연방법으로서 계속 효력을 가진다. 이는 주법에 의하여 대체될 수 있다.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Art. 125a

(1) Recht, das als Bundesrecht erlassen worden ist, aber wegen der Änderung des Artikels 74 Abs. 1, der Einfügung des Artikels 84 Abs. 1 Satz 7, des Artikels 85 Abs. 1 Satz 2

주에서 주법으로 전부 대체되기까지는 연방법으로써 계속 효력을 가지므로 그때까지는 계속 명맥을 이어가게 된 것이다.

oder des Artikels 105 Abs. 2a Satz 2 oder wegen der Aufhebung der Artikel 74a, 75 oder 98 Abs. 3 Satz 2 nicht mehr als Bundesrecht erlassen werden könnte, gilt als Bundesrecht fort. Es kann durch Landesrecht ersetzt werden.

제2절 연방제 개혁법 이후의 발전

연방제 개혁법 이후 브란덴부르크 주가 제일 먼저 주 내의 추모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2006. 10. 26. 묘지와 그 주변에서의 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an und auf Gräberstätten vom 26. Oktober 2006, 이하 ‘브란덴부르크 집회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연방 집회법 제16조를 대체하였고, 베를린 시¹²⁾는 옥외집회 시 촬영·녹음에 관하여 독자적인 규율을 위하여 ‘2013. 4. 23. 옥외집회 및 행진에서의 촬영·녹음과 영상·음향 자료화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Aufnahmen und Aufzeichnungen von Bild und Ton bei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und Aufzügen Vom 23. April 2013, 이하 ‘베를린 집회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연방 집회법 제19a조를 대체 하였는데, 이로써 이들은 연방 집회법을 전부 대체하는 법률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그 일부 규정만을 대체하는 법률을 제정함에 그쳤다.¹³⁾

이에 반하여 바이에른 주가 처음으로 연방 집회법 전체를 대체 하는 ‘2008. 7. 22. 바이에른 집회법(Bayerisches Versammlungsgesetz Vom 22. Juli 2008, GVBl S. 421, 이하 ‘바이에른 집회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이어서 작센-안할트 주는 ‘2009. 12. 3. 작센-안할트 주 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Gesetz des Landes Sachsen-Anhalt über Versammlungen

12) 베를린은 시(Stadt)이면서도 주(Land)와 같은 위상을 가지는데 그리하여 이를 ‘도시주’라고 부르기도 한다. 함부르크(Hamburg)와 브레멘(Bremen)도 같다.

13) 따라서 연방 집회법은 제16조만 제외하고 브란덴부르크 주에, 제19a조만 제외하고 베를린 주에 계속 적용된다.

und Aufzüge Vom 3. Dezember 2009, 이하 ‘작센-안할트 집회법’이라 한다’¹⁴⁾을, 니더작센 주는 ‘2010. 10. 7. 니더작센 집회법(Niedersächsisches Versammlungsgesetz Vom 7. Oktober 2010, 이하 ‘니더작센 집회법’이라 한다’¹⁵⁾을, 작센 주는 ‘2012. 1. 25. 작센 공화국에서의 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im Freistaat Sachsen Vom 25. Januar 2012, 이하 ‘작센 집회법’이라 한다’¹⁶⁾을, 쉴레스비히-홀슈타인 주는 ‘2015. 6. 18. 쉴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집회자유법(Versammlungsfreiheitsgesetz für das Land Schleswig-Holstein Vom 18. Juni 2015, 이하 ‘쉴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이라 한다’¹⁷⁾을 각각 제정하여 연방 집회법 전체를 대체하였다.

위와 같이 각 주의 독자적인 집회법 제정이 예정됨에 따라 독일 전체의 법통일성 유지를 위하여 연방 내무부 주도로 몇몇 주가 참여하여 향후 각 주에서 집회법 제정 시 참고하도록 ‘주 집회법 제정 전 단계에서 주를 위한 조언 근거로서 연방 및 주 연구모임에 의한 집회법초안(Entwurf eines Versammlungsgesetzes durch Bund-Länder-Arbeitsgruppe im Vorfeld der Schaffung von Landesversammlungsgesetzen als Beratungsgrundlage für die Länder, 이하 ‘집회법초안’이라 한다’¹⁸⁾을 만들었다.¹⁹⁾ 집회법초안은 그 동안의 집회법의 발전상황을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1985년 집회의 자유를 최초로 다룬 브록도르프 결정²⁰⁾ 이후 연방

14) 2010. 1. 20. 같은 법을 제정하였다가 작센 헌법재판소에서 형식 흠결을 이유로 무효 선언을 받음에 따라 새로이 제정한 것이다. Dürig-Frindl-Enders, *ibid.* p. 4. 참조.

15) 박희영, 독일 각 주의 집회법 제정 동향 : 바이에른 주 및 니더작센 주, 법제자료, 2010. 11, p. 31. 다만 여기에서는 위 초안이 연방 법무부 주도로 작성되었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오역으로 보인다. 독일에서 집회법은 광의의 경찰법 영역에 속하므로 그 주무 부처는 연방 법무부가 아니라 연방 내무부이다.

16) Brokdorf-Beschluss(BVerfGE 69, 315, Beschluss des Ersten Senats vom 14. Mai 1985, Az. 1

헌법재판소에 의한 집회의 자유에 대한 지도적인 해석들을 반영하였다. 또한 각 주의 집회법 개별 규정들의 광범위한 조화를 통해서 법적 안정성과 법적용의 통일성에 기여하고, 대규모 시위에 있어서 연방과 주 경찰 당국의 협력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편, 민간 차원에서도 집회법 학자와 저술가들이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Friedrich-Ebert-Stiftung)¹⁷⁾의 후원 하에 ‘집회법 연구 모임(Arbeitskreis Versammlungsrecht)’을 결성하여 집회법의 통일성 유지라는 목적 하에 연구를 진행한 결과 2010. 9.경 ‘집회법 견본법률안(Musterentwurf eines Versammlungsgesetzes, 이하 ‘견본법률안’이라 한다)’을 완성한 다음 2011. 이를 책자로 발간하였다.¹⁸⁾ 견본법률안은 그동안의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집회법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각 주의 집회법에 규정되어야 마땅한 조문들을 나열하고 그들의 존재이유를 조문별로 함께 실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각 주의 독자적인 집회법 제정 움직임에 각 주의 시민 단체들은 연대하여 강력히 반발하였다. 제정된 집회법이나 입법 중에 있는 집회법안들이 종래 연방 집회법에서는 규정하지 않았던 상세한 규정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규정들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BvR 233, 341/81, 이하 ‘브룩도르프 결정’이라 한다). ‘브룩도르프 결정’은 집회의 자유에 관한 연방 헌법재판소의 선도적 결정으로,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집회의 자유에 관한 지도적인 해석들을 많이 다루었는데, 특히 이른바 ‘우발적 집회’의 경우 ‘신고의무’가 배제된다고 하였고, 집회의 금지나 해산에는 비례성의 원칙이 특별히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17) 독일 사회민주당의 정치 재단.

18) Arbeitskreis Versammlungsrecht, Musterentwurf eines Versammlungsgesetzes, C. H. Beck, 2011.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었다. 바이에른, 작센, 베를린 등에서 제정된 집회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의 제소가 잇따랐고 그에 따른 개정이나 새로운 제정도 뒤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에른 주는 집회법초안, 연방헌법재판소 판례, 새로운 연구 성과 등을 반영하여 연방 집회법과는 대단히 큰 차별성을 보이는 입법을 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 주들의 입법들을 살펴보면 바이에른 집회법의 일부만 채용하거나 연방 집회법의 규정을 모방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반발이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견본법률안은 그 체제나 내용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그 이전에 제정된 법률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었고 그 이후에 제정된 법률에도 위와 같은 반발로 일부의 영향만 미치다가 가장 최근에 제정된 쉴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대폭 반영되었다.¹⁹⁾ 다만, 향후 집회법을 제정하는 주에는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집회법의 통일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독일에서는 독자적인 집회법을 제정한 바이에른, 작센-안할트, 니더작센, 작센, 쉴레스비히-홀슈타인 등 5개 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들에서 연방 집회법이 여전히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브란덴부르크 주와 베를린은 부분적인 집회법을 제정하여 연방 집회법과 함께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들 법률과 위 집회법초안 및 견본법률안 전문을 번역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여

19) Dürig-Frindl-Enders, *ibid.* p. 5.

소개하고, 그 번역문과 원문은 본 연구의 말미에 자료로 첨부하기로 한다.

연방 집회법

바이에른 집회법

니더작센 집회법

Germany

실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

작센-안할트 집회법

브란덴부르크 집회법

베를린 집회법

제3장

독일 연방 및 주 집회법 해설

제1절 연방 집회법

제2절 바이에른 집회법

제3절 니더작센 집회법

제4절 실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

제5절 작센-안할트 집회법 및 작센 집회법

제6절 브란덴부르크 집회법 및 베를린 집회법

제3장 독일 연방 및 주 집회법 해설

제1절 연방 집회법

제1항 개설

연방 집회법은 1953. 7. 24. 최초로 제정되었다가(BGBI. I S. 684²⁰⁾), 1978. 11. 15. 새로이 공포되었고(BGBI. I S. 1789²¹⁾), 2006. 8. 28. 연방제 개혁법 이전까지 독일 전 지역에서 적용되었다. 그 도중에 연방 집회법은 ‘1985. 7. 18. 형법과 집회법 개정을 위한 법률(Gesetz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und des Versammlungsgesetzes vom 18. Juli 1985, BGBI. I S. 1511²²⁾)’ 제2조, ‘1989. 6. 9. 형법, 형사소송법 및 집시법의 개정과 테러범죄에 있어서 왕관증인 규정의 도입을 위한

20) https://www.bgbl.de/xaver/bgbl/start.xav?start=//%5B@attr_id='bgbl153s0684.pdf'%5D#__bgbl__%2F%2F%5B%40attr_id%3D%27bgbl153s0684.pdf%27%5D__1483664694512

21) https://www.bgbl.de/xaver/bgbl/start.xav?startbk=Bundesanzeiger_BGBI&bk=Bundesanzeiger_BGBI&start=//%5B@attr_id=%27bgbl178s1789.pdf%27%5D#__bgbl__%2F%2F%5B%40attr_id%3D%27bgbl178s1789.pdf%27%5D__1483405601512

22) https://www.bgbl.de/xaver/bgbl/start.xav?startbk=Bundesanzeiger_BGBI&bk=Bundesanzeiger_BGBI&start=//%5B@attr_id=%27bgbl185s1511.pdf%27%5D#__bgbl__%2F%2F%5B%40attr_id%3D%27bgbl185s1511.pdf%27%5D__1483405718397

법률(Gesetz zur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der Strafprozeßordnung und des Versammlungsgesetzes und zur Einführung einer Kronzeugenregelung bei terroristischen Straftaten vom 9. Juni 1989, BGBl. I S. 1059²³⁾)’ 제3조, ‘1999. 8. 11. 연방 헌법기관 보호의 새로운 규율을 위한 법률(Gesetz zur Neuregelung des Schutzes von Verfassungsorganen des Bundes vom 11. August 1999, BGBl. I S. 1818²⁴⁾)’ 제4조, ‘2003. 6. 20. 연방 헌법기관 보호 규율에 대한 개정을 위한 법률(Gesetz zur Änderung von Regelungen zum Schutz von Verfassungsorganen des Bundes vom 20. Juni 2003, BGBl. I S. 864)’ 제2조 및 ‘2005. 3. 24. 집회법과 형법 개정을 위한 법률(Gesetz zur Änderung des Versammlungsgesetzes und des Strafgesetzbuches vom 24 März 2005, BGBl. I S. 969²⁵⁾)’ 제1조에 의해 각각 개정되었고, 마지막으로 연방제 개혁법 이후에 ‘2008. 12. 8. 연방 헌법기관을 위한 평화 구역에 대한 규율의 시행을 위한 법률(Gesetz zur Zusammenführung der Regelungen über befriedete Bezirke für Verfassungsorgane des Bundes Vom 8. Dezember 2008, BGBl. I S. 2366²⁶⁾)²⁷⁾ 제2조에 의해 개정되었다.

23) https://www.bgbl.de/xaver/bgbl/start.xav?startbk=Bundesanzeiger_BGBl&bk=Bundesanzeiger_BGBl&start=/*%5B@attr_id=%27bgbl189s1059.pdf%27%5D#__bgbl__%2F%2F*%5B%40attr_id%3D%27bgbl189s1059.pdf%27%5D__1483405775935

24) https://www.bgbl.de/xaver/bgbl/start.xav?startbk=Bundesanzeiger_BGBl&bk=Bundesanzeiger_BGBl&start=/*%5B@attr_id=%27bgbl199s1818.pdf%27%5D#__bgbl__%2F%2F*%5B%40attr_id%3D%27bgbl199s1818.pdf%27%5D__1483405836103

25) https://www.bgbl.de/xaver/bgbl/start.xav?startbk=Bundesanzeiger_BGBl&bk=Bundesanzeiger_BGBl&start=/*%5B@attr_id=%27bgbl105s0969.pdf%27%5D#__bgbl__%2F%2F*%5B%40attr_id%3D%27bgbl105s0969.pdf%27%5D__1483405879531

26) https://www.bgbl.de/xaver/bgbl/start.xav?startbk=Bundesanzeiger_BGBl&bk=Bundesanzeiger_BGBl&start=/*%5B@attr_id=%27bgbl108s2366.pdf%27%5D#__bgbl__%2F%2F*%5B%40attr_id%3D%27bgbl108s2366.pdf%27%5D__1483406024815

27) Dürig-Frindl-Enders, *ibid.* pp. 3-4.

1985. 7. 18. 개정 법률에서는 제29조(질서위반행위 및 처벌 규정), 제30조(몰수 규정)를 개정하고 제17a조(호신장구 및 복면 금지 규정)를 새로이 도입하였으며, 1989. 6. 9. 개정 법률에서는 제17a조, 제27조(무기, 호신장구 및 복면 금지 위반 처벌 규정), 제29조, 제30조를 개정하고 제12a조(옥내집회 시 촬영·녹음 규정), 19a조(옥외집회 및 행진 시 촬영·녹음 규정), 제23조(불법집회 호소 처벌 규정)를 새로이 도입하였으며, 1999. 8. 11. 개정 법률에서는 제16조(집회금지구역 규정)를 개정하고 제29a조(제16조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를 새로이 도입하였으며, 2003. 6. 20. 개정 법률에서는 제16조를 개정하였고, 2005. 3. 24. 개정 법률에서는 제15조(집회의 제한, 금지, 해산 규정), 제25조(제15조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제29조, 첨부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2008. 12. 8. 개정 법률에서는 제16조를 개정하였다. 각각의 상세한 개정 내용은 필요한 경우 해당 부분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현행 연방 집회법은 총 5장 37조 및 1개의 첨부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총칙)은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2장(옥내공개집회)은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제3장(옥외공개집회 및 행진)은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제4장(형벌 및 범칙금 규정)은 제21조부터 제30조까지, 제5장(종결규정)은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마지막으로 1개의 첨부(제15조 제2항에 따른) 규정으로 되어 있다. 제4조와 제31조는 현재 폐지된 상태이고, 제32조는 베를린에 대한 동법 적용 규정이며, 제33조는 발효 규정으로 1953. 7. 27. 연방 집회법의 공포에 의해 발효되었다.

연방 집회법은 1차적으로 독일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옥외 집회에 대한 개별적인 법률유보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이외에도 집회에 대한 광범위한 규정을 포괄하고 있다. 기본권으로 보호되는 것은 ‘평화적·비무장 집회’ 또는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내의 집회에 한정되므로 그 보호 범위 외의 집회에 대하여는 공공의 안전과 질서 등의 사유로 제한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실제로 기본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폭력적·무장 집회 등에 대한 제한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고제를 금지하는 기본법 제8조 제1항의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옥외공개집회에 대하여는 신고제를 채택하였고, 제복 금지, 호신장구 및 변장 금지 등 우리 법에는 없는 제한 규정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연방 집회법은 위와 같은 개정과 정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과 체계, 특히 정의 규정의 부재와 모호한 준용규정의 남발이라는 면에서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우선, 우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16. 2. 28. 시행, 법률 제13834호,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이 ‘집회’와 ‘시위’를 구별하여 규정하면서 ‘집회’의 정의는 없지만 ‘시위’의 정의²⁸⁾는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연방 집회법은 ‘집회(Versammlung)’와 ‘행진(Aufzug)’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일체의 정의 규정이 없다. 그러나 독일의 학설은 ‘행진(Aufzug)’을

28) 집시법 제2조(정의) 제2호 :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집시법에서는 “행진”을 “시위”의 한 태양으로 정의하고 있고, 우리 학설과 헌법재판소 판례는 “시위”를 “장소이동적 집회”로 이해한다고 한다 (남경국, ibid, 각주 11 참조).

이른 바 ‘움직이는 집회’로 이해하여 ‘집회’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고, 그에 따라 각 주의 집회법 입법 과정에서는 이를 구별하지 않고 단지 ‘집회’로만 규정하는 것이 대세이다.²⁹⁾ 연방 집회법을 비롯해 몇몇 주의 집회법에서 여전히 ‘집회’와 ‘행진’을 구별하고 있으나 오로지 ‘행진’에만 적용된다고 볼만한 규정도 없고 이를 별도로 규정할 실익도 없어 보인다.³⁰⁾ 또한, ‘집회’의 정의 규정도 없는데, 학설상으로는 이를 ‘2인 이상의 회합으로 보는 설’과 ‘그 이상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는 설’이 대립하고 있는 바 ‘2인설’이 대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¹⁾ 한편, 연방 집회법은 ‘공개집회(öffentliche Versammlung)³²⁾’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공개(öffentlich)’의 정의 규정이 없는 바, 학설 및 판례상으로는 이를 ‘집회에의 참가가 개별적으로 확정된 인적 범위에 한정되지 않는 (wenn die Teilnahme nicht auf einen individuell feststehenden Personenkreis beschränkt ist)’으로 정의하고 있고, 이러한 정의는 향후 각 주의 입법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연방 집회법은 ‘총칙’, ‘옥내공개집회’ 그리고 ‘옥외공개집회 및

29) 바이에른, 니더작센, 쉴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 참조.

30) 따라서, 이하에서는 특별히 구별할 필요성이 없는 한 단순히 ‘집회’로만 기술하기로 한다.

31) 정의 규정을 가진 각 주의 집회법들은 쉴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을 제외하고 모두 ‘2인설’을 택하고 있다.

32) “공개”라 함은 개별적으로 특정된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집회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비공개 집회가 되기 위해서는 모임을 사적인 것으로 하고 사적인 것으로 존속하려고 하는 의지가 제스처나 구두로 외부인을 배제한다는 표현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참여자 제한의 의지는 명백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집회가 계속 중인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공개된 도로나 장소의 경우는 누구라도 접근이 가능하므로 비공개 옥외집회는 매우 작은 모임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개인소유지에서나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Sigrid Kraujuttis, Versammlungsfreiheit zwischen liberaler Tradition und Funktionalisierung, Carl Heymanns Verlag, 2005, 228-229쪽 참조).

행진'으로 장을 나누어 규정하면서도 집회법 전체나 모든 집회에 공통되는 대부분의 규정을 총칙 대신 옥내공개집회에 규정하고 이를 다시 옥외공개집회 및 행진에 준용함으로써 체계상 불명확하고 적용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다. 연방 집회법을 해석, 적용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불명확한 부분은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해 보충될 수밖에 없어 그에 의해 중요한 해석 원칙들이 정립되어 왔고 이들은 그 후 각 주 집회법의 입법에 반영되었다.³³⁾ 연방 헌법재판소는 특히 앞서 본 '브룩도르프 결정'을 통하여 연방 집회법 규정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의 근본적인 의미에 비추어 기본권 친화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연방 집회법을 보충하는 중요한 해석과 정의를 내린 바 있다. 이하에서는 연방 집회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2항 주요 내용

1. 총칙

1.1. 집회의 자유

모든 독일인은 신고나 허가 없이 평화적으로 그리고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집회할 권리를 가진다(기본법 제8조 제1항). 다만, 옥외집회에

33) Alfred Scheidler, Bayerisches Versammlungsgesetz - Textausgabe mit Einführung, 2. Auflage, RICHARD BOORBERG VERLAG, 2011, p. 9.

대해서는 위 권리가 법률 또는 법률적 근거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기본법 제8조 제2항). 옥외집회의 경우에도 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제한할 수 없다(기본법 제19조 제2항³⁴⁾).

위 규정은 평화적 집회에 대한 절대적 기본권³⁵⁾과 옥외집회의 제한에 대한 개별적 법률유보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기본법 상의 집회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은 어디까지나 평화적·비무장 집회에 대한 것으로 기본법 제8조 제1항 자체에서 모든 집회가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평화적 집회만을 보호한다고 하여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법률유보에 앞서 기본법 스스로 그 범위로 보호범위에 대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즉 집회의 자유권은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달리 헌법에 의하여 그 범위가 명확하게 이미 제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집회법은, 단지 ‘누구든지 공개집회 및 행진을 주최하거나 그러한 행사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제1조 제1항).’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당연히 위와 같이 기본법에 의해 그 범위가 제한된 권리를 의미함이 자명하다. 나아가, 기본법에 따라 집회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이 박탈된 자, 집회·행진을 주최하거나 이에 참가함으로써 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이라고 선언된 정당 등이 목적하는 바를 조장코자 한 자, 기본법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이라고 선언된 정당,

34) Art. 19

(2) In keinem Falle darf ein Grundrecht in seinem Wesensgehalt angetastet werden.

35) 일반적 법률유보를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달리 독일 기본법은 개별적 법률유보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제8조 제1항의 기본권은 그 법문과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에 의해서만 제한된다는 의미에서 절대적 기본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기본법에 의해 금지된 단체 등은 위 권리조차 가지지 못한다(제1조 제2항).

위와 같이 기본권이 박탈된 자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집회·행진의 주최·참가권이 보장되나, 공개집회·행진에 공중을 초청하는 자는 초청 시에 주최자로서 그 이름을 명시하여야 한다(제2조 제1항). 즉 비공개·사적 집회와 달리 공개집회·행진은 외부와의 접촉에 따라 필연적으로 공중이나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그 주최 시에 익명성은 보장되지 않는데 이는 집회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개집회·행진 시 그 질서 있는 거행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질서 문란행위를 야기하는 것을 금지하고(제2조 제2항), 이에 위반하여 금지되지 않은 집회·행진을 저지·와해시키거나 그 거행을 좌절케 할 의도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심각한 질서문란을 야기한 자는 연방 집회법 상 법정 최고형인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제21조).

1.2. 무기 금지

연방 집회법은 기본법의 요청인 집회의 평화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칙에서 무기 소지 금지와 제복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³⁶⁾ 기본법에는 ‘평화적으로’와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가 병렬적으로 규정

36) 옥외공개집회에 적용되는 ‘호신장구 및 변장 금지 규정(제17a조)’도 집회의 평화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나, 이는 해당 부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되어 있으나, ‘평화적으로’는 다시 집회의 목적, 진행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 비하여 ‘무기 소지’는 그 자체로 다른 요건을 따질 필요도 없이 ‘비평화적’ 집회가 되어 집회의 평화성을 해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방 집회법은 무기 소지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즉 옥내 외를 불문하고 공개집회·행진 시 무기 또는 신체 상해나 재물 손괴에 사용될 수 있는 기타 물건을 소지·운반·준비·배포 하면 안 되고(제2조 제3항),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제27조 제1항).

1.3. 제복 금지

공동의 정치적 신념의 표현으로서 제복, 제복의 일부 또는 같은 종류의 의복을 공연히 또는 집회에서 착용하는 것은 금지되고(제3조 제1항), 다만 청소년 단체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가를 할 수 있다(제3조 제2항).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제28조), 연방 집회법에서 두 번째로 높은 법정형으로 처벌받는다.

이 규정은 원칙적 금지에 해당하고 예외적으로 청소년단체에만 허용되고 있어 기본법 제8조와 합치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³⁷⁾

37) 남경국, *ibid*, p. 5. 각주 13 참조.

집회법을 제정한 대부분의 주에서 채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지나친 해석으로 보인다.³⁸⁾ 이 규정은 제복에 의해 나타나는 폭력성, 위협성으로부터 집회의 평화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청소년 단체에는 그러한 위험이 없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복 착용’ 자체로 ‘무기 소지’와 같이 바로 집회의 평화성을 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개별적 법률유보 대상이 아닌 옥내 집회에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공연히’라는 문언에 의해 집회 이외에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래서 주의 집회법들에서는 제복 착용으로 인하여 위협적 효과가 나타날 것을 요구하는 등 구성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하는 대신 청소년 단체에 대한 원칙적 허용 규정은 삭제하고 있다. 제복 금지는 우리 집시법에는 없는 특별한 규정으로서 나치의 통치라는 독일 특유의 역사적 전통에 의해 용인되는 규정으로 볼 것이다.

2. 옥내공개집회

2.1. 옥내집회 금지

옥내공개집회는 옥외공개집회·행진과 달리 신고제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누구나 제한 없이 주최·참가할 수 있다. 다만, 주최자가 제1조 소정의 집회·행진 권리가 없는 자인 경우, 주최자 또는 주관자(der Veranstalter oder Leiter)³⁹⁾가 무기소지자 등의 참가를 허용한

38) 바이에른 집회법 제7조 제2호에서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군사적 행태의 금지’ 즉 드림을 치거나 군대식 행렬을 함으로써 호전성을 나타내는 등의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경우, 주최자나 그 지지자(der Veranstalter oder sein Anhang)가 집회의 폭력적·선동적 진행을 추구하거나 범죄행위를 집회의 대상으로 하려는 경우 등에는 집회의 개최가 금지된다(제5조). 금지된 집회에 참가할 것을 권유한 자(제23조), 금지된 집회를 거행하거나 속행한 자(제26조 제1호)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제23조). 금지된 집회에 참가한 자는 질서위반으로 의율되어 1,000마르크 이하의 범칙금⁴⁰⁾에 처해진다(제29조 제1항 제1호).

단순히 기본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집회의 평화성을 벗어나는 집회뿐만 아니라 기본권 상실자 등이 주최하는 집회로 확대되어 있는데 이는 해석 상 또는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에 의해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또한, 옥외집회와 달리 옥내집회에는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이는 해석 상 당연히 인정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금지 처분이 가능한데 그보다 경한 처분인 부담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은 이상하기 때문이다. 또한 비례 원칙에 따라 부담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만 금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이후 주의 집회법들에서는 명문

39) 우리 집시법의 용례에 따라 Veranstalter는 주최자, Leiter는 주관자로 번역하기로 한다.

40) 원문은 Bußgeld 또는 Geldbuße. 이는 형법 상의 벌금형(Geldstrafe)과 구별하여 질서위반 사범에 대한 금전적 징벌을 나타내는 명칭으로, 이를 과태료로 번역하기도 하나 우리 행정질서법인 과태료와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 많아 개념상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 질서위반 사범에 대하여는 경찰 등 행정관청이 먼저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액수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가 아니라 형사절차로 이행하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통고처분과 유사한 점이 많아 필자는 이를 '범칙금'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한편 독일은 유로(Euro) 화폐단위를 도입함에 따라 종래 형법과 질서위반행위법에 마르크(DM)로 규정되어 있던 벌금과 범칙금은 유로로 변경하였으나 연방 집회법은 현재까지 동 규정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독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EU의 '유로 도입에 관한 명령'과 독일 국내법인 '유로 도입법'에 의해 마르크와 유로를 2:1로 환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 적용상의 문제는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를 환산하지 않고 법문 그대로 마르크로 표시하기로 한다.

으로 옥내집회에 대한 제한 처분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2. 주최자 등의 권리·의무

특정된 인물 또는 인적 범위에 대하여는 집회 참가 초청 시에 이를 배제할 수 있다(제6조 제1항). 이는 주최자의 재량에 따라 특정인을 집회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특정인만이 참가하는 비공개집회와는 다르다. 즉 이로써 집회의 성격이 비공개집회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개집회인 이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언론사 기자들은 배제될 수 없다(제6조 제2항).

연방 집회법은 제한 없는 옥내공개집회를 허용하는 한편 집회 주최자, 주관자 등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질서유지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모든 옥내공개집회에는 반드시 주관자를 두어야 하고(제7조 제1항) 이는 옥외공개집회에도 준용된다(제18조 제1항), 옥내공개집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최자가 주관자이고 다만 주관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을 뿐이지만(제7조 제2항, 제3항), 옥외공개집회에는 집회 신고 시에 주관자를 적시하여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제14조 제2항). 옥내집회 시 가택권은 주최자가 아니라 주관자가 행사한다(제7조 제4항). 그밖에 주관자는 집회의 진행경과를 결정하고,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집회를 언제라도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고 중단된 집회가 언제 속행될 것인지 결정하는데(제8조), 이는 옥외공개집회에도 준용된다(제18조 제1항).

주관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질서유지인(Ordner)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이들은 무기 또는 제2조 제3항 소정의 기타의 물건을 소지할 수 없고 성년에 달하여야 하며 “질서유지인”이라고만 표시할 수 있는 흰 완장을 착용함으로써 식별되도록 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무기 또는 그 성질상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데 적합한 기타의 물건을 소지한 질서유지인을 사용한 주관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제24조). 제9조 제1항에 의해 허용되는 바와 다른 표식을 한 질서유지인을 사용한 주관자 또는 주최자(제29조 제1항 제7호)는 질서위반으로 의율되어 5,000마르크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집회참가자는 주관자나 질서유지인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제10조), 주관자는 질서를 심히 위반하는 자를 집회에서 배제할 수 있고(제11조 제1항), 집회로부터 배제된 자는 즉시 그 장소를 떠나야 한다(제11조 제2항). 공개집회·행진 시 그 주관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적법하게 질서유지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에 폭력 또는 폭력적 협박으로 저항하거나 그가 적법하게 질서유지권을 행사하는 도중에 이에 폭력을 가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제22조). 주관자 또는 질서유지인의 거듭된 제지에도 불구하고 공개집회 또는 행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계속한 자(제29조 제1항 제4호) 및 공개집회 또는 행진으로부터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장소를 떠나지 아니한 자(제29조 제1항 제5호)는 질서위반으로 의율되어 1,000마르크 이하의 범칙금에 각각 처해진다.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1조 제2항의 규정은 옥외공개집회에도 준용된다(제18조 제1항).

2.3. 경찰의 관여

2.3.1. 질서유지인 규제

연방 집회법은 옥내공개집회에 대한 경찰의 관여 규정도 다수 두고 있는데, 먼저 주관자는 그가 임명한 질서유지인의 수를 경찰이 요구에 따라 통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통지 받은 경찰은 질서유지인의 수를 적정하게 제한할 수 있다(제9조 제2항). 질서유지인의 수를 통보하라는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숫자를 통지한 자(제29조 제1항 제6호) 및 경찰이 허가하거나 인가한 숫자보다 많은 수의 질서유지인을 사용한 주관자 또는 주최자(제29조 제1항 제7호)는 질서위반으로 의율되어 5,000마르크 이하의 범칙금에 각각 처해진다.

2.3.2. 집회 참관권

경찰관은 주관자에게 고지하고 집회를 참관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주관자는 적절한 자리를 배정하여야 하고(제12조), 이에 위반한 경우 질서위반으로 의율되어 5,000마르크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제29조 제1항 제8호).

제12조의 규정은 옥외공개집회에도 준용된다(제18조 제1항).

2.3.3. 집회 해산

경찰은 일정한 경우 이유를 붙여 집회를 해산할 권한을 가진다(제13조). 주최자가 제1조 소정의 집회·행진 권리가 없는 자인 경우,

집회의 폭력적·선동적 진행이나 집회참가자의 신체·건강에 직접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주관자가 무기휴대자 등을 즉시 집회에서 배제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집회의 진행이 형법규정에 위반되거나 주관자가 집회에서 벌어지는 범죄행위 권유·고무행위를 즉시 저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경찰공무원은 집회를 해산시킬 수 있다(제13조 제1항). 해산 명령이 있으면 모든 집회참가자는 즉시 현장에서 떠나야 하고(제13조 제2항), 이에 위반한 경우 질서위반으로 의율되어 1,000마르크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제29조 제1항 제2호).

제13조 제2항의 규정은 옥외공개집회에도 준용된다(제18조 제1항).

2.4. 촬영·녹음

집회 관련 촬영·녹음 규정은 1989. 6. 9. 개정 법률(BGBL. I S. 1059)에 의해 새로 도입된 규정으로 우리 집시법에는 없는 조항이다. 집회 관련 촬영·녹음은 원칙적으로 범죄 수사를 위한 채증 활동의 일환이나 경찰법 상의 예방적 경찰작용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집회법에 반드시 별도의 수권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는 내적인 집회의 자유뿐만 아니라 집회참가자들이 국가의 무제한적인 감시를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행사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⁴¹⁾ 더욱이 1985. 7. 18. 개정 법률(BGBL. I S. 1511)에 의하여 ‘호신장구 및 변장 금지 규정(제17a조)’을 도입함에 따라 집회 참가자들은 더

41) Alfred Scheidler, *ibid.* p. 31.

이상 변장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되어 경찰의 촬영·녹음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게 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집회와 관련한 경찰의 촬영·녹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집회참가자 등으로부터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현저한 위험(erhebliche Gefahr)⁴²⁾이 나온다고 인정될 경우 경찰은 집회참가자 등을 촬영·녹음할 수 있고, 그러한 조치는 제3자가 불가피하게 관계되는 경우에도 시행될 수 있다(제12a조 제1항). 그로 인해 생성된 자료는 집회참가자의 형사소추나 장래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집회 종료 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고, 그러한 이유로 파기되지 아니한 자료도 늦어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무조건 파기되어야 한다(제12a조 제2항). 한편, 연방 집회법에서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촬영·녹음할 것을 요하지는 않으나 주의 집회법들에서는 집회의 자유를 더욱 더 보장하는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촬영·녹음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조항에 의해 형사소송법 및 질서위반행위법에 따른 인적 정보의 수집권한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제12a조 제3항). 이 조항은 당연한 규정으로 기자 등 사인이 촬영·녹음한 것을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압수하는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다.

42) 경찰법 상 위험이란 일반적으로 '실제로 혹은 사전적 관점에서 경찰공무원의 합리적 판단에 따를 때 현재의 상황을 방치하게 되면 가까운 장래에 손해가 발생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독일의 실정법 상 어떤 특정한 조치의 전제조건으로 위 일반적인 위험의 개념보다 한층 강화된 위험(qualifizierte Gefahr)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위 현저한 위험, 직접적 위험(unmittelbare Gefahr), 급박한 위험(dringende Gefahr) 등이 그것이다. 서정범 역, 바이에른 집회법(A. Scheidler, Bayerisches Versammlungsgesetz), 세창출판사, 2010. 8. 각주 46 참조.

연방헌법재판소는 앞서 본 ‘브룩도르프 결정’에서 집회의 금지나 해산의 요건으로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öffentliche Sicherheit oder Ordnung)’의 개념을 경찰법 상의 통설에 따라 정의하였는데, 그 내용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즉, 공공의 안전이란 개인의 생명, 건강, 자유, 명예, 재산권 등 중심적 법익의 보호와 법질서 및 국가제도의 불가침성을 포함하는 것이고, 이러한 보호이익이 위협을 받는 경우에 통상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인정된다. 한편, 공공의 질서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질서 있는 인간 공동체의 불가결한 전제 조건으로 간주되는 불문의 규칙의 총체를 포함한다.

제12a조는 옥외공개집회 및 행진에도 요건의 차이 없이 그대로 적용되나(제19a조), 이에 대하여 주의 집회법들에서는 옥내집회와 옥외집회로 나누어 요건을 달리하여 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3. 옥외공개집회

3.1. 신고제

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집회의 허가(Erlaubnis)제와 신고(Anmeldung)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방 집회법은 옥외 공개집회·행진에 대하여 신고(Anmeldung)제를 규정하고 있다. 즉 옥외공개집회 또는 행진을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늦어도 집회 공지 48시간 이전에 관할 관청에 집회 또는 행진의 목적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제14조 제1항), 이를 신고 없이 거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며(제26조 제2호), 신고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게 집회를 진행한 자는 6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180일수⁴³⁾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제25조 제1호). 또한, 신고 시 누가 집회 또는 행진의 주관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인지를 적시하여야 한다(제14조 제2항).

이에 대하여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법률유보를 통하여 헌법 합치적으로 해석하면 가능하다는 견해와 기본법 제8조 제1항의 명문 규정에 비추어 일반적 신고제의 도입은 그 자체로 자유와 침해의 원칙과 예외 관계를 뒤바꾼 것으로 위헌이라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⁴⁴⁾ 연방헌법재판소는 앞서 본 ‘브룩도르프 결정’에서 신고의무를 규정한 연방 집회법 제14조 제1항은 우발적 집회(Spontanversammlung)에는 신고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정 해석하는 한 합헌이라고 설시하여 전자의 견해를 지지하였고, 그 이후 긴급집회(Eilversammlung)의 경우에도 사전 신고의무를 요구할 수 없고 가능한 빨리 사후에 신고하면 되고, 우발적 집회에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일반적 금지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⁴⁵⁾

집회법 상의 신고(Anmeldung)는 의사표시(Willenserklärung)가 아니라 단순히 지식표시(Wissenserklärung)로서 당국에 집회와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집회의 중복에 의한 혼란 등을 예방하고 실질

43) 독일은 일수벌금제를 채택하고 있는바, 벌금형은 일수로 산정하여 선고하고, 벌금형의 일수는 5일 이상 360일 이하이다(독일 형법 제40조 제1항).

44) 남경국, *ibid.* p. 8. 참조.

45) BVerfGE 85, 69 (75).

적으로 평화적 집회가 보장되도록 하는 기능 즉 집회 보호의 측면에서 의의가 있고 이는 반사적으로 집회에 대한 규제가 발생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각 주의 집회법 입법 과정을 살펴보면 신고제를 폐지한 사례는 전혀 없고 위와 같은 논의 과정을 그대로 반영하여 계속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신고’라는 용어를 ‘Anmeldung’ 대신 ‘Anzeige’⁴⁶⁾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기본법 상의 용어와의 저촉을 회피할 의도가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보인다.

3.2. 집회의 제한, 금지, 해산

3.2.1. 일반적 제한, 금지, 해산

관할 관청은, 그 처분 발령 시 인식 가능한 상황에 따르면 집회 또는 행진의 거행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질서가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되는 경우, 그 집회 또는 행진을 금지하거나 특정한 부담(Auflage)⁴⁷⁾을 부과할 수 있고(제15조 제1항), 집회·행진이 신고내용과 다르거나 부과된 부담을 위배하는 경우 이를 해산할 수 있다(제15조 제3항). 집회·행진을 금지명령에 위반하여 거행하거나 해산·중지명령에 반하여 속행한 주최자 또는 주관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제26조 제1호), 부과된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주관

46) 둘 다 ‘신고’로 번역되나, Anzeige는 수사기관에 대한 범죄 신고에 사용되는 등 사실행위로서의 측면이 강하다.

47) 독일 행정법 상의 용어로서 행정법 상의 부관의 일종이다. 부담은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과하여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수인·급부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으로 정의된다.

자는 6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180일수 이하의 벌금형으로(제25조 제2호) 각각 처벌된다. 공연히, 집회에서 또는 문서배포, 음향 또는 영상매체, 삽화 또는 기타의 표현물을 통하여 금지되거나 해산이 명하여진 공개집회·행진에 참가할 것을 권유한 자도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제23조).

우선, 부담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에는 집회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그 중 동보 행진을 금지하거나 특정한 물건 소지를 금지하거나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다음, 연방 집회법은 집회에 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담은 행정행위에 부가되는 부관의 일종이므로 허가라는 행정행위를 요하지 않는 집회에 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지 논란이 있다. 그리하여 주의 집회법들에서는 부담 대신 제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편, 부담과 해산 또는 금지의 관계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비례의 원칙에 따라 부담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만 해산 또는 금지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집회의 해산과 금지는 본 신고제의 의미에 비추어 엄격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동일한 가치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러한 법익에 직접적인 위협이 발생한다고 볼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⁴⁸⁾

3.2.2. 추모장소 또는 추모일 집회의 금지, 제한, 해산

집회·행진이 나치의 폭력적이고 자의적인 통치 하에서 비인도적

48) 위 '브룩도르프 결정' 참조.

취급을 당한 희생자를 상기시키는 역사적으로 특별하고 초지역적인 의미를 가진 기념 장소에서 개최되는 경우 그리고 그 처분 발령 시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정에 따르면 집회·행진을 통하여 희생자의 존엄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집회가 금지되거나 특정한 부담이 부과될 수 있다(제15조 제2항 제1문). 이는 제16조 소정의 전통적인 집회금지구역과는 구별되는 추모장소에서의 집회 제한, 금지 규정이다. 베를린 소재 학살 유대인 기념물이 그 장소이고 구체적 범위는 첨부 규정에서 정하며, 다른 장소 및 그 경계는 각 주의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제15조 제2항 제2문). 다만, 나치 희생자 추모일 등 특정일에 있어서의 집회 제한, 금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규정은 2005. 3. 24. 개정 법률에 의하여 제15조 제2항으로 도입되었는데, 그 이유는 네오나치정당(NPD)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60주년 기념일인 2005. 5. 8. 위 기념물 부근에 있는 베를린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 문(Brandenburger Tor)’을 행진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하자 이를 금지하고 향후 그러한 종류의 집회·행진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위 규정에서 각 주의 추모장소 등을 주법에 위임함에 따라 브란덴부르크 주의 ‘2005. 5. 1. 집회법 제15조 제2항 제1호에 관한 법률(Gesetz zu § 15 Abs. 2 Satz 1 Nr. 1 des Versammlungsgesetzes vom 23. Mai 2005, GVBl.I/05, [Nr. 12], S.174⁴⁹⁾)’, 함부르크 시의 ‘2005. 9. 21. 노이엔가메 강제수용 기념장소 보호에 관한 법률(Gesetz

49) http://bravors.brandenburg.de/br2/sixcms/media.php/76/GVBl_I_12_2005.pdf

zum Schutz der KZ-Gedenkstätte Neuengamme Vom 21. September 2005, HmbGVBl. 2005, S. 398)이 제정되었다. 그리하여 이 규정을 제복금지 규정(제3조)과 함께 단지 신나치세력 등 극우세력의 집회를 제한하려는 의도에서만 입법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연방과 각 주의 집회법들은 극우주의자 뿐만 아니라 극좌주의자의 집회에도 대응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이 명백하고,⁵⁰⁾ 각 주의 집회법 중에는 공산주의 정권의 희생자 추모장소 등을 명시적으로 추가한 사례도 있다. 또한 각 주의 집회법들에서는 추모장소 뿐만 아니라 추모일의 집회도 제한, 금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제한이나 금지는 우리 집시법에서는 상정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지독한 극단주의의 폐해를 몸소 체험한 독일의 역사적 경험에 의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3.2.3. 관련 쟁점 검토

우리 집시법 제10조에서는 야간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고, 그 중 ‘야간옥외집회 금지’는 2009. 9. 24. 헌법불합치 결정을(2008헌가25), ‘일몰 후 자정까지의 시위 금지’는 2014. 3. 27. 한정위원 결정을(2010헌가2) 각각 받은 바 있으나 독일의 연방 및 각 주 집회법에서는 집회·행진을 시간적으로 직접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⁵¹⁾

50) Alfred Scheidler, *ibid.*, p. 14. 참조.

51) 다만, 주의 공휴일법(Feiertagsgesetz)에는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종교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종교행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거나 종교행사의 진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집회는 금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규정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Maunz/Dürig, Kommentar zum

연방 집회법 제1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담에 의해 집회·행진의 시간적 제한이 가능하나, 이 경우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에 대한 ‘직접적 침해’를 요건으로 한다.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에 대한 ‘직접적 침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안에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분을 수반할 수 있는 그 보호 이익에 대하여 개별적 검토를 요하고,⁵²⁾ 부담이 사실상, 법률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⁵³⁾ 연방헌법재판소는 대규모 장애가 예상되고 집회시간을 조금 변경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게 된다면, 대도시의 중심부에서 교통이 혼잡한 시간대나 핵심 영업시간대에 집회가 무조건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⁵⁴⁾

집회시간과 관련하여, 관할 관청은 집회시간의 변경을 부담으로 부과하는 것이 가능하나, 특정 시점에서의 개최 자체가 집회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닐 때에는 집회시간을 변경하라는 부담을 부과할 수는 없다.⁵⁵⁾ 집회시간과 관련하여 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사안은 기념일⁵⁶⁾을 겨냥한 집회에 대하여 부담이 부과된 사례이다.⁵⁷⁾ 독일

Grundgesetz, C. H. Beck, 51. Ergänzungslieferung(2007), Band I, Art. 8, p. 84).

52) Sigrid Kraujuttis, *ibid.*, p. 239.

53) Maunz/Dürig, *ibid.*, p. 80.

54) BVerfGE 73, 206.(Dieter/Gintzel/Kniesel, Demonstrations- und Versammlungsfreiheit, Carl Heymanns Verlag, 2004, p. 297에서 재인용).

55) Maunz/Dürig, *ibid.*, pp. 79-80.

56) 연방헌법재판소는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가 해방된 날로서 헤어초크(Herzog) 대통령에 의해 공식적으로 나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1월 27일에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극우주의자의 신청에 대하여 집회 담당 관청이 1월 27일에 극우주의 ‘동지들’에 의한 집회가 진행되는 것은 선동의 효과가 있고, 일반 시민의 도덕 감정을 심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집회를 1월 28일로 연기하도록 한 사례에서 그러한 판단은 충분히 이해될 만한 것이고, 헌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BVerG NJW 2001, 1409. Maunz/Dürig, *ibid.*, p. 80에서 재인용).

57) 헌법 및 집회법 주석서에서 단순히 야간이기 때문에 집회를 금지하거나 개최시간을 변경하라는 부담을

집회법에 집회의 시간 규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은 우리 집시법에 집회 시 소음 규제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과 달리 독일 집회법에는 집회 시 소음 규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독일은 매우 엄격하고 다양한 소음이나 상린관계 규율 법제를 가지고 있어 집회법에서 이를 규율할 실익이 없고 실제로 교통 장애나 소음을 유발하는 집회를 야간에 개최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집회 공간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제3자의 이익(특히 교통문제)과의 문제, 반대 데모대와의 물리적 충돌 문제⁵⁸⁾ 등과 관련하여 논의가 이루어진다. 특히 교통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집회참가자의 이익과 제3자의 이익을 비교형량 하여야 하고, 그 비교형량 시에는 교통 방해의 정도, 집회신고 시점의 적절성, 부담 부과를 통한 조정 가능성, 회피 가능성, 집회의 시간 및 소요시간, 도로의 용도⁵⁹⁾ 등을 고려⁶⁰⁾하여야 한다. 집회를 이용하여 교통을 방해하려는 경우는 기본법 제8조의 보호대상이 아니다.⁶¹⁾

부과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된 사례는 발견치 못하였다.

58) 독일 연방군의 군가연주공연을 반대하는 집회 신청에 대하여 집회 담당 관청이 한 줄의 가옥들에 의하여 공연장소와 분리되고 그 공연장소와는 여전히 가까운 공간에서 위 반대집회를 개최하라는 부담을 부과한 사례에서, 법원은 위 반대집회가 위 공연 관객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위 공연의 음악에 관심이 있는 일반 대중을 충분히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집회자유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서 위 부담 부과는 반대집회의 표현과의 관계에서 모든 대립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치 아니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일반 대중이 위 공연의 연주내용을 청취하는 데에 위 반대집회가 방해되지 아니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임) - 드레스덴 행정법원 판결 ; VG Dresden, Beschl. v. 11. 10. 2006, Az. 14 K 2084-06. (Maunz/Dürig, ibid, p. 81에서 재인용).

59) 따라서 차량전용도로의 경우에는 보행로에 비하여 집회의 권리가 감소한다.

60) 해당 집회의 주제에 대해서 집회나 데모가 얼마나 자주 개최되는지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Dieter/Gintzel/Kriesel, ibid, p. 297).

61) Maunz/Dürig, ibid, pp. 79-81 및 pp. 83-84 참조.

3.3. 집회금지구역(Bannmeile)⁶²⁾

각 주의 입법기관 보호구역 내에서는 옥외공개집회·행진이 금지되고(제16조 제1항), 그에 위반한 경우 질서위반으로 의율되어 3,000마르크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지며(제29a조), 주 입법기관을 위한 집회금지구역과 그 범위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각 주의 집회금지구역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16조 제2항, 제3항).

이 조항은 1999. 8. 11. 개정 법률, 2003. 6. 20. 개정 법률, 2008. 12. 8. 개정 법률 등 3회에 걸쳐 개정되었다. 개정 전 위 조항에서는 연방의 헌법기관 즉 연방의회(Bundestag),⁶³⁾ 연방참사원(Bundesrat),⁶⁴⁾ 연방헌법재판소도 규정되었으나 현재 연방 헌법기관은 별도의 연방 법률인 ‘2008. 12. 8. 연방 헌법기관을 위한 평화구역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befriedete Bezirke für Verfassungsorgane des Bundes vom 8. Dezember 2008, BGBl. I S. 2366)’에서만 규율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베를린, 함부르크, 헤센,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자아르란트, 튀링엔 등 10개 주에서도 주 입법기관 보호를 위한 집회금지구역법(Bannmeilengesetz)을 제정하였다.⁶⁵⁾

62) 집회금지구역을 나타내는 용어로 종래 Bannmeile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왔으나, 금지라는 용어의 집회의 자유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감안하여 근래에는 평화구역(befriedeter Bezirk)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63)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고 양원제의 하원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64) 각 주의 대표들로 구성되고 양원제의 상원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65) 바이에른 주, 니더작센 주는 각각 독자적으로 제정한 집회법에서 집회금지구역을 규율함에 따라 종전의 집회금지구역법을 폐지하였다.

우리는 사법기관 전체를 집회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독일에서는 헌법기관인 연방헌법재판소에 대해서만 집회금지 구역법이 적용되는 것이 특이하다. 독일에서는 국가기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회에 대한 일반적 금지를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집회의 자유와 관련하여 논쟁이 이어져 왔고, 연방 집회법 제정 당시부터 사법기관은 연방헌법재판소로 한정하였다.

3.4. 집회 아닌 행사에의 적용 배제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옥외 종교의식, 종교상의 행렬, 성지순례행렬, 관습적인 장례의식, 혼례하객의 행렬 그리고 전통적인 민속축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7조). 연방 집회법에는 집회의 정의 규정⁶⁶⁾이 없어 위와 같은 행사들도 집회로 볼 여지가 있어 이를 특별히 규정한 것이나, 애초 위와 같은 행사들은 집회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규정은 이를 확인하는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다.

66) 예컨대, 바이에른 집회법은 집회를 ‘공동의, 주로 공적인 의사형성예의 참여를 위한 토론이나 선언을 목적으로 하는 적어도 2인 이상의 회합’으로 정의한다.

3.5. 호신장구(Schutzwaffe)⁶⁷⁾ 및 변장(Vermummung)⁶⁸⁾ 금지

연방 집회법은 1985. 7. 18. 개정 법률에 따라 호신장구 및 변장 금지를 그 제17a조로 도입하고 1989. 6. 9. 개정 법률에 의하여 이를 개정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먼저, 옥외공개집회, 행진이나 그와 같은 옥외공개행사에서 또는 그에 참가하러 가는 도중에, 호신장구 또는 호신장구로 적합하고 상황에 따라 고권적 권한을 가진 당국자의 집행조치를 저지하기에 확실한 물건을 소지하는 것은 금지되고(제17a조 제1항), 그에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제27조 제2항 제1호). 그와 같은 행사에 이어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과 작당하고 그 때에 호신장구를 소지한 자도 같다(제27조 제2항 제3호 b목). 제17조 소정의 행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관할 관청은 공공의 안전 또는 질서가 위태롭게 될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위 금지에 대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제17a조 제3항). 또한, 관할 관청은 그 금지를 관철하기 위한 명령을 발하거나 위반자를 행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제17a조 제4항).

호신장구란 그 물건의 목적이나 구조적 특징 또는 속성에 비추어 싸움이 벌어진 경우 타인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67) Schutzwaffe를 우리나라에서는 'Waffe'이라는 용어에 주안을 두어 '방어무기'로 번역하기도 하나, 이는 독일 '무기법' 상의 '무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무기법 상의 무기를 소지하는 것은 제2조 제3항에 의해 이미 금지되어 있으므로 필자는 이를 '호신장구'로 번역하기로 한다.

68)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이를 '복면' 금지라고 번역하나, 이는 복면 이외의 분장, 치장 등 사람의 동일성 인식을 곤란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기 어려운 용어로 생각되므로 필자는 이를 보다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변장' 금지로 번역하기로 한다.

위한 물건, 예컨대 호구, 철모, 방패, 보호마스크, 방독면 등을 말한다. 호신장구로 적합한 물건과 당국자의 집행조치를 저지하기에 확실한 물건은 그 성질상 객관적으로 호신장구와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건, 예컨대 오토바이용 헬멧, 안전작업복 등을 말한다.⁶⁹⁾

다음, 위와 같은 행사에 사람의 신원 확인을 방해하기에 적합하고 상황에 따라 그러함에 적절한 변장을 하고 참가하거나 그와 같은 변장을 하고 참가하러 가는 행위(제17a조 제2항 제1호) 및 위와 같은 행사에서 또는 그에 참가하러 가는 도중에 사람의 신원 확인을 방해하기에 적합하고 상황에 따라 그러함이 확실한 물건을 소지하는 행위(제17a조 제2항 제2호)는 이른 바 ‘변장 금지’로서 금지된다. 제17a조 제3항 및 제4항은 변장 금지에도 적용된다. 제17a조 제2항 제1호에 위반하여 사람의 신원 확인을 방해하는 변장을 하고 옥외공개 집회·행진에 참가하거나 참가하러 가는 자(제27조 제2항 제2호), 옥외공개집회·행진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과 작당하고 그 때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장을 한 자(제27조 제2항 제3호 c목)는 1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제17a조 제2항 제2호에 위반하여 옥외공개집회·행진 중 또는 이에 참가하러 가는 중에 사람의 신원 확인을 방해하기에 적합한 물건을 휴대한 자는 질서위반으로 의율되어 1,000마르크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제29조 제1항 제1a호).

본 금지조항 및 처벌규정은 1985. 6. 28. 헬무트 콜(Helmut Kohl)

69) Alfred Scheidler, *ibid.*, p. 60.

수상이 이끄는 기민/기사·자민 연정의 합의로 마련되었는데, 집회 중 공공의 안전 및 질서에 대하여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자가 복면 등을 착용할 경우 경찰의 영상이나 사진 촬영에도 불구하고 그 신원확인이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그 신원확인을 용이하게 할 의도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위 규정이 공공의 질서 유지 목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적정하고 최소한도로 제한하는가에 대하여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반대론자는,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를 침해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유로 신원이 밝혀지기를 원하지 않는 집회참가자⁷⁰⁾까지 이 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고, 결국 이들은 집회나 행진이라는 방식으로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없게 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찬성론자는, 평화적 집회참가자는 얼굴을 가리는 것이 필요치 않고, 복면한 집회참가자는 그 전투적인 외관으로 인하여 그들이 자신의 의견 표명을 위하여 민주적 시민이 평화적 집회를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못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연방 차원에서도 위 규정 채택 이후 진보 정권으로의 정권교체가 있었음에도 위 규정은 계속 유지되었고, 각 주의 경우에도 보수 또는 진보 정권의 집권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주의 집회법에서 위 규정을 예외 없이 채택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상 논쟁의 실익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70) 예컨대, 고용주에 의한 차별이나 정치적 반대자에 의한 폭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익명성을 원하는 경우.

3.6. 준용 규정 및 행진의 특례

옥외집회에 대하여는 옥내집회에 관한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1조 제2항, 제12조 및 제13조 제2항이 준용된다(제18조 제1항). 질서유지인의 사용에는 옥내집회와 달리 경찰의 인가를 요한다. 인가는 신고 시에 신청되어야 한다(제18조 제2항). 옥내집회에서는 주관자가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는 참가자를 집회로부터 배제할 수 있으나 옥외집회에서는 경찰이 이를 할 수 있다(제18조 제3항).

위 조항들은 장소적으로 고정된 옥외집회에만 적용되고, 행진에 대하여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즉, 행진의 주관자는 행진의 질서 있는 진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질서유지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제19조 제1항), 행진 참가자들은 주관자 또는 그로부터 임명된 질서유지인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있고(제19조 제2항), 주관자는 자신의 의도대로 행진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행진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할 의무가 있다(제19조 제3항). 옥외집회와 마찬가지로 경찰은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는 참가자를 행진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제19조 제4항).

옥내집회 시 촬영·녹음에 관한 제12a조는 옥외집회 및 행진에도 요건의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된다(제19a조).

3.7. 인용강제(Zitiergebot)

기본법 제8조의 기본권은 본 장의 제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다(제20조). 독일 기본법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그 제한되는 기본권을 인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2문). 본 장은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개별적 법률유보에 따라 기본권 제한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인용한 것이고 이를 강화 상 인용 강제라고 한다.

4. 형벌⁷¹⁾ 및 범칙금 규정

4.1. 개관

연방 집회법은 그 위반행위를 범죄행위와 질서위반행위로 나누어 형벌 또는 범칙금으로 처벌한다. 제21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은 형벌을, 제29조 및 제29a조는 범칙금을 규정하고 있다.

형벌의 법정형 상한은 3년 이하의 자유형⁷²⁾ 또는 벌금형,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 6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180일수 이하의 벌금형⁷³⁾ 등 3종류로 규정되어 있고, 범칙금의 법정형 상한은 5,000마르크 이하, 3,000마르크 이하, 1,000마르크 이하 등

71) 독일의 형벌 종류는 자유형, 벌금형, 재산형, 부가형 및 부수효과로 되어 있고, 사형제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

72) 자유형은 무기 자유형과 유기 자유형으로 되어 있고, 유기형의 상한은 15년 하한은 1월이다(형법 제38조).

73) 독일은 일수벌금제를 채택하고 있고, 벌금형의 최소는 5일 최고는 360일이다(형법 제40조 제1항). § 40 Verhängung in Tagessätzen (1) Die Geldstrafe wird in Tagessätzen verhängt. Sie beträgt mindestens fünf und, wenn das Gesetz nichts anderes bestimmt, höchstens dreihundertsechzig volle Tagessätze.

3종류로 규정되어 있다. 법정형 상으로는 우리 집시법과 유사하나 독일 형법이 우리 형법에 비하여 대체로 법정형이 낮은 것에 비추어 보면 집회법 위반 사범을 비교적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라 주의 집회법들에서는 법정형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2. 형벌 규정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은 집회·행진을 저지·해산시키거나 그 거행을 좌절케 할 의도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심한 질서문란을 야기한 경우뿐이고(제21조),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도 제3조의 제복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뿐이다(제28조).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공개집회·행진 시 그 주관자 등이 질서유지권을 행사함에 대하여 폭력 또는 폭력적 협박으로 저항하거나 그에게 폭력을 가한 경우(제22조), 집회·행진의 거행이 금지되거나 해산이 명하여진 후에 집회에서 또는 문서배포 등을 통하여 그러한 공개집회·행진에 참가할 것을 공연히 권유한 경우(제23조), 공개집회·행진의 주관자로서 무기 기타 물건을 소지한 질서유지인을 사용한 경우(제24조), 주최자 또는 주관자로서 공개집회·행진을 금지명령에 반하여 거행하거나 경찰의 해산·중지명령에 반하여 속행한 경우(제26조 제1호), 옥외공개집회·행진을 신고(제14조) 없이 거행한 경우(제26조 제2호), 허가 없이 무기 기타 물건을

공개집회·행진 시나 그에 참가하러 가는 도중에 소지하거나 그와 같은 장소로 운반하거나 그와 같은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배포한 경우(제27조 제1항), 옥외공개집회·행진 기타 옥외공개 행사에서 또는 그에 참가하러 가는 도중에, 호신장구 또는 유사 물건을 소지한 경우(제27조 제2항 제1호), 그와 같은 행사에 사람의 신원 확인을 방해하기에 적합한 변장을 하고 참가하거나 참가하러 가는 경우(제27조 제2항 제2호), 그와 같은 행사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과 작당하고 그 때에 무기 기타 물건을 소지하거나 호신장구 기타 물건을 소지하거나 위 제2호에 묘사된 방법으로 변장을 한 경우(제27조 제2항 제3호) 등이다.

6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180일수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옥외공개집회·행진의 주관자로서 주최자가 신고 시 신고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게 집회 또는 행진을 거행한 경우(제25조 제1호),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제25조 제2호) 등이다.

4.3. 범칙금 규정

5,000마르크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지는 것은, 질서유지인의 수를 통보하라는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숫자를 통지한 경우(제29조 제1항 제6호), 공개집회·행진의 주관자·주최자로서 경찰이 허가하거나 인가한 숫자보다 많은 수의 질서유지인을 사용하거나 허용되는 바와 다른 표식을 한 질서유지인을 사용한 한 경우(제29조

제1항 제7호), 주관자로서 경찰공무원의 참석을 거부하거나 적당한 자리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제29조 제1항 제8호) 등이다.

3,000마르크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지는 것은, 제16조 제1항에 위반하여 옥외공개집회·행진에 참가하거나 옥외공개집회·행진에 참가하도록 권유한 경우뿐이다(제29a조).

1,000마르크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지는 것은, 금지명령에 의해 거행이 금지된 공개집회·행진에 참가한 경우(제29조 제1항 제1호), 옥외공개집회·행진 또는 그와 같은 옥외공개행사에서나 그에 참가하려 가는 도중에 사람의 신원 확인을 방해하기에 적합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제29조 제1항 제1a호), 공개집회·행진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장소를 떠나지 아니한 경우(제29조 제1항 제2호), 옥외공개집회·행진의 참가자로서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제29조 제1항 제3호), 주관자 등의 거듭된 제지에도 불구하고 공개집회·행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계속한 경우(제29조 제1항 제4호), 공개집회·행진으로부터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장소를 떠나지 아니한 경우(제29조 제1항 제5호) 등이다.

4.4. 몰수 규정

제27조 또는 제28조 소정의 범죄행위 또는 제29조 제1항 제1a호 또는 제3호 소정의 질서위반행위에 관계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제30조).

물수의 추가적인 요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74a조⁷⁴⁾와 질서위반 행위법 제23조⁷⁵⁾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종결규정

종결규정 중 제31조와 제33조는 폐지되었고, 현재에는 이른 바 베를린 규정인 제32조만 남아 있다. 즉, 이 법은 제3차 경과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베를린에도 적용되고, 이 법의 위임에 의하여 공포된 법규명령은 제3차 경과법 제14조에 따라 베를린에 적용된다(제32조). 그러나 위 관계된 경과 법률이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현재 위 규정은 적용 대상이 없는 상태이다.⁷⁶⁾

74) § 74a Erweiterte Voraussetzungen der Einziehung

Verweist das Gesetz auf diese Vorschrift, so dürfen die Gegenstände abweichend von § 74 Abs. 2 Nr. 1 auch dann eingezogen werden, wenn derjenige, dem sie zur Zeit der Entscheidung gehören oder zustehen,

1. wenigstens leichtfertig dazu beigetragen hat, daß die Sache oder das Recht Mittel oder Gegenstand der Tat oder ihrer Vorbereitung gewesen ist, oder
2. die Gegenstände in Kenntnis der Umstände, welche die Einziehung zugelassen hätten, in verwerflicher Weise erworben hat.

75) § 23 Erweiterte Voraussetzungen der Einziehung

Verweist das Gesetz auf diese Vorschrift, so dürfen die Gegenstände abweichend von § 22 Abs. 2 Nr. 1 auch dann eingezogen werden, wenn derjenige, dem sie zur Zeit der Entscheidung gehören oder zustehen,

1. wenigstens leichtfertig dazu beigetragen hat, daß die Sache oder das Recht Mittel oder Gegenstand der Handlung oder ihrer Vorbereitung gewesen ist, oder
2. die Gegenstände in Kenntnis der Umstände, welche die Einziehung zugelassen hätten, in verwerflicher Weise erworben hat.

76) Dürig-Frindl-Enders, *ibid.* p. 497. 연방법무부 법령정보 사이트(www.gesetze-im-internet.de)에 수록된 연방 집회법에는 제32조에 위와 같은 조문 내용이 나타나 있으나, 민간법령정보 사이트인 벡-온라인(<https://beck-online.beck.de>)에서 검색한 연방 집회법에는 동 조가 아무런 내용 없이 '적용 대상 없음 (Gegenstandlos)'으로만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첨부 규정에서는 제15조 제2항 제2문의 위임에 따라 추모장소의 구체적인 경계를 규정하고 있다.

제2절 바이에른 집회법

제1항 개설

바이에른 주는 연방제 개혁 이후 주 차원에서 최초로 연방 집회법을 전부 대체하는 ‘2008. 7. 22. 바이에른 집회법(Bayerisches Versammlungsgesetz Vom 22. Juli 2008, GVBl S. 421)’을 제정하였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동안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해 형성된 집회법의 발달 상황과 집회법초안을 대폭 받아들인 획기적이고 잘 정돈된 법률이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시민단체 등에 의해 헌법소원과 함께 그 효력을 잠정적 정지를 구하는 가명령(einstweilige Anordnung)⁷⁷⁾이 청구되었고 이에 연방헌법재판소는 ‘2009. 2. 17. 결정(BVerfG, Beschl. v. 17. 2. 2009 - I BvR 2492/08, BGBl I S. 524)’을 통하여 위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바이에른 집회법 일부 규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박탈하는 가명령을 발하였다.⁷⁸⁾ 그러자 바이에른 주 정부는 위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2010. 4. 22. 바이에른 집회법 개정을 위한 법률(Gesetz zur Änderung des Bayerisches Versammlungsgesetzes Vom 22. April 2010, GVBl S. 190)’ 제1조를 통해 문제된 규정들을 개정하여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였다.

즉, 현행 바이에른 집회법의 내용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77)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따른 본안 판결 전 잠정조치를 말한다.

78) 연방헌법재판소는 2009. 8. 4. 결정(BVerfG, Beschl. v. 4. 8. 2009 - I BvR 2492/08, BGBl I S. 2994) 및 2010. 2. 2. 결정(BVerfG, Beschl. v. 2. 2. 2010 - I BvR 2492/08, BGBl I S. 251)을 통하여 동 가명령의 효력을 연방헌법재판소법 제6항 제2문에 따라 각각 6개월 연장하였다.

위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그에 따른 2010. 4. 22. 법률 개정이므로 먼저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바이에른의 노동조합연합회와 정당들 및 다른 비국가적 조직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바이에른 집회법의 전부 또는 일부 조항이 집회의 자유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들 규정이 관료주의적 지배와 국민에 대한 통제를 가져 오고 그 결과 집회의 자유 자체가 위축되게 된다는 것이었다. 본안 결정이 있기까지 이 법률의 대부분의 규정들(극우주의자들의 집회에 대처하기 위한 제15조 제2항 제1호의 a목과 제2호, 제3항 등을 제외하고)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 주도록 가명명도 신청하였는데, 연방헌법재판소는 위 ‘2009. 2. 17. 결정’을 통하여 이를 일부 인용하였다.

먼저, 연방헌법재판소는 바이에른 집회법 중 질서위반행위 처벌 규정 일부인 제21조 제1호, 제2호, 제7호, 13호 및 제14호⁷⁹⁾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잠정적으로 박탈하였다.⁸⁰⁾ 제1호는 제3조

79) Mit Geldbuße bis zu dreitausend Euro kann belegt werden, wer

1. entgegen Art. 3 Abs. 3 Ort, Zeit, Thema oder den Namen des Veranstalters einer Versammlung nicht angibt,
2. entgegen Art. 4 Abs. 3 Satz 1 oder 3 keine geeigneten Maßnahmen ergreift oder die Versammlung nicht oder nicht rechtzeitig für beendet erklärt,
7. entgegen Art. 7 Abs. 2 an einer Versammlung teilnimmt,
13. entgegen Art. 13 Abs. 1 Satz 1 eine Anzeige nicht richtig, nicht vollständig oder nicht rechtzeitig erstattet,
14. entgegen Art. 13 Abs. 2 Satz 3 eine Mitteilung nicht, nicht richtig, nicht vollständig oder nicht rechtzeitig macht,

80) Aus dem Beschluss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om 17. Februar 2009 – 1 BvR 2492/08 – wird folgende Entscheidungsformel veröffentlicht:

1. Artikel 21 Nummer 1, 2, 7, 13 und 14 des Bayerischen Versammlungsgesetzes vom 22. Juli 2008 (GVBl S. 421) wird einstweilen außer Kraft gesetzt.

제3항⁸¹⁾에 위반하여 집회의 시간, 장소, 목적 및 주최자의 성명을 밝히지 않은 경우, 제2호는 제4조 제3항 제1문 또는 제3문⁸²⁾에 위반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집회의 종료 선언을 하지 않은 경우, 제7호는 제7조 제2항⁸³⁾에 위반하여 집회에 참가한 경우, 제13호는 제13조 제1항 제1문⁸⁴⁾에 위반하여 신고를 틀리게 하거나 충분히 하지 않거나 적시에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제14호는 제13조 제2항 제3문⁸⁵⁾에 위반하여 통지를 틀리게 하거나 충분히 하지 않거나 적시에 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들은 주최자의 집회 공지·초청 시 의무, 신고 의무, 통지 의무, 주관자의 의무, 참가자의 군사적 행태 금지 등에 관한 것으로 구체성과 명확성이 부족하여 규정의 규율 범위가 모호하였고 이 규정들이 처벌규정과 결합할 경우 국민에게 위하적 효과를 가져 오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박탈하였다. 다만, 그 근거가 되는 명령

81) (3) Die Bekanntgabe oder Einladung zu einer Versammlung muss Ort, Zeit, Thema sowie den Namen des Veranstalters enthalten.

82) (4) Der Leiter kann sich zur Erfüllung seiner Aufgaben der Hilfe einer angemessenen Anzahl volljähriger Ordner bedienen. Der Leiter darf keine Ordner einsetzen, die Waffen oder sonstige Gegenstände mit sich führen, die ihrer Art nach geeignet und den Umständen nach dazu bestimmt sind, Personen zu verletzen oder Sachen zu beschädigen.

83) (2) Es ist verboten, an einer öffentlichen oder nichtöffentlichen Versammlung in einer Art und Weise teilzunehmen, die dazu beiträgt, dass die Versammlung oder ein Teil hiervon nach dem äußeren Erscheinungsbild

1. paramilitärisch geprägt wird oder

2. sonst den Eindruck von Gewaltbereitschaft vermittelt

und dadurch eine einschüchternde Wirkung entsteht.

84) (1) Wer eine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veranstalten will, hat dies der zuständigen Behörde spätestens 72 Stunden, bei überörtlichen Versammlungen im Sinn des Art. 24 Abs. 3 Satz 1 spätestens 96 Stunden vor ihrer Bekanntgabe anzuzeigen.

85) (2) Der Veranstalter hat Änderungen der Angaben nach den Sätzen 1 und 2 der zuständigen Behörde unverzüglich mitzuteilen.

이나 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박탈할 경우 바이에른 집회법이 핵심적 규율을 갖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그 집행이 현저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음으로 제9조 제2항 제1문과 제2문⁸⁶⁾이 문제되었다. 제9조에서는 ‘촬영·녹음(Bild- und Tonaufnahmen)’ 또는 ‘영상·음향 자료화(Bild- und Tonaufzeichnungen)’⁸⁷⁾ ‘조망촬영(Übersichtsaufnahmen)’ 또는 ‘조망영상 자료화(Übersichtsaufzeichnungen)’⁸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제9조 제2항에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경찰의 전체 집회의 진행 상황에 대한 조망영상 자료화 권한을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술수준을 고려하면 조망촬영만으로도 얼마든지 개인의 신원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이는 개개 집회참가자에 대한 무제한적인 영상·음향 자료화라는 남용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다. 기본법 상 집회의 자유의 보호 영역은 집회참가자들이 무제한

86) (2) Die Polizei darf Übersichtsaufnahmen von der Versammlung und ihrem Umfeld zur Lenkung und Leitung des Polizeieinsatzes anfertigen. Sofern es zur Auswertung des polizeitaktischen Vorgehens erforderlich ist, darf die Polizei auch Übersichtsaufzeichnungen anfertigen.

87) 연방 집회법에서는 ‘촬영·녹음(Bild- und Tonaufnahmen)’이란 법문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기술의 발전으로 촬영 및 녹음과 동시에 저장매체에 저장이 곧바로 되는 현상이 생김으로써 이를 포괄하는 용어가 필요하여 바이에른 집회법은 ‘Bild- und Tonaufzeichnungen’이란 법문을 사용하였다. 이를 ‘영상기록 및 음성 기록’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으나(박희영, 독일에 있어서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의 채증활동 관련 법률 및 판례, 최신 외국법제정보(맞춤형 법제정보), 2010. 5. p. 46 각주 30 참조), 독일어의 Aufzeichnung은 단순한 촬영·녹음행위를 넘어 저장행위 및 그 저장물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므로 필자는 이를 문맥에 따라 ‘영상·음향 자료화’ 또는 ‘영상·음향 자료’로 번역하기로 한다.

88) ‘촬영·녹음(Bild- und Tonaufnahmen)’은 특정 집회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임에 반하여, ‘Übersichtsaufnahme’는 특징인이 아니라 집회 및 그 주변 상황을 촬영하는 것으로 집회에 경찰 투입을 유도하고 지휘하기 위하여 행해진다. 이를 ‘개괄적 촬영’으로 번역하기도 하나(박희영, ibid, 각주 31 참조), 필자는 이를 좀 더 단어의 의미에 충실하게 ‘조망촬영’(정확히는 ‘조망촬영·녹음’이라 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 녹음은 큰 의미가 없어 녹음을 생략해도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으로, ‘Übersichtsaufzeichnung’은 ‘조망영상 자료화’ 또는 ‘조망영상 자료’로 각 번역하기로 한다.

적인 국가의 감시가 행해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을 결정할 자유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정보를 저장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적 의사형성에 중요한 기본권의 행사에 심각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이에 연방 헌법재판소는 본안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위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제9조 제2항 2문은 제9조 제1항 1문⁸⁹⁾의 요건(어떤 참가자로부터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나온다는 사실적 근거가 이를 정당화하는 경우)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잠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조망영상 자료의 분석(Auswertung)⁹⁰⁾은 집회 종료 후 즉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제9조 제2항 제1문은 개별적인 사안에 있어 집회의 규모 또는 조망불가능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경찰투입을 유도하고 지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것 등이었다.⁹¹⁾

89) (1) Die Polizei darf bei oder im Zusammenhang mit Versammlungen personenbezogene Daten von Teilnehmern erheben und Bild- und Tonaufzeichnungen anfertigen, wenn tatsächliche Anhaltspunkte die Annahme rechtfertigen, dass von ihnen erhebliche Gefahren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oder Ordnung ausgehen.

90) 통상 '평가'로 번역하나 문맥상 분석이 더 적절한 것으로 보여 필자는 이를 '분석'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91) Aus dem Beschluss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vom 17. Februar 2009 – 1 BvR 2492/08 – wird folgende Entscheidungsformel veröffentlicht:

2. Artikel 9 Absatz 2 Satz 2 des Bayerischen Versammlungsgesetzes ist einstweilen mit der Maßgabe anzuwenden, dass zugleich die Voraussetzungen des Artikel 9 Absatz 1 Satz 1 des Bayerischen Versammlungsgesetzes vorliegen müssen. Eine Auswertung der Übersichtsaufzeichnungen ist nur unverzüglich nach Beendigung der Versammlung zulässig. Soweit danach die Daten nicht in Bezug auf einzelne Personen zur Verfolgung von Straftaten im Zusammenhang mit der aufgezeichneten Versammlung oder zur Abwehr künftiger versammlungsspezifischer Gefahren gemäß Artikel 9 Absatz 4 Satz 1 Nummer 2 des Bayerischen Versammlungsgesetzes benötigt werden, müssen sie innerhalb von zwei Monaten gelöscht oder irreversibel anonymisiert werden. Soweit Artikel 9 Absatz 2 und 4 des Bayerischen Versammlungsgesetzes weitergehende Nutzungen zulässt, wird die Vorschrift einstweilen außer Kraft gesetzt.

연방헌법재판소는 추상적 규범통제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이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사하여 왔는데, 바이에른 집회법의 몇몇 규정은 사후적으로 위헌성이 확인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이 특별히 중대하고 그 불이익의 범위와 정도가 사후적으로 합헌이라고 증명된 법률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박탈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을 능가함이 명백하여 위와 같이 일부 인용 결정을 한 것이다.

그 후 당시 바이에른 주를 집권하고 있던 기사-자민 연정의 합의에 따라 ‘2010. 4. 22. 바이에른 집회법 개정을 위한 법률(Gesetz zur Änderung des Bayerisches Versammlungsgesetzes Vom 22. April 2010, GVBl S. 190)’ 제1조⁹²⁾를 통하여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받아들임으로써 위헌성 논란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였다. 즉 동 법률에 의하여 바이에른 집회법 제3조(집회의 주관), 제4조(주관자의 권리의무), 제7조(제복착용 및 군사적 행태 금지), 제9조(촬영·녹음 또는 영상·음향 자료화), 제21조(벌칙금 규정) 등이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취지에 맞게 변경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후에도 바이에른 집회법은, ‘2013. 4. 8. 주 법률 정화를 위한 법률(Gesetz zur Bereinigung des Landesrechts Vom 8. April 2013, GVBl S. 174)’ 제1항 제16호,⁹³⁾ ‘2014. 7. 22. 현행 업무분담에 주 법률을 조화

3. Artikel 9 Absatz 2 Satz 1 des Bayerischen Versammlungsgesetzes ist einstweilen mit der Maßgabe anzuwenden, dass Übersichtsaufnahmen zur Lenkung und Leitung des Polizeieinsatzes nur zulässig sind, wenn sie wegen der Größe oder Unübersichtlichkeit der Versammlung im Einzelfall erforderlich sind.

92) <https://beck-online.beck.de/?vpath=bibdata%2Fges%2FBayVersG08AendG%2Fcont%2FBayVersG08AendG%2EP1%2Ehtm>

시키기 위한 명령(Verordnung zur Anpassung des Landesrechts an die geltende Geschäftsverteilung Vom 22. Juli 2014, GVBl S. 286)’ 제1조 제201호,⁹⁴⁾ 마지막으로 ‘2015. 11. 23. 바이에른 집회법과 경찰법 개정을 위한 법률 (Gesetz zur Änderung des Bayerisches Versammlungsgesetzes und des Polizeiaufgabengesetzes Vom 23. November 2015, GVBl S. 410)’ 제1조⁹⁵⁾에

93) Art. 27 und 28 Abs. 1 Satz 3 und Abs. 2 des Bayerischen Versammlungsgesetzes (BayVersG) vom 22. Juli 2008 (GVBl S. 421, BayRS 2180-4-I), geändert durch § 1 des Gesetzes vom 22. April 2010 (GVBl S. 190), werden aufgehoben, 즉, 바이에른 집회법 제27조 및 제28조 제1항 제3문과 제2항을 폐지하는 것이다.

94) In Art. 19 Abs. 2 Satz 1, Abs. 3, Art. 24 Abs. 3 Satz 3 Halbsatz 2, Abs. 4 Satz 2 des Bayerischen Versammlungsgesetzes (BayVersG) vom 22. Juli 2008 (GVBl S. 421, BayRS 2180-4-I), geändert durch § 1 Nr. 16 des Gesetzes vom 8. April 2013 (GVBl S. 174), werden jeweils nach dem Wort “Innern” die Worte “für Bau und Verkehr” eingefügt. 즉 주 정부의 업무분담 변경에 따라 ‘내무부’를 ‘내무건설교통부’로 바꾸는 것이다.

95) Das Bayerische Versammlungsgesetz (BayVersG) vom 22. Juli 2008 (GVBl S. 421, BayRS 2180-4-I), zuletzt geändert durch § 1 Nr. 201 der Verordnung vom 22. Juli 2014 (GVBl S. 286), wird wie folgt geändert:

1. Art. 20 Abs. 2 wird wie folgt geändert:

a) Es werden folgende Nrn. 5 und 6 eingefügt:

“5.entgegen Art. 16 Abs. 1 eine Schutzwaffe oder einen einschlägigen Gegenstand mit sich führt,

6.entgegen Art. 16 Abs. 2 Nr. 1 an einer derartigen Veranstaltung teilnimmt oder den Weg dorthin zurücklegt oder”.

b) Die bisherige Nr. 5 wird Nr. 7.

2. Art. 21 wird wie folgt geändert:

a) Abs. 1 wird wie folgt geändert:

aa) Nr. 8 erhält folgende Fassung: “8.entgegen Art. 16 Abs. 2 Nr. 2 einen einschlägigen Gegenstand mit sich führt, oder”.

bb) Nr. 9 wird aufgehoben, cc) Die bisherige Nr. 10 wird Nr. 9.

b) Abs. 2 wird wie folgt geändert:

aa) In Nr. 5 wird das Komma durch das Wort “oder” ersetzt.

bb) In Nr. 6 wird das Wort “oder” durch einen Schlusspunkt ersetzt.

cc) Nr. 7 wird aufgehoben.

3. In Art. 22 Satz 1 werden die Worte “Art. 21 Abs. 1 Nr. 6 oder 10 oder nach Art. 21 Abs. 2 Nr. 4 oder 7” durch die Worte “Art. 21 Abs. 1 Nrn. 6, 8 oder 9 oder Abs. 2 Nr. 4” ersetzt.

의해 각각 소폭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각각의 상세한 개정 내용은 필요한 경우 해당 부분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현행 바이에른 집회법은 총 6장 28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총칙)은 제1조(원칙), 제2조(정의규정, 적용범위), 제3조(집회의 주관), 제4조(주관자의 권리의무), 제5조(집회참가자의 의무), 제6조(무기 금지), 제7조(제복착용 및 군사적 행태 금지), 제8조(질서문란행위금지, 선동금지), 제9조(촬영·녹음 또는 영상·음향 자료화)로, 제2장(옥내집회)은 제10조(주최자의 권리의무), 제11조(질서문란자의 배제, 가택권), 제12조(제한, 금지, 해산)로, 제3장(옥외집회)은 제13조(신고 및 통지 의무), 제14조(협력), 제15조(제한, 금지, 해산), 제16조(호신장구 및 변장 금지)로, 제4장(평화구역)은 제17조(평화구역), 제18조(주 의회의 보호), 제19조(집회의 허가)로, 제5장(형벌 및 범칙금 규정)은 제20조(형벌 규정), 제21조(범칙금 규정), 제22조(몰수)로, 마지막으로 제6장(종결규정)은 제23조(기본권의 제한), 제24조(관할), 제25조(소송의 집행부정지 효력), 제26조(비용), 제27조(다른 법 규정의 후속 변경), 제28조(발효, 실효, 경과규정)로 되어 있는데 제27조와 제28조 제1항 제3문 및 제2항⁹⁶⁾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폐지되었다.

4. Art. 24 Abs. 2 erhält folgende Fassung:

“(2) Zuständige Behörden im Sinne dieses Gesetzes sind die Kreisverwaltungsbehörden. Ab Beginn der Versammlung und in unaufschiebbaren Fällen kann auch die Polizei Maßnahmen treffen.”

즉, 제20조 제2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추가하는 것이 주된 개정 내용이다.

96) 집회법에서 평화구역을 규정함에 따라 이 조항에 의해 종래의 집회금지구역법이 폐지되었다.

(1) ⁹³Mit Ablauf des 30. September 2008 treten außer Kraft:

1. das Gesetz über die Befriedung des Landtagsgebäudes vom 7. März 1952 (BayRS 2180-5-I),

2. die Verordnung zur Durchführung des Gesetzes über die Befriedung des Landtagsgebäudes vom 30. April 1969 (BayRS 2180-5-1-I) und

연방 집회법은 내용 및 체계와 관련하여 특히 정의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것과 옥내집회와 옥외집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을 총칙에 두지 않고 옥내집회의 장에 둔 다음 옥외집회의 장에서는 모호한 준용규정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에 유념하여 바이에른 집회법은 정의 규정을 도입하고, 옥내집회와 옥외집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모든 규정을 총칙에 규정함으로써 내용면에서 진일보하고 훨씬 논리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⁹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율 순서에 있어 보다 중요한 옥외집회를 먼저 규율하여야 함에도 옥내집회를 먼저 규율하는 점 등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다. 그리하여 그 후 제정된 니더작센 집회법과 쉔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은 옥외집회를 먼저 규율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바이에른 집회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에 참고가 되었던 집회법초안의 내용도 필요한 범위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das Gesetz zur Ausführung des Versammlungsgesetzes (AGVersammlG) vom 15. Juli 1957 (BayRS 2180-4-I).

(2) Für Einladungen zu Versammlungen in geschlossenen Räumen und Anmeldungen zu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die vor Inkrafttreten dieses Gesetzes erfolgten, gelten abweichend von Abs. 1 Satz 2 § 2 Abs. 1 und § 14 Abs. 1 des Versammlungsgesetzes, sofern die Versammlungen innerhalb eines Jahres nach Inkrafttreten dieses Gesetzes stattfinden.

97) Alfred Scheidler, *ibid.*, p. 17.

제2항 주요 내용

1. 총칙

1.1. 원칙

바이에른 집회법은 제1조 제1항에서 연방 집회법보다 상세하게 ‘누구든지 **평화적으로** 그리고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공개적으로 집회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기본법 제8조 제1항 중 집회의 평화성에 대한 부분도 적시하고 있다. 이는 집회법 초안의 예에 따른 것으로 니더작센 집회법도 똑같이 채택하고 있고, 견본법률안과 쉴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은 더 나아가 ‘신고나 허가 없이’ 문구도 포함하여 기본법 제8조 제1항의 내용 모두를 그대로 반복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1조 제2항은 연방 집회법과 제1조 제2항과 동일한데, 이는 집회법초안도 마찬가지이다. 즉, 1. 기본법 제18조에 의해 집회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이 박탈된 자, 2. 집회를 거행하거나 참가함으로써, 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이라고 선언된 정당 또는 그 일부 내지 대체 조직이 목적하는 바를 조장코자 하는 자, 3. 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헌이라고 선언된 정당, 또는 4. 기본법 제9조 제2항 또는 결사법에 따라 금지된 단체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제1조 제2항).

1.2. 정의규정, 적용범위

1.2.1. 집회의 개념

집회의 개념은 본 법 이전까지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⁹⁸⁾를 통하여 형성되어 왔다. 집회법초안에서 판례의 취지에 따라 집회의 정의 규정을 만들었고, 바이에른 집회법에서 최초로 이를 받아들여 집회의 정의 규정을 가지게 된 것이다. 바이에른 집회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집회를 ‘공동의, 주로 공적인 의사형성에의 참여를 위한 토론이나 시위(Kundgebung)⁹⁹⁾를 목적으로 하는 적어도 2인 이상의 회합’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집회법초안의 규정에서 ‘어떤 장소에 고정되거나 움직이는’이라는 수식어가 제외된 것이다. 이는 그렇게 하더라도 행진을 이룬 바 ‘움직이는 집회’로 보아 집회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본 것으로, 다른 집회법들에서 집회의 정의에 위 수식어를 집어넣거나 별도로 ‘행진은 움직이는 집회이다.’라는 문구를 부가하는 것과 구별되는 태도이다. 다만, 바이에른 집회법에서도 옥외집회의 신고사항을 규정한 제13조 제2항 제5호에서는 ‘움직이는 집회의 경우 그 의도된 진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를 보충하고 있다.

위와 같이 집회의 정의에서 ‘2인설’을 취함에 따라 사적인 영역에 국가가 간섭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집회란 공동의,

98) BVerfGE 69, 315(343) - 이른 바 브록도르프 결정.

99) ‘Kundgebung’은 ‘성명이나 선언’, ‘시위(Demonstration)’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독일어에서 ‘Demonstration’이 ‘의견 발표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공개적 등장’으로 정의되는 것을 참작하여 필자는 ‘Kundgebung’을 ‘시위’로 번역하기로 한다.

공적인 의사형성에의 참여를 위한 토론이나 시위를 목적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2인 사이의 모든 만남이 집회로 평가되는 것도 아니고 다수인이 어떤 주제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기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는 것만으로는 집회의 개념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정치인 등이 어떤 장소를 공개방문 하는 행사(öffentliche Begehungen), 지역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지역 주민들의 정기 모임(Ortstermine), 전단 등을 이용한 1인 시위 등은 집회가 아니다.¹⁰⁰⁾ 노동쟁의 중의 집단행위도 원칙적으로는 집회가 아니나 다만 그것이 자신들의 주장을 공중에 전파하는 경우에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

한편, 위 정의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된(überwiegend)’이라는 단어는 ‘Love-Parade’¹⁰¹⁾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¹⁰²⁾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어떤 행사의 중점이 무엇인가가 그것이 집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어떤 행사가 스포츠, 오락, 무도 등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고 의사형성은 단지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집회가 아닌 것이다. 그 행사의 주된 목적이 상업적인 경우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집회의 개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집회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질서법, 경찰법, 도로교통법 등이 적용되므로, 도로점용 허가, 비용

100) Alfred Scheidler, ibid, p. 19. 참조.

101) 이는 독일 베를린에서 매년 개최되는 테크노 음악 축제이다.

102) BVerfG, Entsch. v. 12. 7. 2001. 여기서는 ‘Love-Parade 같은 음악 또는 댄스 축제는 그를 통한 의사표현이 대중축제 내지 국민축제로서의 전체 성격보다 더 중대한 것일 경우에는 집회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지만, 단순히 자신이 살아 있다는 존재감의 표출을 위한 것이거나 단지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집회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부담, 교통법규 준수 등이 문제된다. 반면에 집회의 경우 허가나 비용 부담 등에서 특권을 누리게 된다.

한편, 집회는 다수인의 회합이 일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것을 그 전제로 하므로 인터넷 대화방 같이 인터넷 공간상에서의 가상적 모임은 집회의 개념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1.2.2. 공개집회의 개념

바이에른 집회법에서는 집회법초안과 마찬가지로 공개집회의 정의도 규정하고 있다. 즉, 집회는 그에의 참가가 개별적으로 확정된 인적 범위에 한정되지 않는 경우 공개적이다(제2조 제2항). 이 또한 종래 판례에 의해 형성된 개념을 입법화한 것이다.

1.2.3. 적용범위

연방 집회법은 그것이 비공개집회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를 규율하지 않고 있는데 비해 바이에른 집회법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공개집회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2조 제3항). 본 법이 그 적용범위를 공개집회에 국한하고 있는 이유는 비공개집회는 그 폐쇄성으로 인해 공적인 의사형성에 있어 공개집회와 같은 정도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비공개집회는 참가 범위가 특정한 인적 범위에 국한 되는 폐쇄성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외부효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비공개집회로부터는 특별한 위험이 발생하지도 않고 특별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도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제복착용 및 군사적 행태 금지(제7조), 질서문란행위

금지(제8조)는 비공개집회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러한 행위가 가지는 외부효과를 고려할 때 타당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1.3. 집회의 주관

집회의 주관에 관한 바이에른 집회법 제3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연방헌법재판소 가명령의 취지에 따라 일부 개정되었다. 먼저, 개정 전 바이에른 집회법 제3조 제1항 제1문인 ‘각각의 공개집회에는 자연인인 한 명의 주관자가 있어야 한다.’가 삭제되었다. 이는 연방 집회법 제7조 제1항에 ‘자연인인’이라는 문구를 부가한 것일 뿐이므로 같은 의미로 이해되었는데, 본 조의 다른 문구들이 이를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이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같은 조 제3항인 ‘집회의 공지 또는 초청에는 시간, 장소, 목적 및 주최자의 성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삭제되었다. 이는 주최자 없이 이루어지는 우발적 집회의 경우와 부합하지 않아 연방헌법재판소의 가명령에 따라 그 처벌규정이 효력정지 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추어 삭제한 것이다. 그리하여 현행 바이에른 집회법 제3조는 ‘① 주최자가 집회를 주관한다. 주최자는 집회의 주관을 어떤 자연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단체가 집회를 주최하는 경우, 주최자가 집회의 주관을 제1항 제2문에 따라 다른 어떤 자연인에게 양도하지 않는 한, 그 단체의 대표자가 집회를 주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제13조 제4항에 따른 우발적 집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로 개정되었다.

본 조 제3항은 연방 집회법 제7조와 달리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이 우발적 집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바이에른 집회법 제13조 제4항에서는 우발적 집회를 ‘집회가 그 직접적 동기에서 무계획적으로 주최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정의하면서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는 연방 집회법에는 같은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본법 제8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라고 ‘브룩도르프 결정’에서 이를 명시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주최자가 없는 우발적 집회의 경우에는 주최자를 전제로 하는 본 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1.4. 주관자의 권리의무

주관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바이에른 집회법 제4조의 규정도 전 조와 같은 이유로 개정되었는데, 집회의 주최자에게 집회 개최 전 집회의 평화적 진행을 보장하는 조치를 할 의무를 부여한 개정 전 바이에른 집회법 제4조 제1항과 집회에서 그 평화적 진행을 보장하는 조치를 할 의무를 주관자에게 부여하는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였다. 이는 주최자나 주관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는 점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현행 바이에른 집회법 제4조는 연방 집회법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에 나누어져 있던 주관자의 책무와 권한을 하나의 조문에

통합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총칙에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관자는 집회의 진행경과를 결정하고, 집회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 집회를 종료시킬 수 있고, 집회에 현존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주관자는 질서유지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질서유지인은 다른 표식은 허용되지 않고 “질서유지인”이라고 적힌 백색의 완장만 착용할 수 있으며(제4조 제2항), 허용된 것과 다른 표식을 한 질서유지인을 선임한 주관자(제21조 제2항 제1호)는 5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주관자는 무기 또는 그 성질상 사람을 해하거나 물건에 손상을 가져오기에 적합한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를 질서유지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하여 질서유지인을 사용한 주관자(제20조 제2항 제1호)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경찰관은 1. 옥외집회의 경우, 그것이 경찰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 2. 옥내집회의 경우, 범죄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적 근거가 존재하거나 공공의 안전에 관한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때에 집회에 출입하고 적당한 자리를 차지할 권리를 가지는데(제4조 제3항 제1문), 이에 위반하여 경찰관이 출입을 못하게 하거나 적당한 자리를 배정하지 아니한 주관자(제21조 제1항 제1호)는 3,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경찰관이 참석할 경우 주관자에게 그 신분을 밝혀야 하는데, 옥외집회의 경우 이는 경찰의 현장책임자가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1.5. 집회참가자의 의무

바이에른 집회법 제5조의 규정 역시 집회참가자의 의무에 관한 연방 집회법 제10조, 제11조 제2항 및 제13조 제2항의 내용을 하나의 조문에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총칙에 위치시킨 것이다.

우선,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주관자 또는 질서유지인의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그 지시는 집회의 질서 즉 집회의 외적인 진행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 아닌 행위를 본 항의 지시에 의해 중지시켜서는 아니 된다.

집회로부터 배제된 자는 **지체 없이** 집회장소를 떠나야 한다(제5조 제2항). 또한, 집회가 해산되면 모든 참가자들은 **지체 없이** 집회장소를 떠나야 한다(제5조 제3항). 이들은 연방 집회법 제11조 제2항 및 제13조 제2항 중 ‘즉시(sofort)’를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독일 민법 상의 개념인 ‘지체 없이(unverzüglich)’¹⁰³⁾로 바꾼 것으로,¹⁰⁴⁾ 이에 위반한 자들은(제21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각각 5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해산명령은 행정행위를 통하여 집회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해산명령이 있게 되면 집회는 단순한 군집(Ansammlung)¹⁰⁵⁾으로 변하게 되어 더 이상 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103) 독일 민법 제121조는 ‘제119조, 제120조의 경우 취소권자는 취소의 원인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4) Alfred Scheidler, ibid, p. 25.

105) 우연한 다수인의 집합, 예컨대 교통사고 현장에 운집한 사람들의 집합을 말한다. 독일은 군집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법(OWiG)으로 규율한다.

못하고 경찰법이나 일반 행정법의 규율을 받게 된다.

1.6. 무기 금지

무기 또는 그 성질상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적합하고 상황에 따라 그러함이 확실한 기타의 물건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1. 집회에서 소지하는 것 또는 2. 집회에 참가하러 가는 도중에 소지하거나, 집회장소로 운반하거나 또는 집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준비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금지된다(제6조). 이는 기본법 제8조 제1항의 ‘무장금지(Bewaffnungsverbot)’ 즉 ‘무기 없이(ohne Waffe)’원칙이 연방 집회법 제2조 제3항에 의해 구체화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러한 금지를 무시한다는 것은 잠재적인 비평화성을 의미하고, 그것은 집회의 자유의 보호영역 밖에 있는 행위가 된다는 의미이다. 무기 금지는 집회의 참가자뿐만 아니라 주관자와 질서유지인에게도 적용된다. 이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제6조에 묘사된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거나, 집회장소로 운반하거나 집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하거나 배포한 자(제20조 제1항 제1호)는 바이에른 집회법에서 가장 무거운 형인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1.7. 제복착용 및 군사적 행태 금지

1.7.1. 제복착용 금지

바이에른 집회법 제7조 제1호 소정의 제복착용 금지는 이미 연방 집회법 제3조에 의해 규율되어 왔으나 본 조에서는 그 요건에 ‘그것을 통하여 위협적 효과가 나타나는 한’이라는 문구를 부가하여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연방 집회법이 청소년협회에 대하여만 제복착용을 허용함으로써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제를 하였고, 제복착용 그 자체로 집회의 평화성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근거가 박약하다는 비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떤 집단이 제복을 통하여 그들의 동질성을 나타내거나 단지 다수인이 그들과 같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당하다. 즉, 위협적 효과가 없다면 제복 착용은 금지되지 않는다. 이는 특히 노동조합의 시위 등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7조 제1호에 위반하여 제복, 제복의 일부 또는 같은 종류의 의복을 착용한 자(제21조 제1항 제2호)는 3,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1.7.2. 군사적 행태 금지

바이에른 집회법 제7조 제2호에서는 군사적 행태 금지를 ‘집회 또는 그 일부가 외관상 **준군사적으로 각인되는** 것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공개 또는 비공개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위협적 효과가 나타나는 한 금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개정 전 규정에서 ‘그렇지 않으면 폭력을 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인상을

전달하는'¹⁰⁶⁾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것인데, 동 규정의 처벌규정이 연방헌법재판소의 가명령에 의해 효력 정지된 점을 감안하여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그 처벌규정도 함께 삭제하여 현재 금지규정만 있고 처벌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군사적 행태 금지는 무기 금지나 제복착용 금지와 달리 바이에른 집회법에 처음으로 규정된 것인데, 이는 집회에서 제복착용뿐만 아니라 북을 두드리거나, 대형을 이루어 행진하거나, 동보로 행진하거나, 횃불이나 휘장을 휴대하는 것 또한 군사적 또는 폭력적 인상을 준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바이에른 입법자는 군사적 행태의 금지를 통하여 극단적 집단의 집회를 규율하려고 한 것이다. 이러한 극단적 집단의 집회에는 전술한 행위 형식을 통하여 나치스 돌격대¹⁰⁷⁾의 행진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극우주의자들의 집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호전적 좌익집단이 소위 흑색집단(Schwarzer Block)¹⁰⁸⁾과 결합하는 극좌주의자들의 집회도 있다.¹⁰⁹⁾ 이러한 호전적 행위는 전투를 암시하고 공격적 성향을 자극하는 효과와 위협적 효과를 추구하여 외부인에게는 전투준비에 대한 인상을 준다. 폭력을 암시하는 행위를 통하여 호전적 인상을 내보이는 그러한 집회들은 기본법 제8조 제1항이 요구하는 집회의 평화성에 반하여 집회의 자유의 보호영역 밖에 놓이게 된다.

106) sonst den Eindruck von Gewaltbereitschaft vermittelt.

107) Strumabteilung 약칭 SA.

108) 통일된 의복을 입고 복면을 하는 것을 통하여 폭력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시위대 내부의 집단을 의미한다.

109) Alfred Scheidler, ibid, p. 28.

한편, 군사적 행태의 금지는 집회의 외적 양상, 즉 집회 참가자들의 행위로부터 나오는 위협적 효과를 그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지 집회에서 선동적 공격적 발언으로부터 나오는 위협적 효과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즉, 군사적 행태 금지는 의사표현의 형식과 관련된 것이지 그 내용과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의사표현의 내용에 대해서는 질서유지 차원에서 별도의 판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1.8. 질서문란행위 금지, 호소 금지

바이에른 집회법 제8조는 질서문란행위 금지와 호소 금지(Aufrufverbot)¹¹⁰⁾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평화적 집회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특히, 폭력에 대하여는 본 법에서 가장 엄한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우선, 공개 또는 비공개집회의 질서 있는 거행을 방해할 할 목적으로 질서문란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제8조 제1항). 주관자 또는 질서유지인의 거듭된 제지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1항에 위반하여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계속한 자(제21조 제2항 제4호)는 5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다음, 금지되지 않은 공개 또는 비공개집회를 저지 또는 해산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거행을 좌절시킬 의도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또는 현저한 질서문란을 야기하는 것은 특히 금지되고(제8조 제2항 제1호),

110) 이를 '선동 금지'로 번역하기도 하나 필자는 이를 '호소 금지'로 번역하기로 한다.

이에 위반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또는 현저한 질서문란을 야기한 자(제20조 제1항 제2호)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또한, 공개집회 시 그 주관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적법하게 질서유지임무를 완수함에 있어 이에 폭력 또는 폭력적 협박으로 저항하거나 그가 적법하게 질서유지임무를 행사하는 도중에 이에 폭력을 가하는 것도 특히 금지되는데(제8조 제2항 제2호), 이에 위반하여 주관자나 질서유지인에게 저항하거나 폭력을 가한 자(제20조 제2항 제2호)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한편, 공연히, 공개 또는 비공개집회에서, 인터넷 상에서 또는 문서배포, 음향 또는 영상매체, 정보저장장치, 삽화 또는 기타의 표현물을 통하여, 집행 가능한 금지명령에 의하여 그 거행이 금지되거나 집행 가능한 해산명령이 발하여진 집회への 참가를 권유하는 것도 금지되고(제8조 제3항), 이에 위반하여 집회への 참가를 권유한 자(제20조 제2항 제3호)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1.9. 촬영·녹음 또는 영상·음향 자료화

집회의 자유는 내적인 집회의 자유뿐만 아니라 집회 참가자들이 국가의 무제한적 감시를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 따라서 국가는 아무런 제한 없이 집회 참가들에 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촬영·녹음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전제하에서 이를 행할

수 있다. 바이에른 집회법 제9조에서는 그러한 조건을 규정하면서 연방 집회법과 같이 옥외 및 옥내집회에 그 요건을 갖게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이를 총칙에 규정하였다. 다만, 본 조의 권한은 본 조에 의해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 종래 경찰법이나 일반 행정법으로 규율되던 것이 집회의 자유를 보다 더 보장하기 위하여 본 조에 의해 일정한 제한을 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¹¹¹⁾

본 조의 규정도 앞서 언급한 연방헌법재판소의 가명명 취지에 따라 대폭 개정되었는데, 특히 개인 정보 수집과 조망촬영에 대한 여러 제한이 추가되었다.

먼저, 경찰은 어떤 참가자로부터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나온다는 사실적 근거가 이를 정당화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회 시 또는 그와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그 참가자를 촬영·녹음하거나 영상·음향 자료화 할 수 있고, 그 조치는 제3자가 불가피하게 관계되는 경우에도 시행될 수 있다(제9조 제1항). 이 경우 몰래 촬영·녹음은 허용되지 않으나, 경찰의 형사소송법 및 질서 위반행위법에 따른 개인 정보의 수집권한은 본 조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제9조 제6항) 그에 따라 수행될 여지는 있다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은 개별적인 사안에 있어 집회의 규모 또는 조망불가능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경찰투입을 유도하고 지휘하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옥외집회와 그 주변을 조망촬영 할 수 있고, 집회, 집회의 일부 또는 그 주변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111) 개정 전 동 조 제3항에서는 본 조의 조치에 대하여 바이에른 경찰직무법(PAG)에 의하도록 하고 있었다.

질서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이를 정당화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망영상 자료화를 할 수도 있으며, 조망촬영 또는 조망영상 자료화의 대상이 된 사람의 신원확인도 제1항의 전제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제9조 제2항). 조망촬영의 경우 조망영상 자료화보다 정보의 자기 결정권이나 집회의 자유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적기 때문에 요건에 차등을 둔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제작된 자료의 남용이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제작된 영상·음향 자료와 조망영상 자료는, 1. 집회에서의 또는 집회와 관련한 범죄 행위에 대한 소추를 위하여 또는 2. 관계인이 집회에서 또는 집회와 관련하여 범죄를 준비하거나 범하였다는 의심이 있고 그로 인하여 장래의 집회에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 그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닌 한 집회 종료 후 지체 없이 분석(Auswertung)하고 늦어도 2개월 이내에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제9조 제3항 제1문). 그 자료에 의한 사람의 신원 확인이 제1문 제2호에 따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경우 기술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신원 확인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하고, 제1문 제2호에서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파기되지 아니한 자료는 제1문 제1호 따른 범죄행위에 대한 소추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닌 한 당해 자료가 생성된 때로부터 늦어도 6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제9조 제3항 제2문 및 제3문). 즉, 연방 집회법 상의 최장 보존기한 3년을 6월로 대폭 단축하였다.

조망영상 자료가 경찰의 양성교육 및 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에 의한 사람의 신원 확인을 불가능하게 하고 이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든 특별판을 제작하여야 하고, 이는 다른 목적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되며, 그 자료가 제3항에 따라 파기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제9조 제4항). 영상·음향 자료와 조망영상 자료의 제작 그리고 그 활용의 각 이유는 이를 문서화하여야 하고, 조망영상 자료로부터 특별판이 제작되는 경우 양성교육 및 재교육의 불가피성, 제작된 특별판의 수 및 그 보관 장소도 문서화하여야 한다(제9조 제5항).

2. 옥내집회

2.1. 개설

옥내집회에 대한 규율은 3개 조문에 불과하여 연방 집회법에 비하여 훨씬 간결한데, 그 이유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옥외 집회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은 이미 총칙에서 규율하고 있고, 옥내집회에 고유한 규정도 하나의 조문에 여러 조문을 통합하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장의 규정들은 기본법 제8조 제1항의 법문에 따른 한계 즉, 평화적이고 무기를 소지하지 않는 집회만이 보호받는다는 것의 표현이다. 독일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법률유보는 옥외집회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단지 기본법 제8조 제1항의 법문과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만이 옥내집회와 관련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다.

2.2. 주최자의 권리의무

바이에른 집회법 제10조에서는 연방 집회법 제6조와 제9조 제2항을 하나의 조문에서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다.

먼저, 특정된 인물 또는 인적 범위에 대하여는 초청 시에 집회 참가를 배제할 수 있으나(제10조 제1항), 언론사 기자들은 배제될 수 없으며, 기자들은 집회의 주관자 또는 질서유지인에게 기자로서의 신분을 증명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 이에 위반하여 기자를 배제한 자(제21조 제1항 제3호)는 3,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한편, 주최자는 주관자가 집회의 평화성을 위태롭게 사실이 이를 정당화 하는 경우 관할 관청의 요구에 따라 주관자의 성명, 태명 및 주소(개인 정보)를 통지하여야 하고, 관할 관청은 위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주관자를 거부할 수 있다(제10조 제3항). 이것은 질서유지인에 대하여도 같다(제10조 제4항). 제10조 제3항 제1문에 위반하여 개인 정보를 통지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통지하지 아니한 주최자(제21조 제2항 제5호)는 500유로 이하의, 관할 관청이 거부한 사람을 집회의 주관자나 질서유지인으로 선임한 주최자(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는 3,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각각 처해진다.

또한, 관할 관청은 질서유지인의 수를 늘리지 않으면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주최자에게 그 수를

늘릴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10조 제5항).

2.3. 질서문란자의 배제, 가택권

주관자는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참가자를 집회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제11조 제1항). 이러한 배제 결정을 받은 자는 집회 참가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제5조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집회장소로부터 떠나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질서위반으로 의율되어 5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주관자는 가택권을 행사한다(제11조 제2항). 집회 참가자에 대하여는 전항에 의한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항은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의미가 있다. 또한, 이 규정은 집회 장소의 소유자가 집회 개최를 허락하는 등 적법한 가택권의 발생을 그 전제로 한다.

2.4. 제한, 금지, 해산

바이에른 집회법 제12조는 연방 집회법 제5조와 제13조의 규정을 통합하여 규율하고 있고, 이는 집회법초안에서 유래한 것이다. 본 조에서는 집회개시 전후로 나누어 그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관할 관청은 1. 주최자가 제1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 주최자 또는 주관자가 무기 또는 제6조 소정의 기타의

물건을 소지한 자들의 입장을 허용하려 한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주최자 또는 그 지지자들이 집회의 폭력적인 진행을 추구한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4. 주최자 또는 그 지지자들이 중죄 또는 직권으로 소추될 수 있는 경죄를 대상으로 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거나 이를 수인할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옥내집회의 거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제12조 제1항). 위 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는 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옥내집회에도 당연히 인정되는 집회의 평화성 보장을 위한 제한으로 볼 수 있고, 제1호 및 제4호의 사유는 집회의 평화성과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기본법의 규범조화적 해석 또는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에 의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연방 집회법 제5조의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당연히 제한 처분 즉 부담 부과도 가능하다고 해석되던 것을 본 조에서는 금지뿐만 아니라 제한 처분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집회개시 전에도 비례의 원칙 상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제한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 관할 관청은 1. 주최자가 제1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 집회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거나 참가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3. 주관자가 무기 또는 제6조 소정의 기타의 물건을 소지한 자들을 즉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배제를 집행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 또는 4. 집회의 진행을 통하여 중죄 또는 직권으로 소추될 수 있는 경죄를 대상으로 하는 형법규정에 위반되는 경우나 집회에서 그러한 범죄행위가 권유

되거나 고무되고 주관자가 이를 지체 없이 제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집회의 개시 이후에도 이유를 붙여 집회를 제한하거나 해산할 수 있다(제12조 제2항 제1문). 또한, 본 항에서는 명문으로 비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제1문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다른 조치, 특히 중지조치로서는 충분치 않을 경우에 한하여 해산이 허용된다(제12조 제2항 제2문).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1문에 따른 집행 가능한 명령 또는 법원에 의한 제한에 위반한 주최자 또는 주관자(제20조 제2항 제4호)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그 이외의 위반자(제21조 제1항 제6호)는 3,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3. 옥외집회

3.1. 개설

옥외집회는 옥내집회보다 훨씬 강한 외부효를 가지는데, 이는 옥내집회보다 광범위한 대중이 참가할 수 있고, 시각적 효과도 더 강렬하기 때문이다. 특히, 행진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바이에른 집회법에서는 행진을 제2조 제1항에서 집회의 개념 속에 포함시키고 있어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옥외집회는 옥내집회보다 그 규모나 영향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법률유보의 대상이 되었고 집회의 기본원칙에 관한 연방헌법재판소의 중요한 판례들도 그와 관련되게 된 것이다.

본 장은 4개 조문에 불과하여 연방 집회법보다 그 수는 적으나 공통 규정을 총칙에 규정하고 관련 조항들을 통합하여 규정하는 등으로 훨씬 짜임새 있는 규율을 하고 있다.

3.2. 신고 및 통지 의무

바이에른 집회법 제13조에서는 옥외집회의 신고 및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연방헌법재판소 가명령의 취지에 따라 신고 기한의 단축, 전화를 통한 신고 추가, 신고 내용 축소, 일부 처벌규정 삭제 등 개정이 이루어졌다. 신고 의무에 대하여 기본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허가나 신고 없이’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연방헌법재판소는 ‘브룩도르프 결정’에서 “신고 의무가 예외 없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신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해산시킬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어떤 현안에 대한 즉각적 대응으로 순간적 동기에 의하여 성립되는 우발적 집회의 경우에는 신고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하여 이를 해결하였다. 신고를 통하여 관할 관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집회가 아무런 장애 없이 진행되는 데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무엇이 제3자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양자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알도록 하여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바이에른 집회법에서는 이를 더욱 잘 표현하기 위하여 ‘Anmeldung’이라는 용어 대신 사실적 행위의 의미가 강한 ‘Anzeig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늦어도 집회 공지 48시간 이전에 관할 관청에 전화, 문서, 전자문서 또는 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zur Niederschrift)¹¹²⁾ 신고하여야 하되(제13조 제1항 제1문), 빨라야 의도하는 집회 개시일 전 2년까지 가능하다(같은 항 제4문). 여기서 집회의 공지란 주최자가 특정인 또는 불특정인에게 집회의 장소, 시간 및 목적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항 제5문). 개정 전 72시간 내지 96시간이었던 것을 단축하고, 전화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전화를 통한 신고 시 관할 관청은 그 신고를 문서, 전자문서 또는 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같은 항 제3문). 집회 개시 2년 이전의 신고를 제한한 것은 다른 집회를 불가능하게 할 의도로 특별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에 관심의 대상이 되는 장소를 선점하기 위하여 반복하여 미리 신고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거행한 주최자 또는 주관자(제21조 제1항 제7호)는 3,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연방 집회법은 신고할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규율하지 않았으나 바이에른 집회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그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1. 집회의 장소, 2. 예정된 집회의 개시 및 종료 시점, 3. 집회의 목적, 4. 주최자와 주관자 및 제10조 제3항 제1문 소정의 그들의 개인 정보 그리고 5. 움직이는 집회의 경우 그 예정된 진로가 포함된다. 신고 내용에 본질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 주최자는

112) 이를 'schriftlich'와 동일하게 '문서로'라고 번역하는 견해가 있으나, 필자는 이를 'schriftlich'와 구별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이를 관할 관청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제21조 제2항 제6호)는 5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개정 전 본 조의 목록에서 ‘예상되는 참가자 수, 예정된 집회의 경과, 집회의 거행을 위하여 소지하는 물건 및 사용할 기술적 설비, 예정된 질서유지인의 수가 삭제되었는데, 이는 신고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신고 내용들은 집회의 영향과 집회를 위협하거나 집회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되도록 많은 항목을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지나치게 복잡한 신고 내용에 따른 부담을 고려하여 이를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신고 내용은 바이에른 집회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관청과 주최자 간 협력의 기초가 된다.

또한, 위 주관자에 대한 신고 내용을 판단의 기초로 하여, 주관자가 집회의 평화성을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이 이를 정당화하는 경우 관할 관청은 주관자를 거부할 수 있다(제13조 제5항). 한편, 주최자는, 질서유지인이 집회의 평화성을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이 관할 관청에 의한 질서유지인에 대한 제3항 제1문 소정의 개인 정보의 수령을 정당화하는 경우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관할 관청은 제1문에 따른 전제조건이 존재하는 경우 질서유지인을 거부할 수 있고(제13조 제6항), 질서유지인의 수를 늘리지 않으면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주최자에게 그 수를 늘릴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13조 제7항). 관할 관청이 거부한 사람을 집회의 주관자나 질서유지인으로 선임한 주최자(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는 3,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긴급집회와 우발적 집회에 대하여는 기본법 제8조 제1항의 요청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신고 의무를 면제시켜 줄 것이 요청된다. 이는 앞서 본 ‘브룩도르프 결정’ 이래 연방 집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언제나 판례에 의해 인정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판례의 내용이 집회법초안을 거쳐 바이에른 집회법에 최초로 명문으로 규정된 것이다. 즉, 계획된 집회의 동기가 순식간에 형성된 경우(긴급집회), 그 집회는 늦어도 집회공지와 동시에 전화, 문서, 전자 문서 또는 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 또는 경찰에 신고되어야 하고(제13조 제3항), 집회가 그 직접적 동기에서 무계획적으로 주최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우발적 집회) 신고의무는 면제된다(제13조 제4항). 긴급집회와 우발적 집회의 차이는 계획과 주최자의 유무이다. 즉 긴급집회는 우발적 집회와 달리 계획적이고 주최자가 있는 집회이지만 집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을 준수하여 신고하기 불가능할 뿐이므로 위와 같이 규제를 달리하는 것이다.

3.3. 협력

협력의 원칙이란 집회의 주최자, 주관자 및 관할 관청의 협력을 통하여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갈등상황을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연방헌법재판소가 ‘브룩도르프 결정’을 통하여 제시한 것이다. 집회주최자 측에서 신뢰를 형성하는 조치 또는 우호적인 협력을 위한 준비가 잘 되어 있을수록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의

존재를 이유로 관할 관청이 개입할 수 있는 문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러한 관례의 내용이 역시 집회법초안을 거쳐 바이에른 집회법 제14조에 최초로 명문으로 규정된 것이다.

관할 관청은 주최자에게 집회의 거행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그와 논의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는 집회 개시 전뿐만 아니라 집회 진행 중에도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협력의 의무는 관할 관청에만 있고 주최자에게 협력의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제1항). 집회의 거행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협력 의무도 부정된다. 주최자는 협력을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없으나 관할 관청은 후술할 바이에른 제15조에 따른 조치를 행함에 있어 주최자 또는 주관자가 어느 정도 협력하였는지를 고려할 수 있다(제14조 제2항).

3.4. 제한, 금지, 해산

3.4.1. 개설

바이에른 집회법 제15조는 연방 집회법 제15조를 포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를 일부 수정한 것이다. 먼저, 연방 집회법의 ‘부담(Auflage)’이라는 용어 대신 본 조에서는 ‘제한한다(beschränken)’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집회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이므로 허가를 전제로 하는 부관의 일종인 부담을 결부시키기 어렵다는 법리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또한, 연방 집회법과 달리 본 조에서는

제한, 금지, 해산의 요건을 옥외집회보다 훨씬 고도의 보호를 받는 옥내집회의 그것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집회법초안에서는 그 조치를 위한 형량과정에서 제3자의 권리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으나 이는 본 법의 입법 과정에서 삭제되었다. 그러나 이는 단지 선언적 의미를 가진 문구를 삭제한 것일 뿐이므로 그에 의해 제3자의 주관적 권리가 도출되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지 그 조치를 위한 형량과정에서 제3자의 권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즉, 여전히 집회의 금지 등 조치를 위한 형량과정에서 제3자의 권리 또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

3.4.2. 일반적 제한, 금지, 해산

관할 관청은, 그 처분 발령 시 인식 가능한 상황에 따르면 집회의 거행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질서가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되는 경우 또는 제12조 제1항의 전제조건이 존재하는 경우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제15조 제1항). 제한이나 금지 조치는 집회 개시 전 적시에 실행되어야 하고(제15조 제3항), 관할 관청은 제한 또는 금지의 요건이 존재하거나 법원에 의한 제한에 위반하는 경우 집회의 개시 이후에도 집회를 제한하거나 해산할 수 있다(제15조 제4항). 제한과 금지나 해산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역시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비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법원에 의한 제한은 행정법원법(Verwaltungsgerichtsordnung, VwGO) 제80조 제5항

제4문¹¹³⁾ 소정의 집행정지효 회복을 위한 절차 또는 연방헌법재판소법(BverfGG) 제32조 소정의 가명령 절차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

집행 가능한 제한, 금지, 해산 명령 또는 법원에 의한 제한에 위반한 주최자 또는 주관자(제20조 제2항 제4호)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그에 위반한 그 이외의 사람(제21조 제1항 제6호)는 3,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관할 관청은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참가자를 집회로부터 배제할 수 있고(제15조 제5항), 금지된 집회는 해산되어야 한다(제15조 제6항).

3.4.3. 추모장소 및 추모일 집회의 제한, 금지, 해산

네오나치 등 극우주의자의 집회는 의식적으로 나치의 지배를 상기시키는 일시에 그를 상기하게 하려는 동기에서 행지지고, 매우 민감하고 상징적인 장소가 선택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방 집회법 제15조 제2항에 나치 희생자 추모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이 새로이 추가되었고, 바이에른 집회법은 이를 받아들여 제15조 제2항에서 더욱 확대시켰다.

먼저, 관할 관청은 그 처분 발령 시 인식 가능한 상황에 따르면 집회가 무거운 상징효력에 의하여 나치의 폭력적이고 자의적인 통치를 상기하게 하는 의미내용을 지니는 일시나 장소에서 집회가 개최되고, 그로 인하여 a. 희생자의 존엄성이 침해될 염려가 있거나

113) Die Wiederherstellung der aufschiebenden Wirkung kann von der Leistung einer Sicherheit oder von anderen Auflagen abhängig gemacht werden.

또는 b. 기본적인 사회관 또는 윤리관에 대한 현저한 침해가 발생할 직접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특별히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제15조 제2항 제1호). 즉 연방 집회법과 달리 상징적인 장소에서의 집회에 국한하지 않고 상징적인 일시의 집회에 대하여도 규제하고 있다. 상징적인 일시에는 예컨대 4월 20일(히틀러 생일), 9월 1일(폴란드 침공일), 11월 9일(제국학살의 밤)¹¹⁴⁾ 등을 들 수 있다.

다음, 관할 관청은 그 처분 발령 시 인식 가능한 상황에 따르면 집회를 통하여 나치의 폭력적이고 자의적인 통치가 승인, 찬양, 정당화되거나 그 해악이 과소평가 되고(verharmlost),¹¹⁵⁾ 또한 나치즘을 이끌었던 대표자에 대한 추모를 통하여 그러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희생자의 존엄성이 침해될 직접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특별히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제15조 제2항 제2호). 이에 따라 집회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공공의 안전 및 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승인’은 나치 통치 하에서 범하여졌던 인권침해에 동의하거나 이를 불가피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하고, ‘찬양’은 나치의 통치를 위대한 것, 존경할 만한 것 또는 영웅적인 것으로 기리는 것을 말하며, ‘정당화’는 나치의 통치를 특징짓는 인권침해를 필요한 조치였다고 변호하는 것을 말하고, ‘그 해악이 과소평가 되고’는 나치 통치 하의 인권침해를 축소 왜곡하여 일상적

114) Reichspogromnacht, 1938. 11. 9. 밤에 나치 당원들과 그 추종자들이 유대인 상점, 집, 교회 등을 습격하여 많은 유대인을 죽였는데, 이를 부르는 명칭이다.

115) 이를 ‘경시되고’로 번역하기도 하나 그 의미가 다의적이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필자는 이를 그 의미를 고려하여 ‘그 해악이 과소평가 되고’로 번역하기로 한다.

이거나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하는 것을 말한다.

3.5. 호신장구 및 변장 금지

바이에른 집회법 제16조는 연방 집회법 제17a조를 받아들이고, 처벌규정인 제27조 제2항 제3호에 대한 금지 규정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집회법초안의 예를 따른 것이다. 개정 전의 본 조에서는 ‘집회 또는 기타 옥외공개행사에서(bei)’뿐만 아니라 ‘집회 또는 기타 옥외공개행사와 관련하여(im Zusammenhang mit)’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연방 집회법보다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가 개정을 통하여 연방 집회법과 같아지게 한 것이다.

먼저, 집회 또는 기타 옥외공개행사에서 또는 그에 참가하러 가는 도중에, 호신장구 또는 호신장구로 적합하고 상황에 따라 고권적 권한을 가진 당국자의 집행조치를 저지하기에 확실한 물건을 소지하는 것은 금지되고(제16조 제1항), 그에 위반한 자(제20조 제2항 제5호)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호신장구의 개념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다음, 그와 같은 행사에 사람의 신원 확인을 방해하기에 적합하고 상황에 따라 그러함에 적절한 변장을 하고 참가하거나, 그와 같은 행사에 그와 같은 변장을 하고 참가하러 가는 행위도 금지되고(제16조 제2항 제1호), 그에 위반한 자(제20조 제2항 제6호)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그와 같은 행사에서 또는 그에 참가하러 가는 도중에, 사람의 신원 확인을 방해하기에 적합하고

상황에 따라 그리함이 확실한 물건을 소지하는 행위도 금지되고(제16조 제2항 제2호), 그에 위반한 자(제21조 제2항 제8호)는 3,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변장의 개념에 대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다.

마지막으로, 그와 같은 행사에 연이어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의 평화를 해하는 행위를 위하여 결집하고 그 때에, a. 무기 또는 그 성질상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데 적합하고 또한 확실한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는 것, b. 호신장구 또는 제2호에서 묘사된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는 것 또는 c. 제1호에서 묘사된 방법으로 변장을 하고 나타나는 것 또한 금지되고(제16조 제2항 제3호), 그에 위반하여 무기 기타 물건을 소지한 자(제20조 제1항 제3호)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호신장구 기타 물건을 소지하거나 변장을 한 자(제20조 제2항 제7호)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각각 처벌된다. 한편, 관할 관청은 위 금지를 위반하는 자들을 집회에서 배제할 수 있다(제16조 제5항).

관할 관청은 공공의 안전 또는 질서가 위태로워질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위 금지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는데(제16조 제3항), 이는 해제유보를 통하여 호신장구 및 복면 금지 규정을 기본권 친화적으로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위 금지는 옥외 종교의식, 종교상의 행렬, 성지순례행렬, 관습적인 장례의식, 혼례하객의 행렬 그리고 전통적인 민속축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데(제16조 제4항), 이들은 이미 집회의 개념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기타 행사에는 포함될 여지가 있어 그 한도에서 의미가 있다.

4. 평화구역

바이에른 주가 집회금지구역법을 폐지하고 본 법 제4장에서 집회금지구역을 규율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바이에른 집회법 제17조에서는 바이에른 주 의회를 위하여 평화구역을 설정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경계가 어떠한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평화구역 내에서는 옥외집회가 금지되고, 이를 권유하는 것 또한 금지되며(제18조), 금지된 집회에 참가한 자(제21조 제1항 제9호)는 3,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이는 주 의회의 업무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구성원들을 물리적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장하기 곤란한 간접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포함된다. 의사당 근처에서 대규모 시위를 통하여 위협적 분위기가 연출되면 이는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금지되지 않은 옥외집회는 평화구역 내에서도 허가를 받아 할 수 있고(제19조 제1항), 집회허가의 신청은 늦어도 집회공지 7일 전까지 문서, 전자문서 또는 조서 작성의 방법으로 주 내무건설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은 이 경우에 준용된다(제19조 제2항). 이에 대하여 주 내무건설교통부는 주 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을 하는데(제19조 제3항), 그 허가는 일반적으로 의회의

교섭단체 및 그 기관과 위원회의 활동이 침해받을 염려가 없고, 평화구역 내 건물에의 자유로운 출입이 저지될 염려가 없는 경우에 고려된다. 이 경우 허가에 대하여만 권한을 가지고, 제13조 내지 제15조 소정의 관할 관청의 조치 권한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9조 제4항).

5. 형벌 및 범칙금 규정

5.1. 형벌 및 범칙금 규정

바이에른 집회법 제20조는 연방 집회법 제21조 내지 제28조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하나의 조문으로 요약하여 규정하고 이를 체계화하는 한편 양형의 모순점도 해결하였다. 형벌의 법정 최고형은 2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연방 집회법 보다 완화되었다.

바이에른 집회법 제21조는 연방 집회법 제29조와 제29a조를 역시 하나의 조문에 체계화 하였다. 다만 제21조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가명령에 따라 일부 조항이 효력정지 됨에 따라 개정법률에 의해 이를 삭제하고 정비하는 변화를 겪게 되었다. 범칙금의 상한은 3,000유로 이하와 500유로 이하로 나누어져 있다.

형벌 규정과 범칙금 규정의 상세한 내용은 앞서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5.2. 몰수

몰수 규정은 연방 집회법과 대동소이하나 그 대상이 다소 확대되었다. 즉, 제20조 소정의 범죄행위 또는 제21조 제1항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 또는 제2항 제4호 소정의 질서위반행위에 관계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제22조 제1문). 이 경우 형법 제74a조와 질서위반행위법 제23조가 적용되는 것은 같다.

6. 종결규정

6.1. 기본권의 제한

집회의 자유(기본법 제8조 제1항, 바이에른 헌법 제113조)와 표현의 자유(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문, 바이에른 헌법 제110조 제1항 제1문)에 관한 기본권은 이 법에 따라서 제한된다(제23조). 연방 집회법과 달리 표현의 자유도 열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6.2. 관할

바이에른 집회법 소정의 관할 관청은 기초자치단체(Kreis)¹¹⁶⁾ 행정청을 말하고, 집회 개시 이후 및 유예할 수 없는 사안의 경우에는 경찰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24조 제2항). 이에 따라 경찰은 급박한 경우에는 집회 개시 전에도 행정청에 대신하여 조치를 취할

116) 이는 독일의 각 주내에 이전부터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지방행정단위로 통상 '군'으로 번역하나 주의 내부에 있는 지방행정단위라는 의미를 고려하여 필자는 이를 '기초자치단체'로 번역하기로 한다.

수 있는 것이다.

하나의 기초자치단체 행정청의 영역을 넘어서서 행해지는 옥외 집회(초지역적 집회)의 경우에는, 주최자가 관할 기초자치단체 행정청 가운데 어느 하나에 집회 신고를 하면 신고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신고를 받은 기초자치단체행정청은 지체 없이 다른 기초자치단체 행정청과 상급자치단체(Regierung)에 이를 알려야 하며, 집회가 여러 상급자치단체의 영역에 걸쳐 행해지는 경우에는 상급자치단체는 이를 주 내무건설교통부에 알려야 한다(제24조 제3항). 이것은 초지역적 집회에 있어서 관할 충돌을 해결하려는 규정이다. 또한, 초지역적 집회의 경우 상급자치단체는 제2항 제1문에 따른 관할 행정청 중 어느 하나가 여타의 행정청과 협의하여 제6조, 제13조 제1항 제3문, 제5항 내지 제7항, 제15조 및 제16조 제3항에 따른 처분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고, 다수의 상급자치단체의 영역에 걸쳐 행해지는 초지역적 집회의 경우에는 주 내무건설교통부가 이런 결정을 행할 수 있다(제24조 제4항).

6.3. 소송의 집행부정지 효력

바이에른 집회법 제26조는 본 법에 따른 행정행위에 대항하는 소송에 대하여 집행부정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회의 개최 전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시켜야 할 필요성은 급박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집회 개최 시까지 소송으로 다투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주최자 등 관계인은 행정법원법 상의

‘긴급구제절차(Eilverfahren)’에 의하거나 사안이 종료한 후에는 사후적으로 ‘계속적 확인의 소(Fortsetzungsfeststellungsklage)’에 의해 다룰 수 있을 뿐이다. 독일은 집회 신고 기한이 ‘집회 공지 전 48시간’으로서 우리 집시법의 ‘집회 개시 전 48시간’보다 일반적으로 장기간임에도 우리가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집행정지를 인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집행정지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6.4. 비용

연방헌법재판소가 ‘집회 주최자에게 비용부담의무를 과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집회 주최자 스스로가 공공의 안전 또는 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만 정당화 될 수 있다. 제3자 또는 다른 집회 참가자로 부터 야기되는 위험 상황을 집회 주최자에게 귀속시킬 수는 없다.’고 판시함에 따라¹¹⁷⁾ 바이에른 집회법은 제26조에 이를 받아들여 본 법에 따른 직무행위는 무료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른 무기소지 등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예외이다.

6.5. 발효, 실효, 경과규정

바이에른 집회법 제28조는 발효 및 경과규정을 규정하고 있다.

117) BVerfG, Beschl. v. 25. 10. 2007.

즉, 본 법은 2008년 10월 1일에 발효되고, 본 법은 기본법 제125a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1978년 11월 15일에 공포되고(BGB I S. 1789) 2005년 3월 24일에 최종으로 개정된(BGB I S. 969) 연방 집회법을 대체한다. 실효되는 법률에 관한 규정은 법률의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제3절 니더작센 집회법

제1항 개설

니더작센 주는 ‘2010. 10. 7. 집회법의 새로운 규율을 위한 법률 (Gesetzes zur Neuregelung des Versammlungsrechts vom 7. Oktober 2010, Nds. GVBl. S. 465)’ 제1조를 통하여 니더작센 집회법을 제정하였고, 동 법률은 2011. 2. 1.부터 시행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니더작센 집회법은 총 6장 25조 및 1개의 첨부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총칙)은 제1조(원칙), 제2조(집회의 정의), 제3조(평화성 및 비무장성), 제4조(질서문란행위 금지)로, 제2장(옥외집회)은 제5조(신고), 제6조(협력), 제7조(집회의 주관), 제8조(제한, 금지, 해산), 제9조(호신장구 및 변장 금지), 제10조(특별 조치), 제11조(경찰의 참석), 제12조(영상·음향 전송 및 자료화)로, 제3장(옥내집회)은 제13조(집회의 주관), 제14조(제한, 금지, 해산), 제15조(특별 조치), 제16조(경찰의 참석), 제17조(영상·음향 전송 및 자료화)로, 제4장(주 의회를 위한 평화구역)은 제18조(주 의회를 위한 보호구역에서의 집회 금지), 제19조(집회의 허가)로, 제5장(형벌 및 범칙금 규정)은 제20조(형벌 규정), 제21조(범칙금 규정), 제22조(몰수)로, 제6장(종결규정)은 제23조(기본권의 제한), 제24조(관할), 제25조(비용 면제)로, 나머지는 (제18조 제2항 제2문에 대한) 첨부 규정으로 되어 있다.

니더작센 집회법은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와 ‘집회법초안’을 대폭 받아들인 바이에른 집회법의 영향을 받아 상당 부분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주 의회에 제출된 초안은 옥외집회를 옥내집회보다 먼저 규율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바이에른 집회법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¹¹⁸⁾ 그러나 주 의회 심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수정이 되어 바이에른 집회법과는 다른 독특한 특징을 가지게 되었다. 우선, 바이에른 집회법의 총칙에서 규정되었던 주관자 및 참가자의 권리 의무, 경찰의 참석, 촬영·녹음 등 규정을 요건을 경미하게 달리하여 옥외집회와 옥내집회에 각각 규정하였다. 그 밖에 집회의 정의를 제외한 나머지 정의와 적용범위 삭제, 특별 조치와 영상·음향 전송 개념 도입 등이 특징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니더작센 집회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제2항 주요 내용

1. 총칙

1.1. 원칙

누구든지 평화적으로 그리고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공개적으로 집회할 권리를 가진다(제1조 제1항). 이는 집회법 초안 및 바이에른 집회법과 같은 표현이다. 제1조 제2항은 ‘기본법 제18조에 의해 집회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이 박탈된 자는 전항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고만 규정하여 그 범위를 축소하고 있으나 이는 포괄적 규정이므로 실제 적용상의 차이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118) Entwurf eines Gesetzes zur Neuregelung des Versammlungsrechts Gesetzentwurf der Fraktionen der CDU und der FDP - Drs. 16/2075. 박희영, 독일 각 주의 집회법 제정 동향 : 바이에른 주 및 니더작센 주, 법제 통권 제635호, 2010, 11, pp. 44-53 참조.

1.2. 집회의 정의

니더작센 집회법 제2조는 집회의 정의에 관한 집회법초안의 표현을 ‘주로(überwiegend)’라는 단어만 제외하고 그대로 채용하였다. 즉, ‘집회란, 공동의, 공적인 의사형성에의 참여를 위한 토론이나 선언을 목적으로 하는 적어도 2인 이상의 어떤 장소에 고정되거나 움직이는 회합을 말한다.’로 되어 있다. ‘주로’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는 바이에른 집회법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행진을 집회의 일종으로 본 것은 바이에른 집회법과 같으나 이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공개 집회의 정의 규정과 집회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았다.

1.3. 평화성 및 비무장성

집회에서 또는 그 외부로 폭력을 통하여 사람이나 물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제3조 제1항). 이는 집회의 평화성에 관한 일반 규정으로 다른 집회법에서는 비슷한 예를 찾아 볼 수 없는 규정이다.

다음, 무기 또는 그 성질상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적합하고 확실한 기타의 물건을 집회에 참가하러 가는 도중에 또는 집회에서 소지하는 것 또는 집회장소로 운반하거나 또는 집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준비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금지된다(제3조 제2항 제1문). 관할 관청은 제1문에 따른 금지의 해제가 집회 참가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에 따라 이를 할 수 있다(제3조 제2항 제2문). 이는 바이에른 집회법 등이 제2문의 내용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라는 문구로 제1문에 삽입하여 한 문장으로 규율하는 것과 대동소이한 표현이다. 다만, 직무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부기하고 있으나(제3조 제2항 제3문), 이는 당연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이다. 제3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그곳에 묘사된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거나, 집회 장소로 운반하거나 그러한 집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하거나 배포한 자로서 그 행위가 무기법 제52조 제3항 제9호¹¹⁹⁾에 따라 처벌될 위험이 없는 경우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제20조 제1항 제1호). 또한, 옥외집회에 이어서 다른 사람들과 작당을 하는 한편 제3조 제2항에 묘사된 물건을 소지한 자(제20조 제2항 제6호)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또한, 집회에서 제복, 제복의 일부 또는 기타의 착용을 통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협력하여 **폭력지향의 인상을 전달**하기에 적합하고 확실한 어떤 방식으로 등장하는 것은 금지된다(제3조 제3항). 제복착용 금지를 독립 조문으로 하지 않고 ‘집회의 평화성’이란 표제의 조문 속에 제3항으로 위와 같은 표현으로 규정한 것은 그것이 집회의 평화성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을 명백히 한 것으로 보인다. 제3조 제3항에 위반하여 집회에서 그 항에 묘사된 방법으로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그 금지를 실행하기 위한 관할 관청의 집행 가능한 조치에

119) § 52 Strafvorschriften

(3)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wird bestraft, wer

9. entgegen § 42 Abs. 1 eine Waffe führt,

즉, 특정한 무기를 소지한 경우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위반한 자는 3,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제21조 제1항 제1문 제1호).

1.4. 질서문란행위 금지

동 조에서는 ‘금지되지 않은 집회의 질서 있는 거행을 방해할 의도로 질서문란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제4조).’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집회법초안과 바이에른 집회법은 같은 조문에서 폭력과 협박 행위도 열거하고 있으나 이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질서문란 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다만, 처벌규정에서는 ‘금지되지 않은 집회를 좌절시킬 의도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또는 집회 질서의 현저한 문란을 야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제20조 제1항 제2호).’라고 열거하고 있다.

한편, 다른 집회법들과 달리 집회에서의 일반적인 질서문란행위 금지, 집회에서의 주관자 또는 질서유지인에 대한 폭력·협박행위 금지, 호소 금지 등은 본 조에서 규정하지 않고 처벌규정에서만 규정하고 있다. 공연히, 집회에서 또는 문서배포, 음향 또는 영상 매체, 정보저장장치, 삽화 또는 기타의 표현물을 통하여 그 거행이 집행 가능하게 금지되거나 그 해산이 집행 가능하게 명하여진 집회 또는 제18조 제1항 제2문에 의해 금지된 집회에 참가할 것을 호소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되고(제20조 제1항 제2호), 주관자 또는 질서유지인의 거듭된 제지에도 불구하고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계속한 참가자 또는 참가자가 아닌 자로서 집행 가능한 경찰의 명령에 위반하여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계속한 자는 각각 1,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제21조 제1항 제1문 제2호 및 제3호).

2. 옥외집회

2.1. 신고

옥외집회의 신고에 대하여는 집회법초안이나 바이에른 집회법과 대동소이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옥외집회를 거행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늦어도 집회 공지 48시간 이전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한의 계산 시 일요일, 법정 공휴일 및 토요일은 합산하지 아니 한다(제5조 제1항). 신고에는, 1. 집회의 장소 및 움직이는 집회의 경우 그 예정된 진로, 2. 예정된 집회의 개시 및 종료, 3. 집회의 목적, 4. 주관자의 성명, 생일 및 주소(개인 정보) 그리고 전화 또는 기타 연락방법 그리고 5. 예상되는 참가 인원수가 포함되어야 하고(제5조 제2항 제1문), 주관자는 그에 따라 신고된 상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관할 관청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제5조 제2항 제2문). 관할 관청은, 그것이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자에게 1. 계획된 집회의 진행경과, 2. 집회를 거행하기 위하여 소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 특히 기술적 보조도구, 그리고 3. 질서유지인의

인원수 및 그들의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제5조 제3항 제1문), 주관자는 그에 따라 알려진 상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관할 관청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제5조 제3항 제2문).

제5조에 위반하여 기한에 맞는 신고가 전혀 되지 않은 옥외 집회를 거행한 자(제21조 제1항 제4호)는 3,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잘못된 줄 알면서 제5조 제2항 제1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게 신고를 한 신고자(같은 항 제5호), 잘못된 줄 알면서 제5조 제3항 제1문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게 알려진 주관자(같은 항 제6호) 그리고 제5조 제2항 제1문 제1호 및 제2호에 근거한 신고 시에 신고한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옥외집회를 거행한 주관자(같은 항 제7호)는 각각 1,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제21조 제2항).

신고 기한, 신고 사항, 관할 관청에의 통지 의무 등에서 다른 집회법들과 큰 차이가 없고, 긴급집회에 기한 적용이 배제되고(제5조 제4항), 우발적 집회에 신고의무가 면제되는(제5조 제5항) 것도 같다.

2.2. 협력

관할 관청은 옥외집회의 주관자에게 협력의 기회, 특히 집회의 거행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논의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6조). 집회법초안에서는 협력의 범위나 내용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하고, 바이에른 집회법에서는 협력의 효력에 대해서 함께 규정함에 반하여 니더작센 집회법은 다분히 선언적 의미의 규정에 그쳤다.

2.3. 집회의 주관

니더작센 집회법은 집회의 주관과 관련한 규정들을 집회법초안이나 바이에른 집회법이 총칙에서 함께 규정하는 것과 달리 요건을 약간 달리하여 옥내집회의 경우 제13조에 옥외집회의 경우 제7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다.

제5조에 따라 신고 된 각각의 옥외집회에는 하나의 주관자가 있어야 하고, 주관자는 집회의 진행경과를 결정하며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특히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참가자에게 언동을 삼가도록 명할 수 있으며, 집회를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고,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현존하여야 하며 관할 관청과 연락이 가능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

주관자는 그 임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질서유지인”이라고 적힌 백색 완장을 착용하여야 하는 질서유지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질서유지인은 제3조 제2항 소정의 무기 기타 물건을 어떠한 경우에도 소지할 수 없다(제7조 제2항). 제3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그곳에 묘사된 기타의 물건을 소지한 질서유지인의 조력을 받은 주관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제20조 제2항 제1호). 또한, 제7조 제2항 제1문에 위반하여 그곳에 묘사된 완장을 착용하지 않은 질서유지인의 조력을 받은 주관자(제21조 제1항 제8호)는 1,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주관자 또는 질서유지인의 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제7조 제3항).

이는 옥외집회 시에는 경찰에 의한 질서유지가 폭 넓게 행해지는 것을 감안하여 질서유지 등에 관한 주관자의 권리의무를 옥내집회의 경우보다 좁게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2.4. 제한, 금지, 해산

관할 관청은 공공의 안전 또는 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제8조 제1항). 관할 관청은 집회의 거행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되고 그 위험이 달리 방지될 수 없는 경우 집회를 금지하거나 해산할 수 있고, 금지된 집회는 해산되어야 하며, 해산 이후에는 모든 참가자들은 지체 없이 그 장소를 떠나야 한다(제8조 제2항). 위험이 집회로부터 나오지 않아도, 1. 위험을 야기한 사람에 대한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적시에 불가능한 경우 또는 성공할 가망이 없는 경우 그리고 2. 관할 관청이 직접 또는 직무상 또는 집행상 원조를 통하여 보충되는 수단과 인력으로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없거나 적시에 방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거론된 조치가 허용된다(제8조 제3항). 즉, 집회와 직접적 관련 없는 위험을 이유로도 일정한 경우에는 집회를 제한·금지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나치 희생자 추모장소에서의 집회는 제한·금지될 수 있다. 즉, 1. 무거운 상징효력에 의하여 나치의 폭력적이고 자의적인 통치를 상기하게 하는 의미내용을 지니고 있고 집회 거행의 방법을 통하여 공공의 평화가 희생자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직접적

으로 위태롭게 되는 날짜나 장소에서 집회가 개최되는 경우, 또는 2. 집회를 통하여 나치의 폭력적이고 자의적인 통치가 승인, 찬양, 정당화되거나 그 해악이 과소평가 되고, 또한 나치즘을 이끌었던 대표자에 대한 추모를 통하여 그러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공공의 평화가 희생자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되는 경우에는 집회가 제한·금지될 수 있다(제8조 제4항). 제한·금지의 요건은 다른 집회법들과 대동소이하다.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 위반하여 집회를 거행한 주관자(제20조 제2항 제3호)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금지된 집회에 참가한 자(제21조 제1항 제9호 a목) 그리고 제1항 및 제4항의 제한에 위반한 주관자 또는 참가자(제21조 제1항 제10호)는 각각 3,000유로 이하의, 집행 가능한 해산 명령 이후에 지체 없이 그 장소를 떠나지 아니한 자(제21조 제1항 제11호)는 1,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각각 처해진다.

2.5. 호신장구 및 변장 금지

니더작센 집회법은 호신장구에 대하여 Schutzwaffe 대신 Schutzausrüstu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로써 방어무기가 아니라 호신장구라는 점을 명백히 한 것이다.

옥외집회에 참가하러 가는 도중에 또는 옥외집회에서 호신장구로 적합하고 경찰관의 집행조치를 저지하기에 확실한 물건을 소지하는 것은 금지된다(제9조 제1항). 또한, 1. 집회에 사람의 신원 확인을 방해

하기에 적합하고 확실한 변장을 하고 참가하거나, 집회에 그와 같은 변장을 하고 참가하러 가는 것 또는 2. 집회에 참가하러 가는 도중에 또는 집회에서 사람의 신원 확인을 방해하기에 적합하고 확실한 물건을 소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제9조 제2항). 제9조 제1항에 위반하여 옥외집회에 참가하러 가는 도중에 또는 옥외집회에서 그 항에 묘사된 물건을 소지하고 그로 인하여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집행 가능한 조치에 위반한 자(제20조 제2항 제4호), 제9조 제2항 제1호에 위반하여 그 호에 묘사된 변장을 하고 옥외집회에 참가하거나 그와 같은 변장을 하고 참가하러 가고 그로 인하여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집행 가능한 조치에 위반한 자(같은 항 제5호) 또는 옥외집회에 이어서 다른 사람들과 작당을 하는 한편 제9조 제1항에 묘사된 물건을 소지하거나 제9조 제2항 제1호에 묘사된 방법으로 변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또한, 제9조 제2항 제2호에 위반하여 옥외집회에 참가하러 가는 도중에 또는 옥외집회에서 그 호에 묘사된 물건을 소지하고 그로 인하여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집행 가능한 조치에 위반한 자(제21조 제1항 제15호)는 1,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다른 집회법과 달리 호신장구 및 변장 금지는 집회에만 적용되고 집회와 유사한 기타 행사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관할 관청은 공공의 안전 또는 질서가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를 해제한다(제9조 제3항).

2.6. 특별 조치

관할 관청의 위험 방지나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와 그 요건을 특별 조치라는 표제의 조문에 상세히 실시하고 있는 것도 니더작센 집회법의 한 특징이다. 또한, 옥내집회와 옥외집회에 대하여 요건을 약간 달리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관할 관청은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징구한 자료에 의거하여 관계인이 공공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지를 경찰 및 헌법보호기관에 문의하여 검증할 수 있고,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그 관청은 그 사람이 주관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질서유지인으로 임명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으며, 주관자가 거부된 경우 집회 신고자는 다른 사람을 주관자로 지명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징구된 자료는 그것을 범죄행위 또는 질서위반행위 소추를 위하여 필요로 하지 않는 한 옥외집회 종료 후 지체 없이 파기되어야 한다(제10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집행 가능하게 거부된 주관자를 임명한 신고자(제21조 제1항 제13호) 및 질서유지인을 임명한 주관자(제21조 제1항 제14호)는 각각 3,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관할 관청은 제3조 내지 제9조에 따른 금지의 실행 및 참가자에 의한 집회의 질서에 대한 현저한 문란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특히 물건을 영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니더작센 주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관한 법률(Nds. SOG) 제27조 내지 제29조가 준용된다(제10조 제2항).

관할 관청은 그것이 제3조 내지 제9조에 따른 금지의 실행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우 사람들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집회로부터 배제할 수 있고, 집회의 질서가 달리 보장될 수 없는 경우 집회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참가자들을 집회로부터 배제할 수 있으며, 배제된 사람들은 지체 없이 집회를 떠나야 한다(제10조 제3항). 지체 없이 집회를 떠나지 않은 집회 배제자(제21조 제1항 제12호)는 1,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이상과 같이, 옥외집회 시에는 위험 방지 및 질서유지는 주최자나 주관자가 아니라 관할 관청에 의해 수행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다.

2.7. 경찰의 참석

경찰의 참석에 대해서도 옥내집회와 옥외집회에 대하여 그 요건을 달리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 법에 따른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옥외집회에 참석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참석하는 경찰관은 주관자에게 그 신분을 밝혀야 한다(제11조).

2.8. 영상·음향 전송 및 자료화

니더작센 집회법은 촬영·녹음(Bild- und Tonaufnahmen) 대신 영상·음향 전송(Bild- und Tonübertragungen)¹²⁰⁾이라는 용어를 채용하고 있다.

이는 촬영·녹음이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장의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영상·음향 자료화와 구별이 모호한 면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저장의 여지가 완전히 배제된 전송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조망촬영에 적용하였다. 또한 영상·음향 전송 및 자료화의 요건도 역시 옥내집회와 약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어떤 특정인으로부터 야기된 공공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방지하지 위하여 옥외집회에 참가하러 가는 길에 또는 옥외집회에서 공개적으로 그 특정인에 대한 영상·음향 자료화를 할 수 있고, 그 조치는 다른 사람이 불가피하게 관계되는 경우에도 또한 시행될 수 있다(제12조 제1항). 경찰은 집회에서 나오는 공공의 안전 또는 질서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음향 전송을 수단으로 하여 조망할 수 없는 집회와 그 주변을 공개적으로 감시할 수 있고, 공공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불특정 참가자들에 대한 영상·음향 자료화(조망영상 자료화)를 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망영상 자료의 해독은 제1항에 따른 전제조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제12조 제2항). 이와 같이 촬영·녹음의 요건에 대하여 다른 집회법들에 비해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상·음향 자료는, 1. 범죄행위의 소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2. 입증곤란을 제거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120) 'übertragung'은 통상 '중계방송'으로 번역되나 필자는 이를 집회법에서의 의미를 고려하여 단순히 '전송'으로 번역하기로 한다.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집회 종료 후 지체 없이, 그렇지 않으면 늦어도 2월이 경과하기까지 파기되거나 되돌릴 수 없게 익명화되어야 한다(제12조 제3항 제1문). 이와 같이 파기 또는 익명화 기한을 최장 2월로 단축하였다.

제1항 및 제2항 제2문에 따른 촬영 및 녹음과 저장물 제작 그리고 제2항 제3문 및 제3항에 따른 사용은 개개의 경우 그 기초가 되는 목적이 문서화되어야 한다(제12조 제4항).

3. 옥내집회

3.1. 집회의 주관

옥내집회의 경우 신고의무나 협력의무가 없어 집회 주최자나 주관자에 의한 자율적인 통제가 필요하므로 집회의 주관에 대하여 옥외집회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옥내집회의 초청자는 그 주관자이고, 초청자 또는 그 집회¹²¹⁾는 다른 사람을 주관자로 정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특정된 인물 또는 인적 범위가 초청 시에 집회 참가에서 배제될 수 있는 것은 다른 집회법들과 같다(제13조 제2항). 비공개 집회가 아닌 경우, 언론사 기자들은 집회의 출입이 거부될 수 없고, 그들은 집회의 주관자 및 질서유지인에게 그 요청에 따라 기자로서의 신분을 증명하여야 한다(제13조 제3항). 주관자는 제3조 제2항에 위반하는 무기 또는

121) 법문은 'die Versammlung'으로 되어 있는데, 집회 자체가 아니라 그 참가자 모두가 결정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의 물건을 소지한 사람들의 출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나(제13조 제4항), 그러한 질서유지인을 사용한 경우에만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제21조 제2항 제1호). 주관자는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참가자 및 기자들을 집회에서 배제할 수 있고, 제3조 제2항에 위반하는 무기 또는 기타의 물건을 소지한 사람들을 배제할 수 있으며, 배제된 사람들은 지체 없이 집회를 떠나야 하고(제13조 제5항), 지체 없이 집회를 떠나지 않은 집회 배제자는 1,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제21조 제1항 제12호). 그 외에 주관자에 대하여는 제7조가 준용된다(제13조 제6항). 즉, 집회의 질서유지권, 질서유지인 사용 등이 준용될 수 있을 것이다.

3.2. 제한, 금지, 해산

본 조의 규정은 옥내집회의 자유를 보다 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옥외집회의 경우보다 요건이 완화되었고, 옥외집회의 추모장소 집회금지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어 규정하지 않았다.

관할 관청은 집회의 평화성이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되는 경우 옥내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관할 관청은 집회의 평화성이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되고 그 위험이 달리 방지될 수 없는 경우 집회를 금지하거나 해산할 수 있고, 금지된 집회는 해산되어야 하며, 해산 이후에는 모든 참가자들은 지체 없이 그 장소를 떠나야 한다(제14조 제2항). 다만,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제1문에 따른 조치는 그 이유를 대어야 하는 것이 옥외집회의 경우와 다른 점이다

(제14조 제4항). 니더작센 집회법은 옥내집회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차원에서 옥내집회의 제한, 금지 및 해산 사유를 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집회의 평화성에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제14조 제2항에 위반하여 집회를 거행한 주관자(제20조 제2항 제3호)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금지된 집회에 참가한 자(제21조 제1항 제9호 a목) 및 제14조 제1항의 제한에 위반한 주관자 또는 참가자(제21조 제1항 제10호)는 3,000유로 이하의, 집행 가능한 해산 명령 이후에 지체 없이 그 장소를 떠나지 아니한 자(제21조 제1항 제11호)는 1,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각각 처해진다.

위험이 집회로부터 나오지 않아도 1. 위험을 야기한 사람에 대한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적시에 불가능한 경우 또는 성공할 가망이 없는 경우 그리고 2. 관할 관청이 직접 또는 직무상 또는 집행상 원조를 통하여 보충되는 수단과 인력으로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없거나 적시에 방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거론된 조치가 허용되는 것은 옥외집회와 같다(제14조 제3항).

3.3. 특별 조치

특별 조치에 대하여도 옥외집회와 요건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선 관할 관청은, 그것이 옥내집회의 평화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 1. 초청자에게 주관자의 개인 정보를 그리고 2. 주관자에게 질서유지인의 개인 정보를 각각 요구할 수 있고, 주관자는 제1문에 따라 알려진 상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관할

관청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제15조 제1항). 이는 옥내집회에는 신고의무가 배제되기 때문에 생긴 규정이다. 잘못된 줄 알면서 제15조 제1항 제1문 제1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게 알려준 초청자(제21조 제1항 제16호)는 3,000유로 이하의, 잘못된 줄 알면서 제15조 제1항 제1문 제2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게 알려준 주관자(제21조 제1항 제6호)는 1,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각각 처해진다.

관할 관청이 제1항에 따라 징구한 자료에 의거하여 관계인이 집회의 평화성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지를 경찰 및 헌법보호기관에 문의하여 검증할 수 있고,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그 관청은 그 사람을 주관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으며, 주관자가 거부된 경우 초청자는 다른 사람을 주관자로 지명하여야 하고, 제1문에 따라 징구된 자료는 그것을 범죄행위 또는 질서위반행위 소추를 위하여 필요로 하지 않는 한 집회 종료 후 지체 없이 파기되어야 하는 것은 옥외집회의 경우와 같다(제15조 제2항). 제15조 제2항 제2문에 따라 집행 가능하게 거부된 주관자를 임명한 초청자(제21조 제1항 제13호) 및 질서유지인을 임명한 주관자(제21조 제1항 제14호)는 각각 3,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관할 관청은 제3조에 따른 금지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집회 개시 전에 할 수 있고, 특히 물건을 영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니더작센 주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관한 법률(Nds. SOG) 제27조

내지 제29조가 준용되는 것도 옥외집회의 경우와 같다(제15조 제3항). 다만, 옥외집회의 경우와 달리 관할 관청의 집회 참가자 배제권은 인정되지 않고, 집회의 평화성 보장이 달리 가능하지 않은 경우 집회에 참가하는 것만 사전에 금지할 수 있다.

3.4. 경찰의 참석

경찰이 옥내집회에 참석할 수 있고, 참석하는 경찰관은 주관자에게 그 신분을 밝혀야 하는 것은 옥외집회의 경우와 같으나 그것이 집회의 평화성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 다르다(제16조).

3.5. 영상·음향 전송 및 자료화

집회와 관련된 경찰의 촬영·녹음에 대하여도 옥외집회의 경우와 요건을 달리하고 있다.

우선 영상·음향 전송 및 자료화 그리고 조망영상 자료화 시행의 요건에 대하여는 ‘공공의 안전(또는 질서)에 대한 현저한 위협’을 ‘집회의 평화성에 대한 (현저한) 위협’으로 바꾼 것 이외에는 동일하다(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영상·음향 자료의 파기 및 익명화(제17조 제3항) 그리고 영상·음향 자료의 제작 및 사용 목적의 문서화(제17조 제4항)는 옥외집회의 경우와 같다.

4. 주 의회를 위한 평화구역

니더작센 집회법은 집회금지구역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단, 집회금지구역은 다른 집회법들과 마찬가지로 주 의회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주 의회를 위하여 평화구역을 설정하고, 평화구역 내에서는 제19조에 따라 허가되지 않은 옥외집회가 금지된다(제18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금지된 집회에 참가한 자(제21조 제1항 제9호 b목)는 3,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평화구역의 정확한 경계는 첨부 규정에 나타난다(제18조 제2항).

평화구역 내에서 옥외집회는, 그로 인하여 주 의회, 그 교섭단체, 그 원로회의, 그 의장단과 그 위원회의 활동 및 주 의회 부지로의 자유로운 출입이 위태롭게 되지 않는 경우, 신청에 의해 허가될 수 있다(제19조 제1항 제1문). 그러한 위험은 통상 주 의회의 개최 일에 주어지고, 집회 날짜에 주 의회의 회의나 제1문에서 거명된 것들이 개최되지 않는 경우 주어지지 아니 한다. 또한, 허가는 제1문에서 거론된 허가 요건이 실현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부담과 결부될 수 있다(제19조 제1항 제4문). 그 부담에 위반한 주관자 또는 참가자(제21조 제1항 제17호)는 3,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허가 신청은 제5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동시에 제출되어야 하고, 관찰 관청은 주 의회 의장과 합의하여 허가에 대하여 결정을 한다(제19조 제2항).

5. 형벌 및 범칙금 규정

본 장은 형벌 규정(제20조), 범칙금 규정(제21조), 몰수(제22조)로 구성되어 있다.

형벌의 법정형 상한은 2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되어 있고, 범칙금의 상한은 3,000유로 이하로 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앞서 해당 부분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한다.

제20조 소정의 범죄행위 또는 제21조 제1항 제1문 제10호 또는 제15호 소정의 질서위반행위에 관계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고, 그 경우 형법 제74a조와 질서위반행위법 제23조가 적용된다(제22조).

6. 종결규정

본 장은 기본권의 제한(제23조), 관할(제24조), 비용 면제(제25조)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집회의 자유(기본법 제8조 제1항)에 관한 기본권은 이 법에 따라서 제한된다(제23조).

다음, 관할 관청은 1. 집회 개시 전에는 하급 행정관청 그리고 2. 집회 개시 후에는 경찰이다(제24조 제1항 제1문). 즉, 집회 개시 전후로 나누어 관할 관청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여기서의 하급 행정관청의 직무는 기초자치단체(Landkreis), 독립시(kreisfreie Stadt), 대자치시(große selbständigen Stadt) 및 자치구(selbständige Gemeinde)에서 담당하고, 주도 하노버에서는 하노버 경찰청이 담당하며, 제21조에

따른 질서위반행위의 소추는 하급 행정관청이 관할한다. 그 구역 내에서 집회가 개최되는 관청은 토지 관할권을 가지고, 옥외집회에 여러 하급 행정관청의 관할 범위에 관계되는 경우, 관계된 기관에 공통된 법적 감독기관이 관할 관청을 결정한다(제24조 제2항). 감독 직무는 자치구에 대하여는 기초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독립시 및 대자치시에 대하여는 경찰청이 상급행정관청으로서 그리고 내무부는 최상급행정관청으로서 담당하고, 이 경우 니더작센 주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관한 법률(Nds. SOG) 제102조가 준용된다(제24조 제3항).

마지막으로, 이 법에 따른 직무행위는 무료임을 규정하고 있다(제26조).

제4절 쉘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

제1항 개설

쉘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은 견본법률안을 모태로 한 것이므로 먼저 견본법률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집회법 학자와 저술가들¹²²⁾이 프리드리히-에버트-재단의 후원 하에 ‘집회법 연구모임’을 결성하여 집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2010. 9.경 견본법률안 저술을 완료하였고 이를 2011.에 책자로 발간하였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견본 법률안은 집회법초안을 비롯하여 그때까지의 집회법 연구 결과를 망라하여 각 주의 집회법 제정 시 채택하여야 할 조문과 각 조문의 존재이유 등을 설시한 것이었다. 이는 향후의 주 집회법을 위한 통일적인 법률안으로서 안보법제에 요구되는 연방 차원의 통일성과 예측가능성에 기여하려는 것이었다. 이는 또한 연방 및 주 경찰법의 모범에서 나아가 집회법의 통일적인 규율과 지속적인 발전을 제공 하려는 것이었다.¹²³⁾ 그러나 현재까지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유감스럽게도 쉘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이외에는 없다. 따라서 통일

122) *Christoph Enders* : Professor für Öffentliches Recht insbes. Umweltrecht an der Juristen-fakultät der Universität Leipzig und Richter am Sächsischen Obergericht (im Nebenamt), *Wolfgang Hoffmann-Riem* : em. Professor für Öffentliches Recht und Verwaltungswissenschaft an der Universität Hamburg, *Michael Kriesel* : Staatsrat a.D., Polizeipräsident, *Ralf Poscher* : Professor für Öffentliches Recht am Institut für Staatswissenschaft und Rechtsphilosophie der Albert-Ludwigs-Universität Freiburg, *Helmuth Schulze-Fielitz* : Professor für Öffentliches Recht, Umweltrecht und Verwaltungswissenschaften an der Julius-Maximilians-Universität Würzburg.

123) Arbeitskreis Versammlungsrecht, *ibid.*, pp. 1-4 참조.

되지 않은 그리고 초지역적으로 조망할 수 없는 법적 상태가 견고하게 될 것으로 추측하는 견해도 있다.¹²⁴⁾ 그러나 바이에른, 브란덴부르크, 작센-안할트 및 니더작센의 집회법은 시기적으로 견본법률안보다 이전이나 비슷한 시기에 제정되어 견본법률안이 영향을 줄 수 없었고, 작센 및 베를린의 집회법은 시기적으로는 견본법률안을 참고할 수 있었지만 그 주들은 새로운 내용의 집회법을 채용하기 보다는 연방 집회법의 틀을 계승하는 쉬운 길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¹²⁵⁾ 따라서 아직까지 독자적인 집회법을 제정하지 않은 주들이 견본 집회법을 채용하거나 이미 제정한 주들도 집회법 개정 시 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나아가 주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지역적인 집회가 발생하고 이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수 없는 법적 흠결로 인해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면 연방 전체적으로 통일적인 집회법 운영을 위한 논의가 활발해 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견본법률안은 총 5장 32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총칙)은 제1조(집회의 자유), 제2조(공개집회의 정의), 제3조(보호 직무 및 협력), 제4조(집회의 주최), 제5조(집회의 주관), 제6조(집회주관자의 권한), 제7조(질서문란행위 금지), 제8조(무기 금지), 제9조(경찰법률의 적용)로, 제2장(옥외집회)은 제10조(신고), 제11조(허가 면제), 제12조(관청의 거부권), 제13조(제한, 금지, 해산), 제14조(사람의 참가 또는 현존의 금지 및 배제), 제15조(통제소), 제16조(촬영·녹음 및 영상·음향 자료화), 제17조(변장 및

124) Dürig-Frindl-Enders, ibid. p. 5. m. 17.

125) 브란덴부르크와 작센-안할트의 집회법도 연방 집회법의 틀을 유지하였다.

호신장구 금지), 제18조(군사적 행태 금지), 제19조(상징내포 장소 및 날짜), 제20조(주 의회의 보호), 제21조(사유지 내 공용 도로)로, 제3장(옥내집회)은 제22조(초청), 제23조(제한, 금지, 해산), 제24조(사람의 참가 또는 현존의 금지 및 배제), 제25조(통제소), 제26조(촬영·녹음 및 영상·음향 자료화)로, 제4장(범죄행위, 질서위반행위, 몰수, 비용, 보상 및 배상)은 제27조(범죄행위), 제28조(질서위반행위), 제29조(몰수), 제30조(비용), 제31조(보상 및 배상)로, 제5장(종결규정)은 제32조(기본권의 제한)로 되어 있다. 이는 종래의 집회법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경찰법의 적용, 통제소 설치, 사유지에서의 집회, 보상 및 배상 등 규정을 새로 도입하고, 나치 희생자 추모장소 및 추념일 집회 금지 규정을 독립시키고 군사적 행태 금지 규정을 옥외집회에 한정하는 등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보인다.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는 견본법률안을 모태로 ‘2015. 6. 18. 쉘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집회자유법(Versammlungsfreiheitsgesetz für das Land Schleswig-Holstein Vom 18. Juni 2015)’을 제정하여 2015. 7. 1.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법은 총 5장 28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총칙)은 제1조(집회의 자유), 제2조(공개집회의 정의), 제3조(보호직무 및 협력), 제4조(집회의 주최), 제5조(집회의 주관), 제6조(집회주관자의 권한), 제7조(질서 문란행위 금지), 제8조(무기 및 제복 금지), 제9조(주 행정법률의 적용), 제10조(경찰의 참석)로, 제2장(옥외집회)은 제11조(신고), 제12조(허가 면제), 제13조(제한, 금지, 해산), 제14조(사람의 참가 또는 현존의 금지 및 배제), 제15조(수색 및 신원확인), 제16조(영상·음향 전송 및 자료화), 제17조(변장 및 호신장구 금지), 제18조(사유지 내 공용도로)로, 제3장(옥내집회)은 제19조(초청), 제20조(제한, 금지, 해산), 제21조(질서문란자의 배제, 가택권), 제22조

(촬영·녹음 및 영상·음향 자료화)로, 제4장(범죄행위, 질서위반행위, 몰수, 비용)은 제23조(범죄행위), 제24조(질서위반행위), 제25조(몰수), 제26조(비용)로, 제5장(종결규정)은 총 5장 28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조문 표제를 비교하면 알 수 있듯이 견본법률안을 몇몇 조문을 제외하고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으로는 집회금지구역을 도입하지 않은 것인데, 이는 쉴레스비히-홀슈타인 주가 종래 연방 집회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하였던 집회금지구역법을 1990년에 폐지한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즉, 집회금지구역의 위헌성 등 논란으로 인하여 이미 이를 폐지하였는데 새로이 집회법을 제정하면서 이를 규정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쉴레스비히-홀슈타인 주는 집회의 자유를 가능한 한 넓게 보장하자는 입장이고 그에 따라 집회법의 명칭도 ‘집회자유법’이라고 한 것이다.

이하에서는 쉴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서 견본법률안도 필요한 범위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제2항 주요 내용

1. 총칙

1.1. 집회의 자유

쉴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 제1조에서는 견본법률안 제1조를 그대로 채용하여 집회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즉, 누구든지 신고나 허가 없이 평화적으로 그리고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집회를 하고 집회를 주최할 권리를 가진다(제1조 제1항). 이는 기본법의 규정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기본법 제18조에 의해 집회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이 박탈된 자는 전항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제1조 제2항). 이는 니더작센 집회법과 같은 문구를 사용한 것이다.

1.2. 공개집회의 정의

실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 제2조에서는 견본법률안 제2조를 그대로 채용하여 집회의 정의, 공개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의미하는 집회란 공동의, 주로 공적인 의사형성에의 참여를 위한 토론이나 선언을 목적으로 하는 적어도 3인 이상의 장소적 회합을 말하고, 행진은 움직이는 집회이다(제2조 제1항). 행진을 집회의 한 종류로 파악한 것은 다른 집회법들과 같고, 현행 집회법들 중 유일하게 ‘3인설’을 채택한 것이 특이하다.

집회는 그에의 참가가 개별적으로 확정된 인적 범위에 한정되지 않거나 집회가 그 주변의 공중에 대한 선언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공개적이다(제2조 제2항). 즉, 공개의 정의에 인적 범위 이외에 주변의 공중에 대한 선언을 포함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또한, 다른 집회법들과 달리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은 공개 및 비공개 집회에 모두 적용된다(제2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공개 집회에만 적용되고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비공개 집회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하는 것과 실제 적용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1.3. 보호 직무 및 협력

견본법률안 제3조에서는 같은 표제로 관할 관청 및 공무원의 보호 직무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국가의 보호 및 보장기능을 명백히 하는 규정이다. 또한 집회법은 반드시 자유기능화법으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¹²⁶⁾ 쉴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 제3조에서는 견본법률안 제3조의 내용을 전부 받아들이는 한편 일부 조항을 추가하여 이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먼저, ‘공공행정 담당자는 그에게 이양된 직무 범위 내에서 평화적인 집회를 보호하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작용을 한다(제3조 제1항).’라는 일반 규정이 추가되었다. 관할 관청의 직무는 1. 이 법에 따라 허용된 집회의 거행을 지원하는 것, 2. 질서문란행위로부터 집회의 거행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3. 집회로부터 또는 집회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나오는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으로 견본법률안과 같다(제3조 제2항).

집회의 종류 및 규모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관할 관청은 공개 집회의 주최자 또는 그 주관권을 양도받은 사람에게 집회의 질서 있는 거행을 위하여 긴요한 위험상태 기타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¹²⁶⁾ Arbeitskreis Versammlungsrecht, *ibid.*, p. 19.

협력대화를 적시에 제안하고, 제13조 제1항, 제20조 제1항에 따라 금지나 제한을 할 수 있는 위해의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 예정된 집회에 대한 보충적 신고 또는 변경을 통하여 금지나 제한을 불필요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제3조 제3항).

마지막으로, 집회의 종류 및 규모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관할 관청은 공개 집회의 주최자 또는 그 주관권을 양도받은 사람에게 집회 전 또는 도중에 위험상태의 현저한 변경에 관하여 협력의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같고(제3조 제4항), 이 항 말미에 ‘갈등 관리는 협력의 구성요소이다.’를 추가하였다.

1.4. 집회의 주최

실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 제4조에서는 옥내 및 옥외집회의 주최자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즉, 어떤 집회에 타인을 초청하는 자 또는 제11조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하는 자가 집회를 주최한다. 이는 견본법률안 제4조의 내용을 그대로 채용한 것이다. 다만, 공개 집회로의 초청 시 그 이름을 명시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5. 집회의 주관

실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은 제5조에서는 옥내 및 옥외집회의 주관자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즉, 주최자가 집회를 주관하고,

단체가 집회를 주최하는 경우, 그 단체의 대표자가 집회를 주관하며, 주최자는 집회의 주관을 어떤 자연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또한, 집회의 주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은 주관자가 특정된 경우에만하여 비공개집회에도 적용된다(제5조 제2항). 이는 견본법률안 제5조의 내용을 대부분 채용하면서 주최자가 다수이거나 없는 경우 주관자 선정 방법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1.6. 집회주관자의 권한

실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 제6조에서는 견본법률안 제6조를 그대로 채용하여 집회주관자의 권한을 규정함으로써 옥내 및 옥외 집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다.

집회주관자는 집회의 질서 있는 진행을 위해 진력하고 집회의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며, 집회를 언제라도 중단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제6조 제1항). 집회주관자는 질서유지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질서유지인은 옥외집회에서는 단지 “질서유지인”이라고만 표시할 수 있는 흰 완장을 착용함으로써 식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집회 참가자에 대한 이 법의 규정은 질서유지인에게도 또한 적용된다(제6조 제2항). 집회에서는 질서 유지를 위한 집회주관자 또는 질서유지인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제6조 제3항). 집회주관자는 집회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자를 집회로부터 배제할 수 있고, 집회로부터 배제된 자는 지체 없이 그 장소를 떠나야 한다(제6조 제4항). 적법하게 질서유지권을 행사하는 집회의 주관자 또는 질서

유지인에 대항하여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으로 협박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질서유지권을 행사하는 도중에 그에게 폭력을 가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제23조 제3항).

1.7. 질서문란행위 금지

실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 제7조에서는 견본법률안 제7조를 그대로 채용하여 질서문란행위만 규정하고 있다. 즉, 집회의 거행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좌절시킬 의도로 질서문란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금지되지 않은 집회 또는 행진을 저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거행을 좌절케 할 의도로 심각한 질서문란행위를 야기한 자(제24조 제1항 제3호)는 1,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다른 집회법들과 달리 실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과 견본법률안에서는 집회에서의 일반적인 질서문란행위 금지, 집회에서의 주관자 또는 질서유지인에 대한 폭력·협박행위 금지 등은 본 조에서 규정하지 않고 처벌규정에서만 규정하고 있다. 즉, 금지되지 않은 집회를 저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거행을 좌절케 할 의도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되고(제23조 제1항), 적법하게 질서유지권을 행사하는 집회의 주관자 또는 질서유지인에 대항하여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으로 협박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질서유지권을 행사하는 도중에 그에게 폭력을 가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제23조 제3항).

또한, 호소금지는 견본법률안에서는 채용하지 않고 있으나 쉴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에서는 옥외집회의 경우 제13조 제9항에 옥내 집회의 경우 제20조 제7항에 각각 규정하고 있다. 즉, 공연히, 인터넷 상에서 또는 문서배포, 음향 또는 영상매체, 정보저장장치, 삽화 또는 기타의 표현물을 통하여, 집행 가능한 금지명령에 의하여 그 거행이 금지되거나 집행 가능한 해산명령이 발하여진 집회への 참가를 권유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리하여, 집회 거행이 집행 가능하게 금지되거나 집회 해산이 집행 가능하게 명령된 집회への 참가를 호소한 자(제24조 제1항 제2호)는 2,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집회의 자유를 강조하는 쉴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에서 견본법률안에서 채택하지 않은 호소금지 규정을 부활시킨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1.8. 무기 및 제복 금지

견본법률안은 제8조에서 무기 금지만 규정하고 제복 금지는 옥외 집회의 경우에만 준군사적 행태 금지와 함께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쉴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 제8조에서는 준군사적 행태 금지는 채용하지 않고 무기 금지와 함께 제복 금지도 규정하여 옥내 및 옥외집회에 모두 적용하고 있다.

우선, 무기 또는 그 성질상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에 현저한 손상을 초래하는 데 적합하고 상황에 따라 그러함이 확실한 기타의 물건을 집회에서 또는 집회에 가져나 오는 도중에 소지하거나,

집회장소로 운반하거나 또는 집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준비하거나 배포하는 것은 금지된다(제8조 제1항). 그에 위반한 자는 그 행위가 무기법 제52조 제3항 제9호에 따라 처벌될 위험이 없는 경우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공개집회에서 무장한 질서유지인을 사용한 자도 같다(제23조 제2항).

또한, 집회에서 제복, 제복의 일부 또는 기타 통일적인 외관을 전달하는 의복의 착용을 통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협력하여 폭력 지향의 인상을 전달하고 그것을 통하여 위협적 효과가 나타나기에 적합하고 확실한 어떤 방식으로 등장하는 것은 금지된다(제8조 제2항). 관할 관청은 위 금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금지의 대상이 되는 물건 또는 행태가 묘사되어 있는 명령을 발한다(제8조 제3항). 제복 금지(제8조 제2항)를 실행하기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제24조 제1항 제7호)는 1,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1.9. 주 행정법률의 적용

실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 제9조는 건본법률안 제9조(경찰법의 적용)를 그 표제만 달리하여 그대로 채용한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논란과 문제가 많았던 집회법과 경찰법 등 일반 행정법의 관계를 규율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 구상은 한편으로는 집회법에서 집회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규율하기에 불충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집회에 있어 특히 중요하고 전형적인 규율은 특별법으로 규정되어야 마땅하다는 기본적인 사고에 기인한 것이다.¹²⁷⁾ 즉, 특별법인 집회법

에서 모든 사항을 규정할 수 없으므로 집회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일반법인 경찰법이나 행정법으로도 집회와 관련하여 공공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 한 것이다.

즉, 이 법에서 개개의 참가자들에 대응하여 위협의 방지를 규정하지 않는 한, 그 조치 시점에 인식 가능한 상황에 따르면 집회 거행 전이나 도중 또는 그에 이어서 공공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그들로부터 나오는 경우 주 행정법률에 따라 그들에 대응하는 조치가 허용된다(제9조 제1항). 옥내집회의 경우 제1항은 참가자로부터 제20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위협이 나오는 사안에 적용되고(제9조 제2항), 집회 개시 전 집회への 참가를 저지하는 조치는 제14조에 따른 참가 금지를 전제조건으로 한다(제9조 제3항).

1.10. 경찰의 참석

견본법률안은 경찰의 참석을 제23조 제3항에서 옥내집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나 쉴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 제10조에서는 옥외와 옥내를 나누어 요건을 약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견본 법률안에서 옥외집회에 채용하지 않은 것은 제9조 및 제15조에 의해 옥외집회 시 경찰의 관여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경찰은 1. 옥외집회의 경우 그것이 이 법에 따른 경찰의 직무

127) Arbeitskreis Versammlungsrecht, ibid. p. 30.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 2. 옥내집회의 경우 집회의 평화성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집회에 참석할 수 있고, 참석하는 경찰부대는 집회주관자에게 그 신분을 밝혀야 하나 옥외 집회의 경우 이는 경찰의 현장책임자가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제10조).

2. 옥외집회

2.1. 신고

설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 제11조에서는 견본법률안 제10조를 대부분 채용하여 옥외집회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옥외공개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늦어도 그 초청 48시간 이전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여러 사람이 집회를 주최하는 경우에 하나의 신고만 제출할 수 있다(제11조 제1항). 견본 법률안 제10조 제1항에서는 신고 방법과 기한 계산 방법도 규정하고 있으나 설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에서는 채용하지 않았다.

신고에는 시간, 장소 및 목적에 따른 집회의 예정 경과가 기재되어야 하고, 행진의 경우 그 예정 진로도 포함되어야 하며, 신고자 및 주관자가 정해진 경우 그 사람의 성명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제11조 제2항). 집회주관자가 나중어야 정해진 경우 내정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관할 관청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집회주관자가 질서유지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 이를 그 예정 인원수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제11조 제3항).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본질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관할 관청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제4항). 변경사항 통지 의무는 견본법률안에서는 채용하지 않았으나 쉴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에서는 다른 집회법들의 예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견본법률안 제12조에서는 ‘관청의 거부권’이라는 표제 하에 주관자 및 질서유지인에 대한 거부권, 질서유지인의 이름과 주소 통지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쉴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에서는 채용하지 않았다.

제11조에 의해 필요한 신고 없이 또는 제11조 제2항 소정의 사항이 포함되지 않거나 본질적인 관점에서 부정확하게 포함된 신고를 한 다음 옥외공개집회를 거행한 자(제24조 제1항 제1호)는 500유로 이하의, 신고(제11조)의 내용과 본질적으로 다르게 옥외공개 집회를 거행한 주최자 또는 주관자(제24조 제1항 제4호)는 1,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각각 처해진다.

신고 기한의 준수로 인해 집회의 목적이 위태롭게 되는 경우(긴급집회) 그 집회는 늦어도 그 초청과 동시에 관할 관청 또는 경찰에 신고 되어야 하고(제11조 제5항), 집회가 즉흥적 결의에 의하여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우발적 집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제11조 제6항) 같다.

2.2. 허가 면제

쉴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 제12조는 견본법률안 제11조를

그대로 채용하여 허가 면제를 규정하였다. 이는 견본법률안에서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집회의 허가제를 금지하는 기본법의 정신을 명백히 하기 위한 당연한 규정으로 볼 것이다.¹²⁸⁾ 즉, 옥외공개 집회에 대하여 공용 도로의 사용과 관련된 관청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제12조).

2.3. 제한, 금지, 해산

설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 제13조의 규정은 견본법률안 제13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견본법률안은 추모장소 및 추모일의 집회 제한 및 금지를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설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에서는 본 조의 제4항으로 함께 규정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호소 금지 규정도 본 조의 제9항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다.

관할 관청은 그 조치 발령 시 인식 가능한 상황에 따르면 옥외 집회의 거행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되는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집회 개시 후에는 해산도 할 수 있고(제13조 제1항), 금지 또는 해산은 제한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제13조 제2항). 제3자로부터 공공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나오는 경우 그에 대응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또한 주 또는 연방 단위가 가용한 경찰병력의 개입으로도 그 위험이 방지될 수 없는 경우 그

128) Arbeitskreis Versammlungsrecht, *ibid.*, p. 36.

위험이 나오는 곳이 아닌 집회에 대하여도 그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제13조 제3항). 그러한 경우 집회의 금지나 해산은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 또는 현저한 가치의 물적 재산에 대한 위험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또한, 관할 관청은 다음 1. 나치의 폭력적 및 자의적 통치 하에서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은 희생자에 대한 추모일로 정해진 날짜에 집회가 개최되는 경우 그리고 2. 그 처분 발령 시 인식 가능한 상황에 따르면 집회를 통하여 나치의 폭력적 및 자의적 통치를 승인, 찬양 또는 정당화하고 그로 인하여 공공의 평화가 문란하게 될 직접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옥외집회의 거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집회 개시 이후에는 해산할 수 있다(제13조 제4항). 위 추모일은 1월 27일 및 11월 9일이다.

제13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요건 하에 관할 관청에 의해 또는 사법적 긴급권리보호 절차에서 발하여진 집행 가능한 제한 처분, 금지 또는 해산에 위반한 주관자 또는 주최자(제24조 제1항 제5호)는 2,000유로 이하의, 그에 위반한 참가자(제24조 제1항 제6호)는 5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각각 처해진다.

제한 처분 또는 금지가 발하여져야 할 경우, 그러한 처분을 정당화하는 전제조건이 확정된 후 지체 없이 집회주관자 및 참가자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제13조 제5항). 집회 개시 이후의 제한 처분 또는 해산의 공지는 그 조치의 이유를 첨부하여 행해져야 하고, 그 처분에 대한 이의 및 취소소송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제13조

제6항). 집회가 해산되었다고 선언되자마자 참석한 모든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장소를 떠나야 하고(제13조 제7항), 해산된 집회 대신으로 같은 장소에서 대체집회를 거행하는 것은 금지된다(제13조 제8항). 제13조의 요건 하에 이루어진 집회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장소를 떠나지 아니한 자(제24조 제1항 제9호)도 5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2.4. 사람의 참가 또는 현존의 금지 및 배제

실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 제14조는 견본법률안 제14조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관할 관청에 의한 ‘사람의 참가 또는 현존의 금지 및 배제’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견본법률안 제24조는 이를 요건을 강화하여 옥내집회에도 채용하고 있으나 본 법은 옥외집회의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집회법에서 여러 조문에 나누어져 있던 규율을 한 조문에 모으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관할 관청은 그 처분 발령 시 인식 가능한 상황에 따르면 집회의 거행을 통하여 공공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경우 그 옥외집회에 그 사람이 참가 또는 현존하는 것을 집회 개시 전에 직접 금지할 수 있다(제14조 제1항). 그 행태를 통하여 공공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사람임에도 집회주관자가 이를 저지하지 않거나, 제6조 제3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사람은 관할 관청에 의해 배제될 수 있고, 집회에서 배제된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장소를 떠나야 한다(제14조 제2항). 견본법률안 제14조 제2항

에서는 변장 및 호신장구 금지 또는 군사적 행태 금지 명령에 위반한 사람이 관할 관청에 의해 배제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항에서는 집회주관자나 질서유지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사람이 관할 관청에 의해 배제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이 다르다.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집회에의 참가나 현존의 금지 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참석하거나 제14조 제2항에 따른 배제 명령 이후에 지체 없이 그 장소를 떠나지 아니한 자(제24조 제1항 제8호)는 5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2.5. 수색 및 신원확인

쉴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 제15조의 규정은 견본법률안 제15조에서 ‘통제소’라는 표제로 처음으로 도입한 내용을 표현을 경미하게 달리하여 채용한 것이다. 또한 견본법률안 제25조에서는 이를 옥내집회에도 그 요건을 강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쉴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에서는 옥외집회에만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집회에 관한 사전 조치는 지금까지는 경찰법 등 일반 행정법에 의해 행해져 왔지만 이는 집회에 고유한 기본권적 위험 즉 집회의 내적 자유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집회법에서 규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조는 앞서 본 제9조(주 행정법률의 적용)의 특별 규정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즉, 본 조에서 특별한 규율을 하고 있는 한 제9조에 따른 집회 관련 사전 조치는 배제되는 것이다.¹²⁹⁾

¹²⁹⁾ Arbeitskreis Versammlungsrecht, ibid. p. 45.

무기를 소지하거나 제8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 또는 제17조 소정의 물건 사용으로 옥외공개집회의 거행에 있어 공공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적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 사람과 물건을 수색할 수 있고, 발견된 무기 기타 물건은 영치할 수 있으며, 수색의 집행은 쉴레스비히-홀슈타인 주 행정법률에 따른다(제15조 제1항).

신원확인 및 그 밖의 경찰 및 질서법적 또는 형사소송법적 조치는, 임박해 있는 제8조 또는 제17조 위반 또는 경죄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사실적 근거가 집회 장소, 행진 구역 또는 그곳으로 직접 가는 길에서 밝혀지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제15조 제2항).

2.6. 영상·음향 전송 및 자료화

쉴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 제16조의 규정은 촬영·녹음 대신 영상·음향 전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몰래 촬영·녹음 규정을 채용하지 않은 점을 제외하고는 견본법률안 제16조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전송이라는 용어는 니더작센 집회법에서 처음 도입된 것을 본 조에서 채용한 것으로 영상·음향의 저장이나 보관의 여지를 배제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는 점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경찰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공공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나온다는 사실이 이를 정당화하는 경우에 한하여 옥외공개집회 시

또는 그와 관련하여 그 사람을 촬영·녹음하고 그에 상응하는 영상·음향 자료화를 할 수 있고, 이는 다른 사람이 불가피하게 관계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제16조 제1항).

경찰은 집회의 규모 또는 조망불가능성으로 인하여 필요하고 그 집회참가자로부터 공공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나온다는 사실적 근거가 이를 정당화 경우에 한하여 경찰투입을 유도하고 지휘하기 위하여 옥외공개집회와 그 주변에 대한 실시간 영상·음향 전송(조망촬영)을 할 수 있다(제16조 제2항). 오로지 조망촬영만 인정하면서 ‘실시간’이라는 용어를 부가하여 저장의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하고 있고, 이를 활용한 신원 확인 등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촬영·녹음 및 영상·음향 자료화를 위한 기술의 사용은 공개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제1항에 따른 영상·음향 자료화 및 제2항에 따른 조망촬영의 시행은 집회주관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영상·음향 자료화에 관계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람의 신원이 확인되고 영상·음향 자료화의 허용된 사용목적이 위태롭지 않게 되는 즉시 그 조치에 대하여 알려야 하나, 불가피하게 관계된 제1항 제2문 소정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신원확인이나 과도한 수사에 의해서만 가능하거나 다른 관계인의 우월한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아도 된다(제16조 제3항). 견본법률안에서는, 몰래 촬영·녹음 또는 그에 상응한 영상·음향 자료화를 하지 않으면 그 대상이 된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이 위태롭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옥외집회에서 허용하고 있으나 본

법에서는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

제1항에 따른 영상·음향 자료는 집회 또는 그와 시적 및 물적으로 직접적 관계가 있는 사건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나, 1. 집회에서의 또는 집회와 관련한 범죄행위나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질서위반행위의 소추, 2. 관계인으로부터 집회에서 또는 집회와 관련하여 형법을 위반하려는 구체적 위험이 나오고 장래의 집회에 그로부터 형법을 위반하려는 위험이 새로이 나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위험 방지, 3. 공공의 안전에 대한 방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 대응의 기한 있는 문서화 또는 4. 경찰의 양성교육 및 재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파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그것에 의한 사람의 신원 확인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든 특별판을 제작하여야 하고, 그것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필요하지 않는 한 당해 자료가 생성된 때로부터 늦어도 6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영상·음향 자료의 파기는 문서화되어야 하고, 영상·음향 자료는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거론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제6조 제4항).

제1항에 따른 영상·음향 자료화 및 제4항에 따른 사용의 각 이유는 문서화되어야 하고, 이는 제1항에 따른 촬영·녹음 및 제2항에 따른 조망촬영의 문서화에 준용되며, 영상·음향 자료로부터 경찰의 양성교육 및 재교육을 위한 특별판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된 특별판의 수 및 그 보관 장소를 문서화하여야 한다(제16조 제5항).

경찰의 관청 정보보호담당관은 제4항 제4문 및 제5항에 따른 문서화의 의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데(제16조 제6항), 이는 본 법에서 처음으로 채용한 것이다.

2.7. 변장 및 호신장구 금지

실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 제17조의 규정은 견본법률안 제17조의 규정을 그대로 채용한 것이다. 호신장구를 Schutzwaffe 대신 Schutzaurüstung으로 표현한 것은 니더작센 집회법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옥외집회에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1. 사람의 신원을 은폐하기에 적합하고 상황에 따라 범죄행위 또는 질서위반행위 소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람의 신원 확인을 방해하기 적절한 물건 또는 2. 호신장구로 적합하고 상황에 따라 고권적 권한을 가진 당국자의 집행 조치를 저지하기에 적절한 물건을 소지하는 것은 금지된다(제17조 제1항). 관할 관청은 위 금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금지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묘사되어 있는 명령을 발한다(제17조 제2항). 변장 및 호신장구 금지(제17조)를 실행하기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제24조 제1항 제7호)는 1,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2.8. 사유지 내 공용 도로

실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 제18조의 규정은 견본법률안 제21조에

처음으로 규정된 것을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여 채용한 것이다. 집회, 특히 대규모 옥외집회가 개최되는 장소는 반드시 공공의 소유지에 한하지 않고 개인의 사유지로서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거나 개인의 사유지와 공공의 소유지가 불가결하게 연결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집회의 자유와 개인의 소유권이 충돌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 필요한 것이다.¹³⁰⁾

공중에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사유지 내의 공용 도로 상에 서는, 그것이 기업의 소유이거나 전적으로 (공공재산의 관리자로서의) 국가의 소유이거나 그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개집회를 거행할 수 있다(제18조). 견본법률안에서는 모두 동의 없이 집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달리 기업이나 국가가 아닌 개인의 소유인 경우 그 동의를 요하도록 하였다.

3. 옥내집회

3.1. 초청

실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 제19조에서는 견본법률안 제22조를 그대로 채용하여 옥내집회의 초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옥내공개집회를 개최하는 자는 그 초청 시에 특정된 인물 또는 인적 범위에 대하여 집회 참가를 배제할 수 있고, 옥내공개집회의 주관자는 인정된 기자증으로 그 신분을 증명한 언론사 기자들의 참석을

130) Arbeitskreis Versammlungsrecht, *ibid.* p. 60.

저지할 수 없다(제19조).

3.2. 제한, 금지, 해산

실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 제20조는 견본법률안 제23조 중 경찰의 참석에 관한 제3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받아 들여 옥내집회의 제한, 금지, 해산을 규정하였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호소 금지 규정도 본 조의 제7항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다.

관할 관청은 그 조치 발령 시 인식 가능한 상황에 따르면 1. 집회의 평화롭지 않은 진행, 2. 사람의 생명과 건강 또는 3. 집회에서 중죄 또는 직권으로 소추 가능한 경죄를 나타내는 발언이 행해지는 것을 위해 존속되는 것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있는 경우 옥내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집회 개시 후에는 해산도 할 수 있다(제20조 제1항). 이는 옥외집회 시보다 요건이 강화되었고, 금지 또는 해산은 제한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제20조 제2항) 같다. 제3자로부터 제1항에 거론된 법익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나오는 경우 그에 대응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또한 직무상 또는 집행상 원조를 통하여 보충되는 수단과 인력으로도 그 위험이 방지될 수 없는 경우 그 위험이 나오는 곳이 아닌 집회에 대하여도 그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제20조 제3항).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 하에 관할 관청에 의해 또는 사법적 긴급권리보호 절차에서 발하여진 집행 가능한 제한 처분, 금지 또는 해산에

위반한 주관자 또는 주최자(제24조 제1항 제5호)는 2,000유로 이하의, 그에 위반한 참가자(제24조 제1항 제6호)는 5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각각 처해진다.

제한 처분 또는 금지가 발하여져야 할 경우 그러한 처분을 정당화하는 전제조건이 확정된 후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하고, 집회 개시 이후의 제한 처분 또는 해산의 공지는 그 조치의 이유를 첨부하여 집회주관자에게 행해져야 하며, 그 처분에 대한 이의 및 취소소송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제20조 제4항). 집행정지효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바이에른 집회법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집회가 해산되었다고 선언되자마자 참석한 모든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장소를 떠나야 하고(제20조 제5항), 해산된 집회 대신으로 같은 장소에서 대체집회를 거행하는 것은 금지된다(제20조 제6항). 제20조의 요건 하에 이루어진 집회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장소를 떠나지 아니한 자(제24조 제1항 제9호)도 5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3.3. 질서문란자의 배제; 가택권

견본법률안 제24조에서는 옥내집회에 대하여도 옥외집회의 경우와 같이 관할 관청에 의한 ‘사람의 참가 또는 현존의 금지 및 배제’ 권한 규정을 채용하였으나 쉴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 제21조에서는 이를 채택하지 않고 ‘질서문란자의 배제; 가택권’이라는 표제 하에 주관자에 의한 자율적 통제만을 규정하였다.

집회를 주관하는 자는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참가자를 집회로부터 배제할 수 있고(제21조 제1항), 집회를 주관하는 자는 다른 참가자에 대하여 가택권을 행사한다(제21조 제2항).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배제 명령 이후에 지체 없이 그 장소를 떠나지 아니한 자(제24조 제1항 제8호)는 5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진다. 주관자를 일종의 공무수탁사인으로 보아 그 명령에 위반한 경우를 범칙금으로 처벌하는 것이 특이하다.

3.4. 촬영·녹음 및 영상·음향 자료화

실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 제22조의 규정은 기본법률안 제26조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몇몇 문장을 추가한 것이다.

제20조 제1항의 요건 하에 경찰은 옥내공개집회 시 또는 그와 관련하여 어떤 사람에 대한 촬영·녹음과 그에 상응한 영상·음향 자료화를 할 수 있고, 영상·음향 자료화는 다른 사람이 불가피하게 관계되는 경우에도 또한 정당화 될 수 있으면, 촬영·녹음 및 영상·음향 자료화는 공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제22조 제1항). 따라서 몰래 촬영·녹음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1항에 따라 영상·음향 자료화의 대상이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람의 신원이 확인되고 허용된 사용목적이 위태롭지 않게 되는 즉시 그 조치에 대하여 알려야 하나, 그 조치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관계된 제1항 제2문 소정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신원확인이 과도한 수사에 의해서만 가능하거나 다른 관계인의 우월한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아도 된다(제22조 제2항).

제1항에 따른 영상·음향 자료는 집회 또는 그와 시적 및 물적으로 직접적 관계가 있는 사건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하나, 1. 제20조 제1항 소정의 위험이 나오는 사람에 대한 집회에서 또는 집회와 관련한 범죄행위나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질서위반행위의 소추 또는 2. 관계인으로부터 집회에서 또는 집회와 관련하여 제20조 제1항 소정의 위험이 나옴과 장래의 집회에 그로부터 제17조 제1항 소정의 위험이 새로이 나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파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파기되지 아니한 영상·음향 자료는, 제1호 및 제2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법률상 구제(불복신청)나 사법 절차의 대상물이나 증거물인 경우가 아닌 한, 당해 자료가 생성된 때로부터 늦어도 6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영상·음향 자료의 파기는 문서화되어야 하고, 영상·음향 자료는 제16조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거론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제22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영상·음향 자료화 그리고 제3항에 따른 사용의 각 이유는 문서화되어야 하고(제22조 제4항), 경찰의 관청 정보보호 담당관은 제3항 제4문 및 제4항에 따른 문서화 의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제22조 제5항).

4. 범죄행위, 질서위반행위, 몰수, 비용

쉴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 제4장은 4개조, 즉 범죄행위, 질서 위반행위, 몰수 및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건본법률안 제4장을 거의 받아들인 것이나 건본법률안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 및 배상 규정은 채택하지 않았다.

형벌의 법정형 상한은 2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범칙금의 법정형 상한은 2,000유로 이하로 되어 있다. 형벌 및 범칙금 규정의 자세한 사항은 앞서 검토하였으므로 생략한다.

제23조 소정의 범죄행위 또는 제24조 소정의 질서위반행위에 관계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고, 이 경우 형법 제74a조와 질서위반 행위법 제23조가 적용된다(제25조). 이는 다른 집회법들과 대동소이한 표현이다.

이 법에 따른 직무행위는 무료이다(제26조). 이 또한 다른 집회법들과 같다.

5. 종결규정

5.1. 관할

쉴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 제5장은 2개조, 즉 관할과 기본권의 제한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자치단체장으로서의 독립시(kreisfreie Stadt)의 시장 및 군수는 옥외집회(제3조 제3항,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4항,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사물관할권을 가지고(제27조 제1항), 읍면(amtshfreie Gemeinde)의 장, 관공서의 장, 명예기관장은 옥내집회(제3조 제3항, 제20조)에 대하여 사물관할권을 가진다(제27조 제2항). 즉, 사물관할권을 경찰이 아니라 행정 관청에 맡기고 있으나, 유예할 수 없는 사안의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대신하여 경찰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27조 제5항).

그 관할 구역 내에서 집회가 개최되는 관청은 토지 관할권을 가지고, 옥외집회가 여러 자치단체장의 관할 범위에 관계되는 경우, 공통의 감독기관이 관할 관청을 결정한다(제27조 제3항).

주 내무 및 연방사무부는 지방행정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쉴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 해변해양 및 그 구역 내의 교량과 터널에서 개최되는 옥외공개집회 및 행진의 신고 접수에 대하여 사물관할권을 가지고, 이 경우 내무 및 연방사무부는 제3조 제3항, 제11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 제13조 제1항, 제4항, 제14조 제1항, 제2항, 제17조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토지관할 관청을 결정한다(제27조 제4항).

5.2. 기본권의 제한

기본권의 제한을 본 장에 규정한 것은 견본법률안의 예에 따른 것이다.

집회의 자유(기본법 제8조 제1항), 표현의 자유(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문)에 관한 기본권, 정보의 자기결정권(기본법 제1조 제1항과 결합된

제2조 제1항) 및 재산권(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1문)은 이 법에 따라서 제한된다(제28조). 집회의 자유 이외에 제한되는 기본권을 다수 열거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제5절 작센-안할트 집회법 및 작센 집회법

제1항 개설

작센-안할트 및 작센 주는 집회법을 제정하면서 연방 집회법의 체제와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대동소이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므로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작센-안할트 주는 '2009. 12. 3. 작센-안할트 주 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Gesetz des Landes Sachsen-Anhalt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Vom 3. Dezember 2009)'을 제정하였고, 이는 총 5장 30조 및 9개의 첨부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제1장(총칙)은 제1조(집회의 자유), 제2조(초청, 질서문란행위 및 무장 금지), 제3조(제복착용 금지)로, 제2장(옥내공개집회)은 제4조(공개집회의 금지), 제5조(참가범위의 제한), 제6조(집회주관자), 제7조(집회주관자의 권리의무), 제8조(질서유지인), 제9조(참가자의 의무), 제10조(배제권), 제11조(집회의 해산)로, 제3장(옥외공개집회)은 제12조(신고 의무), 제13조(제한, 금지, 해산), 제14조(추모장소 및 추모일), 제15조(무장 및 변장 금지), 제16조(옥외집회의 거행), 제17조(행진의 거행), 제18조(영상·음향 자료화), 제19조(기본권의 제한)로, 제4장(형벌 및 범칙금 규정)은 제20조(집회 방해), 제21조(집회주관 방해), 제22조(금지된 집회 참가에 대한 공개적 권유), 제23조(무장한 질서유지인 사용), 제24조(제한 불복), 제25조(금지 또는 해산 처분 불복), 제26조(무장 또는 변장 금지 불복), 제27조(제복착용 금지 불복), 제28조(질서위반행위), 제29조(몰수의 요건)로, 제5장(종결규정)은 제30조(발효)로, 마지막으로 9개의 첨부(제14조 제1항에 따른)

규정으로 되어 있다.

이는 표제에서 알 수 있듯이 연방 집회법을 대부분 수용하여 조문 내용과 순서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다만, 최고법원의 판결과 헌법적 사고를 고려하여 몇몇 조문을 수정하였고, 옥내집회 시 경찰의 참관 및 촬영·녹음 관련 규정을 도입하지 않는 등 변화를 주어 과연 연방 집회법을 대체한 법률인가 라는 논란을 피하고 있다.

반면, 작센 주는 ‘2010 1. 20. 작센 공화국에서의 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im Freistaat Sachsen Vom 20. Januar 2010)’을 제정하였다가 작센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형식 흠결을 이유로 무효가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2012. 1. 25. 작센 공화국에서의 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im Freistaat Sachsen Vom 25. Januar 2012)’을 새로이 제정하여 공포하였고, 다시 ‘2013. 12. 17. 개정 법률(Gesetz vom 17. Dezember 2013, SächsGVBl. S. 890, 891)’ 제4조에 의하여 제12조와 제20조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센 집회법은 여전히 연방 집회법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고 있어 그것이 과연 연방 집회법을 대체하는 법률인가 라는 헌법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¹³¹⁾ 기본적으로 주의 입법자는 연방법과 동일한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도 한정 가능한 일정 범위는 직접 규율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131) Dürig-Frindl-Enders, ibid, pp. 4-5 m. 14.

현행 작센 집회법은 총 5장 33조 및 1개의 첨부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총칙)은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2장(옥내공개집회)은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제3장(옥외공개집회 및 행진)은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4장(형벌 및 범칙금 규정)은 제22조부터 제31조까지, 제5장(관할)은 제32조 및 제33조로, 마지막으로 1개의 첨부(제15조 제2항 제4문에 따른) 규정으로 되어 있다. 이는 연방 집회법이 제4조와 제31조가 폐지되고 제12a조, 제17a조, 제19a조 및 제19a조가 추가된 것을 감안하면 연방 집회법과 조문 내용과 순서가 거의 같은 셈이다.

따라서 작센-안할트 및 작센 집회법에 대해서는 연방 집회법에서 설명한 내용이 대부분 적용되므로 이하에서는 그와 다른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제2항 주요 내용

1. 작센-안할트 집회법

1.1. 총칙

작센-안할트 집회법 제1조 및 제2조는 연방 집회법과 일치한다. 다만, 제3조(제복착용 금지)에서는 연방 집회법의 규정에 ‘그것으로부터 위협적 효과가 나오는 한’이라는 요건을 부가하는 대신 청소년협회 구성원에 대해 제복착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2항은 도입하지 않았다. 이는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비판에 따라 청소

년이 아니더라도 위협적 효과가 없으면 제복착용을 허용함으로써 그 제한을 완화한 것이다.

1.2. 옥내공개집회

이 장의 모든 규정은 연방 집회법의 해당 규정을 그대로 도입한 것이다. 다만 연방 집회법 제12조(경찰의 참관), 제12a조(촬영·녹음)는 도입하지 않았는데, 옥내집회는 그 외부적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공권력에 의한 통제를 배제하고 자율적 통제에 맡긴 것이다.

1.3. 옥외공개집회

1.3.1. 신고 의무

작센-안할트 집회법 제12조에서는 연방 집회법 제14조의 내용에 신고 의무 면제와 관할 관청과 주최자의 협력 의무를 추가하였다. 먼저, 집회가 실제의 동기에서 순간적으로 주최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우발적 집회) 및 신고기간의 준수로 인하여 집회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긴급집회)에 신고 의무를 면제하였다(제12조 제1항 제2문).

다음으로 협력 의무의 내용은, 관할 관청은 집회 거행의 상세한 사항, 특히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합한 조치를 주최자와 의논하고, 집회의 질서 있는 거행을 위해 작용하며, 주최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하고 유용한 질문을 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주최자는

관할 관청과 협력하여야 하며, 특히 집회의 종류, 규모 및 예상 결과에 관한 정보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제12조 제1항 제2문). 이 조항들은 집회법초안, 바이에른 집회법 등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1.3.2. 제한, 금지, 해산

작센-안할트 집회법 제13조는 연방 집회법 제15조의 내용 중 ‘부담(Auflage)’을 ‘제한(Beschränkung)’으로 바꾼 것 이외에는 그 내용이 대동소이한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담이라는 부관을 붙일 수 있느냐 하는 법리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추모장소 집회금지에 대해서는 연방 집회법보다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 즉 대상자에 나치의 희생자 이외에 제2차 세계대전의 민간인 또는 군인 희생자들(제13조 제2항 제1문 제1호 c목), 소련 점령 및 독일사회주의통일당 독재 기간 중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한 희생자들(같은 호 d목)을 추가하고, 그 추모장소 뿐만 아니라 추모일이나 그 이외에 나치의 폭력적 통치의 공포를 상기하게 하는 날짜(제13조 제2항 제2문 제1호) 또는 그것이 특히 빈번히 행해진 날짜(제13조 제2항 제2문 제2호)에도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13조 제2항 제2문 제1호에 따른 날짜는 1월 27일 및 30일, 5월 8일, 7월 20일, 9월 1일 그리고 11월 9일로, 제13조 제2항 제2문 제2호에 따른 날짜는 4월 20일로 각 특정되어 있다(제14조 제2항). 이는 작센-안할트 주는 나치의 통치 이후에도 소련 및 동독의 권위주의 통치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의 반영된 규정으로 보인다.

1.3.3. 추모장소 및 추모일

작센-안할트 집회법 제14조는 집회금지구역법 수권규정인 연방 집회법 제16조를 대체하는 규정이다. 즉 작센-안할트 주는 종래 연방 집회법의 수권에도 불구하고 주 의회 보호를 위한 집회금지구역법을 제정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새로이 제정한 집회법에도 관련 규정을 두지 않는 대신 제13조 소정의 추모장소 및 추모일에 대한 보충규정으로 제14조를 둔 것이다. 제1항에서는 추모장소 9개소를 규정하면서 그 장소의 공간적 경계는 첨부에서 확정하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는 위와 같이 추모일을 규정하였다.

1.3.4. 무장 및 변장 금지

작센-안할트 집회법 제15조는 그 표제에 다른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호신장구 및 변장 금지를 규정한 연방 집회법 제17a조와 거의 일치한다. 차이점은 그 금지의 예외 허용과 관련하여 연방 집회법은 ‘관할 관청은 공공의 안전 또는 질서가 위태롭게 될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금지에 대한 더 이상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로 규정함에 반하여 작센-안할트 집회법은 ‘관할 관청은 평화성이 위태로워질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금지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여야 한다**.’로 규정한 것이다.

1.3.5. 옥외집회의 거행, 행진의 거행

작센-안할트 집회법 제16조(옥외집회의 거행), 제17조(행진의 거행)는

각각 연방 집회법 제18조, 제19조의 내용과 동일하다.

1.3.6. 영상·음향 자료화

작센-안할트 집회법 제18조는 촬영·녹음을 영상·음향 자료화로 바꾼 것 이외에는 연방 집회법 제12a조와 같다. 바이에른 집회법의 용어 사용 예에 따라 보다 포괄적인 새로운 용어를 도입한 것이다.

1.3.7. 기본권의 제한

작센-안할트 집회법 제19조에서는 ‘제12조 내지 제18조는 집회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기본법 제8조 제1항, 작센-안할트 주 헌법 제12조 제1항)을 제한한다. 제18조는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권(기본법 제1조 제1항과 결합한 제2조 제1항, 작센-안할트 주 헌법 제6조 제1항)을 제한한다.’로 연방 집회법보다 제한되는 기본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1.4. 형벌 및 범칙금 규정

동 장의 규정도 연방 집회법의 해당 규정과 대부분 일치한다. 다만, 제20조(집회 방해)는 그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제27조(제복착용 금지 불복)는 그 법정형이 6월 이하의 자유형으로 각각 완화되었고, 연방 집회법 제26조 제2호에서 범죄행위로 처벌되었던 미신고 옥외집회 거행은 질서위반행위로 의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제28조 제1항 제2호), 범칙금은 1,500유로 이하로 통일되었다

(제28조 제2항).

1.5. 기타 규정

제30조(발효)에 의해 이 법은 그 공포 다음 날에 발효되었다. 첨부 규정에 의하여 추모장소 9개소의 구체적 경계가 확정되었다.

2. 작센 집회법

2.1. 총칙

작센 집회법의 총칙 규정은 연방 집회법 해당 조문과 거의 일치하나, 집회법 이론의 발전에 따른 몇몇 조문을 추가하거나 수정하였다.

먼저, 제1조에 정의 규정으로 2개 항을 추가하였다. 제3항에서는 집회의 정의를, 제4항에서는 공개집회의 정의를 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집회법초안, 바이에른 집회법 등과 동일하다.

다음, 제3조에서는 연방 집회법의 규정에 ‘그 외관 때문에 또는 집회의 형태 구성을 통하여 폭력지향성을 전달하고 그것을 통하여 다른 집회참가자 또는 외부인들에게 위협적 효과를 미치는 경우’라는 요건을 부가하는 대신 작센-안할트 집회법과 같이 청소년협회 구성원에 대해 제복착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2항은 도입하지 않았다.

2.2. 옥내공개집회

작센 집회법 제2장의 규정은 연방 집회법의 해당 규정과 거의 그대로 일치하고, 단지 경찰의 참관과 촬영·녹음 관련 규정이 일부 수정되었을 뿐이다.

먼저, 작센 집회법 제11조 제2항은 연방 집회법 제12조와 같고, 그 조에 제1항으로 ‘경찰관은,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할 있는 경우 공개집회에 파견될 수 있다.’를 추가하였다. 옥내집회 시 경찰관 파견의 요건을 부가함으로써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약을 최소화 하도록 한 것이다.

다음, 작센 집회법 제12조는 연방 집회법 제12a조와 거의 일치하고 제2항만 ‘그 자료들은, 참가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소추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닌 한 공개집회 또는 그와 시적 및 물적으로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건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파기되어야 한다.’로 변경되었다. 즉 보존 사유 중 장래의 위험 방지 목적과 최장 보존기한 3년 규정을 제외한 것이다.

2.3. 옥외공개집회

작센 집회법 제3장의 규정도 연방 집회법의 해당 조문과 거의 일치하나 집회법 이론의 발전을 반영하여 몇몇 조항이 추가되었다.

먼저, 작센 집회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은 연방 집회법 제14조와 일치하나, 제3항 내지 제5항을 신설하여 긴급집회와

우발적 집회의 신고와 협력의무를 규정하였다. 즉 신고 기한을 준수하면 집회에 따르는 목적이 위태롭게 되는 경우(긴급집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하고 그 경우 그 집회는 지체 없이 신고 되어야 하며(제3항), 집회의 공지가 집회의 개시와 동시에 있는 경우(우발적 집회) 신고의무는 면제된다(제4항). 또한, 집회의 종류와 규모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관할 관청은 주최자 또는 주관자에게 질서 있는 집회 거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위험상태 및 기타 상황을 의논하기 위하여 적시에 협력대화를 제안하고, 관할 관청은 협력의 범위 내에서 주최자 또는 주관자에게 그것이 집회의 종류 및 규모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집회 전 또는 도중에 위험상태의 현저한 변경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한다(제5항).

다음, 작센 집회법 제15조 제1항 역시 연방 집회법 제15조 제1항의 ‘부담’을 ‘제한’으로 변경하였는데,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또한, 제15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추모장소 집회 금지와 관련하여 나치의 희생자 이외에 공산주의와 전쟁의 희생자를 포함시켰는데, 이는 작센-안할트 주와 마찬가지로 소련 및 동독의 권위주의 통치 경험에 따라 추가된 규정으로 이해된다.

다음, 작센 주도 작센-안할트 주와 마찬가지로 이전부터 주 의회 보호를 위한 집회금지구역법을 제정하지 않았고 새로 제정한 집회법에서도 관련 규정을 도입하지 않았다.

다음, 옥외집회 촬영·녹음과 관련하여 조망영상 전송 규정을 도입하였다. 즉, 경찰은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 집회의 규모 또는

집회상태의 조망불가능성 때문에 경찰투입을 유도하고 지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적으로만 옥외집회와 행진 및 그 주변에 대한 조망영상 전송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사람의 신원 확인이나 조망영상 자료화는 허용되지 않는다(제20조 제2항). 이 규정은 니더작센 집회법의 해당 조문을 전송에 한하여 도입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본권의 제한 규정은 작센-안할트 집회법과 같이 연방 집회법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하였다. 즉, 집회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작센 주 헌법 제23조 제1항), 정보의 자기 결정에 관한 기본권(기본법 제1조 제1항과 결합된 제2조 제1항) 및 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권(작센 주 헌법 제33조)은 이 법에 의해 제한된다(제21조).

2.4. 형벌 및 범칙금 규정

작센 집회법 제4장의 규정은 집회 방해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2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변경하고(제22조), 범칙금을 500유로 이하와 2,500유로 이하로 2분한 것 이외에는 연방 집회법과 같다.

2.5. 관할

작센 집회법은 제5장에 연방 집회법이 종결규정을 둔 것과 달리 관할을 규정하였다.

먼저, 사물관할은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Kreis) 경찰관청에 있다. 그 내용에는 무기 및 유사한 물건 소지 허가, 옥내집회의 금지, 옥외공개집회 및 행진의 신고 수리, 집회 또는 행진에 대한 금지와 해산 및 제한 부과, 호신장구 및 변장 금지에 대한 예외 허가, 질서유지인의 사용에 대한 인가 등이 포함된다(제32조 제1항). 경찰의 집행부서는 질서유지인의 수 및 그 적절한 제한에 관한 안내권 행사, 촬영과 녹음, 집회와 행진의 해산, 호신장구 및 변장 금지의 시행을 위한 명령, 사람 및 참가자의 배제 등 권한을 가진다(제32조 제2항).

다음, 토지관할은 그 관할 구역 내에서 집회가 개최되는 기초자치단체 경찰관청에 속한다(제33조 제1항). 행진이 다수의 기초자치단체 경찰관청의 관할 구역에 관계되는 경우, 그 관할 구역에서 행진이 시작되는 경찰관청이 토지관할권을 가진다(제33조 제2항). 여러 기초자치단체 경찰관청의 관할 구역에서 시작되는 다수의 행진들이 하나의 종착지를 가지는 경우, 그 관할 구역에 종착지를 가지는 경찰관청이 토지관할권을 가진다(제33조 제3항).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관할 경찰관청은 여타의 관계된 경찰관청과의 협의에서 결정권을 가진다(제33조 제4항).

종래 집회법에서는 관할 규정을 두지 않고 경찰법 등 일반 규정에 의하였으나 원칙적으로 해당 법률에 관할 규정을 두는 독일의 입법례에 따라 관할 규정을 도입하였고 이는 향후 일반화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첨부 규정에 의하여 제15조 제2항 제4문에 따른 장소의 구체적 경계가 확정되어 있다.

제6절 브란덴부르크 집회법 및 베를린 집회법

제1항 개설

2006. 8. 28. ‘연방제 개혁법’에 따른 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집회법에 관한 입법권이 주의 전속권한으로 변경된 이후 독일의 16개 주 중에서 브란덴부르크 주가 제일 먼저 주 내의 집회금지 구역을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2006. 10. 26. 묘지와 그 주변에서의 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an und auf Gräberstätten vom 26. Oktober 2006)’을 제정하여 집회금지구역법 수권 규정인 연방 집회법 제16조를 대체하였고 이는 같은 달 31. 발효되었다. 베를린은 ‘2013. 4. 23. 옥외집회 및 행진에서의 촬영·녹음과 영상·음향 자료화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Aufnahmen und Aufzeichnungen von Bild und Ton bei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und Aufzügen Vom 23. April 2013)’을 제정하여 옥외집회 시 촬영·녹음에 관한 규정인 연방 집회법 제19a조를 대체하였고 이는 같은 달 28. 발효되었다.

즉 이들 주는 연방 집회법의 일부 조항만 각 주의 실정에 맞게 새로이 제정하여 대체하고, 나머지 연방 집회법의 규정들은 계속 적용하는 방식으로 집회법 입법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이는 이들 주 정부가 사회민주당 또는 사회민주당과 진보 정당들의 연립 정부로 구성됨에 따라 주 정부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는 집회법 전체를 재구성하는 정치적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를린 집회법 제1조 제3항에 대하여는

위헌 논란이 제기되었다. 베를린 집회법 제1조 제3항은 연방 집회법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조망촬영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베를린 헌법재판소는 ‘2014. 4. 11. 판결(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hofes des Landes Berlin vom 11. 04. 2014 - VerfGH 129/13, GVBl. S. 103)’을 통하여 헌법에 합치된다고 하여 논란을 종식시켰다.

브란덴부르크 집회법은 총 3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1조(옥외집회의 금지), 제2조(연방 집회법 대체), 제3조(기본권의 제한)이다. 베를린 집회법은 총 4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1조(촬영·녹음의 실행), 제2조(집회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의 제한), 제3조(집회법 제19a조 대체), 제4조(발효)이다.

이하에서는 그 주요 내용을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제2항 주요 내용

1. 브란덴부르크 집회법

1.1. 옥외집회 금지

옥외공개집회 및 행진은 묘지(브란덴부르크 주 묘지법 시행을 위한 법률 제1조 제2항¹³²⁾) 및 이 법을 통하여 또는 이 법을 근거로 특정된

132) § 1 Anwendungsbereich

(2) Gräberstätten im Sinne dieses Gesetzes sind Geländeflächen, auf denen Gräber nach § 1 Abs. 2 des Gräbergesetzes liegen, soweit auf ihnen zugunsten des Landes eine öffentliche Last nach § 2 Abs. 2 des Gräbergesetzes ruht, 즉 묘지법 제1조 2항에 따른 묘지가 설치되어 있는 대지를 의미한다. 묘지법 제1조 제2항 소정의 묘지는 주 내에 있는 ‘전쟁 및 폭력적 통치의 희생자 묘지’를 말한다.

묘지와 직접적이고 공간적으로 밀접한 주변에서는 금지된다(제1조 제1항).

개개의 경우에 관할 관청은 주최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금지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으나, 집회 또는 행진의 외부적 경과 또는 대상, 특히 처벌이 예상되지 않는 특정 견해의 선언이 나치의 불법을 옹호하는 등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다(제1조 제2항). 그러한 경우로, 나치 전몰장병 추모 또는 나치 군대 최고사령관 포고의 형식이나 내용 또는 명확히 특징지어진 나치 기관의 관습 및 관례에 연결되는 경우(제1호), 침략전쟁, 폭력적 통치, 집단학살, 비인도적 범죄 또는 전쟁범죄의 불법을 단지 일부 일지라도 부인, 승인되거나 또는 그 해악이 과소평가되는 경우(제2호), 이러한 불법이나 나치의 폭력적이고 자의적인 통치 유지에 책임 있거나 단지 사실적인 협력이, 또한 단지 군인다운 업적을 고려하여, 명예롭거나 그렇지 않으면 모범적인 것으로 표현되는 경우(제3호)가 열거되어 있다. 즉, 집회의 장소적 제한이 나치의 불법뿐만 아니라 침략전쟁, 비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일반으로 확대되어 있다.

제1조 제3항에서는 집회금지 장소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이는 주의 법규명령을 통하여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수권되어 있다(제1조 제4항).

1.2. 연방 집회법 대체

이 법은 연방 집회법 제16조를 대체한다(제2조). 따라서 브란덴

부르크 주에서는 위 조항을 제외하고 연방 집회법이 계속 적용된다.

연방 집회법 제16조는 주 입법기관을 위한 집회금지구역 설정을 주의 법률에 위임하는 내용의 규정이다. 브란덴부르크 주가 집회법을 제정하여 이 규정을 대체한 것은 향후 주 입법기관 즉 주 의회를 위한 집회금지구역법률을 제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브란덴부르크 주는 연방제 개혁법 이전에도 연방 집회법의 수권에도 불구하고 집회금지구역법률을 제정하지 않았고 그러한 기초를 계속 이어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브란덴부르크 주가 연방 집회법 제15조 제2항의 수권에 따라 집회가 금지되는 나치 희생자 추모장소를 지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결국 브란덴부르크 주에는 집회의 장소적 제한을 규정한 2개의 법률이 있는 셈이다.

1.3. 기본권의 제한

이 법은 집회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기본법 제8조 제1항, 브란덴부르크 주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관한 기본권(기본법 제5조 제1항, 브란덴부르크 주 헌법 제19조 제1항)을 제한한다(제3조). 개별적 법률유보에 따른 인용강제로서 규정된 것으로 연방 집회법과 달리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관한 기본권과 브란덴부르크 주 헌법도 함께 인용하고 있다.

2. 베를린 집회법

2.1. 촬영·녹음

베를린 집회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은 옥외공개집회·행진 시 촬영·녹음과 그 자료의 활용 및 파기에 관한 규정으로서 연방 집회법 제19a조에서 준용하고 있는 제12a조 제1항 및 제2항 완전히 일치한다. 따라서 베를린 집회법은 연방 집회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옥외집회 시 조망촬영 규정을 도입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제3항¹³³⁾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경찰은, 개별적인 사안에 있어 집회의 규모 또는 조망불가능성으로 인하여 경찰투입을 유도하고 지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한하여 공개적으로만 옥외집회 및 행진과 그 주변에 대한 조망촬영을 할 수 있다. 그 경우 조망촬영은 공개적으로만 행해져야 하고, 조망영상 자료화나 참가자의 신원확인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조망촬영의 실행은 지체 없이 집회주관자에게 알려야 한다. 베를린 집회법에서 조망촬영만 허용하고 조망영상 자료화나 참가자 신원확인을 전혀 허용하지 않은 것은 집회의 자유를 보다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133) 연방 집회법의 동 항은 형사소송법 등에 따른 인적 정보 수집에 관한 것으로 당연한 것을 규정한 것으로 삭제해도 무방하므로 이를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2.2. 기타 규정들

제2조는 인용강제 규정으로서 연방 집회법 제20조와 같다.

제3조는 이 법으로써 연방 집회법 제19a조를 대체한다는 내용으로, 이로써 베를린에는 위 조항을 제외하고 연방 집회법이 계속 적용되는 것이다.

제4조는 발효규정으로서, 베를린 법령공보에 공포한 다음 날에 발효된다고 되어 있고, 그 날짜는 2013. 4. 18.이다.

연방 집회법

바이에른 집회법

니더작센 집회법



Germany

실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

작센-안할트 집회법

브란덴부르크 집회법

베를린 집회법

제4장

독일 집회법의 시사점

제1절 개설

제2절 시사점

제4장 독일 집회법의 시사점

제1절 개설

흔히 우리 법제는 대륙법계인 독일의 법제를 일본을 통하여 계수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공사법을 막론하고 독일법의 체계와 이론을 우리 법제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집시법의 내용과 체계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독일법제의 영향을 적게 받았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운 바, 그런 견지에서 앞서 살펴 본 독일 집회법의 내용들이 우리 집시법에 주는 시사점은 더 클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본 장에서는 독일 집회법 곳곳에 산재해 있는 의미 있는 내용들을 추출하여 그것들이 주는 시사점을 음미해보기로 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독일은 연방 집회법 단일 규율 시대에는 연방 집회법 자체에도 몇 차례 중요한 개정이 있었음은 물론이지만 그와 함께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를 통하여 중요한 집회법 이론의 발전이 있어 왔고, 이는 연방제 개혁 이후 각 주의 집회법 입법 시에 적극 반영되기에 이르렀다. 연방제 개혁 이후 집회법초안이

제시되었고, 이어서 브란덴부르크 집회법, 바이에른 집회법, 작센-안할트 집회법, 건본법률안, 니더작센 집회법, 작센 집회법, 베를린 집회법, 쉴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이 차례로 등장하였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그보다 앞서 나타난 법률안 또는 법률의 영향을 대폭 혹은 일정 부분 받아들이는 한편 각 주의 실정에 맞는 집회법 규율을 채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직까지 독자적인 집회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나머지 주들도 새로이 집회법을 제정하게 된다면 그러할 것으로 능히 예상된다. 또한, 지금까지 제정된 법률이나 법률안들을 살펴보면, 오랜 시간의 흐름과 집회법 이론의 변천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공통적으로 채택되는 독일 집회법에 고유한 내용들을 여럿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독일 집회법이 다른 나라의 집회법제에 시사점을 던져 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 중 중요한 것들을 열거해 보면 집회의 정의 규정, 집회의 평화성 규정, 집회 관련 촬영·녹음 규정, 집회의 사전 제한 및 금지 규정, 추모장소 및 추모일 집회 금지 규정, 호신장구 및 변장 금지 규정 등을 들 수 있다. 이하에서는 그것들이 주는 시사점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제2절 시사점

1. 집회의 정의 규정

연방 집회법에서는 집회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집회의 개념은 불가피하게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해 형성되었다. 그 판례의 내용에 따라 집회법초안에서 집회의 정의 규정을 제시하였고, 이는 그 후 각 주의 집회법들에서 그대로 채택되었다.

독일의 집회법들은 집회를 ‘공동의, 주로 공적인 의사형성에의 참여를 위한 토론이나 시위를 목적으로 하는 적어도 2인 이상의 어떤 장소에 고정되거나 움직이는 회합’으로 정의한다. 이는 행진을 ‘움직이는 집회’로 보아 집회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집회의 최소 구성인원에 대하여 ‘2인 이상설’¹³⁴⁾을 채택한 것이다. 그에 따라 공적인 의사형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치인이나 연예인의 지역 방문행사, 지역주민들의 정기모임 등과 이른 바 ‘1인 시위’는 집회에 개념에서 제외되어 집회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 것이다.

공적인 의사형성을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다른 목적인지 불분명한 모임에 대하여는 그 모임의 중점 즉 주로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의해 집회인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그에 따라 음악축제 등 대규모 군중 모임도 집회로 평가받을 여지가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 집시법에서는 시위의 정의만 규정하고 달리 집회의 정의를 규정하지 않아 불필요하게 집시법이 적용될 여지가 독일보다 큰

134) 쉴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만 예외적으로 ‘3인 이상설’을 채택하였다.

것으로 보이므로, 그 동안 축적된 판례와 이론을 참고하여 집회의 정의 규정을 집시법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집회의 평화성

독일 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집회의 평화성을 ‘평화적으로 그리고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방 집회법에서는 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집회법초안에서 이를 받아들인 이후 각 주 집회법들에서는 대부분 이를 채택하고 있다. ‘평화적으로’는 집회의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무기 소지는 평화성에 대한 별도의 판단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집회의 평화성을 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연방 집회법과 각 주 집회법들에서는 무기 소지 이외에 집회의 평화성을 해하는 것으로 제복착용 금지 나아가 군사적 행태 금지를 예외 없이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나치의 그러한 전통과 이를 모방하는 네오나치 등 극우주의들의 집회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애초 도입되었다가 유사한 극좌주의자들의 행태에 대하여도 적용이 확대된 것으로서 다른 나라에서는 예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독일에서는 그 특별한 역사적 경험에 의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독일은 기본법 자체에서 집회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의 범위를 평화적이고 비무장인 집회로 제한하고 있지만 그러한 제한이 없는 우리 헌법의 해석상으로도 폭력적이거나 무장한 집회는 집회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즉, 우리 헌법 하에서도 폭력적이거나 무장한 집회의 자유는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집시법에서라도 그러한 헌법 정신을 구현하는 선언적 규정이라도 두는 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된 폭력 집회에 대한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각종 위험한 집회 및 시위 도구, 예컨대 화염병, 죽창, 가스통 등에 대한 특별한 규제 규정을 두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이다. 이는 그동안 꾸준히 문제되었던 노동 또는 시민단체의 시위뿐만 아니라 근래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극렬 보수단체의 시위에 대한 대책을 위하여도 필요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집회 관련 촬영·녹음

집회의 상황이나 참가자들에 대한 촬영·녹음은 종래 범죄행위 소추나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채증 활동이나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예방적 경찰활동의 일환으로 이해되어 형사소송법, 경찰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촬영·녹음 자료에 의해 집회 참가자의 신분이 노출되고 그에 따라 정보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는 시민단체의 반발이 있어 왔고, 특히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집회 참가를 망설이게 되어 집회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 집회법에 촬영·녹음 규정을 채택한

것은 호신장구 및 변장 금지 규정의 도입과 관련이 있다. 즉, 연방 집회법에 호신장구 및 변장 금지 규정을 도입할 때 당국의 촬영·녹음에 대응하여 자기 방어를 위하여 복면 등 변장을 한다는 반대 논리에 부딪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방 집회법 제12a조로 촬영·녹음 규정도 함께 채택하였다. 그것은 특별법인 집회법에 종래 경찰법이나 일반 행정법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 촬영·녹음을 하도록 규정하여 그 남용 가능성을 없앴으로서 위와 같은 비판론에 응답을 한 것이다. 이후 주의 집회법들에서는 예외 없이 이를 받아들였고, 나아가 단순한 촬영·녹음과 영상·음향 자료화의 구분, 조망 촬영 및 조망영상 자료화 규정 도입, 저장 개념이 완전히 배제된 영상·음향 전송 개념 도입 등 각 주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규율을 도입하게 되었다. 집회법초안이나 견본법률안에서는 몰래 촬영·녹음에 대하여도 일정한 요건 하에 가능하게 규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상황도 독일과 유사하다. 경찰의 집회와 관련한 채증 활동에 대하여 끊임없이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그에 따라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저해될 위험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집시법에 집회 관련 촬영·녹음 규정을 두어 그 요건과 활용 범위 등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4. 집회의 사전 제한 및 금지

독일 연방 및 각 주의 집회법들에서는 예외 없이 집회의 해산과

동일한 요건 하에 공개집회의 사전 금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보다 완화된 요건으로 집회의 제한도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공개집회인 이상 그 외부효로 인하여 사전 제한이나 금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집회 개최의 자유가 침해되어 집회가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과 같다는 비판도 찾아보기 어렵다.

집회의 사전 제한 및 금지는 집회의 신고와도 관련이 없다. 즉, 집회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에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신고 내용은 다만 집회의 제한이나 금지 처분 결정 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심지어 신고제가 배제되어 있는 옥내집회에 대해서도 사전 제한이나 금지가 가능하다. 옥내집회는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대상이 아니지만, 그 역시 기본법 제8조 제1항의 법문과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에 의해 제한되는 상대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당연히 사전 제한이나 금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옥내 집회의 제한이나 금지의 요건도 니더작센 집회법의 경우 기본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집회의 평화성에 한정하였으나 연방이나 다른 주 집회법들에서는 범죄행위 추구 등 다른 요건도 추가하여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또한, 우리 집시법에서 **집회 개시** 48시간 전까지 집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독일의 집회법들은 예외 없이 **집회 공지**(초청) 48시간 전까지 집회 신고를 하도록 요구하여 실제로는

집회 개시까지의 기간이 더 긴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에른 집회법에서는 집회 개시 시까지 촉박한 일정을 고려하여 집회의 사전 제한이나 금지 처분에 대한 이의에 대하여 집행정지 효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이 독일 집회법은 집회의 사전 제한이나 금지를 당연히 하고 있고 실제로도 빈번히 행해지고 있으며 단지 제한이나 금지의 요건의 타당성이나 그 충족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다. 앞서 본 브룩도르프 결정도 집회의 사전 금지 명령 및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과 관련된 결정이었는데, 이는 집회의 사전 제한이나 금지 자체는 기본법에 합치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면서 다만 그 요건의 당부에 대하여 기준을 제시한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 집시법 상의 집회 금지 통고 제도를 들어 이로써 집회를 허가제로 운영한다는 비판은 그 논리적 정합성이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우리도 집회의 사전 제한이나 금지가 집회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 침해인가 아닌가 하는 시대착오적인 논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제한이나 금지 요건의 타당성이나 그 충족 여부로 논의의 초점을 옮길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5. 추모장소 및 추모일 집회 금지

독일 연방 및 각 주의 집회법들에서는 예외 없이 집회에 대한 일반적 금지뿐만 아니라 특별한 장소적 및 시간적 금지도 규정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추모장소 및 추모일 집회 규정이다. 이는 네오

나치 등 극우주의자들의 집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방 집회법 개정으로 인해 그 제15조 제2항에 도입되었고 그 이후 각 주의 집회법에 예외 없이 규정되고 있다. 연방 집회법과 다수의 주에서 나치 희생자 추모장소 및 추모일에 대하여 집회의 제한이나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공산 통치의 경험을 가진 일부 주에서는 이를 공산 통지나 전쟁범죄의 희생자 추모장소 및 추모일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그러한 추모장소나 추모일의 집회는 일응 집회의 평화성에 반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그것보다는 독일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즉, 법이란 인류의 보편적 경험이나 가치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특별한 역사적 경험과 가치도 반영하고 있다는 확실한 사례라고 할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러한 입법이 독일에서는 당연시된다는 사실은 우리의 경우에도 역사적 경험이나 국민의 일반적 법감정에 비추어 받아들여지는 특유의 규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컨대 야간집회 금지 등 우리 집시법상의 규정들과 관련하여 그동안 제기된 수많은 폄하와 비판들이 과연 우리 집회의 역사적 경험이나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얼마나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6. 호신장구 및 변장 금지

호신장구 및 변장 금지 규정은 과거 집회 내부에서 호신장구나 변장을 한 사람들이 과격하고 폭력적인 집회를 유도하거나 선도한

수많은 사례들과 익명성이 폭력성을 증대시킨다는 과학적 논증 등을 근거로 연방 집회법 개정 시에 도입된 것이다. 이는 도입 당시부터 집회의 자유와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집회 참가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라는 거센 반대논리에 부딪쳐 전술한 바와 같이 집회 관련 촬영·녹음 규정도 함께 도입한다는 일종의 타협을 거쳐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그와 같이 채택 시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그 이후 각 주의 집회법에서는 이를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받아들이고 있고 향후의 입법에도 달라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 규정은 보수 정권 하에서 도입되었으나 그 이후 진보 정권으로의 정권 교체가 있었고, 각 주에서도 혹은 진보정권 혹은 보수정권으로 집권당이 달랐음에도 이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수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입법화된 것은 함부로 변경하지 않는 독일의 법치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그에 대한 존중을 느끼게 된다. 또한 위와 같은 입법 태도로 보아 호신장구 및 복면 금지에 대한 논란의 실익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호신장구 및 복면 금지에 대하여 사회적, 학술적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 집회 문화가 독일보다 더 품위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독일의 사례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연방 집회법

바이에른 집회법

니더작센 집회법

Germany

실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

작센-안할트 집회법

브란덴부르크 집회법

베를린 집회법

제5장

결 어

제5장 결 어

연례행사로 되풀이되는 노동단체 주도의 폭력적 집회·시위에서 보듯이 우리 집회 문화는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걸맞지 않는 후진적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 원인에 대하여 과거 식민지배 경험에 따른 공권력에 대한 잠재적 저항의식의 표출,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공권력의 편파적인 법 집행에 대한 항거 문화 확산, 약자의 폭력이나 저항에 관대한 국민 의식 등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지만, 과연 그것들이 지금의 시대 상황에서도 그대로 용인되어야 할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불법집회 특히 폭력적 집회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국민 의식의 선진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나 이는 집회 관련 법제의 선진화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그 최소한도의 요소는 법 집행의 공정성·일관성·적정성의 확보, 사회현실에 맞는 법 제도의 마련, 국민들의 법질서

준수의식의 확립 등을 꼽을 수 있고, 이러한 요소들은 상호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될 수밖에 없다.

현실에 맞는 법령이 되어야 법 집행기관이 정치적 영향이나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고 일관되게 법을 집행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사례가 축적되어 평화적인 집회 문화가 정착되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에 맞는 법령이 있어도 법 집행기관이 이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법령은 장식품에 불과하게 되고 평화적인 집회문화의 정착은 요원하게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들에서 평화적인 집회문화가 정착된 것은 각국의 현실과 문화에 맞는 법질서 확립의 요소들이 충족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앞서 본 독일의 집회법도 하나의 훌륭한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달리 경찰법에서 집회의 사전단계에서 강제력을 수반한 불심검문, 예방적 차원의 압수·수색과 보호조치 등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이는 견본법률안을 거쳐 쉴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에 채용되었다. 연방 및 각 주의 집회법에서는 집회의 평화성 보장을 위하여 예외 없이 무기 소지 및 제복착용 금지와 호신장구 및 변장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공공의 안전 및 질서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회를 사전에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집회 도중에 그러한 위협이 있는 경우 집회를 해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력하게 폭력집회에 대한 예방 및 대응조치를

법제도적으로 확립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독일이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 확립이라는 국가적 법익을 비례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형량하고 있음에도 예방적 강제조치나 호신장구 및 변장 금지를 법률로 규정하고 판례를 통하여 그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만성적 불법·폭력 집회로 막대한 국력이 낭비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비추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무엇보다도 법률가로서 균형 잡힌 시각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 동안 우리 학계에서 독일의 제도를 소개하면서 명문의 규정이나 통설적 견해를 애써 무시하고 자신만의 도그마에 빠져 이를 왜곡하는 사례를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심지어 “독일의 경우 네오나치 등 극우세력의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하려는 의도에서 집회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적 집회 자체를 금지 또는 제한하려는 의도에서 집시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단정하면서, “지금처럼 국민들의 평화적 집회마저도 금지할 것이 아니라 수도 서울 도심을 가스통 들고 누비는 극우세력들의 폭력집회부터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었다.¹³⁵⁾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독일의 집회법들이 극우세력의 집회만을 겨냥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오히려 극우나 극좌를 막론하고 집회의 평화성을 해치는 불법이나 폭력에 대하여는 집회의 사전 제한이나 금지 등을 통하여

135) 남경국, 집회금지구역 규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 집회금지구역 규정의 법적 역사와 비판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6, pp. 142-143.

더 엄격히 대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친북단체나 노동단체 등의 시가전을 방불케 하는 폭력집회가 지금까지는 집회의 평화성에 대한 더 큰 위협이 되어 왔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함이 마땅할 것이다. 본 연구가 균형 잡힌 시각을 회복하는데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 동안 독일 집회법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나 소개는 있었으나 전면적인 연구나 소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독일 집회법 조문 전체를 일관성 있게 번역하여 소개하고 정확한 의미 전달을 하겠다는 본 연구의 목적이 본인의 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는 의문이다. 다만, 본 연구 말미에 그 출현 순서대로 첨부한 연방 및 각 주 집회법 및 법률안 번역문 및 원문이 독일 집회법의 정확한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본 연구가 향후 독일 집회법 연구의 조그만 디딤돌 이나마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치기로 한다.

연방 집회법

바이에른 집회법

니더작센 집회법



Germany

실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

작센-안할트 집회법

브란덴부르크 집회법

베를린 집회법

참고문헌

【국내 문헌】

1. 단행본

- 서정범 역, 바이에른 집회법(A. Scheidler, Bayerisches Versammlungsgesetz), 세창출판사, 2010. 8.
- 이 웅, 불법집단행동 규율의 비교법적 분석 - 우리나라와 주요선진국의 법집행기관 및 사법부의 태도 비교 -, 법무연수원, 2015. 2.
- 홍기수 · 홍무원 공역, 독일법의 기초(E. Hilgendorf, dtv-Atlas Recht Band 1 Grundlagen · Staatsrecht · Strafrecht),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5.

2. 논문

- 김상겸, 집회의 자유도 공짜가 아니다 : 독일 집시법의 교훈, 자유경제원 법치토론회 자료집, 2015. 5.
- 김택수, 집회와 시위의 개념 구분에 관한 고찰, 경찰법연구 제8권 제2호, 2010.
- 남경국, 집회의 자유의 보장과 제한가능성의 경계 - 독일 헌법 제8조와 집회법의 충돌과 그 해결과정을 중심으로 -, 서강법학 11(1),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6.
- _____, 집회금지구역 규정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 집회금지구역 규정의 법적 역사와 비판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제21권 제2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6.
- 박병욱, 집회시위 과정에서의 폭력완화전략에 대한 고찰 - 독일의 브록도르프(Brokdorf) 판결을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39, 2014. 7.
- 박희영, 독일 각 주의 집회법 제정 동향 : 바이에른 주 및 니더작센 주, 법제 통권 제635호, 2010. 11.
- _____, 독일에 있어서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의 채증활동 관련 법률 및 판례, 최신 외국 법제정보(맞춤형 법제정보), 2010. 5.
- 이부하,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해석 및 관련 법률의 비례성 심사, 한양법학 제22권 제2집, 한양법학회, 2011. 5.
- 이성용, 집시법상의 복면시위 금지, 한국경찰연구 제7권 제2호, 2008년 여름.
- 이옥한, 집회의 자유의 보장과 그 제한에 관한 연구 - 독일의 집회의 자유논의를 토대로 -, 공법학 연구 14(1), 2013. 2.

- _____,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기능과 보호범위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제38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 2.
- 이재일, 독일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최신 외국법제정보(맞춤형 법제 정보), 2008. 7.

【독일 문헌】

A. Kommentare, Sammelwerke, Monographien

- Alfred Scheidler, Bayerisches Versammlungsgesetz - Textausgabe mit Einführung, 2. Aufl., R. Boorberg Verlag, 2011.
- Arbeitskreis Versammlungsrecht (Enders/Hoffmann-Riem/Kniesel/Poscher/Schulze-Fielitz), Musterentwurf eines Versammlungsgesetzes, C. H. Beck, 2011.
- Dietel/Gintzel/Kniesel, Versammlungsgesetz, Kommentar, 17. Auflage, Carl Heymanns Verlag, 2016.
- _____, Demonstrations- und Versammlungsfreiheit, Carl Heymanns Verlag, 2004.
- Dürig-Friedl/Enders, Versammlungsrecht Kommentar, C. H. Beck, 2016.
- Erbs/Kohlhaas, Strafrechtliche Nebengesetze V 55. 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Versammlungsgesetz), 207. Aufl., C. H. Beck, 2016.
- Köhler/Dürig-Friedl, Demonstrations- und Versammlungsrecht, 4. Auflage 2001.
- Kraujuttis, Versammlungsfreiheit zwischen liberaler Tradition und Funktionalisierung, Carl Heymanns Verlag, 2005.
- Maur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18. Auflage, 2011.
- Maunz/Dürig, Kommentar zum Grundgesetz, 51. Ergänzungslieferung, C. H. Beck, 2007.
- v. Münch/Kunig, Grundgesetz-Kommentar, Bd. I, 6. Auflage 2012.
- Ott/Wächter/Heinhold, 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7. Auflage 2010.

- Ullrich, Niedersächsisches Versammlungsgesetz, Kommentar, 2009.
- Wächtler/Heinhold/Merk, Bayerisches Versammlungsgesetz(BayVersG), Boorberg Taschenkommentar, R. Boorberg Verlag, 2011.
- Wefelmeier/Miller, Niedersächsisches Versammlungsgesetz Kommentar, 1. Auflage 2012.

B. Aufsätze

- Arzt, Das Bayrische Versammlungsgesetz von 2008, DÖV 2009.
- Battis/Grigoleit, Rechtsextremistische Demonstrationen und öffentliche Ordnung – Roma locuta?, NJW 2004.
- Bredt, Gemietete “Demonstranten und “Fuckparade” – Der Versammlungsbegriff bleibt in Bewegung, NVwZ 2007.
- Bücken-Thielmeyer, Das neue Versammlungsgesetz Sachsen-Anhalts, LKV 2010.
- Deutmoser, Angst vor den Folgen eines weiten Versammlungsbegriffs?, NVwZ 1999.
- Dörr, Keine Versammlungsfreiheit für Neonazis? Extremistische Demonstrationen als Herausforderung für das geltende Versammlungsrecht, VerwArch 2002.
- Enders, Der Schutz der Versammlungsfreiheit, JURA 2003.
- _____, Für eine freiheitlich demokratische Staatsordnung ... schlechthin konstituierend, SächsVBl. 2012.
- Enzensperger, Versammlungsverbot aus Gründen der öffentlichen Ordnung, NVwZ 2014.
- Güven, Zur Reichweite des Versammlungsverbotes – ist Vermummung zum Schutz von Gegendemonstranten strafbar?, NSTz 2012.
- Hoffmann-Riem, Demonstrationsfreiheit auch für Rechtsextremisten? – Grundsatzüberlegungen zum Gebot rechtsstaatlicher Toleranz, NJW 2004.

- Höfling/Krohne, Versammlungsrecht in Bewegung, JA 2012.
- Kriesel/Poscher, Die Entwicklung des Versammlungsrechts 2000 bis 2003, NJW 2004.
- Kutscha, Neues Versammlungsrecht-Bayern als Modell?, NVwZ 2008.
- Leist, Die Änderung des Versammlungsrechts: ein Eigentor?, NVwZ 2005.
- Lenski, Flashmobs, Smartmobs, Raids- Sicherheitsrechtliche Antworten auf neue Formen von Kollektivität, VerwArch 2012.
- Lux, Die Bekämpfung rechtsextremistischer Versammlungen nach der Föderalismusreform in LKV 2009.
- Meßmann, Das Zusammenspiel von Versammlungsgesetz und allgemeinem Polizeirecht, JuS 2007.
- Papier, Das Versammlungsrecht in der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BayVBl. 2010.
- Patz/Rode, Zur Auslegung des Versammlungsbegriffs bei Veranstaltungen auf Friedhöfen und Gedenkstätten, LKV 2010.
- Rühl, "Öffentliche Ordnung" als sonderrechtlicher Verbotstatbestand gegen Neonazis im Versammlungsrecht?, NVwZ 2003.
- Schäffer, Versammlungs- und allgemeines Gefahrenabwehrrecht unter besonderer Berücksichtigung des Zitiergebotes: Die Länder haben noch immer das Wort, DVBl. 2012.
- Scheidler, Wie man Gesetze nicht macht – Zur Nichtigkeit des Sächsischen Versammlungsgesetzes, NVwZ 2011.
- Trunitt, Vorfeldmaßnahmen bei Versammlungen, NVwZ 2012.
- Waldhoff, Rechtswidrigkeit der polizeilichen Videoüberwachung einer friedlichen Versammlung, Anmerkung, Jus 2011.
- Weber, Zur Anmeldepflicht bei Versammlungen, KommJur 2010.
- _____, Zur "Kooperation" zwischen Versammlungsbehörde und Veranstalter einer Versammlung, KommJur 2011.

- Wiefelspütz, Das Gesetz über befriedete Bezirke für Verfassungsorgane des Bundes-ein Gesetz, das seinen Zweck erfüllt, NVwZ 2000.

【인터넷 자료】

- <http://www.gesetze-im-internet.de/bundesrecht/versammlg/gesamt.pdf>
(최종 접속 2017. 3. 13.)
- https://beck-online.beck.de/Dokument/Gesamtversion?vpath=bibdata%2Fges%2Fversammlg%2Fcont%2Fversammlg.inh.htm&isAktuellGueltigeGesamtversion=True#lawanchor_versammlg.inh
(최종 접속 2017. 3. 13.)
- http://bravors.brandenburg.de/br2/sixcms/media.php/76/GVBL_11_2006.pdf
(최종 접속 2017. 3. 13.)
- https://beck-online.beck.de/Dokument/Gesamtversion?vpath=bibdata%2Fges%2Fbbgggedstversg%2Fcont%2Fbbgggedstversg.inh.htm&isAktuellGueltigeGesamtversion=True#lawanchor_bbggedstversg.inh
(최종 접속 2017. 3. 13.)
- https://beck-online.beck.de/Dokument/Gesamtversion?vpath=bibdata%2Fges%2Fbayversg08%2Fcont%2Fbayversg08.inh.htm&isAktuellGueltigeGesamtversion=True#lawanchor_bayversg08.inh
(최종 접속 2017. 3. 13.)
- https://beck-online.beck.de/Dokument/Gesamtversion?vpath=bibdata%2Fges%2Flsaversammlg%2Fcont%2Flsaversammlg.inh.htm&isAktuellGueltigeGesamtversion=True#lawanchor_lsaversammlg.inh
(최종 접속 2017. 3. 13.)
- https://beck-online.beck.de/Dokument/Gesamtversion?vpath=bibdata%2Fges%2Fndsversg%2Fcont%2Fndsversg.inh.htm&isAktuellGueltigeGesamtversion=True#lawanchor_ndsversg.inh
(최종 접속 2017. 3. 13.)
- https://beck-online.beck.de/Dokument/Gesamtversion?vpath=bibdata%2Fges%2Fsaversg%2Fcont%2Fsaversg.inh.htm&isAktuellGueltigeGesamtversion=True#lawanchor_saversg.inh
(최종 접속 2017. 3. 13.)

- https://beck-online.beck.de/Dokument/Gesamtversion?vpath=bibdata%2Fges%2Fblnversammlg%2Fcont%2Fblnversammlg.inh.htm&isAktuellGueltigeGesamtversion=True#lawanchor_blnversammlg.inh
(최종 접속 2017. 3. 13.)
- https://beck-online.beck.de/Dokument/Gesamtversion?vpath=bibdata%2Fges%2Fshversfg%2Fcont%2Fshversfg.inh.htm&isAktuellGueltigeGesamtversion=True#lawanchor_shversfg.inh
(최종 접속 2017. 3. 13.)
- https://www.bgbl.de/xaver/bgbl/start.xav?startbk=Bundesanzeiger_BGBI&bk=Bundesanzeiger_BGBI&start=/*%5B@attr_id=%27bgbl106s2034.pdf%27%5D#__bgbl__%2F%2F*%5B%40attr_id%3D%27bgbl106s2034.pdf%27%5D__1483406489447
(최종 접속 2017. 3. 13.)
- https://www.bgbl.de/xaver/bgbl/start.xav?start=/*%5B@attr_id='bgbl153s0684.pdf%27%5D#__bgbl__%2F%2F*%5B%40attr_id%3D%27bgbl153s0684.pdf%27%5D__1483664694512
(최종 접속 2017. 3. 13.)
- https://www.bgbl.de/xaver/bgbl/start.xav?startbk=Bundesanzeiger_BGBI&bk=Bundesanzeiger_BGBI&start=/*%5B@attr_id=%27bgbl178s1789.pdf%27%5D#__bgbl__%2F%2F*%5B%40attr_id%3D%27bgbl178s1789.pdf%27%5D__1483405601512
(최종 접속 2017. 3. 13.)
- https://www.bgbl.de/xaver/bgbl/start.xav?startbk=Bundesanzeiger_BGBI&bk=Bundesanzeiger_BGBI&start=/*%5B@attr_id=%27bgbl185s1511.pdf%27%5D#__bgbl__%2F%2F*%5B%40attr_id%3D%27bgbl185s1511.pdf%27%5D__1483405718397
(최종 접속 2017. 3. 13.)
- https://www.bgbl.de/xaver/bgbl/start.xav?startbk=Bundesanzeiger_BGBI&bk=Bundesanzeiger_BGBI&start=/*%5B@attr_id=%27bgbl189s1059.pdf%27%5D#__bgbl__%2F%2F*%5B%40attr_id%3D%27bgbl189s1059.pdf%27%5D__1483405775935
(최종 접속 2017. 3. 13.)
- https://www.bgbl.de/xaver/bgbl/start.xav?startbk=Bundesanzeiger_BGBI&bk=Bundesanzeiger_BGBI&start=/*%5B@attr_id=%27bgbl199s1818.pdf%27%5D#

__bgbl__%2F%2F*%5B%40attr_id%3D%27bgbl199s1818.pdf%27%5D
__1483405836103

(최종 접속 2017. 3. 13.)

- [https://www.bgbl.de/xaver/bgbl/start.xav?startbk=Bundesanzeiger_BGBI&bk=Bunde
sanzeiger_BGBI&start=//%5B@attr_id=%27bgbl105s0969.pdf%27%5D#
__bgbl__%2F%2F*%5B%40attr_id%3D%27bgbl105s0969.pdf%27%5D
__1483405879531](https://www.bgbl.de/xaver/bgbl/start.xav?startbk=Bundesanzeiger_BGBI&bk=Bunde
sanzeiger_BGBI&start=//%5B@attr_id=%27bgbl105s0969.pdf%27%5D#
__bgbl__%2F%2F*%5B%40attr_id%3D%27bgbl105s0969.pdf%27%5D
__1483405879531)

(최종 접속 2017. 3. 13.)

- [https://www.bgbl.de/xaver/bgbl/start.xav?startbk=Bundesanzeiger_BGBI&bk=Bunde
sanzeiger_BGBI&start=//%5B@attr_id=%27bgbl108s2366.pdf%27%5D#
__bgbl__%2F%2F*%5B%40attr_id%3D%27bgbl108s2366.pdf%27%5D
__1483406024815](https://www.bgbl.de/xaver/bgbl/start.xav?startbk=Bundesanzeiger_BGBI&bk=Bunde
sanzeiger_BGBI&start=//%5B@attr_id=%27bgbl108s2366.pdf%27%5D#
__bgbl__%2F%2F*%5B%40attr_id%3D%27bgbl108s2366.pdf%27%5D
__1483406024815)

(최종 접속 2017. 3. 13.)

- http://bravors.brandenburg.de/br2/sixcms/media.php/76/GVBI_I_12_2005.pdf

(최종 접속 2017. 3. 13.)

- [https://beck-online.beck.de/?vpath=bibdata%2Fges%2FBayVersG08AendG%
2Fcont%2FBayVersG08AendG%2EP1%2Ehtm](https://beck-online.beck.de/?vpath=bibdata%2Fges%2FBayVersG08AendG%
2Fcont%2FBayVersG08AendG%2EP1%2Ehtm)

(최종 접속 2017. 3. 13.)

연방 집회법

바이에른 집회법

니더작센 집회법

Germany

쉴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

작센-안할트 집회법

브란덴부르크 집회법

베를린 집회법

첨 부

집회법 번역문 및 원문

1. 연방 집회법
2. 집회법초안
3. 브란덴부르크 집회법
4. 바이에른 집회법
5. 작센-안할트 집회법
6. 견본법률안
7. 니더작센 집회법
8. 작센 집회법
9. 베를린 집회법
10. 쉴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

1. 연방 집회법

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집회법)

1953년 7월 24일 제 정

2008년 12월 8일 최종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 ① 누구든지 공개집회 및 행진을 주최하거나 그러한 행사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항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1. 기본법 제18조에 의해 집회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이 박탈된 자,
 - 2. 전항과 같은 행사를 거행하거나 참가함으로써, 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이라고 선언된 정당 또는 그 일부 내지 대체 조직이 목적하는 바를 조장코자 하는 자,
 - 3. 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이라고 선언된 정당, 또는
 - 4. 기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금지된 단체.

제2조

- ① 공개집회 또는 행진에 공개적으로 초청을 하는 자는, 초청 시에 주최자로서 그 이름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공개집회 또는 행진 시 그 질서 있는 거행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질서문란행위를 야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공개집회 또는 행진 시, 무기 또는 그 성질상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적합하고 확실한 기타의 물건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기 또는 제1문에서 거명된 물건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공개집회나 행진에 참가하러 가는 도중에 소지하거나, 그와 같은 행사장소로 운반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준비하거나 배포하는 것도 역시 금지된다.

제3조

- ① 공동의 정치적 신념의 표현으로서 제복, 제복의 일부 또는 같은 종류의 의복을 공연히 또는 집회에서 착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 ② 청소년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협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그 구성원들에 대하여 제1항에서 금지하는 바를 예외적으로 허가한다. 그 식별 가능한 조직 또는 활동범위가 1개 주의 영역을 넘어서는 청소년협회에 대한 관할은 연방내무부장관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의 최고 관청에 있다. 연방내무부장관의 결정은 연방관보 및 내각공보로, 주 최고 관청의 결정은 그 관보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삭 제]

제2장 옥내공개집회

제5조

단지 개개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집회의 개최가 금지될 수 있다.

1. 주최자가 제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고, 제4호의 경우 그 금지가 관할 행정관청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2. 집회의 주최자 또는 주관자가 무기 또는 제2조 제3항 소정의 기타의 물건을 소지한 참가자들의 입장을 허용하는 경우,
3. 주최자 또는 그 지지자들이 집회의 폭력적이고 선동적인 진행을 추구한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주최자 또는 그 지지자들이 중죄 또는 직권으로 소추될 수 있는 경죄를 대상으로 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거나 이를 수인할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제6조

- ① 특정된 인물 또는 인적 범위에 대하여는 집회 참가 초청 시에 이를 배제할 수 있다.
- ② 언론사 기자들은 배제될 수 없다; 그들은 집회의 주관자에게 기자증으로써 합법적으로 신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7조

- ① 각각의 공개집회에는 한 명의 주관자가 있어야 한다.
- ② 집회의 주최자가 그 주관자이다. 집회가 단체에 의하여 개최되는 경우에는 단체의 대표자가 주관자이다.

- ③ 주최자는 제3자에게 집회의 주관을 양도할 수 있다.
- ④ 주관자는 가택권을 행사한다.

제8조

주관자는 집회의 진행경과를 결정한다. 그는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는 집회를 언제라도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그는 중단된 집회가 언제 속행될 것인지 결정한다.

제9조

- ① 주관자는 제8조의 권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정한 수의 명예직 질서유지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무기 또는 제2조 제3항 소정의 기타의 물건을 소지할 수 없고, 성년에 달하여야 하며, 오로지 “질서유지인”이라고만 표시할 수 있는 흰 완장을 착용함으로써 식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주관자는 그가 임명한 질서유지인의 수를 경찰이 요구하면 통지할 의무가 있다. 경찰은 질서유지인의 수를 적정하게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모든 집회 참가자들은 주관자 또는 그로부터 임명된 질서유지인의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 ① 주관자는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는 참가자를 집회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② 집회로부터 배제된 자는 즉시 그 장소를 떠나야 한다.

제12조

경찰관들이 공개집회에 파견되었을 경우 주관자에게 그 신분을 밝혀야 한다. 그들에게는 적당한 자리가 주어져야 한다.

제12a조

① 경찰은, 그들로부터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나온다는 사실적 근거가 이를 정당화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집회 시 또는 그와 관련하여 그 참가자들을 촬영·녹음 할 수 있다. 그 조치는 제3자가 불가피하게 관계되는 경우에도 또한 시행될 수 있다.

② 그 자료들은, 다음 각 호의 1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닌 한 공개집회 또는 그와 시적 및 물적으로 직접적 관계가 있는 사건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파기되어야 한다.

1. 참가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소추 또는
2. 관계인이 공개집회에서 또는 공개집회와 관련하여 범죄를 준비하거나 범하였다는 의심이 있고, 그로 인하여 장래의 공개집회 또는 행진에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 그 위험 방지.

제1문 제2호에서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파기되지 아니한 자료들은, 도중에 제1문 제1호에서 규정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닌 한, 당해 자료가 생성된 때로부터 늦어도 3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 및 질서위반행위법에 따른 개인 정보의 수집권한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① 경찰(제12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붙여 집회를 해산할 수 있다.

1. 주최자가 제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고, 제4호의 경우 그 금지가 관할 행정관청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2. 집회가 폭력적 또는 선동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거나 참가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3. 주관자가 무기 또는 제2조 제3항 소정의 기타의 물건을 소지한 자들을 즉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배제를 집행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
4. 집회의 진행을 통하여 중죄 또는 직권으로 소추될 수 있는 경죄를 대상으로 하는 형법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또는 집회에서 그러한 범죄행위가 권유되거나 고무되고 주관자가 이를 지체 없이 제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경찰의 다른 조치, 특히 중지조치로서는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해산이 허용된다.

② 집회가 해산되었다고 선언되면 모든 참가자는 즉시 그 장소를 떠나야 한다.

제3장 옥외공개집회 및 행진

제14조

① 옥외공개집회 또는 행진을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늦어도 그 공지 48시간 이전에 관할 관청에 집회 또는 행진의 목적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 시 누가 집회 또는 행진의 주관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인지를 적시하여야 한다.

제15조

① 관할 관청은, 그 처분 발령 시 인식 가능한 상황에 따르면 집회 또는 행진의 거행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질서가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되는 경우, 그 집회 또는 행진을 금지하거나 특정한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집회 또는 행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히 금지되거나 특정한 부담이 부과될 수 있다.

1. 집회 또는 행진이, 나치의 폭력적이고 자의적인 통치 하에서 비인도적 취급을 당한 희생자를 상기시키는 역사적으로 특별하고 초지역적인 의미를 가진 기념 장소에서 개최되는 경우, 그리고
2. 그 처분 발령 시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정에 따르면 집회 또는 행진을 통하여 희생자의 존엄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베를린에 있는 유럽에서 학살된 유대인 기념물은 제1문 제1호 소정의 장소이다. 그 장소의 경계는 이 법의 첨부에 규정한다. 제1문 제1호 소정의 다른 장소 및 그 경계는 주 법률로 정한다.

③ 관할 관청은, 집회 또는 행진이 신고 되지 아니한 경우, 신고 내용과 달리 진행되거나 부과된 부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지의 요건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해산할 수 있다.

④ 금지된 행사는 해산되어야 한다.

제16조

- ① 주 입법기관을 위한 집회금지구역 내에서는 옥외공개집회 또는 행진이 금지된다. 제1문에 따른 옥외공개집회 또는 행진을 권유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 ② 주 입법기관을 위한 집회금지구역은 주 법률로 정한다.
- ③ 상세한 사항은 주의 집회금지구역법률로 정한다.

제17조

제14조 내지 제16조는 옥외 종교의식, 종교상의 행렬, 성지순례행렬, 관습적인 장례의식, 혼례하객의 행렬 그리고 전통적인 민속축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a조

- ① 옥외공개집회, 행진이나 그와 같은 옥외공개행사에서 또는 그에 참가하러 가는 도중에, 호신장구 또는 호신장구로 적합하고 상황에 따라 고권적 권한을 가진 당국자의 집행조치를 저지하기에 확실한 물건을 소지하는 것은 금지된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 1. 그와 같은 행사에 사람의 신원 확인을 방해하기에 적합하고 상황에 따라 그러함에 적절한 변장을 하고 참가하거나, 그와 같은 행사에 그와 같은 변장을 하고 참가하러 가는 행위.
 - 2. 그와 같은 행사에서 또는 그에 참가하러 가는 도중에, 사람의 신원 확인을 방해하기에 적합하고 상황에 따라 그러함이 확실한 물건을 소지하는 행위.

③ 제17조 소정의 행사에는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관할 관청은 공공의 안전 또는 질서가 위태롭게 될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금지에 대한 더 이상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④ 관할 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금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관할 관청은 특히 위 금지를 위반하는 자들을 행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18조

① 옥외집회에 대하여는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1조 제2항, 제12조 및 제13조 제2항이 준용된다.

② 질서유지인의 사용에는 경찰의 인가를 요한다. 인가는 신고 시에 신청되어야 한다.

③ 경찰은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는 참가자를 집회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제19조

① 행진의 주관자는 행진의 질서 있는 진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는 제9조 제1항 및 제18조가 적용되는 명예직 질서유지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② 참가자들은 주관자 또는 그로부터 임명된 질서유지인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③ 주관자는 자신의 의도대로 행진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행진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할 의무가 있다.

④ 경찰은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는 참가자를 행진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제19a조

옥외집회 및 행진 현장에서 경찰에 의한 촬영·녹음에 대하여는 제12a조가 적용된다.

제20조

기본법 제8조의 기본권은 본장의 제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다.

제4장 형벌 및 범칙금 규정

제21조

금지되지 않은 집회 또는 행진을 저지 또는 해산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거행을 좌절케 할 의도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또는 심한 질서문란을 야기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22조

공개집회 또는 행진 시 그 주관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적법하게 질서유지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에 폭력 또는 폭력적 협박으로 저항하거나 그가 적법하게 질서유지권을 행사하는 도중에 이에 폭력을 가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23조

집행 가능한 금지명령에 의하여 집회나 행진의 거행이 금지되거나 해산이 명하여진 후에, 공연히, 집회에서 또는 문서배포, 음향 또는 영상매체, 삽화 또는 기타의 표현물을 통하여 그러한 공개집회 또는 행진에 참가할 것을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24조

공개집회 또는 행진의 주관자로서, 무기 또는 그 성질상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데 적합하고 확실한 기타의 물건을 소지한 질서 유지인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25조

옥외공개집회 또는 행진의 주관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6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180일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 주최자가 신고 시 신고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게 집회 또는 행진을 거행한 자, 또는
2.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자.

제26조

주최자 또는 주관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공개집회 또는 행진을 집행 가능한 금지명령에 반하여 거행하거나 경찰에 의한 해산 또는 중지명령에 반하여 속행한 자 또는
2. 옥외공개집회 또는 행진을 신고(제14조) 없이 거행한 자.

제27조

① 공개집회 또는 행진 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무기 또는 그 성질상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데 적합하고 확실한 기타의 물건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무기 또는 제1문 소정의 기타의 물건을, 공개집회나 행진에 참가하러

가는 도중에 소지하거나, 그와 같은 행사장소로 운반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준비하거나 배포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제17a조 제1항에 위반하여 옥외공개집회, 행진이나 그와 같은 옥외 공개행사에서 또는 그에 참가하러 가는 도중에, 호신장구 또는 호신장구로 적합하고 상황에 따라 고권적 권한을 가진 당국자의 집행조치를 저지하기에 확실한 물건을 소지한 자,
2. 제17a조 제2항 제1호에 위반하여 그와 같은 행사에 사람의 신원 확인을 방해하기에 적합하고 상황에 따라 그러함에 적절한 변장을 하고 참가하거나, 그와 같은 행사에 그와 같은 변장을 하고 참가하러 가는 자 또는
3. 그와 같은 행사에 이어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과 작당하고 그 때에,
 - a. 무기 또는 그 성질상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데 적합하고 확실한 기타의 물건을 소지한 자,
 - b. 호신장구 또는 제1호에 묘사된 기타의 물건을 소지한 자 또는
 - c. 제2호에 묘사된 방법으로 변장을 한 자.

제28조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29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질서위반으로 취급된다.

1. 집행 가능한 금지명령에 의해 그 거행이 금지된 공개집회 또는 행진에 참가한 자,
- 1a. 제17a조 제2항 제2호에 위반하여 옥외공개집회나 행진 또는 그와 같은 옥외공개행사에서 또는 그에 참가하러 가는 도중에, 사람의 신원 확인을 방해하기에 적합하고 상황에 따라 그러함에 확실한 물건을 소지한 자,
2. 관할 관청에 의한 공개집회 또는 행진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장소를 떠나지 아니한 자,
3. 옥외공개집회 또는 행진의 참가자로서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주관자 또는 질서유지인의 거듭된 제지에도 불구하고 공개집회 또는 행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계속한 자,
5. 공개집회 또는 행진으로부터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장소를 떠나지 아니한 자,
6. 임명된 질서유지인의 수를 통보하라는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숫자를 통지한 자(제9조 제2항),
7. 공개집회 또는 행진의 주관자 또는 주최자로서, 경찰이 허가하거나 인가한 숫자보다 많은 수의 질서유지인을 사용하거나(제9조 제2항, 제18조 제2항), 제9조 제1항에 의해 허용되는 바와 다른 표식을 한 질서유지인을 사용한 자, 또는
8. 주관자로서, 공개집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의 참석을 거부하거나, 그들에게 적당한 자리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질서위반행위는 1,000마르크 이하의 범칙금에, 제1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질서위반행위는 5,000마르크 이하의 범칙금에 각 처할 수 있다.

제29a조

- ① 제16조 제1항에 위반하여 옥외공개집회 또는 행진에 참가하거나 옥외 공개집회나 행진에 참가하도록 권유한 자는 질서위반으로 취급된다.
- ② 위 질서위반행위는 3,000마르크 이하의 범칙금에 처할 수 있다.

제30조

제27조 또는 제28조 소정의 범죄행위 또는 제29조 제1항 제1a호 또는 제3호 소정의 질서위반행위에 관계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형법 제74a조와 질서위반행위법 제23조가 적용된다.

제5장 종결규정

제31조 [폐 지]

제32조

이 법은 제3차 경과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베를린에도 적용된다. 이 법의 위임에 의하여 공포된 법규명령은 제3차 경과법 제14조에 따라 베를린에 적용된다.

제33조 [발 효]

첨부 (제15조 제2항)

제15조 제2항 제2문(유럽에서 학살된 유대인 기념물)에 따른 장소의 범위는, 에버트쉬트라세, 에버트프로메나데의 비포장 녹지구역과 괴테기념물 지구의 비포장 녹지구역을 포함한 미니스터게르텐 쉬트라세 및 렌네쉬트라세와 3월 18일 광장 우회로 사이, 베렌쉬트라세, 에버트쉬트라세와 빌헬름 쉬트라세 사이, 코라 베를리너 쉬트라세, 게르트루드 콜마르 쉬트라세, 미니스터게르텐 쉬트라세 북쪽 교차로, 빌헬름쉬트라세로의 연장로를 포함한 한나 아렌트 쉬트라세에 의해 둘러싸인, 수도 베를린 지역을 포함한다. 위에서 언급한 경계선은 차로, 인도 및 모든 기타의 통행 또는 주행을 위해 공개된 지표를 포함한다.

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Versammlungsgesetz)

VersammlG

Ausfertigungsdatum: 24.07.1953

Vollzitat:

“Versammlungsgesetz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15. November 1978 (BGBl. I S. 1789),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2 des Gesetzes vom 8. Dezember 2008 (BGBl. I S. 2366)”

Stand: Neugefasst durch Bek. v. 15.11.1978 I 1789;

zuletzt geändert durch Art. 2 G v. 8.12.2008 I 2366

Fußnote

Textnachweis ab: 26.7.1985

Abschnitt I Allgemeines

§ 1

(1) Jedermann hat das Recht, öffentliche Versammlungen und Aufzüge zu veranstalten und an solchen Veranstaltungen teilzunehmen.

(2) Dieses Recht hat nicht,

1. wer das Grundrecht der Versammlungsfreiheit gemäß Artikel 18 des Grundgesetzes verwirkt hat,

2. wer mit der Durchführung oder Teilnahme an einer solchen Veranstaltung die Ziele einer nach Artikel 21 Abs. 2 des Grundgesetzes dur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en Partei oder Teil- oder Ersatzorganisation einer Partei fördern will,
3. eine Partei, die nach Artikel 21 Abs. 2 des Grundgesetzes dur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 worden ist, oder
4. eine Vereinigung, die nach Artikel 9 Abs. 2 des Grundgesetzes verboten ist.

§ 2

(1) Wer zu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oder zu einem Aufzug öffentlich einlädt, muß als Veranstalter in der Einladung seinen Namen angeben.

(2) Bei öffentlichen Versammlungen und Aufzügen hat jedermann Störungen zu unterlassen, die bezwecken, die ordnungsgemäße Durchführung zu verhindern.

(3) Niemand darf bei öffentlichen Versammlungen oder Aufzügen Waffen oder sonstige Gegenstände, die ihrer Art nach zur Verletzung von Personen oder zur Beschädigung von Sachen geeignet und bestimmt sind, mit sich führen, ohne dazu behördlich ermächtigt zu sein. Ebenso ist es verboten, ohne behördliche Ermächtigung Waffen oder die in Satz 1 genannten Gegenstände auf dem Weg zu öffentlichen Versammlungen oder Aufzügen mit sich zu führen, zu

derartigen Veranstaltungen hinzuschaffen oder sie zur Verwendung bei derartigen Veranstaltungen bereitzuhalten oder zu verteilen.

§ 3

(1) Es ist verboten, öffentlich oder in einer Versammlung Uniformen, Uniformteile oder gleichartige Kleidungsstücke als Ausdruck einer gemeinsamen politischen Gesinnung zu tragen.

(2) Jugendverbänden, die sich vorwiegend der Jugendpflege widmen, ist auf Antrag für ihre Mitglieder eine Ausnahmegenehmigung von dem Verbot des Absatzes 1 zu erteilen. Zuständig ist bei Jugendverbänden, deren erkennbare Organisation oder Tätigkeit sich über das Gebiet eines Landes hinaus erstreckt, der Bundesminister des Innern, sonst die oberste Landesbehörde. Die Entscheidung des Bundesministers des Innern ist im Bundesanzeiger und im Gemeinsamen Ministerialblatt, die der obersten Landesbehörden in ihren amtlichen Mitteilungsblättern bekanntzumachen.

§ 4

(weggefallen)

Abschnitt II Öffentliche Versammlungen in geschlossenen Räumen

§ 5

Die Abhaltung einer Versammlung kann nur im Einzelfall und nur dann verboten werden, wenn

1. der Veranstalter unter die Vorschriften des § 1 Abs. 2 Nr. 1 bis 4 fällt, und im Falle der Nummer 4 das Verbot durch die zuständige Verwaltungsbehörde festgestellt worden ist,
2. der Veranstalter oder Leiter der Versammlung Teilnehmern Zutritt gewährt, die Waffen oder sonstige Gegenstände im Sinne von § 2 Abs. 3 mit sich führen,
3. Tatsachen festgestellt sind, aus denen sich ergibt, daß der Veranstalter oder sein Anhang einen gewalttätigen oder aufrührerischen Verlauf der Versammlung anstreben,
4. Tatsachen festgestellt sind, aus denen sich ergibt, daß der Veranstalter oder sein Anhang Ansichten vertreten oder Äußerungen dulden werden, die ein Verbrechen oder ein von Amts wegen zu verfolgendes Vergehen zum Gegenstand haben.

§ 6

- (1) Bestimmte Personen oder Personenkreise können in der Einladung von der Teilnahme an einer Versammlung ausgeschlossen werden.
- (2) Pressevertreter können nicht ausgeschlossen werden; sie haben

sich dem Leiter der Versammlung gegenüber durch ihren Presseausweis ordnungsgemäß auszuweisen.

§ 7

- (1) Jede öffentliche Versammlung muß einen Leiter haben.
- (2) Leiter der Versammlung ist der Veranstalter. Wird die Versammlung von einer Vereinigung veranstaltet, so ist ihr Vorsitzender der Leiter.
- (3) Der Veranstalter kann die Leitung einer anderen Person übertragen.
- (4) Der Leiter übt das Hausrecht aus.

§ 8

Der Leiter bestimmt den Ablauf der Versammlung. Er hat während der Versammlung für Ordnung zu sorgen. Er kann die Versammlung jederzeit unterbrechen oder schließen. Er bestimmt, wann eine unterbrochene Versammlung fortgesetzt wird.

§ 9

- (1) Der Leiter kann sich bei der Durchführung seiner Rechte aus § 8 der Hilfe einer angemessenen Zahl ehrenamtlicher Ordner bedienen. Diese dürfen keine Waffen oder sonstigen Gegenstände im Sinne vom § 2 Abs. 3 mit sich führen, müssen volljährig und ausschließlich durch weiße Armbinden, die nur die Bezeichnung “Ordner” tragen dürfen, kenntlich sein.
- (2) Der Leiter ist verpflichtet, die Zahl der von ihm bestellten Ordner

der Polizei auf Anfordern mitzuteilen. Die Polizei kann die Zahl der Ordner angemessen beschränken.

§ 10

Alle Versammlungsteilnehmer sind verpflichtet, die zur Aufrechterhaltung der Ordnung getroffenen Anweisungen des Leiters oder der von ihm bestellten Ordner zu befolgen.

§ 11

(1) Der Leiter kann Teilnehmer, welche die Ordnung gröblich stören, von der Versammlung ausschließen.

(2) Wer aus der Versammlung ausgeschlossen wird, hat sie sofort zu verlassen.

§ 12

Werden Polizeibeamte in eine öffentliche Versammlung entsandt, so haben sie sich dem Leiter zu erkennen zu geben. Es muß ihnen ein angemessener Platz eingeräumt werden.

§ 12a

(1) Die Polizei darf Bild- und Tonaufnahmen von Teilnehmern bei oder im Zusammenhang mit öffentlichen Versammlungen nur anfertigen, wenn tatsächliche Anhaltspunkte die Annahme rechtfertigen, daß von ihnen erhebliche Gefahren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oder

Ordnung ausgehen. Die Maßnahmen dürfen auch durchgeführt werden, wenn Dritte unvermeidbar betroffen werden.

(2) Die Unterlagen sind nach Beendigung der öffentlichen Versammlung oder zeitlich und sachlich damit unmittelbar im Zusammenhang stehender Ereignisse unverzüglich zu vernichten, soweit sie nicht benötigt werden

1. für die Verfolgung von Straftaten von Teilnehmern oder
2. im Einzelfall zur Gefahrenabwehr, weil die betroffene Person verdächtigt ist, Straftaten bei oder im Zusammenhang mit der öffentlichen Versammlung vorbereitet oder begangen zu haben, und deshalb zu besorgen ist, daß von ihr erhebliche Gefahren für künftige öffentliche Versammlungen oder Aufzüge ausgehen.

Unterlagen, die aus den in Satz 1 Nr. 2 aufgeführten Gründen nicht vernichtet wurden, sind in jedem Fall spätestens nach Ablauf von drei Jahren seit ihrer Entstehung zu vernichten, es sei denn, sie würden inzwischen zu dem in Satz 1 Nr. 1 aufgeführten Zweck benötigt.

(3) Die Befugnisse zur Erhebung personenbezogener Informationen nach Maßgabe der Strafprozeßordnung und des Gesetzes über Ordnungswidrigkeiten bleiben unberührt.

§ 13

(1) Die Polizei (§ 12) kann die Versammlung nur dann und unter Angabe des Grundes auflösen, wenn

1. der Veranstalter unter die Vorschriften des § 1 Abs. 2 Nr. 1 bis 4 fällt, und im Falle der Nummer 4 das Verbot durch die zuständige Verwaltungsbehörde festgestellt worden ist,
2. die Versammlung einen gewalttätigen oder aufrührerischen Verlauf nimmt oder unmittelbare Gefahr für Leben und Gesundheit der Teilnehmer besteht,
3. der Leiter Personen, die Waffen oder sonstige Gegenstände im Sinne von § 2 Abs. 3 mit sich führen, nicht sofort ausschließt und für die Durchführung des Ausschlusses sorgt,
4. durch den Verlauf der Versammlung gegen Strafgesetze verstoßen wird, die ein Verbrechen oder von Amts wegen zu verfolgendes Vergehen zum Gegenstand haben, oder wenn in der Versammlung zu solchen Straftaten aufgefordert oder angereizt wird und der Leiter dies nicht unverzüglich unterbindet.

In den Fällen der Nummern 2 bis 4 ist die Auflösung nur zulässig, wenn andere polizeiliche Maßnahmen, insbesondere eine Unterbrechung, nicht ausreichen.

(2) Sobald eine Versammlung für aufgelöst erklärt ist, haben alle Teilnehmer sich sofort zu entfernen.

Abschnitt III Öffentliche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und Aufzüge

§ 14

- (1) Wer die Absicht hat, eine öffentliche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oder einen Aufzug zu veranstalten, hat dies spätestens 48 Stunden vor der Bekanntgabe der zuständigen Behörde unter Angabe des Gegenstandes der Versammlung oder des Aufzuges anzumelden.
- (2) In der Anmeldung ist anzugeben, welche Person für die Leitung der Versammlung oder des Aufzuges verantwortlich sein soll.

§ 15

- (1)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die Versammlung oder den Aufzug verbieten oder von bestimmten Auflagen abhängig machen, wenn nach den zur Zeit des Erlasses der Verfügung erkennbaren Umständen die öffentliche Sicherheit oder Ordnung bei Durchführung der Versammlung oder des Aufzuges unmittelbar gefährdet ist.
- (2) Eine Versammlung oder ein Aufzug kann insbesondere verboten oder von bestimmten Auflagen abhängig gemacht werden, wenn
1. die Versammlung oder der Aufzug an einem Ort stattfindet, der als Gedenkstätte von historisch herausragender, überregionaler Bedeutung an die Opfer der menschenunwürdigen Behandlung unter der nationalsozialistischen Gewalt- und Willkürherrschaft erinnert, und

2. nach den zur Zeit des Erlasses der Verfügung konkret feststellbaren Umständen zu besorgen ist, dass durch die Versammlung oder den Aufzug die Würde der Opfer beeinträchtigt wird.

Das Denkmal für die ermordeten Juden Europas in Berlin ist ein Ort nach Satz 1 Nr. 1. Seine Abgrenzung ergibt sich aus der Anlage zu diesem Gesetz. Andere Orte nach Satz 1 Nr. 1 und deren Abgrenzung werden durch Landesgesetz bestimmt.

(3) Sie kann eine Versammlung oder einen Aufzug auflösen, wenn sie nicht angemeldet sind, wenn von den Angaben der Anmeldung abgewichen oder den Auflagen zuwidergehandelt wird oder wenn die Voraussetzungen zu einem Verbot nach Absatz 1 oder 2 gegeben sind.

(4) Eine verbotene Veranstaltung ist aufzulösen.

§ 16

(1) Öffentliche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und Aufzüge sind innerhalb des befriedeten Bannkreises der Gesetzgebungsorgane der Länder verboten. Ebenso ist es verboten, zu öffentlichen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oder Aufzügen nach Satz 1 aufzufordern.

(2) Die befriedeten Bannkreise für die Gesetzgebungsorgane der Länder werden durch Landesgesetze bestimmt.

(3) Das Weitere regeln die Bannmeilengesetze der Länder.

§ 17

Die §§ 14 bis 16 gelten nicht für Gottesdienste unter freiem Himmel, kirchliche Prozessionen, Bittgänge und Wallfahrten, gewöhnliche Leichenbegängnisse, Züge von Hochzeitsgesellschaften und hergebrachte Volksfeste.

§ 17a

(1) Es ist verboten, bei öffentlichen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Aufzügen oder sonstigen öffentlichen Veranstaltungen unter freiem Himmel oder auf dem Weg dorthin Schutzwaffen oder Gegenstände, die als Schutzwaffen geeignet und den Umständen nach dazu bestimmt sind, Vollstreckungsmaßnahmen eines Trägers von Hoheitsbefugnissen abzuwehren, mit sich zu führen.

(2) Es ist auch verboten,

1. an derartigen Veranstaltungen in einer Aufmachung, die geeignet und den Umständen nach darauf gerichtet ist, die Feststellung der Identität zu verhindern, teilzunehmen oder den Weg zu derartigen Veranstaltungen in einer solchen Aufmachung zurückzulegen.
2. bei derartigen Veranstaltungen oder auf dem Weg dorthin Gegenstände mit sich zu führen, die geeignet und den Umständen nach dazu bestimmt sind, die Feststellung der Identität zu verhindern.

(3) Absätze 1 und 2 gelten nicht, wenn es sich um Veranstaltungen im Sinne des § 17 handelt.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weitere Ausnahmen von den Verboten der Absätze 1 und 2 zulassen, wenn

eine Gefährdung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oder Ordnung nicht zu besorgen ist.

(4)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zur Durchsetzung der Verbote der Absätze 1 und 2 Anordnungen treffen. Sie kann insbesondere Personen, die diesen Verboten zuwiderhandeln, von der Veranstaltung ausschließen.

§ 18

(1) Für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sind § 7 Abs. 1, §§ 8, 9 Abs. 1, §§ 10, 11 Abs. 2, §§ 12 und 13 Abs. 2 entsprechend anzuwenden.

(2) Die Verwendung von Ordnern bedarf polizeilicher Genehmigung. Sie ist bei der Anmeldung zu beantragen.

(3) Die Polizei kann Teilnehmer, welche die Ordnung gröblich stören, von der Versammlung ausschließen.

§ 19

(1) Der Leiter des Aufzuges hat für den ordnungsmäßigen Ablauf zu sorgen. Er kann sich der Hilfe ehrenamtlicher Ordner bedienen, für welche § 9 Abs. 1 und § 18 gelten.

(2) Die Teilnehmer sind verpflichtet, die zur Aufrechterhaltung der Ordnung getroffenen Anordnungen des Leiters oder der von ihm bestellten Ordner zu befolgen.

(3) Vermag der Leiter sich nicht durchzusetzen, so ist er verpflichtet, den Aufzug für beendet zu erklären.

(4) Die Polizei kann Teilnehmer, welche die Ordnung gröblich stören, von dem Aufzug ausschließen.

§ 19a

Für Bild- und Tonaufnahmen durch die Polizei bei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und Aufzügen gilt § 12a.

§ 20

Das Grundrecht des Artikels 8 des Grundgesetzes wird durch die Bestimmungen dieses Abschnitts eingeschränkt.

Abschnitt IV Straf- und Bußgeldvorschriften

§ 21

Wer in der Absicht, nicht verbotene Versammlungen oder Aufzüge zu verhindern oder zu sprengen oder sonst ihre Durchführung zu vereiteln, Gewalttätigkeiten vornimmt oder androht oder grobe Störungen verursac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dr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2

Wer bei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oder einem Aufzug dem Leiter oder einem Ordner in der rechtmäßigen Ausübung seiner Ordnungsbefugnisse mit Gewalt oder Drohung mit Gewalt Widerstand leistet oder ihn während der rechtmäßigen Ausübung seiner Ordnungsbefugnisse

tätlich angreif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3

Wer öffentlich, in einer Versammlung oder durch Verbreiten von Schriften, Ton oder Bildträgern, Abbildungen oder anderen Darstellungen zur Teilnahme an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oder einem Aufzug auffordert, nachdem die Durchführung durch ein vollziehbares Verbot untersagt oder die Auflösung angeordnet worden is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4

Wer als Leiter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oder eines Aufzuges Ordner verwendet, die Waffen oder sonstige Gegenstände, die ihrer Art nach zur Verletzung von Personen oder Beschädigung von Sachen geeignet und bestimmt sind, mit sich führe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5

Wer als Leiter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oder eines Aufzuges

1. die Versammlung oder den Aufzug wesentlich anders durchführt, als die Veranstalter bei der Anmeldung angegeben haben, oder
2. Auflagen nach § 15 Abs. 1 oder 2 nicht nachkomm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sechs Monaten oder mit Geldstrafe bis zu einhundertachtzig Tagessätzen bestraft.

§ 26

Wer als Veranstalter oder Leiter

1. eine öffentliche Versammlung oder einen Aufzug trotz vollziehbaren Verbots durchführt oder trotz Auflösung oder Unterbrechung durch die Polizei fortsetzt oder
2. eine öffentliche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oder einen Aufzug ohne Anmeldung (§ 14) durchführ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7

(1) Wer bei öffentlichen Versammlungen oder Aufzügen Waffen oder sonstige Gegenstände, die ihrer Art nach zur Verletzung von Personen oder Beschädigung von Sachen geeignet und bestimmt sind, mit sich führt, ohne dazu behördlich ermächtigt zu sei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Ebenso wird bestraft, wer ohne behördliche Ermächtigung Waffen oder sonstige Gegenstände im Sinne des Satzes 1 auf dem Weg zu öffentlichen Versammlungen oder Aufzügen mit sich führt, zu derartigen Veranstaltungen hinschafft oder sie zur Verwendung bei derartigen Veranstaltungen bereithält oder verteilt.

(2) Wer

1. entgegen § 17a Abs. 1 bei öffentlichen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Aufzügen oder sonstigen öffentlichen Veranstaltungen unter freiem Himmel oder auf dem Weg dorthin Schutzwaffen oder Gegenstände, die als Schutzwaffen geeignet und den Umständen nach dazu bestimmt sind, Vollstreckungsmaßnahmen eines Trägers von Hoheitsbefugnissen abzuwehren, mit sich führt,
 2. entgegen § 17a Abs. 2 Nr. 1 an derartigen Veranstaltungen in einer Aufmachung, die geeignet und den Umständen nach darauf gerichtet ist, die Feststellung der Identität zu verhindern, teilnimmt oder den Weg zu derartigen Veranstaltungen in einer solchen Aufmachung zurücklegt oder
 3. sich im Anschluß an oder sonst im Zusammenhang mit derartigen Veranstaltungen mit anderen zusammenrottet und dabei
 - a) Waffen oder sonstige Gegenstände, die ihrer Art nach zur Verletzung von Personen oder Beschädigung von Sachen geeignet und bestimmt sind, mit sich führt,
 - b) Schutzwaffen oder sonstige in Nummer 1 bezeichnete Gegenstände mit sich führt oder
 - c) in der in Nummer 2 bezeichneten Weise aufgemacht ist,
-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8

Wer der Vorschrift des § 3 zuwiderhandel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9

(1) Ordnungswidrig handelt, wer

1. an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oder einem Aufzug teilnimmt, deren Durchführung durch vollziehbares Verbot untersagt ist,
- 1a. entgegen § 17a Abs. 2 Nr. 2 bei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einem Aufzug oder einer sonstigen öffentlichen Veranstaltung unter freiem Himmel oder auf dem Weg dorthin Gegenstände, die geeignet und den Umständen nach dazu bestimmt sind, die Feststellung der Identität zu verhindern, mit sich führt.
2. sich trotz Auflösung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oder eines Aufzuges durch die zuständige Behörde nicht unverzüglich entfernt,
3. als Teilnehmer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oder eines Aufzuges einer vollziehbaren Auflage nach § 15 Abs. 1 oder 2 nicht nachkommt,
4. trotz wiederholter Zurechtweisung durch den Leiter oder einen Ordner fortfährt, den Ablauf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oder eines Aufzuges zu stören,

5. sich nicht unverzüglich nach seiner Ausschließung aus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oder einem Aufzug entfernt,
6. der Aufforderung der Polizei, die Zahl der von ihm bestellten Ordner mitzuteilen, nicht nachkommt oder eine unrichtige Zahl mitteilt (§ 9 Abs. 2),
7. als Leiter oder Veranstalter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oder eines Aufzuges eine größere Zahl von Ordnern verwendet, als die Polizei zugelassen oder genehmigt hat (§ 9 Abs. 2, § 18 Abs. 2), oder Ordner verwendet, die anders gekennzeichnet sind, als es nach § 9 Abs. 1 zulässig ist, oder
8. als Leiter den in eine öffentliche Versammlung entsandten Polizeibeamten die Anwesenheit verweigert oder ihnen keinen angemessenen Platz einräumt.

(2) Die Ordnungswidrigkeit kann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Nr. 1 bis 5 mit einer Geldbuße bis tausend Deutsche Mark und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Nr. 6 bis 8 mit einer Geldbuße bis zu fünftausend Deutsche Mark geahndet werden.

§ 29a

(1) Ordnungswidrig handelt, wer entgegen § 16 Abs. 1 an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oder an einem Aufzug teilnimmt oder zu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oder zu einem Aufzug auffordert.

(2) Die Ordnungswidrigkeit kann mit einer Geldbuße bis zu dreißigtausend Deutsche Mark geahndet werden.

§ 30

Gegenstände, auf die sich eine Straftat nach § 27 oder § 28 oder eine Ordnungswidrigkeit nach § 29 Abs. 1 Nr. 1a oder 3 bezieht, können eingezogen werden. § 74a des Strafgesetzbuches und § 23 des Gesetzes über Ordnungswidrigkeiten sind anzuwenden.

Abschnitt V Schlußbestimmungen

§ 31

(Aufhebungsvorschriften)

§ 32

Dieses Gesetz gilt nach Maßgabe des § 13 Abs. 1 des Dritten Überleitungsgesetzes auch im Land Berlin. Rechtsverordnungen, die auf Grund der in diesem Gesetz enthaltenen Ermächtigung erlassen werden, gelten im Land Berlin nach § 14 des Dritten Überleitungsgesetzes.

§ 33

(Inkrafttreten)

Anlage (zu § 15 Abs. 2)

Die Abgrenzung des Ortes nach § 15 Abs. 2 Satz 2 (Denkmal für die ermordeten Juden Europas) umfasst das Gebiet der Bundeshauptstadt

Berlin, das umgrenzt wird durch die Ebertstraße, zwischen der Straße In den Ministergärten bzw. Lennestraße und der Umfahrung Platz des 18. März, einschließlich des unbefestigten Grünflächenbereichs Ebertpromenade und des Bereichs der unbefestigten Grünfläche im Bereich des J.-W.-von-Goethe-Denkmal, die Behrenstraße, zwischen Ebertstraße und Wilhelmstraße, die Cora-Berliner-Straße, die Gertrud-Kolmar-Straße, nördlich der Einmündung der Straße In den Ministergärten, die Hannah-Arendt-Straße, einschließlich der Verlängerung zur Wilhelmstraße. Die genannten Umgrenzungslinien sind einschließlich der Fahrbahnen, Gehwege und aller sonstigen zum Betreten oder Befahren bestimmten öffentlichen Flächen Bestandteil des Gebiets.

2. 집회법초안

주 집회법 제정 전 단계에서 주를 위한 조언 근거로서 연방 및 주 연구모임에 의한 집회법초안

제1장 총칙

제1조 원칙

- ① 누구든지 평화적으로 그리고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공개적으로 집회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항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1. 기본법 제18조에 의해 집회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이 박탈된 자,
 2. 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이라고 선언된 정당,
 3. 기본법 제9조 제2항 또는 결사법에 따라 금지된 단체, 또는
 4. 집회를 거행하거나 참가함으로써, 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이라고 선언된 정당 또는 그 일부 내지 대체 조직이 목적하는 바를 조장코자 하는 자

제2조 정의규정

- ① 이 법에서 의미하는 집회란 공동의, 주로 공적인 의사형성에의 참여를 위한 토론이나 시위를 목적으로 하는 적어도 2인 이상의 어떤 장소에

고정되거나 움직이는 회합을 말한다.

② 공개집회란 집회예의 참가가 개별적으로 확정된 인적 범위에 한정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집회의 주관

① 각각의 공개 집회 시에는 한 사람이 주관권을 가져야 한다.

② 주최자가 집회를 주관한다. 집회가 단체에 의해 주최되는 경우, 그 단체를 대표하는 자에 의해 집회가 주관된다.

제4조 주관자의 권리의무

① 집회를 주관하는 자는,

1. 집회의 진행경과를 결정하고,
2.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고 그리고
3. 집회를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

② 집회를 주관하는 자는, 집회에서 외부로 폭력행위가 저질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적절한 조치는 특히 비폭력 호소 및 폭력을 쓸 준비가 되어 있는 추종자의 분리가 될 수 있다.

③ 집회를 주관하는 자는, 그 임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당한 수의 명예직 질서유지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질서유지인은 무기 또는 그 성질상 사람을 해하거나 물건에 손상을 가져오기에 적합하고 확실한 기타의 물건을 소지할 수 없고, 성년에 달하여야 하며, “질서유지인” 문구가 적힌 백색의 완장에 의해서 표시될 수 있다.

④ 경찰관들이 공개집회에 파견되었을 경우, 그들 또는 경찰 현장지휘부가 집회를 주관하는 자에게 그 신분을 밝혀야 한다. 그들에게는 적당한

자리가 주어져야 한다.

제5조 집회참가자의 의무

- ① 집회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관자 또는 질서유지인의 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 ② 집회로부터 배제된 자는 지체 없이 집회장소를 떠나야 한다.
- ③ 집회가 해산되면 모든 참가자들은 지체 없이 집회장소를 떠나야 한다.

제6조 무기 금지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1. 공개집회에서 무기 또는 그 성질상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적합하고 확실한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는 것 또는
2. 무기 또는 제1호에서 의미하는 기타의 물건을 공개집회에 참가하러 가는 도중에 소지하거나, 그와 같은 집회장소로 운반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집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준비하거나 배포하는 것.

제7조 제복착용 금지

공동의 정치적 신념의 표현으로서 제복, 제복의 일부 또는 같은 종류의 의복을 공연히 또는 집회에서 착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8조 질서문란행위 금지

- ① 공개집회에서 집회의 질서 있는 거행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질서문란행위는 금지된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1. 금지되지 않은 집회를 저지 또는 해산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거행을 좌절시킬 의도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또는 현저한 질서문란을 야기하는 것,
2. 공개집회 시 그 주관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적법하게 질서유지임무를 완수함에 있어 이에 폭력 또는 폭력적 협박으로 저항하거나 그가 적법하게 질서유지임무를 행사하는 도중에 이에 폭력을 가하는 것 또는
3. 공연히, 집회에서, 또는 문서배포, 음향 또는 영상매체, 정보저장장치, 삽화 또는 기타의 표현물을 통하여, 집행 가능한 금지명령에 의하여 그 거행이 금지되거나 집행 가능한 해산명령이 발하여진 집회에서의 참가를 권유하는 것.

제2장 옥내공개집회

제9조 주최자의 권리의무

- ① 옥내공개집회로의 초청 시에는 공중에 알리기 위하여 주최자의 이름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특정된 인물 또는 인적 범위에 대하여는 초청 시에 집회 참가를 배제할 수 있다.
- ③ 언론사 기자들은 배제될 수 없다; 그들은 집회를 주관하는 자 또는 질서유지인에게 기자증으로써 신분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④ 주최자는, 제2문 또는 제3문의 조치에 대한 심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한, 관할 관청의 요구가 있으면 선임된 질서유지인의 수 및 성명, 태명, 생일, 출생지 그리고 주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관할 관청은, 질서유지인이 집회의 평화성을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이 이를

정당화하는 경우, 질서유지인을 부적합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관할 관청은 질서유지인의 수를 적정하게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가택권: 질서문란자의 배제

- ① 집회를 주관하는 자는 가택권을 행사한다.
- ② 집회를 주관하는 자는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참가자를 집회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제11조 제한, 금지, 해산

- ① 관할 관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옥내집회의 거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 1. 주최자가 제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2. 주최자 또는 집회를 주관하는 자가 무기 또는 제6조 제1호 소정의 기타 물건을 소지한 자들의 입장을 허용하는 경우,
- 3. 주최자 또는 그 추종자들이 집회의 폭력적인 진행을 추구한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 4. 주최자 또는 그 추종자들이 중죄 또는 직권으로 소추될 수 있는 경죄를 대상으로 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거나 이를 수인할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② 관할 관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집회의 개시 이후에도 이유를 붙여 집회를 제한하거나 해산할 수 있다.

- 1. 주최자가 제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2. 집회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거나 참가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3. 집회를 주관하는 자가 무기 또는 제6조 제1호 소정의 기타 물건을 소지한 자들을 즉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배제를 집행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 또는
4. 집회의 진행을 통하여 중죄 또는 직권으로 소추될 수 있는 경죄를 대상으로 하는 형법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또는 집회에서 그러한 범죄행위가 권유되거나 고무되고 집회를 주관하는 자가 이를 지체 없이 제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문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다른 조치, 특히 중지 조치로서는 충분치 않을 경우에 한하여 해산이 허용된다.

③ 이의신청 및 취소소송은 집행정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제12조 촬영·녹음

① 경찰은, 어떤 참가자가 제11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집회 해산의 근거를 야기한다는 사실이 이를 정당화하고 그러한 해산 근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한, 옥내공개집회에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그 참가자를 촬영·녹음 할 수 있다. 그 조치는 제3자가 불가피하게 관계되는 경우에도 시행될 수 있다. 제1문은 조망 촬영에 대하여 준용된다.

② 촬영·녹음물은 공개집회 또는 그와 시적 및 물적으로 직접적 관계가 있는 사건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이는 제3항에 거시된 목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③ 촬영·녹음물은 그것이 다음 각 호의 1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한 사용될 수 있다.

1. 범죄행위 또는 질서위반행위의 소추를 위하여,

2. 관계인이 그와 같은 범죄를 준비하거나 범하였다는 의심이 있고 그가 또한 장래에 그러한 범죄행위를 범할 것이라는 가정의 근거가 존재하는 개개의 경우 집회에서 또는 집회와 관련한 범죄의 방지를 위하여, 또는
3. 집회에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공공의 안전에 대한 방해가 발생하는 한,
 - a. 경찰의 양성교육 및 재교육 목적을 위하여 또는
 - b. 경찰 대응의 기한 있는 문서화를 위하여.
- ④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 b목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촬영·녹음물은, 서류 중인 사법 절차의 대상이 아닌 한, 당해 자료가 생성된 때로부터 늦어도 3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 ⑤ 경찰의 양성교육 및 재교육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촬영·녹음물은 가능한 한 익명화되어야 한다.

제3장 옥외공개집회

제13조 신고 및 통지 의무

- ① 옥외공개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늦어도 그 공지 72시간 이전에 관할 관청에 문서, 전자문서 또는 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제2항 제1문 및 제2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공지란 주최자가 특정인 또는 불특정인에게 집회의 장소, 시간 및 목적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신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집회의 장소,
 2. 집회의 개시 시점,
 3. 집회의 목적,

4. 주최자,
5. 집회를 주관하는 자,
6. 예상되는 참가자 수,
7. 집회의 의도된 경과,
8. 집회의 거행을 위하여 소지하는 물건이나 사용되는 기술적 보조수단
그리고
9. 예정된 질서유지인의 수

움직이는 집회의 경우 그 의도된 진로 또한 통지하여야 한다. 주최자는 제1문 및 제2문에 따른 신고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관할 관청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획된 집회의 동기가 순식간에 형성된 경우, 그 집회는 늦어도 그 공지와 동시에 문서, 전자문서 또는 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 되어야 한다.

④ 집회가 그 직접적 동기에서 무계획적으로 주최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 신고의무는 면제된다.

⑤ 주최자는, 제2문 또는 제3문의 조치에 대한 심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한, 관할 관청의 요구가 있으면 선임된 질서유지인의 수 및 성명, 태명, 생일, 출생지 그리고 주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관할 관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질서유지인을 부적합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1. 집회를 주관하는 자가 집회 도중에 질서유지에 힘쓰는 것을 보조하기에 그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2. 그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투입함으로써 집회의 질서문란 또는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적 근거가 이를

정당화하는 경우.

관할 관청은 질서유지인의 수를 제한하거나 주최자에게 그 수를 적정하게 늘릴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

- ① 관할 관청은, 그것이 집회의 종류 및 규모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보이는 한, 집회의 준비를 위하여 주최자와 협력한다. 특히 관할 관청은 주최자에게 집회의 거행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그와 논의할 기회를 준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력 시에 주최자는 특히 집회의 종류, 규모 및 예정된 경과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집회 도중에 주최자, 집회를 주관하는 자 및 관할 관청은 상호간에 집회의 질서 있는 거행에 관련된 상황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관할 관청은 제15조에 따른 조치를 행함에 있어 주최자 또는 집회를 주관하는 자의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협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 제한, 금지, 해산

- ① 관할 관청은, 그 처분 발령 시 인식 가능한 상황에 따르면 집회의 거행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질서가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되는 경우 옥외집회의 거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관할 관청은 그 경우 제3자의 동등한 권리를 유의하여야 한다.
- ② 집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히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다.
 - 1. 집회가 나치의 폭력적이고 자의적인 통치 하에서 비인도적 취급을 당한 희생자를 상기시키는 역사적으로 특별하고 초지역적인 의미를 가진 기념 장소에서 개최되는 경우, 그리고

2. 그 처분 발령 시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정에 따르면 집회를 통하여 희생자의 존엄이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삽입: 제1문 제1호 소정의 장소 지정]은 제1문 제1호 소정의 장소이다. 그 장소의 경계는 이 법의 첨부 I 에 규정한다.

- ③ 집회의 개시 이후에 관할 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의 전제조건이 존재하는 경우 집회를 제한하거나 해산할 수 있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는 집회 개시 전 적시에 실행되어야 한다.
- ④ 옥외공개집회 시에 관할 관청은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참가자를 집회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 ⑤ 금지된 집회는 해산되어야 한다.
- ⑥ 이의신청 및 취소소송은 집행정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제16조 촬영·녹음

- ① 경찰은, 어떤 참가자로부터 공개집회에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질서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나온다는 사실적 근거가 이를 정당화하고 그러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한, 옥외 공개집회에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공개적으로 그 참가자를 촬영·녹음 할 수 있다. 촬영·녹음은 제3자가 불가피하게 관계되는 경우에도 시행될 수 있다. 제1문은 조망촬영에 대하여 준용된다.
- ② 옥외공개집회에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어떤 참가자에 대한 몰래 촬영·녹음은, 그 위험 방지가 다른 방법으로는 본질적으로 어려울 경우, 공공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용된다. 제1항 제2문은 준용된다. 관계인에 대하여는 그 사람의 신원이 확인되고 제4항 제1호 및 제2호 소정의 사용목적이 위태롭지 않게 되지 않는 한 제1문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그 종료 후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알리지 않을 수 있다.

1. 관계인이 다른 방법으로 그 조치에 대하여 알게 된 경우,
2. 그 조치 종료 후 촬영·녹음물이 지체 없이 파기된 경우,
3. 50인 이상에게 알려야 하는 경우.

알리지 않은 경우 그 이유는 문서화 되어야 한다.

③ 경찰은 경찰투입을 유도하고 지휘하기 위하여 집회와 그 주변에 대한 조망촬영을 할 수 있다. 대상이 된 사람의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조망촬영물의 분석은, 제1항 또는 제4항 제1호나 제2호 소정의 전제조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④ 촬영·녹음물은 그것이 다음 각 호의 1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한 사용될 수 있다.

1. 범죄행위 또는 질서위반행위의 소추를 위하여,
2. 관계인이 그와 같은 범죄를 준비하거나 범하였다는 의심이 있고, 그가 또한 장래에 그러한 범죄행위를 범할 것이라는 가정의 근거가 존재하는 개개의 경우 집회에서 또는 집회와 관련한 범죄의 방지를 위하여, 또는
3. 공개집회에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공공의 안전에 대한 방해가 발생 하는 한,
 - a. 경찰의 양성교육 및 재교육 목적을 위하여 또는
 - b. 경찰 대응의 기한 있는 문서화를 위하여.

⑤ 촬영·녹음물은 공개집회 또는 그와 시적 및 물적으로 직접적 관계가 있는 사건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이는 제4항에 거시된 목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 ⑥ 제4항 제2호 또는 제3호 b목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촬영·녹음물은, 계류 중인 사법 절차의 대상이 아닌 한, 당해 자료가 생성된 때로부터 늦어도 3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 ⑦ 경찰의 양성교육 및 재교육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촬영·녹음물은 가능한 한 익명화되어야 한다.

제17조 호신장구 및 변장 금지

- ① 옥외공개집회 또는 기타 옥외공개행사에서 또는 그에 참가하러 가는 도중에, 호신장구 또는 호신장구로 적합하고 상황에 따라 고권적 권한을 가진 당국자의 집행조치를 저지하기에 확실한 물건을 소지하는 것은 금지된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1. 그와 같은 행사에 사람의 신원 확인을 방해하기에 적합하고 상황에 따라 그러함에 적절한 변장을 하고 참가하거나, 그와 같은 행사에 그와 같은 변장을 하고 참가하러 가는 행위,
 2. 그와 같은 행사에서 또는 그에 참가하러 가는 도중에, 사람의 신원 확인을 방해하기에 적합하고 상황에 따라 그러함이 확실한 물건을 소지하는 행위, 또는
 3. 그와 같은 행사에 연이어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의 평화를 해하는 행위를 위하여 결집하고 그 때에,
 - a. 무기 또는 그 성질상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데 적합하고 또한 확실한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는 것
 - b. 호신장구 또는 제2호에서 묘사된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는 것 또는

c. 제1호에서 묘사된 방법으로 변장을 하고 나타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은 관습적으로 그 행사에서 제1항에 묘사된 물건을 소지하게 되거나 제2항 제1호에 묘사된 변장을 한 사람이 참가하는 기타 옥외공개행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에는 특히 종교 행사 및 민속 축제가 포함된다. 관할 관청은 공공의 안전 또는 질서가 위태로워질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④ 관할 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금지를 위반하는 자들을 집회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4장 형벌 및 범칙금 규정

제5장 종결규정

(기본권의 제한, 발효)

Entwurf eines Versammlungsgesetzes durch Bund-Länder-Arbeitsgruppe im Vorfeld der Schaffung von Landesver- sammlungsgesetzen als Beratungsgrundlage für die Länder

Abschnitt 1. Allgemeines

§ 1 Grundsatz

- (1) Jedermann hat das Recht, sich friedlich und ohne Waffen öffentlich zu versammeln.
- (2) Dieses Recht hat nicht,
 1. wer das Grundrecht der Versammlungsfreiheit nach Artikel 18 des Grundgesetzes verwirkt hat,
 2. eine Partei, die nach Artikel 21 Abs. 2 des Grundgesetzes dur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 worden ist,
 3. eine Vereinigung, die nach Artikel 9 Abs. 2 des Grundgesetzes oder nach dem Vereinsgesetz verboten ist, oder
 4. wer mit der Durchführung oder Teilnahme an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die Ziele einer nach Artikel 21 Abs. 2 des

Grundgesetzes dur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en Partei oder Teil- oder Ersatzorganisation einer Partei fördern will.

§ 2 Begriffsbestimmungen

- (1) Eine Versammlung im Sinne dieses Gesetzes ist eine ortsfeste oder sich fortbewegende Zusammenkunft von mindestens zwei Personen zur gemeinschaftlichen, überwiegend auf die Teilhabe an der öffentlichen Meinungsbildung gerichteten Erörterung oder Kundgebung.
- (2) Eine öffentliche Versammlung liegt vor, wenn die Teilnahme nicht auf einen individuell feststehenden Personenkreis beschränkt ist.

§ 3 Versammlungsleitung

- (1) Bei jeder öffentlichen Versammlung muss eine Person die Leitung innehaben.
- (2) Der Veranstalter leitet die Versammlung. Wird die Versammlung von einer Vereinigung veranstaltet, so wird sie von der Person geleitet, die deren Vorsitz führt. Der Veranstalter kann die Leitung einer anderen Person übertragen.

§ 4 Leitungsrechte und -pflichten

- (1) Wer eine Versammlung leitet,
 1. bestimmt den Ablauf der Versammlung,
 2. hat während der Versammlung für Ordnung zu sorgen und,

3. kann die Versammlung jederzeit schließen.

(2) Wer die Versammlung leitet, hat geeignete Maßnahmen zu ergreifen, um zu verhindern, dass aus der Versammlung heraus Gewalttätigkeiten begangen werden. Geeignete Maßnahmen können insbesondere der Aufruf zu Gewaltfreiheit und die Distanzierung von gewaltbereiten Anhängern sein.

(3) Wer die Versammlung leitet, kann sich zur Erfüllung seiner Aufgaben der Hilfe einer angemessenen Zahl ehrenamtlicher Ordner bedienen. Diese dürfen keine Waffen oder sonstigen Gegenstände mit sich führen, die ihrer Art nach zur Verletzung von Personen oder zur Beschädigung von Sachen geeignet und bestimmt sind, müssen volljährig und dürfen ausschließlich durch weiße Armbinden mit der Aufschrift “Ordner” gekennzeichnet sein.

(4) Werden in eine öffentliche Versammlung Polizeibeamte entsandt, so haben sie oder die polizeiliche Einsatzleitung vor Ort sich der Person zu erkennen zu geben, die die Versammlung leitet. Ihnen muss ein angemessener Platz eingeräumt werden.

§ 5 Pflichten der teilnehmenden Personen

(1) Alle Personen, die an einer Versammlung teilnehmen, haben die zur Aufrechterhaltung der Ordnung getroffenen Anweisungen der die Versammlung leitenden Person oder der Ordner zu befolgen.

(2) Wer aus der Versammlung ausgeschlossen wird, hat sie unverzüglich zu verlassen.

(3) Wird die Versammlung aufgelöst, haben sich alle teilnehmenden

Personen unverzüglich zu entfernen.

§ 6 Waffenverbot

Es ist verboten, ohne Erlaubnis

1. bei öffentlichen Versammlungen Waffen oder sonstige Gegenstände, die ihrer Art nach zur Verletzung von Personen oder zur Beschädigung von Sachen geeignet und bestimmt sind, mit sich zu führen oder
2. Waffen oder sonstige Gegenstände im Sinne der Nummer 1 auf dem Weg zu öffentlichen Versammlungen mit sich zu führen, zu derartigen Versammlungen hinzuschaffen oder sie zur Verwendung bei derartigen Versammlungen bereitzuhalten oder zu verteilen.

§ 7 Uniformierungsverbot

Es ist verboten, öffentlich oder in einer Versammlung Uniformen, Uniformteile oder gleichartige Kleidungsstücke als Ausdruck einer gemeinsamen politischen Gesinnung zu tragen.

§ 8 Störungsverbot

- (1) Bei öffentlichen Versammlungen sind Störungen verboten, die bezwecken, die ordnungsgemäße Durchführung der Versammlung zu verhindern.
- (2) Es ist verboten,

1. in der Absicht, nicht verbotene Versammlungen zu verhindern oder zu sprengen oder sonst ihre Durchführung zu vereiteln, Gewalttätigkeiten vorzunehmen oder anzudrohen oder erhebliche Störungen zu verursachen,
2. bei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der leitenden Person oder den Ordnern in der rechtmäßigen Erfüllung ihrer Ordnungsaufgaben mit Gewalt oder Drohung mit Gewalt Widerstand zu leisten oder sie während der Ausübung ihrer Ordnungsaufgaben tätlich anzugreifen oder
3. öffentlich, in einer Versammlung, oder durch Verbreiten von Schriften, Ton- oder Bildträgern, Datenspeichern, Abbildungen oder anderen Darstellungen zur Teilnahme an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aufzufordern, deren Durchführung durch ein vollziehbares Verbot untersagt oder deren vollziehbare Auflösung angeordnet worden ist.

Abschnitt 2. Öffentliche Versammlungen in geschlossenen Räumen

§ 9 Veranstalterrechte und -pflichten

- (1) In der Einladung zu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in geschlossenen Räumen ist zur Information der Öffentlichkeit der Name des Veranstalters anzugeben.
- (2) Bestimmte Personen oder Personenkreise können in der Einladung von der Teilnahme an einer Versammlung ausgeschlossen werden.

(3) Pressevertreter können nicht ausgeschlossen werden. Sie haben sich gegenüber der die Versammlung leitenden Person und gegenüber den Ordnern durch ihren Presseausweis auszuweisen.

(4) Der Veranstalter hat der zuständigen Behörde auf Anforderung die Zahl sowie Familiennamen, Vornamen, Geburtsnamen, Geburtsdaten, Geburtsorte und Anschriften der bestellten Ordner mitzuteilen, soweit dies erforderlich ist, um die Prüfung von Maßnahmen nach Satz 2 oder Satz 3 zu ermöglichen.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Ordner als ungeeignet ablehnen, wenn Tatsachen die Annahme rechtfertigen, dass diese Personen die Friedlichkeit der Versammlung gefährden.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die Zahl der Ordner angemessen beschränken.

§ 10 Hausrecht; Ausschluss von Störern

(1) Die eine Versammlung leitende Person übt das Hausrecht aus.

(2) Wer die Versammlung leitet, kann teilnehmende Personen, welche die Ordnung erheblich stören, von der Versammlung ausschließen.

§ 11 Beschränkungen, Verbote, Auflösung

(1)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die Durchführung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in geschlossenen Räumen beschränken oder verbieten, wenn

1. der Veranstalter eine der Voraussetzungen des § 1 Abs. 2 Nr. 1 bis 4 erfüllt,

2. der Veranstalter oder die Person, die die Versammlung leitet, Personen Zutritt gewährt, die Waffen oder sonstige Gegenstände im Sinne von § 6 Nr. 1 mit sich führen,
 3. Tatsachen festgestellt sind, aus denen sich ergibt, dass der Veranstalter oder sein Anhang einen gewalttätigen Verlauf der Versammlung anstreben, oder
 4. Tatsachen festgestellt sind, aus denen sich ergibt, dass der Veranstalter oder sein Anhang Ansichten vertreten oder Äußerungen dulden werden, die in ein oder ein von Amts wegen zu verfolgendes Vergehen zum Gegenstand haben.
- (2) Nach Versammlungsbeginn kann die zuständige Behörde die Versammlung unter Angabe des Grundes beschränken oder auflösen, wenn
1. der Veranstalter eine der Voraussetzungen des § 1 Abs. 2 Nr. 1 bis 4 erfüllt,
 2. die Versammlung einen gewalttätigen Verlauf nimmt oder eine unmittelbare Gefahr für Leben oder Gesundheit der teilnehmenden Personen besteht,
 3. die Person, die die Versammlung leitet, Personen, die Waffen oder sonstige Gegenstände im Sinne von § 6 Nr. 1 mit sich führen, nicht sofort ausschließt und nicht für die Durchführung des Ausschlusses sorgt oder
 4. durch den Verlauf der Versammlung gegen Strafgesetze verstoßen wird, die ein Verbrechen oder ein von Amts wegen zu verfolgendes Vergehen zum Gegenstand haben, oder wenn

in der Versammlung zu solchen Straftaten aufgefordert oder angereizt wird und die die Versammlung leitende Person dies nicht unverzüglich unterbindet.

In den Fällen des Satzes 1 Nr. 2 bis 4 ist die Auflösung nur zulässig, wenn andere Maßnahmen der zuständigen Behörde, insbesondere eine Unterbrechung, nicht ausreichen.

(3) Widerspruch und Anfechtungsklage haben keine aufschiebende Wirkung.

§ 12 Bild- und Tonaufnahmen

(1) Die Polizei darf Bild- und Tonaufnahmen von einer teilnehmenden Person bei oder im Zusammenhang mit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in geschlossenen Räumen offen anfertigen, wenn Tatsachen die Annahme rechtfertigen, dass die Person einen Grund zur Auflösung der Versammlung nach § 11 Abs. 2 Nr. 2 oder Nr. 4 verursacht, und, soweit es erforderlich ist, um das Eintreten eines solchen Auflösungsgrundes zu verhindern. Die Aufnahmen dürfen auch angefertigt werden, wenn andere Personen unvermeidbar betroffen werden. Für übersichtsaufnahmen gilt Satz 1 entsprechend.

(2) Die Aufnahmen sind nach Beendigung der öffentlichen Versammlung oder zeitlich und sachlich damit unmittelbar im Zusammenhang stehender Ereignisse unverzüglich zu vernichten. Dies gilt nicht, soweit sie für die in Absatz 3 aufgeführten Zwecke benötigt werden.

(3) Die Aufnahmen dürfen verwendet werden, soweit dies erforderlich ist

1. zur Verfolgung einer Straftat oder einer Ordnungswidrigkeit,
 2. im Einzelfall zur Verhütung von Straftaten bei oder im Zusammenhang mit Versammlungen, weil der Betroffene verdächtig ist, solche Straftaten vorbereitet oder begangen zu haben, und Grund zu der Annahme besteht, dass er auch künftig solche Straftaten begehen wird, oder
 3. sofern eine Störung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bei oder im Zusammenhang mit der öffentlichen Versammlung eingetreten ist,
 - a) zum Zweck der polizeilichen Aus- oder Fortbildung oder
 - b) zur befristeten Dokumentation polizeilichen Handelns.
- (4) Aufnahmen, die für die Zwecke des Absatzes 3 Nr. 2 oder Nr. 3 Buchstabe b verwendet werden, sind spätestens nach Ablauf von drei Jahren seit ihrer Anfertigung zu vernichten, sofern sie nicht Gegenstand eines anhängigen gerichtlichen Verfahrens sind.
- (5) Aufnahmen, die zum Zweck der polizeilichen Aus- oder Fortbildung verwendet werden sollen, sind, soweit möglich, zu anonymisieren.

Abschnitt 3. Öffentliche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 13 Anzeige- und Mitteilungspflicht

- (1) Wer eine öffentliche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veranstalten will, hat dies bei der zuständigen Behörde spätestens 72 Stunden vor der Bekanntgabe schriftlich, elektronisch oder zur

Niederschrift nach Absatz 2 Satz 1 und 2 anzuzeigen. Bekanntgabe ist die Mitteilung des Veranstalters von Ort, Zeitpunkt und Thema der Versammlung an einen bestimmten oder unbestimmten Personenkreis.

(2) In der Anzeige sind anzugeben

1. der Ort der Versammlung,
2. der Zeitpunkt des Beginns der Versammlung,
3. das Versammlungsthema,
4. der Veranstalter,
5. die Person, die die Versammlung leitet,
6. die erwartete Zahl der teilnehmenden Personen,
7. der beabsichtigte Ablauf der Versammlung,
8. die zur Durchführung der Versammlung mitgeführten Gegenstände oder die verwendeten technischen Hilfsmittel und
9. die vorgesehene Zahl von Ordnern.

Bei sich fortbewegenden Versammlungen ist auch der beabsichtigte Streckenverlauf mitzuteilen. Der Veranstalter hat Änderungen der Angaben nach den Sätzen 1 und 2 der zuständigen Behörde unverzüglich mitzuteilen.

(3) Entsteht der Anlass für eine geplante Versammlung kurzfristig, so ist die Versammlung spätestens mit der Bekanntgabe schriftlich, elektronisch oder zur Niederschrift bei der zuständigen Behörde anzuzeigen.

(4) Die Anzeigepflicht entfällt, wenn die öffentliche Versammlung aus aktuellem Anlass augenblicklich und ohne Veranstalter entsteht.

(5) Der Veranstalter hat der zuständigen Behörde auf Anforderung die Zahl sowie Familiennamen, Vornamen, Geburtsnamen, Geburtsdaten, Geburtsorte und Anschriften der Ordner mitzuteilen, soweit dies erforderlich ist um die Prüfung von Maßnahmen nach Satz 2 oder Satz 3 zu ermöglichen.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Ordner ablehnen, wenn

1. sie ungeeignet sind, die Person, die die Versammlung leitet, darin zu unterstützen, während der Versammlung für Ordnung zu sorgen, oder
2. tatsächliche Anhaltspunkte die Annahme rechtfertigen, dass durch den Einsatz dieser Personen als Ordner Störungen der Versammlung oder Gefahren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entstehen können.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die Zahl der Ordner beschränken oder dem Veranstalter aufgeben, die Zahl der Ordner angemessen zu erhöhen.

§ 14 Zusammenarbeit

(1) Die zuständige Behörde arbeitet zur Vorbereitung der Versammlung mit dem Veranstalter zusammen, soweit dies nach Art und Umfang der Versammlung erforderlich erscheint. Insbesondere gibt sie dem Veranstalter Gelegenheit, mit ihr Einzelheiten der Durchführung der Versammlung zu erörtern.

(2) Bei der Zusammenarbeit nach Absatz 1 soll der Veranstalter insbesondere über Art, Umfang und den vorgesehenen Ablauf der Versammlung informieren.

(3) Während der Versammlung sollen der Veranstalter, die die Versammlung leitende Person und die zuständige Behörde sich gegenseitig über die Umstände informieren, die für die ordnungsgemäße Durchführung der Versammlung wesentlich sind.

(4) Die zuständige Behörde soll die Mitwirkung des Veranstalters oder der die Versammlung leitenden Person nach den Absätzen 1 bis 3 bei Maßnahmen nach § 15 berücksichtigen.

§ 15 Beschränkungen, Verbote, Auflösung

(1)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die Durchführung der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beschränken oder verbieten, wenn nach den zur Zeit des Erlasses der Verfügung erkennbaren Umständen die Öffentliche Sicherheit oder Ordnung bei Durchführung der Versammlung unmittelbar gefährdet ist. Sie hat dabei gleichrangige Rechte Dritter zu beachten.

(2) Eine Versammlung kann insbesondere beschränkt oder verboten werden, wenn

1. sie an einem Ort stattfindet, der als Gedenkstätte von historisch herausragender, überregionaler Bedeutung an die Opfer der menschenunwürdigen Behandlung unter der nationalsozialistischen Gewalt- und Willkürherrschaft erinnert, und
2. nach den zur Zeit des Erlasses der Verfügung konkret feststellbaren Umständen zu besorgen ist, dass durch die Versammlung die Würde der Opfer beeinträchtigt wird.

[Einsetzen: Bestimmung des Ortes nach Satz 1 Nummer 1] ist ein

Ort nach Satz 1 Nummer 1. Seine Abgrenzung ergibt sich aus Anlage I zu diesem Gesetz.

(3) Nach Versammlungsbeginn kann die zuständige Behörde eine Versammlung beschränken oder auflösen, wenn die Voraussetzungen für eine Beschränkung oder ein Verbot nach den Absätzen 1 oder 2 vorliegen.

(4) Bei öffentlichen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kann die zuständige Behörde teilnehmende Personen, welche die Ordnung erheblich stören, von der Versammlung ausschließen.

(5) Eine verbotene Versammlung ist aufzulösen.

(6) Widerspruch und Anfechtungsklage haben keine aufschiebende Wirkung.

§ 16 Bild- und Tonaufnahmen

(1) Die Polizei darf Bild- und Tonaufnahmen von einer teilnehmenden Person bei oder im Zusammenhang mit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offen anfertigen, wenn tatsächliche Anhaltspunkte die Annahme rechtfertigen, dass von der Person bei oder im Zusammenhang mit der öffentlichen Versammlung erhebliche Gefahren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oder Ordnung ausgehen werden, und, soweit es erforderlich ist, um den Eintritt dieser Gefahren zu verhindern. Die Aufnahmen dürfen auch angefertigt werden, wenn andere Personen unvermeidbar betroffen werden.

(2) Verdeckte Bild- und Tonaufnahmen von einer teilnehmenden

Person bei oder im Zusammenhang mit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sind zulässig zur Abwehr einer erheblichen Gefahr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wenn die Abwehr der Gefahr auf andere Weise wesentlich erschwert wäre. Absatz 1 Satz 2 gilt entsprechend. Der Betroffene ist über die nach Satz 1 getroffenen Maßnahmen nach deren Abschluss zu unterrichten, soweit seine Identität bekannt ist und die Verwendungszwecke nach Absatz 4 Nr. 1 und 2 nicht gefährdet sind. Die Benachrichtigung kann unterbleiben wenn

1. der Betroffene auf andere Weise Kenntnis von der Maßnahme erhalten hat,
2. die Aufnahmen unverzüglich nach Beendigung der Maßnahme vernichtet worden sind,
3. mehr als 50 Personen benachrichtigt werden müssten.

Wird von einer Benachrichtigung abgesehen, sind die Gründe zu dokumentieren.

(3) Die Polizei kann Übersichtsaufnahmen von der Versammlung und ihrem Umfeld zur Lenkung und Leitung des Polizeieinsatzes anfertigen. Die Auswertung dieser Aufnahmen mit dem Ziel der Identifizierung der darauf abgebildeten Personen ist nur zulässig, soweit die Voraussetzungen nach Absatz 1 oder Absatz 4 Nr. 1 oder 2 vorliegen.

(4) Die Aufnahmen dürfen auch verwendet werden, soweit dies erforderlich ist

1. zur Verfolgung einer Straftat oder einer Ordnungswidrigkeit,
2. im Einzelfall zur Verhütung von Straftaten bei oder im

Zusammenhang mit Versammlungen, weil die Betroffenen verdächtig sind, solche Straftaten vorbereitet oder begangen zu haben und Grund zu der Annahme besteht, dass sie auch künftig solche Straftaten begehen werden, oder

3. sofern eine Störung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bei oder im Zusammenhang mit der öffentlichen Versammlung eingetreten ist,

a) zum Zweck der polizeilichen Aus- oder Fortbildung oder

b) zur befristeten Dokumentation polizeilichen Handelns.

(5) Die Aufnahmen sind nach Beendigung der öffentlichen Versammlung oder zeitlich und sachlich damit unmittelbar im Zusammenhang stehender Ereignisse unverzüglich zu vernichten. Dies gilt nicht, soweit sie für die in Absatz 4 aufgeführten Zwecke benötigt werden.

(6) Aufnahmen, die für die Zwecke des Absatzes 4 Nr. 2 oder Nr. 3 Buchstabe b verwendet werden, sind spätestens nach Ablauf von drei Jahren seit ihrer Anfertigung zu vernichten, sofern sie nicht Gegenstand eines anhängigen gerichtlichen Verfahrens sind.

(7) Aufnahmen, die zum Zweck der polizeilichen Aus- oder Fortbildung verwendet werden, sind soweit möglich, zu anonymisieren.

§ 17 Schutzwaffen- und Vermummungsverbot

(1) Es ist verboten, bei öffentlichen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oder sonstigen öffentlichen Veranstaltungen unter freiem Himmel oder auf dem Weg dorthin Schutzwaffen oder Gegenstände mit sich zu führen, die als Schutzwaffen geeignet und den Umständen

nach dazu bestimmt sind, Vollstreckungsmaßnahmen eines Trägers von Hoheitsbefugnissen abzuwehren.

(2) Es ist auch verboten,

1. an derartigen Veranstaltungen in einer Aufmachung teilzunehmen, die geeignet und den Umständen nach darauf gerichtet ist, die Feststellung der Identität zu verhindern, oder den Weg zu derartigen Veranstaltungen in einer solchen Aufmachung zurückzulegen,
2. bei derartigen Veranstaltungen oder auf dem Weg dorthin Gegenstände mit sich zu führen, die geeignet und den Umständen nach dazu bestimmt sind, die Feststellung der Identität zu verhindern, oder
3. sich im Anschluss an oder sonst im Zusammenhang mit derartigen Veranstaltungen mit anderen zu einem gemeinschaftlichen friedensstörenden Handeln zusammenzuschließen und dabei
 - a) Waffen und sonstige Gegenstände, die ihrer Art nach zur Verletzung von Personen oder Beschädigung von Sachen geeignet und bestimmt sind, mit sich zu führen,
 - b) Schutzwaffen oder sonstige in Nummer 2 bezeichnete Gegenstände mit sich zu führen oder
 - c) in einer in Nummer 1 bezeichneten Aufmachung aufzutreten.

(3) Die Absätze 1 und 2 gelten nicht für sonstige öffentliche Veranstaltungen unter freiem Himmel, bei denen üblicherweise in Absatz 1 bezeichnete Gegenstände mitgeführt werden oder Personen in einer in Absatz 2 Nr. 1 bezeichneten Aufmachung teilnehmen. Hierzu

gehören insbesondere religiöse Veranstaltungen und Volksfeste.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Ausnahmen von den Verboten der Absätze 1 und 2 zulassen, wenn eine Gefährdung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oder Ordnung nicht zu besorgen ist.

(4)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Personen, die den Verboten der Absätze 1 und 2 zuwiderhandeln, von der Veranstaltung ausschließen.

Abschnitt 4. Straf- und Bußgeldvorschriften

Abschnitt 5. Schlussbestimmungen

(Einschränkung von Grundrechten, Inkrafttreten)

3. 브란덴부르크 집회법

묘지와 그 주변에서의 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

2006년 10월 26일 제정

2006년 10월 31일 발효

제1조

① 옥외공개집회 및 행진은 묘지(브란덴부르크 주 묘지법 시행을 위한 법률 제1조 제2항) 및 이 법을 통하여 또는 이 법을 근거로 특정된 묘지와 직접적이고 공간적으로 밀접한 주변에서는 금지된다.

② 집회 또는 행진의 외부적 경과 또는 대상, 특히 처벌이 예상되지 않는 특정 견해의 선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개의 경우에 관할 관청은 주최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금지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1. 나치 전몰장병 추모 또는 나치 군대 최고사령관 포고의 형식이나 내용 또는 명확히 특징지어진 나치 기관의 관습 및 관례에 연결되는 경우,
2. 침략전쟁, 폭력적 통치, 집단학살, 비인도적 범죄 또는 전쟁범죄의 불법이 단지 일부일지라도 부인, 승인되거나 또는 그 해악이 과소 평가되는 경우 또는

3. 이러한 불법이나 나치의 폭력적이고 자의적인 통치 유지에 책임 있거나 단지 사실적인 협력이, 또한 단지 군인다운 업적을 고려하여, 명예롭거나 그렇지 않으면 모범적인 것으로 표현되는 경우

③ 생략(구체적 장소 및 그 경계를 정한 규정임).

④ 주 정부는 법규명령을 통하여 그 이외의 묘지의 직접적이고 공간적으로 밀접한 주변을 정할 수 있다.

제2조

이 법은 연방 집회법 제16조를 대체한다.

제3조

이 법은 집회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기본법 제8조 제1항, 브란덴부르크 주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관한 기본권(기본법 제5조 제1항, 브란덴부르크 주 헌법 제19조 제1항)을 제한한다.

**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an und auf Gräberstätten
(Gräberstätten-Versammlungsgesetz -
GräbVersammlG)
vom 26. Oktober 2006 (GVBl.I/06, [Nr. 11], S.114)**

§ 1

(1) Öffentliche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und Aufzüge sind auf Gräberstätten (§ 1 Abs. 2 des Gesetzes zur Ausführung des Gräbergesetzes im Land Brandenburg) sowie in dem durch oder aufgrund dieses Gesetzes bestimmten Bereich der unmittelbaren und engen räumlichen Nähe von Gräberstätten verboten.

(2) Im Einzelfall kann die zuständige Behörde auf Antrag des Veranstalters eine Ausnahme vom Verbot nach Absatz 1 erteilen, es sei denn, der äußere Ablauf oder der Gegenstand der Versammlung oder des Aufzugs, insbesondere auch eine vorgesehene nicht strafbare Kundgabe bestimmter Meinungen, lässt besorgen, dass

1. an Formen oder Inhalte nationalsozialistischen Heldengedenkens oder von Verlautbarungen des Oberkommandos der Wehrmacht oder an bestimmte kennzeichnende Gebräuche und Gepflogenheiten nationalsozialistischer Organisationen angeknüpft wird,
2. das Unrecht eines Angriffskriegs, einer Gewaltherrschaft, von

Völkermord, von Verbrechen gegen die Menschlichkeit oder von Kriegsverbrechen auch nur teilweise geleugnet, gebilligt oder verharmlost wird oder

3. die verantwortliche oder auch nur tatsächliche Mitwirkung an diesem Unrecht oder an der Aufrechterhaltung der nationalsozialistischen Gewalt- und Willkürherrschaft, auch nur in Ansehung soldatischer Leistungen, als ehrenhaft oder sonst vorbildlich dargestellt wird.

(3) Bei der Gräberstätte “Waldfriedhof Halbe” umfasst der Bereich der unmittelbaren und engen räumlichen Nähe die an sie angrenzenden und zum Betreten oder Befahren bestimmten oder geeigneten Flächen

1. der Ernst-Teichmann-Straße vom Abzweig des Weges am Friedhof an, einschließlich der Park- und Wendefläche vor dem Haupteingang zur Gräberstätte,
2. des Friedhofes der Gemeinde Halbe, einschließlich der Fläche des Denkmals an die Gefallenen des 1. Weltkrieges, sowie
3. des Weges am Friedhof und des Weges, der in Verlängerung dieses Weges entlang der Einfriedung der Gräberstätte um diese herum bis auf die Ernst-Teichmann-Straße führt.

(4) Die Landesregierung kann durch Rechtsverordnung den Bereich der unmittelbaren und engen räumlichen Nähe weiterer Gräberstätten bestimmen.

§ 2

Dieses Gesetz ersetzt § 16 des Versammlungsgesetzes.

§ 3

Dieses Gesetz schränkt das Grundrecht auf Versammlungsfreiheit (Artikel 8 Abs. 1 des Grundgesetzes, Artikel 23 Abs. 1 der Verfassung des Landes Brandenburg) und das Grundrecht der freien Meinungsäußerung (Artikel 5 Abs. 1 des Grundgesetzes, Artikel 19 Abs. 1 der Verfassung des Landes Brandenburg) ein.

4. 바이에른 집회법

바이에른 집회법

2008년 07월 22일 제 정

2015년 11월 23일 최종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원칙

- ① 누구든지 평화적으로 그리고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공개적으로 집회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항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1. 기본법 제18조에 의해 집회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이 박탈된 자,
 2. 집회를 거행하거나 참가함으로써, 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헌이라고 선언된 정당 또는 그 일부 내지 대체 조직이 목적하는 바를 조장코자 하는 자,
 3. 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위헌이라고 선언된 정당, 또는
 4. 기본법 제9조 제2항 또는 결사법에 따라 금지된 단체

제2조 정의규정, 적용범위

- ① 집회란 공동의, 주로 공적인 의사형성에의 참여를 위한 토론이나 시위를 목적으로 하는 적어도 2인 이상의 회합을 말한다.
- ② 집회는 그에의 참가가 개별적으로 확정된 인적 범위에 한정되지 않는 경우 공개적이다.
- ③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은 단지 공개집회에만 적용된다.

제3조 집회의 주관

- ① 주최자가 집회를 주관한다. 주최자는 집회의 주관을 어떤 자연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② 단체가 집회를 주최하는 경우, 주최자가 집회의 주관을 제1항 제2문에 따라 다른 어떤 자연인에게 양도하지 않는 한, 그 단체의 대표자가 집회를 주관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은 제13조 제4항에 따른 우발적 집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4조 주관자의 권리의무

- ① 주관자는
 1. 집회의 진행경과를, 특히 발언권의 부여 및 박탈을 통해 결정하고,
 2.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고,
 3. 집회를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고 그리고
 4.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현존하여야 한다.
- ② 주관자는 그 임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당한 수의 성년 질서유지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질서유지인은 “질서유지인”이라고 적힌 백색의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추가적인 표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주관자는 무기 또는 그 성질상 사람을 해하거나 물건에 손상을 가져오기에 적합하고 상황에 따라 그러함이 확실한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를 질서 유지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집회에 출입하고 적당한 자리를 차지할 권리를 가진다.

1. 옥외집회의 경우, 그것이 경찰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
2. 옥내집회의 경우, 범죄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적 근거가 존재하거나 공공의 안전에 관한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때.

경찰관은 주관자에게 그 신분을 밝혀야 한다, 옥외집회의 경우 이는 경찰 현장지휘부가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제5조 집회참가자의 의무

- ①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주관자 또는 질서유지인의 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 ② 집회로부터 배제된 자는 지체 없이 집회장소를 떠나야 한다.
- ③ 집회가 해산되면 모든 참가자들은 지체 없이 집회장소를 떠나야 한다.

제6조 무기 금지

무기 또는 그 성질상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적합하고 상황에 따라 그러함이 확실한 기타의 물건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1. 집회에서 소지하는 것 또는
2. 집회에 참가하러 가는 도중에 소지하거나, 집회장소로 운반하거나

또는 집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준비하거나 배포하는 것.

제7조 제복착용 및 군사적 행태 금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것을 통하여 위협적 효과가 나타나는 한 금지된다.

1. 공개 또는 비공개집회에서 공동의 정치적 신념의 표현으로서 제복, 제복의 일부 또는 같은 종류의 의복을 착용하는 것 또는
2. 집회 또는 그 일부가 외관상 준군사적으로 각인되는 것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공개 또는 비공개집회에 참가하는 것.

제8조 질서문란행위 금지, 호소 금지

① 공개 또는 비공개집회의 질서 있는 거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질서문란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특히 금지된다.

1. 금지되지 않은 공개 또는 비공개집회를 저지 또는 해산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거행을 좌절시킬 의도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또는 현저한 질서문란을 야기하는 것 또는
2. 공개집회 시 그 주관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적법하게 질서유지임무를 완수함에 있어 이에 폭력 또는 폭력적 협박으로 저항하거나 그가 적법하게 질서유지임무를 행사하는 도중에 이에 폭력을 가하는 것.

③ 공연히, 공개 또는 비공개집회에서, 인터넷 상에서 또는 문서배포, 음향 또는 영상매체, 정보저장장치, 삽화 또는 기타의 표현물을 통하여, 집행 가능한 금지명령에 의하여 그 거행이 금지되거나 집행 가능한 해산명령이 발하여진 집회への 참가를 권유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9조 촬영·녹음 또는 영상·음향 자료화

① 경찰은, 어떤 참가자로부터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나온다는 사실적 근거가 이를 정당화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회 시 또는 집회와 관련하여 단지 공개적으로만 그 참가자를 촬영·녹음 하거나 영상·음향 자료화 할 수 있다. 그 조치는 제3자가 불가피하게 관계되는 경우에도 시행될 수 있다.

② 경찰은, 개별적인 사안에 있어 집회의 규모 또는 조망불가능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경찰투입을 유도하고 지휘하기 위하여 옥외 집회와 그 주변을 단지 공개적으로만 조망촬영 할 수 있다. 경찰은, 집회, 집회의 일부 또는 그 주변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이를 정당화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망영상 자료화를 할 수도 있다. 조망촬영 또는 조망영상 자료화의 대상이 된 사람의 신원확인 은 제1항의 전제조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제작된 영상·음향 자료와 조망영상 자료는, 다음 각 호의 1을 위하여 필요로 하지 않는 한 집회 종료 후 지체 없이 분석하고 늦어도 2개월 이내에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1. 집회에서 또는 집회와 관련한 범죄행위에 대한 소추를 위하여 또는
2. 관계인이 집회에서 또는 집회와 관련하여 범죄를 준비하거나 범하였다는 의심이 있고, 그로 인하여 장래의 집회에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 그 위험 방지.

영상·음향 자료와 조망영상 자료에 의한 사람의 신원 확인이 제1문 제2호에 따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경우, 기술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신원 확인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제1문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기되지 아니한 영상·음향 자료와 조망영상 자료는,

도중에 제1문 제1호 따른 범죄행위에 대한 소추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닌 한, 당해 자료가 생성된 때로부터 늦어도 6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제2항 제2문에 따른 조망영상 자료가 경찰의 양성교육 및 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에 의한 사람의 신원 확인을 불가능하게 하고 이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든 특별판을 제작하여야 한다. 그것은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경찰의 양성교육 및 재교육을 위한 특별판은 그 자료가 제3항에 따라 파기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상·음향 자료와 조망영상 자료의 제작 그리고 제3항 제1문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활용의 각 이유는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4항 제1문에 따라 조망영상 자료로부터 특별판이 제작되는 경우 양성교육 및 재교육의 불가피성, 제작된 특별판의 수 및 그 보관 장소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⑥ 형사소송법 및 질서위반행위법에 따른 개인 정보의 수집권한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2장 옥내집회

제10조 주최자의 권리의무

① 특정된 인물 또는 인적 범위에 대하여는 초청 시에 집회 참가를 배제할 수 있다.

② 언론사 기자들은 배제될 수 없다; 그들은 집회의 주관자 또는 질서유지인에게 기자로서의 신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③ 주최자는, 주관자가 집회의 평화성을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이 관찰

관청에 의한 주관자의 성명, 태명 및 주소(개인 정보)의 수령을 정당화하는 경우, 관할 관청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관할 관청은 제1문에 따른 전제조건이 존재하는 경우 주관자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주최자는, 질서유지인이 집회의 평화성을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이 관할 관청에 의한 질서유지인에 대한 제3항 제1문 소정의 개인 정보의 수령을 정당화하는 경우, 관할 관청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관할 관청은 제1문에 따른 전제조건이 존재하는 경우 질서유지인을 거부할 수 있다.

⑤ 관할 관청은 질서유지인의 수를 늘리지 않으면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주최자에게 그 수를 늘릴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질서문란자의 배제, 가택권

① 주관자는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참가자를 집회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② 주관자는 가택권을 행사한다.

제12조 제한, 금지, 해산

① 관할 관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옥내집회의 거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주최자가 제1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 주최자 또는 주관자가 무기 또는 제6조 소정의 기타 물건을 소지한 자들의 입장을 허용하려 한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주최자 또는 그 추종자들이 집회의 폭력적인 진행을 추구한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4. 주최자 또는 그 추종자들이 중죄 또는 직권으로 소추될 수 있는 경죄를 대상으로 하려는 의도를 나타내거나 이를 수인할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② 관할 관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집회의 개시 이후에도 이유를 붙여 집회를 제한하거나 해산할 수 있다.

1. 주최자가 제1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 집회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거나 참가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3. 주관자가 무기 또는 제6조 소정의 기타 물건을 소지한 자들을 즉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배제를 집행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 또는
4. 집회의 진행을 통하여 중죄 또는 직권으로 소추될 수 있는 경죄를 대상으로 하는 형법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또는 집회에서 그러한 범죄행위가 권유되거나 고무되고 주관자가 이를 지체 없이 제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문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다른 조치, 특히 중지 조치로서는 충분치 않을 경우에 한하여 해산이 허용된다.

제3장 옥외집회

제13조 신고 및 통지 의무

① 옥외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늦어도 그 공지 48시간 이전에 관할 관청에 전화, 문서, 전자문서 또는 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기한의 계산 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전화를 통한 신고 시 관할 관청은 그 신고를 문서, 전자문서 또는 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고는 빨라야 의도하는 집회 개시일 전 2년까지 가능하다. 집회의 공지란 주최자가 특정인 또는 불특정인에게 집회의 장소, 시간 및 목적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신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집회의 장소,
2. 집회의 의도된 개시 및 종료 시점,
3. 집회의 목적,
4. 주최자와 주관자 및 제10조 제3항 제1문 소정의 그들의 개인 정보
그리고
5. 움직이는 집회의 경우 그 의도된 진로.

주최자는 제1문에 따른 신고내용에 본질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관할 관청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획된 집회의 동기가 순식간에 형성된 경우(긴급집회), 그 집회는 늦어도 그 공지와 동시에 전화, 문서, 전자문서 또는 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 또는 경찰에 신고 되어야 한다.

④ 집회가 그 직접적 동기에서 무계획적으로 주최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우발적 집회) 신고의무는 면제된다.

⑤ 관할 관청은, 주관자가 집회의 평화성을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이 이를 정당화하는 경우 주관자를 거부할 수 있다.

⑥ 주최자는, 질서유지인이 집회의 평화성을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이 관할 관청에 의한 질서유지인에 대한 제3항 제1문 소정의 개인 정보의 수령을 정당화하는 경우, 관할 관청의 요구가 있으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관할 관청은 제1문에 따른 전제조건이 존재하는 경우 질서유지인을 거부할 수 있다.

⑦ 관할 관청은 질서유지인의 수를 늘리지 않으면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주최자에게 그 수를 늘릴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

① 관할 관청은 주최자에게 집회의 거행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그와 논의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주최자에게 협력의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② 관할 관청은 제15조에 따른 조치를 행함에 있어 주최자 또는 주관자가 제1항에 따라 그와 어느 정도 협력하였는지를 고려할 수 있다.

제15조 제한, 금지, 해산

① 관할 관청은, 그 처분 발령 시 인식 가능한 상황에 따르면 집회의 거행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질서가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되는 경우 또는 제12조 제1항의 전제조건이 존재하는 경우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 관할 관청은, 그 처분 발령 시 인식 가능한 상황에 따르면 집회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히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무거운 상징효력에 의하여 나치의 폭력적이고 자의적인 통치를 상고하게 하는 의미내용을 지니는 일이나 장소에서 집회가 개최되고, 그로 인하여
 - a. 희생자의 존엄성이 침해될 염려가 있거나 또는

- b. 기본적 사회관 또는 윤리관에 대한 현저한 침해가 발생할 직접적 위험이 존재하거나 또는
- 2. 집회를 통하여 나치의 폭력적이고 자의적인 통치가 승인, 찬양, 정당화되거나 그 해악이 과소평가 되고, 또한 나치즘을 이끌었던 대표자에 대한 추모를 통하여 그러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희생자의 존엄성이 침해될 직접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는 집회 개시 전 적시에 실행되어야 한다.
- ④ 집회의 개시 이후에 관할 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의 전제조건이 존재하거나 법원에 의한 제한에 위반하는 경우 집회를 제한하거나 해산할 수 있다.
- ⑤ 관할 관청은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참가자를 집회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 ⑥ 금지된 집회는 해산되어야 한다.

제16조 호신장구 및 변장 금지

- ① 집회 또는 기타 옥외공개행사에서 또는 그에 참가하러 가는 도중에, 호신장구 또는 호신장구로 적합하고 상황에 따라 고권적 권한을 가진 당국자의 집행조치를 저지하기에 확실한 물건을 소지하는 것은 금지된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 1. 그와 같은 행사에 사람의 신원 확인을 방해하기에 적합하고 상황에 따라 그러함에 적절한 변장을 하고 참가하거나, 그와 같은 행사에 그와 같은 변장을 하고 참가하러 가는 행위,
 - 2. 그와 같은 행사에서 또는 그에 참가하러 가는 도중에, 사람의 신원

확인을 방해하기에 적합하고 상황에 따라 그러함이 확실한 물건을 소지하는 행위, 또는

3. 그와 같은 행사에 연이어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의 평화를 해하는 행위를 위하여 결집하고 그 때에,

a. 무기 또는 그 성질상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데 적합하고 또한 확실한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는 것

b. 호신장구 또는 제2호에서 묘사된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는 것 또는

c. 제1호에서 묘사된 방법으로 변장을 하고 나타나는 것.

③ 관할 관청은 공공의 안전 또는 질서가 위태로워질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은 옥외 종교의식, 종교상의 행렬, 성지순례행렬, 관습적인 장례의식, 혼례하객의 행렬 그리고 전통적인 민속축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관할 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를 위반하는 자들을 집회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4장 평화구역

제17조 평화구역

바이에른 주 의회를 위하여 평화구역을 설정한다. 주 의사당 주변의 평화구역은 주도인 뮌헨의 다음 열거지역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 막스-베버-플라츠, 이네레 비이너 슈트라세, 비이너 플라츠, 암 가슈타익, 루드비히스브뤼케, 이사를 강 서안, 프린츠레겐텐브뤼케, 쥐트리헤스 론델 암 프리텐스엔겔, 프린츠레겐텐슈트라세, 이스마닝어 슈트라세, 막스-베버-

플라츠 위에 열거한 도로와 광장들은 평화구역의 일부가 아니다.

제18조 주 의회의 보호

평화구역 내에서는 옥외집회가 금지된다. 제1문에 따른 집회를 권유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제19조 집회의 허가

- ① 금지되지 않은 옥외집회는 평화구역 내에서도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집회허가의 신청은 늦어도 집회공지 7일 전까지 문서, 전자문서 또는 조서 작성의 방법으로 주 내무건설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은 이 경우에 준용된다.
- ③ 주 내무건설교통부는 주 의회 의장과 합의하여 집회허가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한다.
- ④ 이 법률의 다른 규정 특히 제13조 내지 제15조는 허가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5장 형벌 및 범칙금 규정

제20조 형벌 규정

-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 1. 제6조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그 조에 묘사된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거나, 집회장소로 운반하거나 집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하거나 배포한 자,

2. 제8조 제2항 제1호에 위반하여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또는 현저한 질서문란을 야기한 자 또는
3. 제16조 제2항 제3호의 a목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의 평화를 해하는 행위를 위하여 결집하고 그 때에 무기 또는 그 목에 묘사된 기타의 물건을 소지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제4조 제2항 제3문에 위반하여 질서유지인을 사용한 자,
2. 제8조 제2항 제2호에 위반하여 그 곳에 열거된 사람에게 저항하거나 폭력을 가한 자,
3. 제8조 제3항 또는 제18조 제2문에 위반하여 집회への 참가를 권유한 자,
4.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1문, 제15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집행 가능한 명령 또는 법원에 의한 제한에 위반한 주최자 또는 주관자,
5. 제16조 제1항에 위반하여 호신장구 또는 그에 속하는 물건을 소지한 자,
6. 제16조 제2항 제1호에 위반하여 그와 같은 행사에 참가하거나 그 장소로 나아간 자 또는
7. 제16조 제2항 제3호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의 평화를 해하는 행위를 위하여 결집하고 그 때에 같은 호의 b목 또는 c목에 규정된 금지에 위반한 자.

제21조 범칙금 규정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4조 제3항 제1문에 위반하여 경찰관이 출입을 못하게 하거나 적당한 자리를 배정하지 아니한 주관자,
 2. 제7조 제1호에 위반하여 제복, 제복의 일부 또는 같은 종류의 의복을 착용한 자,
 3. 제10조 제2항 제1문에 위반하여 기자를 배제한 자,
 4. 제10조 제3항 제2문 또는 제13조 제5항에 따라 관할 관청이 거부한 사람을 집회의 주관자로 선임한 주최자,
 5. 제10조 제4항 제2문 또는 제13조 제6항 제2문에 따라 관할 관청이 거부한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선임한 주최자,
 6. 제12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1문, 제15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집행 가능한 명령 또는 법원에 의한 제한에 위반한 자,
 7. 제13조 제4항의 전제조건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제13조 제1항 제1문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없이 옥외집회를 거행한 주최자 또는 주관자,
 8. 제16조 제2항 제2호에 위반하여 그에 속하는 물건을 소지한 자, 또는
 9. 제18조 제1문에 위반하여 그곳에 언급된 집회에 참가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유로 이하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4조 제2항 제2문에 따라 허용된 것과 다른 표식을 한 질서유지인을 선임한 주관자,
2. 제5조 제2항에 위반하여 지체 없이 집회장소를 떠나지 않은 자,
3. 제5조 제3항에 위반하여 지체 없이 집회장소를 떠나지 않은 자,

4. 주관자 또는 질서유지인의 거듭된 제지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1항에 위반하여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계속한 자,
5. 제10조 제3항 제1문에 위반하여 개인 정보를 통지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통지하지 아니한 주최자 또는
6. 제13조 제2항 제2문에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제22조 몰수

제20조 소정의 범죄행위 또는 제21조 제1항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 또는 제2항 제4호 소정의 질서위반행위에 관계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형법 제74a조와 질서위반행위법 제23조가 적용된다.

제6장 종결규정

제23조 기본권의 제한

집회의 자유(기본법 제8조 제1항, 바이에른 헌법 제113조)와 표현의 자유(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문, 바이에른 헌법 제110조 제1항 제1문)에 관한 기본권은 이 법에 따라서 제한된다.

제24조 관할

- ① 이 법 소정의 경찰은 바이에른 경찰직무법(PAG) 제1조 소정의 경찰이다.
- ② 이 법 소정의 관할 관청은 기초자치단체 행정청을 말한다. 집회 개시 이후 및 유예할 수 없는 사안의 경우에는 경찰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기초자치단체 행정청의 영역을 넘어서서 행해지는 옥외집회(초지역적 집회)의 경우에는, 주최자가 관할 기초자치단체 행정청 가운데 어느 하나에 집회 신고를 하면 신고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이는 제13조

제3항에 따른 긴급집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고를 받은 기초자치단체행정청은 지체 없이 다른 기초자치단체 행정청과 상급자치단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집회가 여러 상급자치단체의 영역에 걸쳐 행해지는 경우에는 상급자치단체는 이를 주 내무건설교통부에 알려야 한다.

④ 초지역적 집회의 경우 상급자치단체는 제2항 제1문에 따른 관할 행정청 중 어느 하나가 여타의 행정청과 협의하여 제6조 제1항 제3문, 제5항 내지 제7항, 제15조 및 제16조 제3항에 따른 처분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다수의 상급자치단체의 영역에 걸쳐 행해지는 초지역적 집회의 경우에는 주 내무건설교통부가 이런 결정을 행할 수 있다.

제25조 소송의 집행부정지 효력

이 법에 따른 결정에 대항하는 소송은 집행부정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제26조 비용

제6조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결정을 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법에 따른 직무행위는 무료이다.

제27조 (폐지)

제28조 발효, 실효, 경과규정

이 법은 2008년 10월 1일에 발효된다. 이 법은 기본법 제125a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1978년 11월 15일에 공포되고(BGBI I S. 1789) 2005년 3월 24일에 최종으로 개정된(BGBI I S. 969) ‘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집회법)’을 대체한다.

Bayerisches Versammlungsgesetz

(BayVersG)

Vom 22. Juli 2008

(GVBl S. 421)

BayRS 2180-4-I

Zuletzt geändert durch § 1 ÄndG vom 23. 11. 2015

(GVBl S. 410)

Der Landtag des Freistaates Bayern hat das folgende Gesetz beschlossen, das hiermit bekannt gemacht wird:

Inhaltsübersicht

Erster Teil Allgemeine Bestimmungen

Art. 1 Grundsatz

Art. 2 Begriffsbestimmungen, Anwendungsbereich

Art. 3 Versammlungsleitung

Art. 4 Leitungsrechte und -pflichten

Art. 5 Pflichten der teilnehmenden Personen

Art. 6 Waffenverbot

Art. 7 Uniformierungs- und Militanzverbot

Art. 8 Störungsverbot, Aufrufverbot

Art. 9 Bild- und Tonaufnahmen oder -aufzeichnungen

Zweiter Teil Versammlungen in geschlossenen Räumen

Art. 10 Veranstalterrechte und -pflichten

Art. 11 Ausschluss von Störern, Hausrecht

Art. 12 Beschränkungen, Verbote, Auflösung

Dritter Teil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Art. 13 Anzeige- und Mitteilungspflicht

Art. 14 Zusammenarbeit

Art. 15 Beschränkungen, Verbote, Auflösung

Art. 16 Schutzwaffen- und Vermummungsverbot

Vierter Teil Befriedeter Bezirk

Art. 17 Befriedeter Bezirk

Art. 18 Schutz des Landtags

Art. 19 Zulassung von Versammlungen

Fünfter Teil Straf- und Bußgeldvorschriften

Art. 20 Strafvorschriften

Art. 21 Bußgeldvorschriften

Art. 22 Einziehung

Sechster Teil Schlussbestimmungen

Art. 23 Einschränkung von Grundrechten

Art. 24 Zuständigkeiten

Art. 25 Keine aufschiebende Wirkung der Klage

Art. 26 Kosten

Art. 27 Folgeänderungen anderer Rechtsvorschriften

Art. 28 Inkrafttreten, Außerkrafttreten, Übergangsregelung

Erster Teil Allgemeine Bestimmungen

Art. 1 Grundsatz

(1) Jedermann hat das Recht, sich friedlich und ohne Waffen öffentlich mit anderen zu versammeln.

(2) Dieses Recht hat nicht,

1. wer das Grundrecht der Versammlungsfreiheit gemäß Art. 18 des Grundgesetzes verwirkt hat,
2. wer mit der Durchführung oder Teilnahme an einer Versammlung die Ziele einer nach Art. 21 Abs. 2 des Grundgesetzes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en Partei oder Teil- oder Ersatzorganisation einer Partei fördern will,
3. eine Partei, die nach Art. 21 Abs. 2 des Grundgesetzes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 worden ist, oder
4. eine Vereinigung, die nach Art. 9 Abs. 2 des Grundgesetzes oder nach dem Vereinsgesetz verboten ist.

Art. 2 Begriffsbestimmungen, Anwendungsbereich

(1) Eine Versammlung ist eine Zusammenkunft von mindestens zwei Personen zur gemeinschaftlichen, überwiegend auf die Teilhabe an der

öffentlichen Meinungsbildung gerichteten Erörterung oder Kundgebung.

(2) Eine Versammlung ist öffentlich, wenn die Teilnahme nicht auf einen individuell feststehenden Personenkreis beschränkt ist.

(3) Soweit nichts anderes bestimmt ist, gilt dieses Gesetz nur für öffentliche Versammlungen.

Art. 3 Versammlungsleitung

(1) Der Veranstalter leitet die Versammlung. Er kann die Leitung einer natürlichen Person übertragen.

(2) Veranstaltet eine Vereinigung die Versammlung, ist Leiter die Person, die den Vorsitz der Vereinigung

führt, es sei denn, der Veranstalter hat die Leitung nach Abs. 1 Satz 2 auf eine andere natürliche Person übertragen.

(3) Abs. 1 und 2 gelten nicht für Spontanversammlungen nach Art. 13 Abs. 4.

Art. 4 Leitungsrechte und -pflichten

(1) Der Leiter

1. bestimmt den Ablauf der Versammlung, insbesondere durch Erteilung und Entziehung des Worts,

2. hat während der Versammlung für Ordnung zu sorgen,

3. kann die Versammlung jederzeit schließen und

4. muss während der Versammlung anwesend sein.

(2) Der Leiter kann sich zur Erfüllung seiner Aufgaben der Hilfe einer

angemessenen Anzahl volljähriger Ordner bedienen. Die Ordner müssen weiße Armbinden mit der Aufschrift “Ordner” oder “Ordnerin” tragen;

zusätzliche Kennzeichnungen sind nicht zulässig. Der Leiter darf keine Ordner einsetzen, die Waffen oder sonstige Gegenstände mit sich führen, die ihrer Art nach geeignet und den Umständen nach dazu bestimmt

sind, Personen zu verletzen oder Sachen zu beschädigen.

(3) Polizeibeamte haben das Recht auf Zugang und auf einen angemessenen Platz

1. bei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wenn dies zur polizeilichen Aufgabenerfüllung erforderlich ist,
2. bei Versammlungen in geschlossenen Räumen, wenn tatsächliche Anhaltspunkte für die Begehung von Straftaten vorliegen oder eine erhebliche Gefahr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zu besorgen ist.

Polizeibeamte haben sich dem Leiter zu erkennen zu geben; bei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genügt es, wenn dies die polizeiliche Einsatzleitung tut.

Art. 5 Pflichten der teilnehmenden Personen

(1) Personen, die an der Versammlung teilnehmen, haben die zur Aufrechterhaltung der Ordnung getroffenen Anweisungen des Leiters oder der Ordner zu befolgen.

(2) Wer aus der Versammlung ausgeschlossen wird, hat sie unverzüglich

zu verlassen.

(3) Wird eine Versammlung aufgelöst, haben sich alle teilnehmenden Personen unverzüglich zu entfernen.

Art. 6 Waffenverbot

Es ist verboten, Waffen oder sonstige Gegenstände, die ihrer Art nach zur Verletzung von Personen oder zur Beschädigung von Sachen geeignet und den Umständen nach dazu bestimmt sind, ohne Erlaubnis der zuständigen Behörde

1. bei Versammlungen mit sich zu führen oder
2. auf dem Weg zu Versammlungen mit sich zu führen, zu Versammlungen hinzuschaffen oder sie zur Verwendung bei Versammlungen bereitzuhalten oder zu verteilen.

Art. 7 Uniformierungs- und Militanzverbot

Es ist verboten,

1. in einer öffentlichen oder nichtöffentlichen Versammlung Uniformen, Uniformteile oder gleichartige Kleidungsstücke als Ausdruck einer gemeinsamen politischen Gesinnung zu tragen oder
2. an einer öffentlichen oder nichtöffentlichen Versammlung in einer Art und Weise teilzunehmen, die dazu beiträgt, dass die Versammlung oder ein Teil hiervon nach dem äußeren Erscheinungsbild paramilitärisch geprägt wird,

sofern dadurch eine einschüchternde Wirkung entsteht.

Art. 8 Störungsverbot, Aufrufverbot

(1) Störungen, die bezwecken, die ordnungsgemäße Durchführung öffentlicher oder nichtöffentlicher Versammlungen zu verhindern, sind verboten.

(2) Es ist insbesondere verboten,

1. in der Absicht, nicht verbotene öffentliche oder nichtöffentliche Versammlungen zu verhindern oder zu sprengen oder sonst ihre Durchführung zu vereiteln, Gewalttätigkeiten vorzunehmen oder anzudrohen oder erhebliche Störungen zu verursachen oder
2. bei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dem Leiter oder den Ordnern in der rechtmäßigen Erfüllung ihrer Ordnungsaufgaben mit Gewalt oder Drohung mit Gewalt Widerstand zu leisten oder sie während der Ausübung ihrer Ordnungsaufgaben tätlich anzugreifen.

(3) Es ist verboten, öffentlich, in einer öffentlichen oder nichtöffentlichen Versammlung, im Internet oder durch Verbreiten von Schriften, Ton- oder Bildträgern, Datenspeichern, Abbildungen oder anderen Darstellungen zur Teilnahme an einer Versammlung aufzufordern, deren Durchführung durch ein vollziehbares Verbot untersagt oder deren vollziehbare Auflösung angeordnet worden ist.

Art. 9 Bild- und Tonaufnahmen oder -aufzeichnungen

(1) Die Polizei darf bei oder im Zusammenhang mit Versammlungen Bild- und Tonaufnahmen oder -aufzeichnungen von Teilnehmern nur

offen und nur dann anfertigen, wenn tatsächliche Anhaltspunkte die Annahme rechtfertigen, dass von ihnen erhebliche Gefahren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oder Ordnung ausgehen. Die Maßnahmen dürfen auch durchgeführt werden, wenn Dritte unvermeidbar betroffen werden.

(2) Die Polizei darf Übersichtsaufnahmen von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und ihrem Umfeld zur Lenkung und Leitung des Polizeieinsatzes nur offen und nur dann anfertigen, wenn dies wegen der Größe oder Unübersichtlichkeit der Versammlung im Einzelfall erforderlich ist. Übersichtsaufnahmen dürfen aufgezeichnet werden, soweit Tatsachen die Annahme rechtfertigen, dass von Versammlungen, von Teilen hiervon oder ihrem Umfeld erhebliche Gefahren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oder Ordnung ausgehen. Die Identifizierung einer auf den Übersichtsaufnahmen oder -aufzeichnungen abgebildeten Person ist nur zulässig, soweit die Voraussetzungen nach Abs. 1 vorliegen.

(3) Die nach Abs. 1 oder 2 angefertigten Bild-, Ton- und Übersichtsaufzeichnungen sind nach Beendigung der Versammlung unverzüglich auszuwerten und spätestens innerhalb von zwei Monaten zu löschen, soweit sie nicht benötigt werden

1. zur Verfolgung von Straftaten bei oder im Zusammenhang mit der Versammlung oder
2. im Einzelfall zur Gefahrenabwehr, weil die betroffene Person verdächtig ist, Straftaten bei oder im Zusammenhang mit der Versammlung vorbereitet oder begangen zu haben, und deshalb

zu besorgen ist, dass von dieser Person erhebliche Gefahren für künftige Versammlungen ausgehen.

Soweit die Identifizierung von Personen auf Bild-, Ton- und Übersichtsaufzeichnungen für Zwecke nach Satz 1 Nr. 2 nicht erforderlich ist, ist sie technisch unumkehrbar auszuschließen.

Bild-, Ton- und Übersichtsaufzeichnungen, die aus den in Satz 1 Nr. 2 genannten Gründen nicht gelöscht wurden, sind spätestens nach Ablauf von sechs Monaten seit ihrer Entstehung zu löschen, es sei denn, sie werden inzwischen zur Verfolgung von Straftaten nach Satz 1 Nr. 1 benötigt.

(4) Soweit Übersichtsaufzeichnungen nach Abs. 2 Satz 2 zur polizeilichen Aus- und Fortbildung benötigt werden, ist hierzu eine eigene Fassung herzustellen, die eine Identifizierung der darauf abgebildeten Personen unumkehrbar ausschließt. Sie darf nicht für andere Zwecke genutzt werden. Die Herstellung einer eigenen Fassung für Zwecke der polizeilichen Aus- und Fortbildung ist nur zulässig, solange die Aufzeichnung nicht nach Abs. 3 zu löschen ist.

(5) Die Gründe für die Anfertigung von Bild-, Ton- und Übersichtsaufzeichnungen nach Abs. 1 und 2 und für ihre Verwendung nach Abs. 3 Satz 1 Nrn. 1 und 2 sind zu dokumentieren. Werden von Übersichtsaufzeichnungen eigene Fassungen nach Abs. 4 Satz 1 hergestellt, sind die Notwendigkeit für die polizeiliche Aus- und Fortbildung, die Anzahl der hergestellten Fassungen sowie der Ort der Aufbewahrung zu dokumentieren.

(6) Die Befugnisse zur Erhebung personenbezogener Daten nach Maßgabe

der Strafprozessordnung und des Gesetzes über Ordnungswidrigkeiten bleiben unberührt.

Zweiter Teil Versammlungen in geschlossenen Räumen

Art. 10 Veranstalterrechte und -pflichten

(1) Bestimmte Personen oder Personenkreise können in der Einladung von der Teilnahme an der Versammlung ausgeschlossen werden.

(2) Pressevertreter können nicht ausgeschlossen werden. Sie haben sich gegenüber dem Leiter oder gegenüber den Ordnern als Pressevertreter auszuweisen.

(3) Der Veranstalter hat der zuständigen Behörde auf Anforderung Familiennamen, Vornamen, Geburtsnamen und Anschrift (persönliche Daten) des Leiters mitzuteilen, wenn Tatsachen die Annahme rechtfertigen, dass dieser die Friedlichkeit der Versammlung gefährdet. 2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den Leiter ablehnen, wenn die Voraussetzungen nach Satz 1 vorliegen.

(4) Der Veranstalter hat der zuständigen Behörde auf Anforderung die persönlichen Daten eines Ordners im Sinn des Abs. 3 Satz 1 mitzuteilen, wenn Tatsachen die Annahme rechtfertigen, dass dieser die Friedlichkeit der Versammlung gefährdet.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den Ordner ablehnen, wenn die Voraussetzungen nach Satz 1 vorliegen.

(5)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dem Veranstalter aufgeben, die Anzahl der Ordner zu erhöhen, wenn ohne die Erhöhung eine Gefahr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zu besorgen ist.

Art. 11 Ausschluss von Störern, Hausrecht

(1) Der Leiter kann teilnehmende Personen, die die Ordnung erheblich stören, von der Versammlung ausschließen.

(2) Der Leiter übt das Hausrecht aus.

Art. 12 Beschränkungen, Verbote, Auflösung

(1)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die Durchführung einer Versammlung in geschlossenen Räumen beschränken oder verbieten, wenn

1. der Veranstalter eine der Voraussetzungen des Art. 1 Abs. 2 erfüllt,
2. Tatsachen festgestellt sind, aus denen sich ergibt, dass der Veranstalter oder der Leiter Personen Zutritt gewähren wird, die Waffen oder sonstige Gegenstände im Sinn des Art. 6 mit sich führen,
3. Tatsachen festgestellt sind, aus denen sich ergibt, dass der Veranstalter oder sein Anhang einen gewalttätigen Verlauf der Versammlung anstrebt, oder
4. Tatsachen festgestellt sind, aus denen sich ergibt, dass der Veranstalter oder sein Anhang Ansichten vertreten oder Äußerungen dulden wird, die ein Verbrechen oder ein von Amts wegen zu verfolgendes Vergehen zum Gegenstand haben.

(2) Nach Versammlungsbeginn kann die zuständige Behörde die Versammlung unter Angabe des Grundes beschränken oder auflösen, wenn

1. der Veranstalter eine der Voraussetzungen des Art. 1 Abs. 2 erfüllt,
2. die Versammlung einen gewalttätigen Verlauf nimmt oder eine unmittelbare Gefahr für Leben oder Gesundheit der teilnehmenden Personen besteht,
3. der Leiter Personen, die Waffen oder sonstige Gegenstände im Sinn des Art. 6 mit sich führen, nicht sofort ausschließt und nicht für die Durchführung des Ausschlusses sorgt, oder
4. durch den Verlauf der Versammlung gegen Strafgesetze verstoßen wird, die ein Verbrechen oder ein von Amts wegen zu verfolgendes Vergehen zum Gegenstand haben, oder wenn in der Versammlung zu solchen Straftaten aufgefordert oder angereizt wird und der Leiter dies nicht unverzüglich unterbindet.

In den Fällen von Satz 1 Nrn. 2 bis 4 ist die Auflösung nur zulässig, wenn andere Maßnahmen der zuständigen Behörde, insbesondere eine Unterbrechung, nicht ausreichen.

Dritter Teil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Art. 13 Anzeige- und Mitteilungspflicht

(1) Wer eine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veranstalten will,

hat dies der zuständigen Behörde spätestens 48 Stunden vor ihrer Bekanntgabe fernmündlich, schriftlich, elektronisch oder zur Niederschrift

anzuzeigen. Bei der Berechnung der Frist bleiben Samstage, Sonn- und Feiertage außer Betracht. Bei einer fernmündlichen Anzeige kann die zuständige Behörde verlangen, die Anzeige schriftlich, elektronisch oder zur Niederschrift unverzüglich nachzuholen.⁴Eine Anzeige ist frühestens zwei Jahre vor dem beabsichtigten Versammlungsbeginn möglich.⁵Bekanntgabe einer Versammlung ist die Mitteilung des Veranstalters von Ort, Zeit und Thema der Versammlung an einen bestimmten oder unbestimmten Personenkreis.

(2) In der Anzeige sind anzugeben

1. der Ort der Versammlung,
2. der Zeitpunkt des beabsichtigten Beginns und des beabsichtigten Endes der Versammlung,
3. das Versammlungsthema,
4. der Veranstalter und der Leiter mit ihren persönlichen Daten im Sinn des Art. 10 Abs. 3 Satz 1 sowie
5. bei sich fortbewegenden Versammlungen der beabsichtigte Streckenverlauf.

Der Veranstalter hat wesentliche Änderungen der Angaben nach Satz 1 der zuständigen Behörde unverzüglich mitzuteilen.

(3) Entsteht der Anlass für eine geplante Versammlung kurzfristig (Eilversammlung), ist die Versammlung spätestens mit der Bekanntgabe

fernmündlich, schriftlich, elektronisch oder zur Niederschrift bei der zuständigen Behörde oder bei der Polizei anzuzeigen.

(4) Die Anzeigepflicht entfällt, wenn sich die Versammlung aus einem unmittelbaren Anlass ungeplant und ohne Veranstalter entwickelt (Spontanversammlung).

(5)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den Leiter ablehnen, wenn Tatsachen die Annahme rechtfertigen, dass dieser die Friedlichkeit der Versammlung gefährdet.

(6) Der Veranstalter hat der zuständigen Behörde auf Anforderung die persönlichen Daten eines Ordners im Sinn des Art. 10 Abs. 3 Satz 1 mitzuteilen, wenn Tatsachen die Annahme rechtfertigen, dass dieser die

Friedlichkeit der Versammlung gefährdet.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den Ordner ablehnen, wenn die Voraussetzungen nach Satz 1 vorliegen.

(7)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dem Veranstalter aufgeben, die Anzahl der Ordner zu erhöhen, wenn ohne die Erhöhung eine Gefahr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zu besorgen ist.

Art. 14 Zusammenarbeit

(1) Die zuständige Behörde soll dem Veranstalter Gelegenheit geben, mit ihr die Einzelheiten der Durchführung der Versammlung zu erörtern. Der Veranstalter ist zur Mitwirkung nicht verpflichtet.

(2)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bei Maßnahmen nach Art. 15 berücksichtigen, inwieweit der Veranstalter oder der Leiter nach Abs.

1 mit ihr zusammenarbeiten.

Art. 15 Beschränkungen, Verbote, Auflösung

(1)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eine Versammlung beschränken oder verbieten, wenn nach den zur Zeit des Erlasses der Verfügung erkennbaren Umständen die öffentliche Sicherheit oder Ordnung bei Durchführung der Versammlung unmittelbar gefährdet ist oder ein Fall des Art. 12 Abs. 1 vorliegt.

(2)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eine Versammlung insbesondere dann beschränken oder verbieten, wenn nach den zur Zeit des Erlasses der Verfügung erkennbaren Umständen

1. die Versammlung an einem Tag oder Ort stattfinden soll, dem ein an die nationalsozialistische Gewalt- und Willkürherrschaft erinnernder Sinngehalt mit gewichtiger Symbolkraft zukommt, und durch sie
 - a) eine Beeinträchtigung der Würde der Opfer zu besorgen ist, oder
 - b) die unmittelbare Gefahr einer erheblichen Verletzung grundlegender sozialer oder ethischer Anschauungen besteht oder
2. durch die Versammlung die nationalsozialistische Gewalt- und Willkürherrschaft gebilligt, verherrlicht, gerechtfertigt oder verharmlost wird, auch durch das Gedenken an führende Repräsentanten des Nationalsozialismus, und dadurch die unmittelbare Gefahr einer Beeinträchtigung der Würde der

Opfer besteht.

- (3) Maßnahmen nach Abs. 1 oder 2 sind rechtzeitig vor Versammlungsbeginn zu treffen.
- (4) Nach Versammlungsbeginn kann die zuständige Behörde eine Versammlung beschränken oder auflösen, wenn die Voraussetzungen für eine Beschränkung oder ein Verbot nach Abs. 1 oder 2 vorliegen oder gerichtlichen Beschränkungen zuwidergehandelt wird.
- (5)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teilnehmende Personen, die die Ordnung erheblich stören, von der Versammlung ausschließen.
- (6) Eine verbotene Versammlung ist aufzulösen.

Art. 16 Schutzwaffen- und Vermummungsverbot

- (1) Es ist verboten, bei Versammlungen oder sonstigen öffentlichen Veranstaltungen unter freiem Himmel oder auf dem Weg dorthin Schutzwaffen oder Gegenstände mit sich zu führen, die als Schutzwaffen geeignet und den Umständen nach dazu bestimmt sind, Vollstreckungsmaßnahmen eines Trägers von Hoheitsbefugnissen abzuwehren.
- (2) Es ist auch verboten,
 - 1. an derartigen Veranstaltungen in einer Aufmachung teilzunehmen, die geeignet und den Umständen nach darauf gerichtet ist, die Feststellung der Identität zu verhindern, oder den Weg zu derartigen Veranstaltungen in einer solchen Aufmachung zurückzulegen,

2. bei derartigen Veranstaltungen oder auf dem Weg dorthin Gegenstände mit sich zu führen, die geeignet und den Umständen nach dazu bestimmt sind, die Feststellung der Identität zu verhindern, oder
 3. sich im Anschluss an oder sonst im Zusammenhang mit derartigen Veranstaltungen mit anderen zu einem gemeinschaftlichen friedensstörenden Handeln zusammenzuschließen und dabei
 - a) Waffen oder sonstige Gegenstände, die ihrer Art nach zur Verletzung von Personen oder Beschädigung von Sachen geeignet und den Umständen nach dazu bestimmt sind, mit sich zu führen,
 - b) Schutzwaffen oder sonstige in Nr. 2 bezeichnete Gegenstände mit sich zu führen oder
 - c) in einer in Nr. 1 bezeichneten Aufmachung aufzutreten.
- (3)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Ausnahmen von den Verboten nach Abs. 1 und 2 zulassen, wenn eine Gefährdung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oder Ordnung nicht zu besorgen ist.
- (4) Abs. 1 und 2 gelten nicht für Gottesdienste unter freiem Himmel, kirchliche Prozessionen, Bittgänge und Wallfahrten, gewöhnliche Leichenbegängnisse, Züge von Hochzeitsgesellschaften und hergebrachte Volksfeste.
- (5)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Personen, die den Verboten nach Abs. 1 und 2 zuwiderhandeln, von der Versammlung ausschließen.

Vierter Teil Befriedeter Bezirk

Art. 17 Befriedeter Bezirk

Für den Landtag des Freistaates Bayern wird ein befriedeter Bezirk gebildet. Der befriedete Bezirk um das Landtagsgebäude umfasst das nachfolgend umgrenzte Gebiet der Landeshauptstadt München: Max-Weber-Platz, Innere Wiener Straße, Wiener Platz, Innere Wiener Straße, Am Gasteig, Ludwigsbrücke, Westufer der Isar, Prinzregentenbrücke, südliches Rondell am Friedensengel, Prinzregentenstraße, Ismaninger Straße, Max-Weber-Platz. Die angeführten Straßen und Plätze sind nicht Teil des befriedeten Bezirks.

Art. 18 Schutz des Landtags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sind innerhalb des befriedeten Bezirks verboten. Ebenso ist es verboten, zu Versammlungen nach Satz 1 aufzufordern.

Art. 19 Zulassung von Versammlungen

- (1) Nicht verbotene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können innerhalb des befriedeten Bezirks zugelassen werden.
- (2) Anträge auf Zulassung von Versammlungen nach Abs. 1 sind spätestens sieben Tage vor der Bekanntgabe schriftlich, elektronisch oder zur Niederschrift beim Staatsministerium des Innern, für Bau und Verkehr einzureichen. Art. 13 Abs. 2 und 3 gelten entsprechend.
- (3) Über Anträge auf Zulassung entscheidet das Staatsministerium des

Innern, für Bau und Verkehr im Einvernehmen mit dem Präsidenten des Landtags.

(4) Durch die Zulassung werden die übrigen Vorschriften dieses Gesetzes, insbesondere Art. 13 bis 15, nicht berührt.

Fünfter Teil Straf- und Bußgeldvorschriften

Art. 20 Strafvorschriften

(1)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wird bestraft, wer

1. entgegen Art. 6 eine Waffe oder einen sonstigen Gegenstand der dort bezeichneten Art mit sich führt, zu einer Versammlung hinschafft, bereithält oder verteilt,
2. entgegen Art. 8 Abs. 2 Nr. 1 Gewalttätigkeiten vornimmt oder androht oder eine erhebliche Störung verursacht oder
3. entgegen Art. 16 Abs. 2 Nr. 3 Buchst. a sich mit anderen zu einem gemeinschaftlichen friedensstörenden Handeln zusammenschließt und dabei Waffen oder sonstige Gegenstände der dort bezeichneten Art mit sich führt.

(2)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wird bestraft, wer

1. entgegen Art. 4 Abs. 2 Satz 3 Ordner verwendet,
2. entgegen Art. 8 Abs. 2 Nr. 2 einer dort genannten Person Widerstand leistet oder sie tätlich angreift,
3. entgegen Art. 8 Abs. 3 oder Art. 18 Satz 2 zur Teilnahme an

einer Versammlung auffordert,

4. als Veranstalter oder als Leiter einer vollziehbaren Anordnung nach Art. 12 Abs. 1 oder 2 Satz 1, Art. 15 Abs. 1, 2 oder 4 oder einer gerichtlichen Beschränkung zuwiderhandelt,
5. entgegen Art. 16 Abs. 1 eine Schutzwaffe oder einen einschlägigen Gegenstand mit sich führt,
6. entgegen Art. 16 Abs. 2 Nr. 1 an einer derartigen Veranstaltung teilnimmt oder den Weg dorthin zurücklegt oder
7. entgegen Art. 16 Abs. 2 Nr. 3 sich mit anderen zu einem gemeinschaftlichen friedensstörenden Handeln zusammenschließt und dabei den in Art. 16 Abs. 2 Nr. 3 Buchst. b oder c bezeichneten Verboten zuwiderhandelt.

Art. 21 Bußgeldvorschriften

- (1) Mit Geldbuße bis zu dreitausend Euro kann belegt werden, wer
 1. als Leiter entgegen Art. 4 Abs. 3 Satz 1 Polizeibeamten keinen Zugang oder keinen angemessenen Platz einräumt,
 2. entgegen Art. 7 Nr. 1 eine Uniform, ein Uniformteil oder ein gleichartiges Kleidungsstück trägt,
 3. entgegen Art. 10 Abs. 2 Satz 1 Pressevertreter ausschließt,
 4. als Veranstalter Personen als Leiter der Versammlung einsetzt, die von der zuständigen Behörde nach Art. 10 Abs. 3 Satz 2 oder Art. 13 Abs. 5 abgelehnt wurden,
 5. als Veranstalter Ordner einsetzt, die von der zuständigen

- Behörde nach Art. 10 Abs. 4 Satz 2 oder nach Art. 13 Abs. 6 Satz 2 abgelehnt wurden,
6. einer vollziehbaren Anordnung nach Art. 12 Abs. 1 oder 2 Satz 1, Art. 15 Abs. 1, 2 oder 4 oder einer gerichtlichen Beschränkung zuwiderhandelt,
 7. als Veranstalter oder als Leiter eine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ohne Anzeige nach Art. 13 Abs. 1 Satz 1 oder Abs. 3 durchführt, ohne dass die Voraussetzungen nach Art. 13 Abs. 4 vorliegen,
 8. entgegen Art. 16 Abs. 2 Nr. 2 einen einschlägigen Gegenstand mit sich führt, oder
 9. entgegen Art. 18 Satz 1 an einer dort genannten Versammlung teilnimmt.
- (2) Mit Geldbuße bis zu fünfhundert Euro kann belegt werden, wer
1. als Leiter Ordner einsetzt, die anders gekennzeichnet sind, als es nach Art. 4 Abs. 2 Satz 2 zulässig ist,
 2. entgegen Art. 5 Abs. 2 die Versammlung nicht unverzüglich verlässt,
 3. entgegen Art. 5 Abs. 3 sich nicht unverzüglich entfernt,
 4. trotz wiederholter Zurechtweisung durch den Leiter oder einen Ordner fortfährt, entgegen Art. 8 Abs. 1 eine Versammlung zu stören,
 5. als Veranstalter entgegen Art. 10 Abs. 3 Satz 1 persönliche Daten nicht oder nicht richtig mitteilt oder

6. entgegen Art. 13 Abs. 2 Satz 2 eine Mitteilung nicht macht.

Art. 22 Einziehung

Gegenstände, auf die sich eine Straftat nach Art. 20 oder eine Ordnungswidrigkeit nach Art. 21 Abs. 1 Nrn. 6, 8 oder 9 oder Abs. 2 Nr. 4 bezieht, können eingezogen werden. 2 § 74a des Strafgesetzbuchs und § 23 des Gesetzes über Ordnungswidrigkeiten sind anzuwenden.

Sechster Teil Schlussbestimmungen

Art. 23 Einschränkung von Grundrechten

Die Grundrechte der Versammlungsfreiheit (Art. 8 Abs. 1 des Grundgesetzes, Art. 113 der Verfassung) und der Meinungsfreiheit (Art. 5 Abs. 1 Satz 1 des Grundgesetzes, Art. 110 Abs. 1 Satz 1 der Verfassung) werden nach Maßgabe dieses Gesetzes eingeschränkt.

Art. 24 Zuständigkeiten

- (1) Polizei im Sinn dieses Gesetzes ist die Polizei im Sinn des Art. 1 PAG.
- (2) Zuständige Behörden im Sinne dieses Gesetzes sind die Kreisverwaltungsbehörden. Ab Beginn der Versammlung und in unaufschiebbaren Fällen kann auch die Polizei Maßnahmen treffen.
- (3) Bei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die über das Gebiet einer Kreisverwaltungsbehörde hinaus gehen (überörtliche Versammlungen),

genügt der Veranstalter seiner Anzeigepflicht, wenn er die Versammlung gegenüber einer zuständigen Kreisverwaltungsbehörde anzeigt. Dies gilt nicht bei Eilversammlungen nach Art. 13 Abs. 3. Die Kreisverwaltungsbehörde unterrichtet unverzüglich die übrigen betroffenen Kreisverwaltungsbehörden und die Regierung; berührt die Versammlung mehrere Regierungsbezirke, unterrichtet sie das Staatsministerium des Innern, für Bau und Verkehr.

(4) Bei überörtlichen Versammlungen kann die Regierung bestimmen, dass eine der nach Abs. 2 Satz 1 zuständigen Kreisverwaltungsbehörden im Benehmen mit den übrigen über Verfügungen nach Art. 6, 13 Abs. 1 Satz 3, Abs. 5 bis 7, Art. 15 und 16 Abs. 3 entscheidet. Bei überörtlichen Versammlungen, die mehrere Regierungsbezirke berühren, kann das Staatsministerium des Innern, für Bau und Verkehr diese Bestimmung treffen.

Art. 25 Keine aufschiebende Wirkung der Klage

Klagen gegen Entscheidungen nach diesem Gesetz haben keine aufschiebende Wirkung.

Art. 26 Kosten

Mit Ausnahme von Entscheidungen über Erlaubnisse nach Art. 6 sind Amtshandlungen nach diesem Gesetz kostenfrei.

Art. 27 (aufgehoben)

Art. 28 Inkrafttreten, Außerkrafttreten, Übergangsregelung

Dieses Gesetz tritt am 1. Oktober 2008 in Kraft. Es ersetzt nach Art. 125a Abs. 1 Satz 2 des Grundgesetzes das 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Versammlungsgesetz)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15. November 1978 (BGBl. I S. 1789), zuletzt geändert durch Art. 1 des Gesetzes vom 24. März 2005 (BGBl. I S. 969).

München, den 22. Juli 2008

Der Bayerische Ministerpräsident

Dr. Günther Beckstein

5. 작센-안할트 집회법

작센-안할트 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

2009년 12월 03일 제정

2009년 12월 12일 발효

제1장 총칙

제1조 집회의 자유

- ① 누구든지 공개집회 및 행진을 주최하거나 그러한 행사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항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1. 기본법 제18조에 의해 집회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이 박탈된 자,
 2. 전항과 같은 행사를 거행하거나 참가함으로써, 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이라고 선언된 정당 또는 그 일부 내지 대체 조직이 목적하는 바를 조장코자 하는 자,
 3. 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이라고 선언된 정당, 또는
 4. 기본법 제9조 제2항, 작센-안할트 주 헌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금지된 단체.

제2조 초청, 질서문란행위 및 무장 금지

- ① 공개집회 또는 행진에 공중을 초청하는 자는, 초청 시에 주최자로서 그 이름을 명시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공개집회 또는 행진 시 그 질서 있는 거행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질서문란행위를 야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공개집회 또는 행진 시, 무기 또는 그 성질상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적합하고 확실한 기타의 물건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기 또는 제1문에서 거명된 물건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공개집회나 행진에 참가하러 가는 도중에 소지 하거나, 그와 같은 행사장소로 운반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행사에 사용 하기 위하여 이를 준비하거나 배포하는 것도 역시 금지된다.

제3조 제복착용 금지

공동의 정치적 신념의 표현으로서 제복, 제복의 일부 또는 제복과 유사한 의복을 집회에서 착용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위협적 효과가 나오는 한 금지된다.

제2장 옥내공개집회

제4조 공개집회의 금지

단지 개개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옥내집회의 개최가 금지될 수 있다.

1. 주최자가 제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고, 제1조 제2항 제4호의 경우 그 금지가 관할 관청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2. 집회의 주최자 또는 주관자가 무기 또는 제2조 제3항 소정의 기타의

- 물건을 소지한 참가자들의 입장을 허용하는 경우,
3. 주최자 또는 그 지지자들이 집회의 폭력적이고 선동적인 진행을 추구한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주최자 또는 그 지지자들이 중죄 또는 직권으로 소추될 수 있는 경죄를 대상으로 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거나 이를 수인할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참가 범위의 제한

- ① 특정된 인물 또는 인적 범위에 대하여는 집회 참가 초청 시에 이를 배제할 수 있다.
- ② 언론사 기자들은 배제될 수 없다; 그들은 집회의 주관자에게 기자증으로써 합법적으로 신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6조 집회주관자

- ① 각각의 공개집회에는 한 명의 주관자가 있어야 한다. 이는 제12조 제1항 제2문에 따른 우발적 집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집회의 주최자가 그 주관자이다. 집회가 단체에 의하여 개최되는 경우에는 단체의 대표자가 주관자이다.
- ③ 주최자는 제3자에게 집회의 주관을 양도할 수 있다.
- ④ 주관자는 가택권을 행사한다.

제7조 집회주관자의 권리의무

주관자는 집회의 진행경과를 결정한다. 그는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는 집회를 언제라도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그는 중단된 집회가 언제 속행될 것인지 결정한다.

제8조 질서유지인

- ① 주관자는 제7조의 권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정한 수의 명예직 질서유지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무기 또는 제2조 제3항 소정의 기타의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질서유지인은 적합하게 그리고 단순히 “질서유지인”이라고만 표시할 수 있는 흰 완장을 착용함으로써 식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주관자는 그가 임명한 질서유지인의 수를 경찰이 요구하면 통지할 의무가 있다. 경찰은 질서유지인의 수를 적정하게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참가자의 의무

모든 집회 참가자들은 주관자 또는 그로부터 임명된 질서유지인의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제10조 배제권

- ① 주관자는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참가자를 집회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 ② 집회로부터 배제된 자는 즉시 그 장소를 떠나야 한다.

제11조 집회의 해산

- ① 경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붙여 집회를 해산할 수 있다.

1. 주최자가 제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고, 제1조 제2항

제4호의 경우 그 금지가 관할 관청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2. 집회가 폭력적 또는 선동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거나 참가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존재하는 경우,
3. 주관자가 무기 또는 제2조 제3항 소정의 기타의 물건을 소지한 자들을 즉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배제를 집행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
4. 집회의 진행을 통하여 중죄 또는 직권으로 소추될 수 있는 경죄를 대상으로 하는 형법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또는 집회에서 그러한 범죄행위가 권유되거나 고무되고 주관자가 이를 지체 없이 제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문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경찰의 다른 조치, 특히 중지조치로서는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해산이 허용된다.

② 집회가 해산되었다고 선언되면 모든 참가자는 즉시 그 장소를 떠나야 한다.

제3장 옥외공개집회 및 행진

제12조 신고 의무

① 옥외공개집회 또는 행진을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늦어도 그 공지 48시간 이전에 관할 관청에 집회 또는 행진의 목적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집회가 실제의 동기에서 순간적으로 주최자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우발적 집회), 그리고 신고기간의 준수로 인하여 집회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긴급집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신고 시 누가 집회 또는 행진의 주관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인지를 적시하여야 한다.

③ 관할 관청은 집회 거행의 상세한 사항, 특히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합한 조치를 주최자와 의논하고, 집회의 질서 있는 거행을 위해 작용한다. 주최자에게는 의견을 진술하고 유용한 질문을 할 기회가 주어 져야 한다. 주최자는 관할 관청과 협력하여야 하고, 특히 집회의 종류, 규모 및 예상 경과에 관한 정보를 주어야 한다.

제13조 제한, 금지, 해산

① 관할 관청은, 그 처분 발령 시 인식 가능한 상황에 따르면 집회 또는 행진의 거행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되는 경우, 그 집회 또는 행진에 특정한 제한을 부과하거나 이를 금지할 수 있다.

② 집회 또는 행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히 특정한 제한이 부과되거나 금지될 수 있다.

1. 집회 또는 행진이 특별히 다음 사람들을 상기하게 하는 장소 또는 날짜에 개최되고,
 - a. 나치의 폭력적 통치 하에서 인종적, 종교적 또는 정치적 이유나 장애를 이유로 비인도적 취급의 희생자가 된 사람들,
 - b. 나치의 폭력적 통치에 대하여 저항한 사람들,
 - c. 제2차 세계대전의 민간인 또는 군인 희생자들,
 - d. 소련 점령 및 독일사회주의통일당 독재 기간 중 중대한 인권 침해를 당한 희생자들
2. 그 처분 발령 시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정에 따르면 집회 또는 행진 거행의 방법을 통하여 기본적 윤리관 및 사회관의 심각한 침해가 존재할, 특히 제1문 제1호 소정의 사람들의 존엄성과 명예가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집회 또는 행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짜에 개최되는 경우에도 같다.

1. 나치의 폭력적 통치의 공포를 상기하게 하는 날짜 또는
2. 그것이 특히 빈번히 행해진 날짜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행진은 기본적 윤리관 및 사회관을 심각한 방법으로 언제나 침해한다.

1. 나치의 폭력적 통치를 승인, 찬양, 정당화하거나 그 해악을 과소평가하고, 또한 나치즘을 이끌었던 대표자에 대한 추모를 통하여 그러하고, 그로 인하여 희생자의 존엄성이 침해될 직접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2. 그 거행 방법을 통하여 폭력시위 또는 폭력지향성의 분위기를 발생시키거나 전체적 인상을 통하여 나치의 폭력적 통치의 의식과 상징에 연계시키고 이로 인하여 제3자가 위협 당하게 되는 경우
3. 국민의 평화로운 공동생활을 교란하는 경우 또는
4. 제2항 제1문 제1호 d목에 따른 인권 침해를 과소평가 하거나 부정하고 그로 인하여 희생자의 존엄성 또는 명예가 침해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④ 관할 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지의 전제조건이 주어지는 경우 집회 또는 행진을 해산할 수 있다. 관할 관청은 나아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 제1항 제1문에 따라서 신고 되었어야 할 집회 또는 행진을 해산할 수 있다.

1. 신고가 행해지지 않은 경우
2. 신고 내용에서 벗어난 경우 또는
3. 제한에 위반되고 다른 조치로는 충분하기 않은 경우

- ⑤ 금지된 집회는 해산되어야 한다.

제14조 추모장소 및 추모일

- ① 제13조 제2항 제1문에 따른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리히텐부르크 프레틴의 강제수용소 추모지
2. 베른부르크의 “나치-안락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지
3. 랑엔슈타인-츠뵐이베르게의 추모지
4. “붉은 황소” 회관 추모지(자알레 강)
5. 미텔라우-도라 강제수용소에서 살해된 수용자들을 위한 돌레의 경고 기념물
6. 가르데레겐의 헬트쇼이네 이센쉬넵베 경고 및 추모지
7. 웨르니게로데의 웨켄슈테터 뱌 경고 및 추모지
8. 마그데부르크의 모리츠플라츠 추모지
9. 마리에보른의 독일 분단 추모지

제1문 제1호 내지 제9호에 거명된 장소의 공간적 경계는 이 법의 첨부에서 확정한다.

- ② 제13조 제2항 제2문 제1호에 따른 날짜는 1월 27일 및 30일, 5월 8일, 7월 20일, 9월 1일 그리고 11월 9일이다. 제13조 제2항 제2문 제2호에 따른 날짜는 4월 20일이다.

- ③ 2004년 8월 25일 공포되고(GVBl. LSA S. 538) 2006년 11월 22일 개정된(GVBl. LSA S. 528) 일요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 무장 및 변장 금지

- ① 옥외공개집회 또는 행진에서 또는 그에 참가하러 가는 도중에, 호신 장구로 적합하고 상황에 따라 공법적 권한을 가진 당국자의 집행조치를 저지하기에 확실한 물건을 소지하는 것은 금지된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1. 그와 같은 행사에 사람의 신원 확인을 방해하기에 적합하고 상황에 따라 그러함에 적절한 변장을 하고 참가하거나, 그와 같은 행사에 그와 같은 변장을 하고 참가하러 가는 행위
 2. 그와 같은 행사에서 또는 그에 참가하러 가는 도중에, 사람의 신원 확인을 방해하기에 적합하고 상황에 따라 그러함이 확실한 물건을 소지하는 행위
- ③ 관할 관청은 평화성이 위태로워질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금지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여야 한다. 관할 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금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관할 관청은 특히 위 금지를 위반하는 자들을 행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16조 옥외집회의 거행

- ① 옥외집회에 대하여는 제6조 제1항, 제7조, 제8조 제1항, 제9조, 제10조 제2항 및 제11조 제2항이 준용된다.
- ② 질서유지인의 사용에는 인가를 요한다. 인가는 신고 시에 신청되어야 한다.
- ③ 경찰은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는 참가자를 집회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제17조 행진의 거행

- ① 행진의 주관자는 행진의 질서 있는 진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는 제8조 제1항 및 제16조가 적용되는 명예직 질서유지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 ② 참가자들은 주관자 또는 그로부터 임명된 질서유지인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 ③ 주관자는 자신의 의도대로 행진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행진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할 의무가 있다.
- ④ 경찰은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는 참가자를 행진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제18조 영상·음향 자료화

- ① 경찰은, 그들로부터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나온다는 사실적 근거가 이를 정당화하는 경우에 한하여 집회 시 또는 집회와 관련하여 그 참가자들에 대한 영상·음향 자료화를 할 수 있다. 그 조치는 제3자가 불가피하게 관계되는 경우에도 시행될 수 있다.
 - ② 그 자료들은, 다음 각 호의 1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닌 한 공개집회 또는 그와 시적 및 물적으로 직접적 관계가 있는 사건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파기되어야 한다.
 1. 참가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소추 또는
 2. 관계인이 공개집회에서 또는 공개집회와 관련하여 범죄를 준비하거나 범하였다는 의심이 있고, 그로 인하여 장래의 공개집회 또는 행진에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 그 위험 방지
- 제1문 제2호에서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파기되지 아니한 자료들은, 도중에

제1문 제1호에서 규정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닌 한, 당해 자료가 생성된 때로부터 늦어도 3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③ 형사소송법 및 질서위반행위법에 따른 개인 정보의 수집권한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④ 참가자들에 대한 촬영·녹음에는 제1항이 준용된다.

제19조 기본권의 제한

제12조 내지 제18조는 집회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기본법 제8조 제1항, 작센-안할트 주 헌법 제12조 제1항)을 제한한다. 제18조는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기본권(기본법 제1조 제1항과 결합한 제2조 제1항, 작센-안할트 주 헌법 제6조 제1항)을 제한한다.

제4장 형벌 및 범칙금 규정

제20조 집회 방해

금지되지 않은 공개집회 또는 행진을 저지 또는 해산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행행을 좌절케 할 의도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또는 심한 질서문란을 야기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21조 집회주관 방해

공개집회 또는 행진 시 그 주관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적법하게 질서유지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에 폭력 또는 폭력적 협박으로 저항하거나 그가 적법하게 질서유지권을 행사하는 도중에 이에 폭력을 가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22조 금지된 집회 참가에 대한 공개적 권유

집행 가능한 금지명령에 의하여 집회나 행진의 거행이 금지되거나 해산이 명하여진 후에, 공연히, 집회에서 또는 문서배포, 음향 또는 영상매체, 삽화 또는 기타의 표현물을 통하여 그러한 공개집회 또는 행진에 참가할 것을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23조 무장한 질서유지인 사용

공개집회 또는 행진의 주관자로서, 무기 또는 그 성질상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데 적합하고 확실한 기타의 물건을 소지한 질서유지인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24조 제한 불복

옥외공개집회 또는 행진의 주관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6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180일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 주최자가 신고 시 신고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게 집회 또는 행진을 거행한 자, 또는
2. 제1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집행 가능한 제한을 이행하지 않은 자.

제25조 금지 또는 해산 처분 불복

공개 집회 또는 행진의 주최자 또는 주관자로서, 집행 가능한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를 거행하거나 경찰에 의한 해산 또는 중지명령에 반하여 이를 속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26조 무장 또는 변장 금지 불복

① 공개집회 또는 행진 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무기 또는 그 성질상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데 적합하고 확실한 기타의 물건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무기 또는 제1문 소정의 기타의 물건을, 공개집회나 행진에 참가하러 가는 도중에 소지하거나, 그와 같은 행사장소로 운반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준비하거나 배포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제15조 제1항에 위반하여 옥외공개집회 또는 행진에서 또는 그에 참가하러 가는 도중에, 호신장구 또는 호신장구로 적합하고 상황에 따라 공법적 권한을 가진 당국자의 집행조치를 방어하기에 확실한 물건을 소지한 자
2. 제15조 제2항 제1호에 위반하여 그와 같은 행사에 사람의 신원 확인을 방해하기에 적합하고 상황에 따라 그러함에 적절한 변장을 하고 참가하거나, 그와 같은 행사에 그와 같은 변장을 하고 참가하러 가는 자 또는
3. 그와 같은 행사에 이어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과 작당하고 그 때에,
 - a. 무기 또는 그 성질상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데 적합하고 확실한 기타의 물건을 소지한 자
 - b. 호신장구 또는 제1호에 묘사된 기타의 물건을 소지한 자 또는
 - c. 제2호에 묘사된 방법으로 변장을 한 자

제27조 제복착용 금지 불복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6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28조 질서위반행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질서위반으로 취급된다.

1. 집행 가능한 금지명령에 의해 그 거행이 금지된 공개집회 또는 행진에 참가한 자
2. 제12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신고 없이 옥외집회 또는 행진을 거행한 자
3. 제17조 제2항 제2호에 위반하여 옥외공개집회나 행진에서 또는 그에 참가하러 가는 도중에, 사람의 신원 확인을 방해하기에 적합하고 상황에 따라 그러함에 확실한 물건을 소지한 자
4. 관할 관청에 의한 공개집회 또는 행진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장소를 떠나지 아니한 자
5. 옥외공개집회 또는 행진의 참가자로서 제1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주관자 또는 질서유지인의 거듭된 제지에도 불구하고 공개집회 또는 행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7. 공개집회 또는 행진으로부터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장소를 떠나지 아니한 자
8. 임명된 질서유지인의 수를 통보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숫자를 통보한 자(제8조 제2항) 또는
9. 공개집회 또는 행진의 주관자 또는 주최자로서, 경찰이 허가하거나 인가한 숫자보다 많은 수의 질서유지인을 사용하거나(제8조 제2항,

제16조 제2항), 제8조 제1항에 의해 허용되는 바와 다른 표식을 한
질서유지인을 사용한 자

② 질서위반행위는 1,5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할 수 있다.

제29조 몰수의 요건

제26조 또는 제27조 소정의 범죄행위 또는 제28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 소정의 질서위반행위에 관계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형법
제74a조와 질서위반행위법 제23조가 적용된다.

제5장 종결규정

제30조 발효

이 법은 그 공포 다음 날에 발효된다.

첨부 (생략)

Gesetz des Landes Sachsen-Anhalt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Landesversammlungsgesetz - VersammlG LSA) Vom 3. Dezember 2009

Inhaltsübersicht

Abschnitt 1 Allgemeines

- § 1 Versammlungsfreiheit
- § 2 Einladung, Störungs- und Bewaffnungsverbot
- § 3 Uniformierungsverbot

Abschnitt 2 Öffentliche Versammlungen in geschlossenen Räumen

- § 4 Verbot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 § 5 Beschränkung des Teilnehmerkreises
- § 6 Versammlungsleiter
- § 7 Rechte und Pflichten des Versammlungsleiters
- § 8 Ordner
- § 9 Teilnehmerpflichten
- § 10 Ausschlussrecht
- § 11 Auflösung einer Versammlung

Abschnitt 3 Öffentliche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und Aufzüge

- § 12 Anmeldepflicht
- § 13 Beschränkungen, Verbote, Auflösung
- § 14 Erinnerungsorte und Erinnerungstage
- § 15 Bewaffnungs- und Vermummungsverbot
- § 16 Durchführung einer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 § 17 Durchführung eines Aufzugs
- § 18 Bild- und Tonaufzeichnungen
- § 19 Einschränkung von Grundrechten

Abschnitt 4 Straf- und Bußgeldvorschriften

- § 20 Störung von Versammlungen
- § 21 Störung der Versammlungsleitung
- § 22 Öffentliche Aufforderung zur Teilnahme an einer verbotenen
Versammlung
- § 23 Einsatz bewaffneter Ordner
- § 24 Missachtung von Beschränkungen
- § 25 Missachtung von Verbots- oder Auflösungsverfügungen
- § 26 Missachtung des Bewaffnungs- oder Vermummungsverbots
- § 27 Missachtung des Uniformierungsverbots
- § 28 Ordnungswidrigkeiten
- § 29 Voraussetzungen der Einziehung

Abschnitt 5 Schlussbestimmungen

§ 30 Inkrafttreten

Abschnitt 1 Allgemeines

§ 1 Versammlungsfreiheit

(1) Jeder hat das Recht, öffentliche Versammlungen und Aufzüge zu veranstalten und an solchen Veranstaltungen teilzunehmen.

(2) Dieses Recht hat nicht,

1. wer das Grundrecht der Versammlungsfreiheit gemäß Artikel 18 des Grundgesetzes verwirkt hat,
2. wer mit der Durchführung oder Teilnahme an einer solchen Veranstaltung die Ziele einer nach Artikel 21 Abs. 2 des Grundgesetzes dur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en Partei oder Teil- oder Ersatzorganisation einer Partei fördern will,
3. eine Partei, die nach Artikel 21 Abs. 2 des Grundgesetzes dur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 worden ist, oder
4. eine Vereinigung, die nach Artikel 9 Abs. 2 des Grundgesetzes, Artikel 13 Abs. 2 der Verfassung des Landes Sachsen-Anhalt verboten ist.

§ 2 Einladung, Störungs- und Bewaffnungsverbot

(1) Wer zu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oder zu einem Aufzug

einlädt, muss als Veranstalter in der Einladung seinen Namen angeben.

(2) Bei öffentlichen Versammlungen und Aufzügen hat jeder Störungen zu unterlassen, die bezwecken, die ordnungsgemäße Durchführung zu verhindern.

(3) Niemand darf bei öffentlichen Versammlungen oder Aufzügen Waffen oder sonstige Gegenstände, die ihrer Art nach zur Verletzung von Personen oder zur Beschädigung von Sachen geeignet und bestimmt sind, mit sich führen, ohne dazu behördlich ermächtigt zu sein. Ebenso ist es verboten, ohne behördliche Ermächtigung Waffen oder die in Satz 1 genannten Gegenstände auf dem Weg zu öffentlichen Versammlungen oder Aufzügen mit sich zu führen, zu derartigen Veranstaltungen hinzuschaffen oder sie zur Verwendung bei derartigen Veranstaltungen bereitzuhalten oder zu verteilen.

§ 3 Uniformierungsverbot

Es ist verboten, in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Uniformen, Uniformteile oder uniformähnliche Kleidungsstücke als Ausdruck einer gemeinsamen politischen Gesinnung zu tragen, sofern davon eine einschüchternde Wirkung ausgeht.

Abschnitt 2 Öffentliche Versammlungen in geschlossenen Räumen

§ 4 Verbot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Das Abhalten einer Versammlung in einem geschlossenen Raum kann

nur im Einzelfall und nur dann verboten werden, wenn

1. der Veranstalter unter die Vorschriften des § 1 Abs. 2 Nrn. 1 bis 4 fällt und im Falle von § 1 Abs. 2 Nr. 4 das Verbot durch die zuständige Behörde festgestellt worden ist,
2. der Veranstalter oder Leiter der Versammlung Teilnehmern Zutritt gewährt, die Waffen oder sonstige Gegenstände im Sinne von § 2 Abs. 3 mit sich führen,
3. Tatsachen festgestellt sind, aus denen sich ergibt, dass der Veranstalter oder sein Anhang einen gewalttätigen oder aufrührerischen Verlauf der Versammlung anstreben,
4. Tatsachen festgestellt sind, aus denen sich ergibt, dass der Veranstalter oder sein Anhang Ansichten vertreten oder Äußerungen dulden werden, die ein Verbrechen oder ein von Amts wegen zu verfolgendes Vergehen zum Gegenstand haben.

§ 5 Beschränkung des Teilnehmerkreises

- (1) Bestimmte Personen oder Personenkreise können in der Einladung von der Teilnahme an einer Versammlung ausgeschlossen werden.
- (2) Pressevertreter können nicht ausgeschlossen werden; sie haben sich dem Leiter der Versammlung gegenüber durch ihren Presseausweis ordnungsgemäß auszuweisen.

§ 6 Versammlungsleiter

- (1) Jede öffentliche Versammlung muss einen Leiter haben. Dies gilt

nicht für Spontanversammlungen nach § 12 Abs. 1 Satz 2.

(2) Leiter der Versammlung ist der Veranstalter. Wird die Versammlung von einer Vereinigung veranstaltet, so ist ihr Vorsitzender der Leiter.

(3) Der Veranstalter kann die Leitung einer anderen Person übertragen.

(4) Der Leiter übt das Hausrecht aus.

§ 7 Rechte und Pflichten des Versammlungsleiters

Der Leiter bestimmt den Ablauf der Versammlung. Er hat während der Versammlung für Ordnung zu sorgen. Er kann die Versammlung jederzeit unterbrechen oder schließen. Er bestimmt, wann eine unterbrochene Versammlung fortgesetzt wird.

§ 8 Ordner

(1) Der Leiter kann sich bei der Durchführung seiner Rechte aus § 7 der Hilfe einer angemessenen Zahl ehrenamtlicher Ordner bedienen. Diese dürfen keine Waffen oder sonstigen Gegenstände im Sinne von § 2 Abs. 3 mit sich führen. Sie müssen geeignet und durch Armbinden, die nur die Bezeichnung “Ordner” tragen dürfen, kenntlich sein.

(2) Der Leiter ist verpflichtet, die Zahl der von ihm bestellten Ordner auf Anfordern mitzuteilen.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die Zahl der Ordner angemessen beschränken.

§ 9 Teilnehmerpflichten

Alle Versammlungsteilnehmer sind verpflichtet, die zur Aufrechterhaltung der Ordnung getroffenen Anweisungen des Leiters oder der von ihm bestellten Ordner zu befolgen.

§ 10 Ausschlussrecht

- (1) Der Leiter kann Teilnehmer, welche die Ordnung gröblich stören, von der Versammlung ausschließen.
- (2) Wer aus der Versammlung ausgeschlossen wird, hat sie sofort zu verlassen.

§ 11 Auflösung einer Versammlung

- (1) Die Polizei kann die Versammlung nur dann und unter Angabe des Grundes auflösen, wenn
 1. der Veranstalter unter die Vorschriften des § 1 Abs. 2 Nrn. 1 bis 4 fällt und im Falle von § 1 Abs. 2 Nr. 4 das Verbot durch die zuständige Behörde festgestellt worden ist,
 2. die Versammlung einen gewalttätigen oder aufrührerischen Verlauf nimmt oder unmittelbare Gefahr für Leben und Gesundheit der Teilnehmer besteht,
 3. der Leiter Personen, die Waffen oder sonstige Gegenstände im Sinne von § 2 Abs. 3 mit sich führen, nicht sofort ausschließt und für die Durchführung des Ausschlusses sorgt,
 4. durch den Verlauf der Versammlung gegen Strafgesetze

verstoßen wird, die ein Verbrechen oder von Amts wegen zu verfolgendes Vergehen zum Gegenstand haben, oder wenn in der Versammlung zu solchen Straftaten aufgefordert oder angereizt wird und der Leiter dies nicht unverzüglich unterbindet.

In den Fällen von Satz 1 Nrn. 2 bis 4 ist die Auflösung nur zulässig, wenn andere polizeiliche Maßnahmen, insbesondere eine Unterbrechung, nicht ausreichen.

(2) Sobald eine Versammlung für aufgelöst erklärt ist, haben alle Teilnehmer sich sofort zu entfernen.

Abschnitt 3 Öffentliche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und Aufzüge

§ 12 Anmeldepflicht

(1) Wer die Absicht hat, eine öffentliche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oder einen Aufzug zu veranstalten, hat dies spätestens 48 Stunden vor der Bekanntgabe der zuständigen Behörde unter Angabe des Gegenstandes der Versammlung oder des Aufzuges anzumelden. Dies gilt nicht für Versammlungen, die sich aus aktuellem Anlass augenblicklich und ohne Veranstalter bilden (Spontanversammlungen), und für Versammlungen, bei denen der mit der Versammlung verfolgte Zweck bei Einhaltung der Anmeldefrist nicht erreicht werden kann (Eilversammlungen).

(2) In der Anmeldung ist anzugeben, welche Person für die Leitung der Versammlung oder des Aufzuges verantwortlich sein soll.

(3) Die zuständige Behörde erörtert mit dem Veranstalter Einzelheiten der Durchführung der Versammlung, insbesondere geeignete Maßnahmen zur Wahrung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und wirkt auf eine ordnungsgemäße Durchführung der Versammlung hin. Dem Veranstalter ist Gelegenheit zu geben, sich zu äußern und sachdienliche Fragen zu stellen. Der Veranstalter soll mit den zuständigen Behörden kooperieren, insbesondere Auskunft über Art, Umfang und vorgesehenen Ablauf der Veranstaltung geben.

§ 13 Beschränkungen, Verbote, Auflösung

(1)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die Versammlung oder den Aufzug von bestimmten Beschränkungen abhängig machen oder verbieten, wenn nach den zur Zeit des Erlasses der Verfügung erkennbaren Umständen die öffentliche Sicherheit bei Durchführung der Versammlung oder des Aufzuges unmittelbar gefährdet ist.

(2) Eine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oder ein Aufzug kann insbesondere auch dann von bestimmten Beschränkungen abhängig gemacht oder verboten werden, wenn

1. die Versammlung oder der Aufzug an einem Ort oder Tag stattfindet, der in besonderer Weise an
 - a) Menschen, die unter der nationalsozialistischen Gewaltherrschaft aus rassistischen, religiösen oder politischen Gründen oder wegen einer Behinderung Opfer menschenunwürdiger Behandlung waren,
 - b) Menschen, die Widerstand gegen die nationalsozialistische

Gewaltherrschaft geleistet haben,

- c) die zivilen oder militärischen Opfer des zweiten Weltkrieges,
- d) die Opfer der schweren Menschenrechtsverletzungen während der Zeiten der sowjetischen Besatzung und der SED-Diktatur erinnert und

2. nach den zur Zeit des Erlasses der Verfügung konkret feststellbaren Umständen zu besorgen ist, dass durch die Art und Weise der Durchführung der Versammlung oder des Aufzuges die Gefahr einer erheblichen Verletzung ethischer und sozialer Grundanschauungen besteht, insbesondere die Würde oder Ehre von Personen im Sinne von Satz 1 Nr. 1 verletzt wird.

Gleiches gilt, wenn die Versammlung oder der Aufzug an einem Tag stattfindet, der

1. an die Schrecken der nationalsozialistischen Gewaltherrschaft erinnert oder
2. unter dieser besonders begangen wurde.

(3) Eine Versammlung oder ein Aufzug verletzt die ethischen und sozialen Grundanschauungen in erheblicher Weise regelmäßig dann, wenn die Versammlung oder der Aufzug

1. die nationalsozialistische Gewaltherrschaft billigt, verherrlicht, rechtfertigt oder verharmlost, auch durch das Gedenken an führende Repräsentanten des Nationalsozialismus, und dadurch die Gefahr einer Beeinträchtigung der Würde oder Ehre der Opfer besteht,

2. durch die Art und Weise der Durchführung ein Klima der Gewaltdemonstration oder potentieller Gewaltbereitschaft erzeugt oder durch das Gesamtgepräge an die Riten und Symbole der nationalsozialistischen Gewaltherrschaft anknüpft und Dritte hierdurch eingeschüchtert werden,
 3. das friedliche Zusammenleben der Völker stört oder
 4. die Menschenrechtsverletzungen nach Absatz 2 Satz 1 Nr. 1 Buchst. d verharmlost oder leugnet und dadurch die Gefahr einer Beeinträchtigung der Würde oder Ehre der Opfer besteht.
- (4)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eine Versammlung oder einen Aufzug auflösen, wenn die Voraussetzungen zu einem Verbot nach Absatz 1 oder 2 gegeben sind. Sie kann eine Versammlung oder einen Aufzug, die oder der nach Maßgabe von § 12 Abs. 1 Satz 1 anzumelden war, darüber hinaus auflösen, wenn
1. keine Anmeldung erfolgte,
 2. von den Angaben der Anmeldung abgewichen wird oder
 3. den Beschränkungen zuwidergehandelt wird und andere Maßnahmen nicht ausreichen.
- (5) Eine verbotene Versammlung ist aufzulösen.

§ 14 Erinnerungsorte und Erinnerungstage

(1) Orte nach § 13 Abs. 2 Satz 1 sind:

1. die KZ-Gedenkstätte Lichtenburg Prettin,
2. die Gedenkstätte für Opfer der “NS-Euthanasie” Bernburg,

3. die Gedenkstätte Langenstein-Zwieberge,
4. die Gedenkstätte “Roter Ochse” Halle (Saale),
5. das Mahnmal in Dolle für ermordete Häftlinge des KZ Mittelbau-Dora,
6. die Mahn- und Gedenkstätte Feldscheune Isenschribbe Gardelegen,
7. die Mahn- und Gedenkstätte Veckenstedter Weg Wernigerode,
8. die Gedenkstätte Moritzplatz Magdeburg,
9. die Gedenkstätte Deutsche Teilung Marienborn.

Die räumliche Abgrenzung der in Satz 1 Nrn. 1 bis 9 genannten Orte ergibt sich aus den **Anlagen** zu diesem Gesetz.

(2) Tage nach § 13 Abs. 2 Satz 2 Nr. 1 sind der 27. und 30. Januar, der 8. Mai, der 20. Juli, der 1. September sowie der 9. November. Tag nach § 13 Abs. 2 Satz 2 Nr. 2 ist der 20. April.

(3) Das Gesetz über die Sonn- und Feiertage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25. August 2004 (GVBl. LSA S. 538), geändert durch § 13 Abs. 1 des Gesetzes vom 22. November 2006 (GVBl. LSA S. 528), bleibt unberührt.

§ 15 Bewaffnungs- und Vermummungsverbot

(1) Es ist verboten, bei öffentlichen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oder bei Aufzügen oder auf dem Weg dorthin Gegenstände, die als Schutzwaffen geeignet und den Umständen nach dazu bestimmt sind, Vollstreckungsmaßnahmen eines Trägers von öffentlich-rechtlichen Befugnissen abzuwehren, mit sich zu führen.

(2) Es ist auch verboten,

1. an derartigen Veranstaltungen in einer Aufmachung, die geeignet und den Umständen nach darauf gerichtet ist, die Feststellung der Identität zu verhindern, teilzunehmen oder den Weg zu derartigen Veranstaltungen in einer solchen Aufmachung zurückzulegen,
2. bei derartigen Veranstaltungen oder auf dem Weg dorthin Gegenstände mit sich zu führen, die geeignet und den Umständen nach dazu bestimmt sind, die Feststellung der Identität zu verhindern.

(3) Die zuständige Behörde soll Ausnahmen von den Verboten der Absätze 1 und 2 zulassen, wenn eine Gefährdung der Friedlichkeit nicht zu besorgen ist. Sie kann zur Durchsetzung der Verbote der Absätze 1 und 2 Anordnungen treffen. Sie kann insbesondere Personen, die diesen Verboten zuwiderhandeln, von der Veranstaltung ausschließen.

§ 16 Durchführung einer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1) Für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sind § 6 Abs. 1, die §§ 7, 8 Abs. 1, die §§ 9, 10 Abs. 2 und § 11 Abs. 2 entsprechend anzuwenden.

(2) Die Verwendung von Ordnern bedarf der Genehmigung. Sie ist bei der Anmeldung zu beantragen.

(3) Die Polizei kann Teilnehmer, welche die Ordnung gröblich stören, von der Versammlung ausschließen.

§ 17 Durchführung eines Aufzugs

- (1) Der Leiter des Aufzuges hat für den ordnungsmäßigen Ablauf zu sorgen. Er kann sich der Hilfe ehrenamtlicher Ordner bedienen, für welche § 8 Abs. 1 und § 16 gelten.
- (2) Die Teilnehmer sind verpflichtet, die zur Aufrechterhaltung der Ordnung getroffenen Anordnungen des Leiters oder der von ihm bestellten Ordner zu befolgen.
- (3) Vermag der Leiter sich nicht durchzusetzen, so ist er verpflichtet, den Aufzug für beendet zu erklären.
- (4) Die Polizei kann Teilnehmer, welche die Ordnung gröblich stören, von dem Aufzug ausschließen.

§ 18 Bild- und Tonaufzeichnungen

- (1) Die Polizei darf Bild- und Tonaufzeichnungen von Teilnehmern bei oder im Zusammenhang mit öffentlichen Versammlungen nur anfertigen, wenn tatsächliche Anhaltspunkte die Annahme rechtfertigen, dass von ihnen erhebliche Gefahren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ausgehen. Die Maßnahmen dürfen auch durchgeführt werden, wenn Dritte unvermeidbar betroffen werden.
- (2) Die Unterlagen sind nach Beendigung der öffentlichen Versammlung oder zeitlich und sachlich damit unmittelbar im Zusammenhang stehender Ereignisse unverzüglich zu vernichten, soweit sie nicht benötigt werden

1. für die Verfolgung von Straftaten von Teilnehmern oder

2. im Einzelfall zur Gefahrenabwehr, weil die betroffene Person verdächtigt ist, Straftaten bei oder im Zusammenhang mit der öffentlichen Versammlung vorbereitet oder begangen zu haben, und deshalb zu besorgen ist, dass von ihr erhebliche Gefahren für künftige öffentliche Versammlungen oder Aufzüge ausgehen.

Unterlagen, die aus den in Satz 1 Nr. 2 aufgeführten Gründen nicht vernichtet wurden, sind in jedem Fall spätestens nach Ablauf von drei Monaten seit ihrer Entstehung zu vernichten, es sei denn, sie würden inzwischen zu dem in Satz 1 Nr. 1 aufgeführten Zweck benötigt.

(3) Die Befugnisse zur Erhebung personenbezogener Informationen nach Maßgabe der Strafprozessordnung und des Gesetzes über Ordnungswidrigkeiten bleiben unberührt.

(4) Für Bild- und Tonaufnahmen von Teilnehmern gilt Absatz 1 entsprechend.

§ 19 Einschränkung von Grundrechten

Die §§ 12 bis 18 schränken das Grundrecht der Versammlungsfreiheit (Artikel 8 Abs. 1 des Grundgesetzes, Artikel 12 Abs. 1 der Verfassung des Landes Sachsen-Anhalt) ein. § 18 schränkt das Grundrecht auf den Schutz personenbezogener Daten (Artikel 2 Abs. 1 in Verbindung mit Artikel 1 Abs. 1 des Grundgesetzes, Artikel 6 Abs. 1 der Verfassung des Landes Sachsen-Anhalt) ein.

Abschnitt 4 Straf- und Bußgeldvorschriften

§ 20 Störung von Versammlungen

Wer in der Absicht, nicht verbotene öffentliche Versammlungen oder Aufzüge zu verhindern oder zu sprengen oder sonst ihre Durchführung zu vereiteln, Gewalttätigkeiten vornimmt oder androht oder grobe Störungen verursac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1 Störung der Versammlungsleitung

Wer bei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oder einem Aufzug dem Leiter oder einem Ordner in der rechtmäßigen Ausübung seiner Ordnungsbefugnisse mit Gewalt oder Drohung mit Gewalt Widerstand leistet oder ihn während der rechtmäßigen Ausübung seiner Ordnungsbefugnisse tätlich angreif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2 Öffentliche Aufforderung zur Teilnahme an einer verbotenen Versammlung

Wer öffentlich, in einer Versammlung oder durch Verbreiten von Schriften, Ton- oder Bildträgern, Abbildungen oder anderen Darstellungen zur Teilnahme an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oder einem Aufzug auffordert, nachdem die Durchführung durch ein vollziehbares Verbot untersagt oder die Auflösung angeordnet worden is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3 Einsatz bewaffneter Ordner

Wer als Leiter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oder eines Aufzuges Ordner verwendet, die Waffen oder sonstige Gegenstände, die ihrer Art nach zur Verletzung von Personen oder Beschädigung von Sachen geeignet und bestimmt sind, mit sich führe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4 Missachtung von Beschränkungen

Wer als Leiter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oder eines Aufzuges

1. die Versammlung oder den Aufzug wesentlich anders durchführt, als die Veranstalter bei der Anmeldung angegeben haben, oder
2. vollziehbaren Beschränkungen nach § 13 Abs. 1, 2 oder 4 nicht nachkomm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sechs Monaten oder mit Geldstrafe bis zu einhundertachtzig Tagessätzen bestraft.

§ 25 Missachtung von Verbots- oder Auflösungsverfügungen

Wer als Veranstalter oder Leiter eine öffentliche Versammlung oder einen Aufzug trotz vollziehbaren Verbots durchführt oder trotz Auflösung oder Unterbrechung durch die Polizei fortsetz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6 Missachtung des Bewaffnungs- oder Vermummungsverbots

(1) Wer bei öffentlichen Versammlungen oder Aufzügen Waffen oder sonstige Gegenstände, die ihrer Art nach zur Verletzung von Personen oder Beschädigung von Sachen geeignet und bestimmt sind, mit sich führt, ohne dazu behördlich ermächtigt zu sei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Ebenso wird bestraft, wer ohne behördliche Ermächtigung Waffen oder sonstige Gegenstände im Sinne des Satzes 1 auf dem Weg zu öffentlichen Versammlungen oder Aufzügen mit sich führt, zu derartigen Veranstaltungen hinschafft oder sie zur Verwendung bei derartigen Veranstaltungen bereithält oder verteilt.

(2) Wer

1. entgegen § 15 Abs. 1 bei öffentlichen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oder bei Aufzügen oder auf dem Weg dorthin Schutzwaffen oder Gegenstände, die als Schutzwaffen geeignet und den Umständen nach dazu bestimmt sind, Vollstreckungsmaßnahmen eines Trägers von öffentlich-rechtlichen Befugnissen abzuwehren, mit sich führt,
2. entgegen § 15 Abs. 2 Nr. 1 an derartigen Veranstaltungen in einer Aufmachung, die geeignet und den Umständen nach darauf gerichtet ist, die Feststellung der Identität zu verhindern, teilnimmt oder den Weg zu derartigen Veranstaltungen in einer solchen Aufmachung zurücklegt oder
3. sich im Anschluss an oder sonst im Zusammenhang mit derartigen Veranstaltungen mit anderen zusammenrottet und

dabei

- a) Waffen oder sonstige Gegenstände, die ihrer Art nach zur Verletzung von Personen oder Beschädigung von Sachen geeignet und bestimmt sind, mit sich führt,
 - b) Schutzwaffen oder sonstige in Nummer 1 bezeichnete Gegenstände mit sich führt oder
 - c) in der in Nummer 2 bezeichneten Weise aufgemacht ist,
-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7 Missachtung des Uniformierungsverbots

Wer der Vorschrift des § 3 zuwiderhandel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sechs Monat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8 Ordnungswidrigkeiten

(1) Ordnungswidrig handelt, wer

- 1. an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oder einem Aufzug teilnimmt, deren Durchführung durch vollziehbares Verbot untersagt ist,
- 2. eine öffentliche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oder einen Aufzug ohne die nach § 12 Abs. 1 Satz 1 erforderliche Anmeldung durchführt,
- 3. entgegen § 15 Abs. 2 Nr. 2 bei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oder einem Aufzug oder auf dem

Weg dorthin Gegenstände, die geeignet und den Umständen nach dazu bestimmt sind, die Feststellung der Identität zu verhindern, mit sich führt,

4. sich trotz Auflösung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oder eines Aufzuges durch die zuständige Behörde nicht unverzüglich entfernt,
 5. als Teilnehmer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oder eines Aufzuges einer vollziehbaren Beschränkung nach § 13 Abs. 1 oder 2 nicht nachkommt,
 6. trotz wiederholter Zurechtweisung durch den Leiter oder einen Ordner fortfährt, den Ablauf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oder eines Aufzuges zu stören,
 7. sich nicht unverzüglich nach seiner Ausschließung aus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oder einem Aufzug entfernt,
 8. der Aufforderung, die Zahl der von ihm bestellten Ordner mitzuteilen, nicht nachkommt oder eine unrichtige Zahl mitteilt (§ 8 Abs. 2) oder
 9. als Leiter oder Veranstalter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oder eines Aufzuges eine größere Zahl von Ordnern verwendet, als zugelassen oder genehmigt wurde (§ 8 Abs. 2, § 16 Abs. 2), oder Ordner verwendet, die anders gekennzeichnet sind, als es nach § 8 Abs. 1 zulässig ist.
- (2) Die Ordnungswidrigkeit kann mit einer Geldbuße bis eintausend-fünfhundert Euro geahndet werden.

§ 29 Voraussetzungen der Einziehung

Gegenstände, auf die sich eine Straftat nach § 26 oder § 27 oder eine Ordnungswidrigkeit nach § 28 Abs. 1 Nr. 3 oder 4 bezieht, können eingezogen werden. § 74a des Strafgesetzbuches und § 23 des Gesetzes

über Ordnungswidrigkeiten sind anzuwenden.

Abschnitt 5 Schlussbestimmungen

§ 30 Inkrafttreten

Dieses Gesetz tritt am Tage nach seiner Verkündung in Kraft.

Magdeburg, den 3. Dezember 2009.

Anlage

Anlagen zu § 14 Abs. 1, die die in § 14 Abs. 1 genannten Orte abschließend konkretisieren

이하 생략

6. 견본법률안

집회법 견본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 집회의 자유

- ① 누구든지 신고나 허가 없이 평화적으로 그리고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집회를 하고 집회를 주최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기본법 제18조에 의해 집회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이 박탈된 자는 전항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2조 공개집회의 정의

- ① 이 법에서 의미하는 집회란 공동의, 주로 공적인 의사형성에의 참여를 위한 토론이나 시위를 목적으로 하는 적어도 2인 이상의 장소적 회합을 말한다. 행진은 움직이는 집회이다.
- ② 집회는 그에의 참가가 개별적으로 확정된 인적 범위에 한정되지 않거나 집회가 그 주변의 공중에 대한 선언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공개적이다.
- ③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은 공개 및 비공개 집회에 모두 적용된다.

제3조 보호 직무 및 협력

- ① 관할 관청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이 법에 따라 허용된 집회의 거행을 지원하는 것.
 2. 질서문란행위로부터 집회의 거행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집회로부터 또는 제3자로부터 나오는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것.
- ② 집회의 종류 및 규모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관할 관청은 공개 집회의
주최자 또는 그 주관권을 양도받은 사람에게 집회의 질서 있는 거행을
위하여 긴요한 위험상태 기타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협력대화를 적시에
제안한다. 제13조 제1항, 제23조 제1항에 따라 금지나 제한을 할 수 있는
위해의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 예정된 집회에 대한 보충적 신고 또는
변경을 통하여 금지나 제한을 불필요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③ 집회의 종류 및 규모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관할 관청은 공개 집회의
주최자 또는 그 주관권을 양도받은 사람에게 집회 전 또는 도중에 위험
상태의 현저한 변경에 관하여 협력의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한다.

제4조 집회의 주최

어떤 집회에 타인을 초청하는 자 또는 제11조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하거나
제20조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하는 자가 집회를 주최한다. 공개 집회로의
초청 시에는 그 이름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 집회의 주관

- ① 주최자가 집회를 주관한다. 여러 사람이 하나의 집회를 주최하는 경우

후자가 집회주관자를 결정한다. 단체가 집회를 주최하는 경우 그 단체를 위한 행위권한이 있는 사람이 집회를 주관한다.

- ② 집회의 주관은 양도될 수 있다.
- ③ 집회 주최자가 없는 경우 그 집회에서 집회주관자를 정할 수 있다.
- ④ 집회의 주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은 주관자가 특정된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집회에도 적용된다.

제6조 집회주관자의 권한

- ① 집회주관자는 집회의 질서 있는 진행을 위해 진력하고 집회의 평화가 유지되도록 한다. 그는 집회를 언제라도 중단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 ② 집회주관자는 질서유지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질서유지인은 옥외 집회에서 단지 “질서유지인”이라고만 표시할 수 있는 흰 완장을 착용함으로써 식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집회참가자에 대한 이 법의 규정은 질서유지인에게도 또한 적용된다.
- ③ 집회에서 질서 유지를 위한 집회주관자 또는 질서유지인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 ④ 집회주관자는 집회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자를 집회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집회로부터 배제된 자는 지체 없이 그 장소를 떠나야 한다.

제7조 질서문란행위 금지

집회의 거행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좌절시킬 의도로 질서문란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8조 무기 금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1. 무기 또는
2. 그 성질상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에 현저한 손상을 초래하는 데 적합하고 상황에 따라 그러함이 확실한 기타의 물건을 집회에서 또는 집회에 왕래하는 도중에 소지하거나, 집회장소로 운반하거나 또는 집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준비하거나 배포하는 것.

제9조 경찰법의 적용

- ① 집회법에서 개개의 참가자들에 대응하여 위협의 방지를 규정하지 않는 한, 그 조치 시점에 인식 가능한 상황에 따르면 집회 거행 전이나 도중 또는 그에 이어서 공공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그들로부터 나오는 경우 주 경찰법에 따라 그들에 대응하는 조치가 허용된다.
- ② 옥내집회의 경우 제1항은 참가자로부터 제23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위협이 나오는 사안에 적용된다.
- ③ 집회 개시 전 집회에의 참가를 저지하는 조치는 제14조 또는 제24조에 따른 참가금지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제2장 옥외집회

제10조 신고

- ① 옥외공개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늦어도 그 집회로의 초청 48시간 이전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여러 사람이 집회를 주최하는 경우에 하나의 신고만 제출할 수 있다. 신고는 문서, 전자문서 또는 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기한의 계산 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 ② 신고에는 시간, 장소 및 목적에 따른 집회의 예정 경과가 기재되어야 하고, 행진의 경우 그 예정 진로도 포함되어야 한다. 신고에는 신고자 및 주관자가 정해진 경우 그 사람의 성명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집회 주관자가 나중에야 정해진 경우 내정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관할 관청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집회주관자가 질서유지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 이를 그 예정 인원수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제1문에 따른 기한의 준수로 인해 집회의 목적이 위태롭게 되는 경우(긴급집회), 그 집회는 늦어도 그 초청과 동시에 관할 관청 또는 경찰에 신고 되어야 한다. 신고는 전화로 할 수 있다.
- ④ 집회가 즉흥적 결의에 의하여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우발적 집회) 신고의무는 면제된다.

제11조 허가 면제

옥외공개집회에 대하여 공용 도로의 사용과 관련된 관청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2조 관청의 거부권

- ① 관할 관청은, 그 처분 발령 시 인식 가능한 상황에 따르면 어떤 주관자 투입이 집회 거행 시 공공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할 경우 옥외 공개집회의 주관자로 예정된 사람을 부적합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 ② 사실적 근거에 의하여 어떤 옥외공개집회로부터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나올 염려가 있는 경우, 주최자는 관청의 요구에 따라 예정된 질서유지인의 이름과 주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관할 관청은, 그 처분 발령 시

인식 가능한 상황에 따르면 그 질서유지인 투입이 집회 거행 시 공공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할 경우 그 질서유지인을 부적합을 이유로 거부할 수 있다.

제13조 제한, 금지, 해산

- ① 관할 관청은, 그 조치 발령 시 인식 가능한 상황에 따르면 옥외집회의 거행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되는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집회 개시 후에는 해산도 할 수 있다.
- ② 금지 또는 해산은 제한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 ③ 제3자로부터 공공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나오는 경우 그에 대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것을 통하여 또한 주 또는 연방 단위로 가용한 경찰병력의 개입으로도 직접적 위험이 방지될 수 없는 경우 그 위험이 나오는 곳이 아닌 집회에 대하여도 그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한 집회에 대한 금지나 해산은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 또는 현저한 가치의 물적 재산에 대한 위험을 전제로 한다.
- ④ 제한 처분 또는 금지가 발하여져야 할 경우, 그러한 처분을 정당화하는 전제조건이 확정된 후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 ⑤ 집회 개시 이후의 제한 처분 또는 해산의 공지는 그 조치의 이유를 첨부하여 행해져야 한다. 제1문의 처분에 대한 이의 및 취소소송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 ⑥ 집회가 해산되었다고 선언되자마자 참석한 모든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장소를 떠나야 한다. 해산된 집회 대신으로 같은 장소에서 대체집회를 거행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14조 사람의 참가 또는 현존의 금지 및 배제

- ① 관할 관청은, 그 처분 발령 시 인식 가능한 상황에 따르면 집회의 거행을 통하여 공공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경우 그 옥외집회에 그 사람이 참가 또는 현존하는 것을 집회 개시 전에 직접 금지할 수 있다.
- ② 집회에서 그 행태를 통하여 공공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사람임에도 집회주관자가 이를 저지하지 않거나, 제17조 제2항 또는 제18조 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사람은 관할 관청에 의해 배제될 수 있다. 집회에서 배제된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장소를 떠나야 한다.

제15조 통제소

- ① 무기를 소지하거나 제8조 제2호, 제17조 또는 제18조 소정의 물건 사용으로 옥외공개집회의 거행에 있어 공공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적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 집회 진입로에 사람과 물건을 수색하기 위하여 통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수색의 실행은 주 경찰법에 따라서 한다. 통제소는 통제가 신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 ② 신원확인 및 그 밖의 경찰 및 질서법적 또는 형사소송법적 조치는, 임박해 있는 제8조, 제17조, 제18조 위반 또는 경죄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사실적 근거가 통제소에서 밝혀지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제16조 촬영·녹음 및 영상·음향 자료화

- ① 관할 관청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공공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나오고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이를 정당화하는 경우 옥외공개집회 시 또는 그와 관련하여 그 사람을 촬영·

녹음하고 그에 상응한 영상·음향 자료화를 할 수 있다. 영상·음향 자료화는 다른 사람이 불가피하게 관계되는 경우에도 또한 할 수 있다.

② 관할 관청은, 집회의 규모 또는 조망불가능성으로 인하여 개개의 경우에 그것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경찰투입을 유도하고 지휘하기 위하여 옥외공개집회와 그 주변에 대한 조망촬영을 할 수 있다. 옥외공개집회에 대한 조망촬영 및 조망영상 자료화는, 집회, 집회의 일부 또는 그 주변으로부터 공공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나온다는 사실이 이를 정당화하는 한 할 수 있다. 조망촬영 또는 조망영상 자료화의 대상이 된 사람의 신원확인, 제1항에 따른 전제조건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③ 촬영·녹음 및 영상·음향 자료화는 공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조망촬영 및 조망영상 자료화의 시행은 집회주관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몰래 촬영·녹음 또는 그에 상응한 영상·음향 자료화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촬영·녹음 또는 영상·음향 자료화의 대상이 된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이 위태롭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영상·음향 자료화 또는 제2항 제3문에 관계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람의 신원이 확인되고 허용된 사용목적이 위태롭지 않게 되는 즉시 그 조치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몰래 촬영·녹음이 시행되고 관계된 사람에게 통지되지 않은 경우, 허용된 사용목적이 위태롭지 않게 되는 즉시 집회주관자에게 몰래 촬영·녹음의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영상·음향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

1. 집회에서의 또는 집회와 관련한 범죄행위에 대한 소추,
2. 관계인으로부터 집회에서 또는 집회와 관련하여 형법을 위반하려는 구체적 위험이 나오고 장래의 집회에 그로부터 형법을 위반하려는 새로운 위험이 나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위험 방지,

3. 공공의 안전에 대한 방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 대응의 기한 있는 문서화를 위하여, 또는
 4. 경찰의 양성교육 및 재교육 목적을 위하여.
- ⑥ 영상·음향 자료는 집회 또는 그와 시적 및 물적으로 직접적 관계가 있는 사건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이는 제5항에 거시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5항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영상·음향 자료는, 법률상 구제(불복신청)나 사법 절차의 대상이 아닌 한, 당해 자료가 생성된 때로부터 늦어도 1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 ⑦ 영상·음향 자료가 경찰의 양성교육 및 재교육에 사용되는 경우, 이를 위하여 그것에 의한 사람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든 특별판을 제작하여야 한다.
-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상·음향 자료 및 조망영상 자료의 제작 그리고 제5항에 따른 사용의 각 이유는 문서화되어야 한다. 제7항에 따라 영상·음향 자료의 특별판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된 특별판의 수 및 그 보관 장소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17조 변장 및 호신장구 금지

- ① 옥외집회에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건을 소지하는 것은 금지된다.
1. 사람의 신원을 은폐하기에 적합하고 상황에 따라 범죄행위 또는 질서위반행위 소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람의 신원 확인을 방해하기 적절한 물건, 또는
 2. 호신장구로 적합하고 상황에 따라 고권적 권한을 가진 당국자의 집행조치를 저지하기에 적절한 물건.

② 관할 관청은 위 금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금지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묘사되어 있는 명령을 발한다.

제18조 군사적 행태 금지

① 옥외집회를 주최, 주관하거나 그에 참가하는 것은 그것이 그 외관 때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금지된다.

1. 제복, 제복의 일부 또는 제복과 유사한 의복의 착용을 통하여 또는
2. 준군사적인 행태를 통하여 또는 비슷한 방법으로 폭력지향의 인상을 전달하고 그것을 통하여 위협적 효과가 나타나는 것.

② 관할 관청은 위 금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금지의 대상이 되는 물건 또는 행태가 묘사되어 있는 명령을 발한다.

제19조 상징내포 장소 및 날짜

① 관할 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옥외집회의 거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집회 개시 이후에는 해산할 수 있다.

1. 나치의 폭력적이고 자의적인 통치 하에서 비인도적 취급을 당한 희생자를 상기시키는 역사적으로 특별하고 초지역적인 의미를 가진 기념 장소에서 집회가 개최되거나 또는 나치의 폭력적이고 자의적 통치 하에서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은 희생자에 대한 추모일로 정해진 날짜에 집회가 개최되는 경우, 그리고
2. 그 처분 발령 시 인식 가능한 상황에 따르면 집회를 통하여 나치의 폭력적 및 자의적 통치를 승인, 찬양 또는 정당화하고 그로 인하여 공공의 평화가 문란하게 될 직접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제1문에 따른 장소와 그 공간적 경계는 이 법의 첨부에서 정한다. 제1문에

따른 날짜는 1월 27일 및 11월 9일이다.

② 금지 또는 해산은 제한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제20조 주 의회의 보호

① 주 의회의 헌법합치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소적 보호구역을 설정한다. 그 보호 구역은 (...)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정된 보호구역 내에서 옥외공개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늦어도 그 집회로의 초청 72시간 전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에는 제10조 제1항 제2문과 제3문 및 제2항이 준용된다.

③ 관할 관청은, 처분 발령 시 인식 상황에 따르면 집회 거행 시 주 의회, 그 기관 또는 위원회의 직무가 침해될 직접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주 의회 의장과 협조하여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내에서의 옥외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④ 관할 관청은, 제3항에 따른 전제조건이 존재하거나 제3항에 따라 발하여진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그 집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⑤ 금지 또는 해산은 제한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제21조 사유지 내 공용 도로

공중에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사유지 내의 공용 도로 상에서도 또한 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개집회를 거행할 수 있다. 그 소유자는 제3조 제2항에 따른 협력에 포함되어야 한다. 10인 이상이 관계되거나 그 소유관계가 과도한 비용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는 경우, 협력을 이행하기 위한 초청을 공고로 할 수 있다.

제3장 옥내집회

제22조 초청

- ① 옥내공개집회를 개최하는 자는 그 초청 시에 특정된 인물 또는 인적 범위에 대하여 집회 참가를 배제할 수 있다.
- ② 옥내공개집회의 주관자는, 인정된 기자증으로 그 신분을 증명한 언론사 기자들의 참석을 저지할 수 없다.

제23조 제한, 금지, 해산

- ① 관할 관청은, 그 조치 발령 시 인식 가능한 상황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1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있는 경우 옥내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집회 개시 후에는 해산도 할 수 있다.
 1. 집회의 평화롭지 않은 진행,
 2. 사람의 생명과 건강 또는
 3. 집회에서 중죄 또는 직권으로 소추 가능한 경죄를 나타내는 발언이 행해지는 것을 위해 존속되는 것.
- ② 금지 또는 해산은 제한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 ③ 어떤 공개집회로부터 제1항에 거론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나온다는 사실적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 경찰관이 그 집회에 참석할 수 있다. 경찰관은 그 존재를 집회주관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제3자로부터 제1항에 거론된 법익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나오는 경우 그에 대응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주 또는 연방 단위로 가용한 경찰병력의 개입으로도 또한 그 위험이 방지될 수 없는 경우 그 위험이 나오는 곳이 아닌 집회에 대하여도 그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제한 처분 또는 금지가 발하여져야 할 경우, 그러한 처분을 정당화하는 전제조건이 확정된 후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 ⑥ 집회 개시 이후의 제한 처분 또는 해산의 공지는 그 조치의 이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문의 처분에 대한 이의 및 취소소송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 ⑦ 집회가 해산되었다고 선언되자마자 참석한 모든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장소를 떠나야 한다. 해산된 집회 대신으로 같은 장소에서 대체집회를 거행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24조 사람의 참가 또는 현존의 금지 및 배제

- ① 관할 관청은, 그 처분 발령 시 인식 가능한 상황에 따르면 집회의 거행을 통하여 제23조 제1항 소정의 직접적 위험이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경우 그 옥내집회에 그 사람이 참가 또는 현존하는 것을 집회 개시 전에 직접 금지할 수 있다.
- ② 집회에서 그 행태를 통하여 제23조 제1항 소정의 직접적 위험을 야기하는 사람은 집회주관자가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 관할 관청에 의해 배제될 수 있다. 집회에서 배제된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장소를 떠나야 한다.

제25조 통제소

- ① 무기를 소지하거나 제8조 제2호 소정의 물건 사용으로 옥내공개집회의 거행 시 제23조 제1항 소정의 위험을 야기한다는 사실적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 집회 진입로에 사람과 물건을 수색하기 위하여 통제소를 설치할 수 있다. 수색의 실행은 주 경찰법에 따라서 한다. 통제소는 통제가 신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② 신원확인 및 그 밖의 경찰 및 질서법적 또는 형사소송법적 조치는, 압박해 있는 제8조 위반 또는 경죄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사실적 근거가 통제소에서 밝혀지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제26조 촬영·녹음 및 영상·음향 자료화

① 제23조 제1항의 요건 하에 관찰 관청은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옥내공개집회 시 또는 그와 관련하여 어떤 사람을 촬영·녹음하고 그에 상응한 영상·음향 자료화를 할 수 있다. 영상·음향 자료화는 다른 사람이 불가피하게 관계되는 경우에도 또한 할 수 있다. 촬영·녹음 및 영상·음향 자료화는 공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음향 자료화의 대상이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람의 신원이 확인되고 허용된 사용목적이 위태롭게 되지 않는 즉시 그 조치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③ 영상·음향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다.

1. 제23조 제1항 소정의 위험이 나오는 사람에 대한 집회에서의 또는 집회와 관련한 범죄행위의 소추,
2. 관계인으로부터 집회에서 또는 집회와 관련하여 제23조 제1항 소정의 위험이 나오고 장래의 집회에 그로부터 제23조 제1항 소정의 위험이 새로이 나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위험 방지.

④ 영상·음향 자료는 집회 또는 그와 시적 및 물적으로 직접적 관계가 있는 사건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이는 제3항에 거시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항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영상·음향 자료는, 법률상 구제(불복신청)나 사법 절차의 대상 또는 증거물이 아닌 한, 당해 자료가 생성된 때로부터 늦어도 1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영상·음향 자료의 제작 그리고 제3항에 따른 사용의 각 이유는 문서화되어야 한다.

제4장 범죄행위, 질서위반행위, 몰수, 비용, 보상 및 배상

제27조 범죄행위

① 금지되지 않은 집회를 저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거행을 좌절케 할 의도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무기 또는 제8조 제2호에 위반한 물건을 집회 시 소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무기 또는 제8조 제2호에 위반한 물건을 집회에 가는 길에 또는 집회 직후에 소지하거나, 집회장소로 운반하거나 또는 집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준비하거나 배포한 자 또는 공개집회에서 무장한 질서유지인을 사용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한다.

③ 적법하게 질서유지권을 행사하는 집회의 주관자 또는 질서유지인에 대항하여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으로 협박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질서유지권을 행사하는 도중에 그에게 폭력을 가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28조 질서위반행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질서위반으로 취급된다.

1. 제10조에 의해 필요한 신고 없이 또는 제10조 제2항 소정의 사항이 포함되지 않거나 본질적인 관점에서 부정확하게 포함된 신고를 한 다음 옥외공개집회를 거행한 자,

2. 제12조 제2항 제1문에 따른 예정된 질서유지인의 성명과 주소의 통지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2조 제2항 제2문에 따라 관할 관청에 의해 거부된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사용한 자,
3. 집회 거행이 집행 가능하게 금지되거나 집회 해산이 집행 가능하게 명령된 집회에의 참가를 호소한 자,
4. 그에 관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집회로의 진입로 또는 행진의 예정 진로를 봉쇄하거나 또는 집회의 거행을 현저히 저지하거나 좌절케 할 목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5. 신고(제10조)의 내용과 본질적으로 다르게 옥외공개집회를 거행한 주최자 또는 주관자,
6. 제13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 하에 말하여진 집행 가능한 제한 처분, 금지 또는 해산에 위반한 자,
7. 변장 및 호신장구 금지(제17조) 또는 군사적 행태 금지(제18조)를 실행하기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19조에 따른 집행 가능한 제한 처분 또는 금지에 위반한 자,
9. 제20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또는 제20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공포된 집행 가능한 제한 처분이나 금지에 위반하여 제20조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공개집회를 거행하거나 참가한 자,
10. 사법적 긴급권리보호 절차에서 이루어진 집회권 행사의 제한에 위반한 자,
11. 제14조 제1항, 제24조 제1항에 따른 집회에의 참가나 현존의 금지 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참석하거나 또는 제14조 제2항, 제24조 제1항에 따른 배제 명령 이후에 지체 없이 그 장소를 떠나지 아니한 자,

12. 제13조, 제20조의 요건 하에 이루어진 집회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장소를 떠나지 아니한 자.

② 질서위반행위는 3,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5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29조 몰수

제27조 소정의 범죄행위 또는 제28조 소정의 질서위반행위에 관계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형법 제74a조와 질서위반행위법 제23조가 적용된다.

제30조 비용

이 법에 따른 직무행위는 무료이다.

제31조 보상 및 배상

일반적 보상규정이 적용된다. 더 나아가 배상청구권, 특히 직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은 영향을 받지 아니 한다.

제5장 종결규정

제32조 기본권의 제한

집회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기본법 제8조 제1항) 이 법에 따라서 제한된다.

Musterentwurf eines Versammlungsgesetzes (ME VersG)

Übersicht

I. Allgemeine Regelungen

- § 1 Versammlungsfreiheit
- § 2 Begriff der öffentlichen Versammlung
- § 3 Schutzaufgabe und Kooperation
- § 4 Veranstaltung einer Versammlung
- § 5 Versammlungsleitung
- § 6 Befugnisse der Versammlungsleitung
- § 7 Störungsverbot
- § 8 Waffenverbot
- § 9 Anwendbarkeit des Polizeirechts

II.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 § 10 Anzeige
- § 11 Erlaubnisfreiheit
- § 12 Behördliche Ablehnungsrechte
- § 13 Beschränkungen, Verbot, Auflösung
- § 14 Untersagung der Teilnahme oder Anwesenheit und Ausschluss

von Personen

§ 15 Kontrollstellen

§ 16 Aufnahmen und Aufzeichnungen von Bild und Ton

§ 17 Vermummungs- und Schutzausrüstungsverbot

§ 18 Militanzverbot

§ 19 Symbolträchtige Orte und Tage

§ 20 Schutz des Landtags

§ 21 Öffentliche Verkehrsflächen in Privateigentum

III. Versammlungen in geschlossenen Räumen

§ 22 Einladung

§ 23 Beschränkungen, Verbot, Auflösung

§ 24 Untersagung der Teilnahme oder Anwesenheit und Ausschluss
von Personen

§ 25 Kontrollstellen

§ 26 Aufnahmen und Aufzeichnungen von Bild und Ton

IV. Straftaten, Ordnungswidrigkeiten, Einziehung, Kosten,
Entschädigung und Schadensersatz

§ 27 Straftaten

§ 28 Ordnungswidrigkeiten

§ 29 Einziehung

§ 30 Kosten

§ 31 Entschädigung und Schadensersatz

V. Schlussbestimmungen

§ 32 Einschränkung von Grundrechten

I . Allgemeine Regelungen

§ 1 Versammlungsfreiheit

(1) Jede Person hat das Recht, sich ohne Anmeldung oder Erlaubnis friedlich und ohne Waffen mit anderen zu versammeln und Versammlungen zu veranstalten.

(2) Dieses Recht hat nicht, wer das Grundrecht der Versammlungsfreiheit gemäß Artikel 18 des Grundgesetzes verwirkt hat.

§ 2 Begriff der öffentlichen Versammlung

(1) Versammlung im Sinn dieses Gesetzes ist eine örtliche Zusammenkunft von mindestens zwei Personen zur gemeinschaftlichen, überwiegend auf die Teilhabe an der öffentlichen Meinungsbildung gerichteten Erörterung oder Kundgebung. Aufzug ist eine sich fortbewegende Versammlung.

(2) Eine Versammlung ist öffentlich, wenn die Teilnahme nicht auf einen individuell bestimmten Personenkreis beschränkt ist oder die Versammlung auf eine Kundgebung an die Öffentlichkeit in ihrem räumlichen Umfeld gerichtet ist.

(3) Soweit nichts anderes bestimmt ist, gilt dieses Gesetz sowohl für öffentliche als auch für nichtöffentliche Versammlungen.

§ 3 Schutzaufgabe und Kooperation

(1) Aufgabe der zuständigen Behörde ist es,

1. die Durchführung einer nach Maßgabe dieses Gesetzes zulässigen Versammlung zu unterstützen,
2. ihre Durchführung vor Störungen zu schützen und von der Versammlung oder von Dritten ausgehende Gefahren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abzuwehren.

(2) Soweit es nach Art und Umfang der Versammlung erforderlich ist, bietet die zuständige Behörde der Person, die eine öffentliche Versammlung veranstaltet oder der die Leitung übertragen worden ist, rechtzeitig ein Kooperationsgespräch an, um die Gefahrenlage und sonstige Umstände zu erörtern, die für die ordnungsgemäße Durchführung der Versammlung wesentlich sind. 2Bestehen Anhaltspunkte für Gefährdungen,

die gemäß §§ 13 Abs. 1, 23 Abs. 1 zu einem Verbot oder Beschränkungen führen können, ist Gelegenheit zu geben, durch ergänzende Angaben oder Veränderungen der beabsichtigten Versammlung ein Verbot oder Beschränkungen entbehrlich zu machen.

(3) Im Rahmen der Kooperation informiert die zuständige Behörde die Person, die eine öffentliche Versammlung veranstaltet oder der die Leitung übertragen worden ist, vor und während der Versammlung über erhebliche Änderungen der Gefahrenlage, soweit dieses nach Art und Umfang der Versammlung erforderlich ist.

§ 4 Veranstaltung einer Versammlung

Wer zu einer Versammlung einlädt oder die Versammlung nach § 10 anzeigt oder nach § 20 anmeldet, veranstaltet eine Versammlung. In der Einladung zu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ist der Name anzugeben.

§ 5 Versammlungsleitung

(1) 1Wer eine Versammlung veranstaltet, leitet die Versammlung. Veranstalten mehrere Personen eine Versammlung, bestimmen diese die Versammlungsleitung. Veranstaltet eine Vereinigung die Versammlung, so wird sie von der Person geleitet, die für die Vereinigung handlungsbefugt ist.

(2) Die Versammlungsleitung ist übertragbar.

(3) Gibt es keine Person, die die Versammlung veranstaltet, kann die Versammlung eine Versammlungsleitung bestimmen.

(4) Die Vorschriften dieses Gesetzes über die Versammlungsleitung gelten für nichtöffentliche Versammlungen nur, wenn eine Versammlungsleitung bestimmt ist.

§ 6 Befugnisse der Versammlungsleitung

(1) Die Versammlungsleitung sorgt für den ordnungsgemäßen Ablauf der Versammlung und wirkt auf deren Friedlichkeit hin. 2Sie darf die Versammlung jederzeit unterbrechen oder schließen.

(2) Die Versammlungsleitung kann sich der Hilfe von Ordnerinnen

und Ordnern bedienen. Diese müssen bei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durch weiße Armbinden, die nur die Bezeichnung “Ordnerin” oder “Ordner” tragen dürfen, kenntlich sein. Die Vorschriften dieses Gesetzes für Teilnehmerinnen und Teilnehmer der Versammlung gelten auch für Ordnerinnen und Ordner.

(3) Die zur Aufrechterhaltung der Ordnung in der Versammlung getroffenen Anweisungen der Versammlungsleitung und der Ordnerinnen und Ordner sind zu befolgen.

(4) Die Versammlungsleitung darf Personen, welche die Ordnung der Versammlung erheblich stören, aus der Versammlung ausschließen. Wer aus der Versammlung ausgeschlossen wird, hat sich unverzüglich zu entfernen.

§ 7 Störungsverbot

Es ist verboten, eine Versammlung mit dem Ziel zu stören, deren Durchführung erheblich zu behindern oder zu vereiteln.

§ 8 Waffenverbot

Es ist verboten,

1. Waffen oder
2. sonstige Gegenstände, die ihrer Art nach zur Verletzung von Personen oder zur Herbeiführung erheblicher Schäden an Sachen geeignet und den Umständen nach dazu bestimmt sind, bei Versammlungen oder auf dem Weg zu oder von Versammlungen mit sich zu führen, zu Versammlungen hinzuschaffen oder sie

zur Verwendung bei Versammlungen bereitzuhalten oder zu verteilen.

§ 9 Anwendbarkeit des Polizeirechts

(1) Soweit das Versammlungsgesetz die Abwehr von Gefahren gegenüber einzelnen Teilnehmerinnen und Teilnehmern nicht regelt, sind Maßnahmen gegen sie nach dem Landespolizeirecht zulässig, wenn von ihnen nach den zum Zeitpunkt der Maßnahme erkennbaren Umständen vor oder bei der Durchführung der Versammlung oder im Anschluss an sie eine unmittelbare Gefahr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ausgeht.

(2) Für Versammlungen in geschlossenen Räumen gilt Absatz 1 für den Fall, dass von den Teilnehmerinnen oder Teilnehmern eine Gefahr im Sinn von § 23 Abs. 1 ausgeht.

(3) Maßnahmen vor Beginn der Versammlung, welche die Teilnahme an der Versammlung unterbinden sollen, setzen eine Teilnahmeuntersagung nach § 14 oder § 24 voraus.

II .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 10 Anzeige

(1) Wer eine öffentliche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veranstalten will, hat dies der zuständigen Behörde spätestens 48 Stunden vor der Einladung zu der Versammlung anzuzeigen. Veranstalten mehrere Personen eine Versammlung, ist nur eine

Anzeige abzugeben. Die Anzeige muss schriftlich, elektronisch oder zur Niederschrift erfolgen. Bei der Berechnung der Frist bleiben Samstage, Sonn- und Feiertage außer Betracht.

(2) Die Anzeige muss den geplanten Ablauf der Versammlung nach Ort, Zeit und Thema bezeichnen, bei Aufzügen auch den beabsichtigten Streckenverlauf. Sie muss Namen und Anschrift der anzeigenden Person und der Person, die sie leiten soll, sofern eine solche bestimmt ist, enthalten. ³Wird die Versammlungsleitung erst später bestimmt, sind Name und Anschrift der vorgesehenen Person der zuständigen Behörde unverzüglich mitzuteilen. Wenn die Versammlungsleitung sich der Hilfe von Ordnerinnen und Ordnern bedient, ist ihr Einsatz unter Angabe der Zahl der dafür voraussichtlich eingesetzten Personen der zuständigen Behörde mitzuteilen.

(3) Wenn der Zweck der Versammlung durch eine Einhaltung der Frist nach Absatz 1 Satz 1 gefährdet würde (Eilversammlung), ist die Versammlung spätestens mit der Bekanntgabe bei der zuständigen Behörde oder bei der Polizei anzuzeigen. Die Anzeige kann telefonisch erfolgen.

(4) Die Anzeigepflicht entfällt, wenn sich die Versammlung aufgrund eines spontanen Entschlusses augenblicklich bildet (Spontanversammlung).

§ 11 Erlaubnisfreiheit

Für eine öffentliche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sind keine behördlichen Erlaubnisse erforderlich, die sich auf die Benutzung der öffentlichen Verkehrsflächen beziehen.

§ 12 Behördliche Ablehnungsrechte

(1)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eine zur Leitung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vorgesehene Person als ungeeignet ablehnen, wenn deren Einsatz nach den zur Zeit des Erlasses der Verfügung erkennbaren Umständen die öffentliche Sicherheit bei Durchführung der Versammlung unmittelbar gefährdet.

(2) Wenn aufgrund tatsächlicher Anhaltspunkte zu besorgen ist, dass von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eine Gefahr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ausgeht, hat die Veranstalterin oder der Veranstalter der Behörde auf deren Aufforderung hin Namen und Adressen der vorgesehenen Ordnerinnen und Ordner mitzuteilen.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diese als ungeeignet ablehnen, wenn ihr Einsatz nach den zur Zeit des Erlasses der Verfügung erkennbaren Umständen die öffentliche Sicherheit bei Durchführung der Versammlung unmittelbar gefährdet.

§ 13 Beschränkungen, Verbot, Auflösung

(1)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die Durchführung einer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beschränken oder verbieten, die Versammlung nach deren Beginn auch auflösen, wenn nach den zur Zeit des Erlasses der Maßnahmen erkennbaren Umständen die öffentliche Sicherheit bei Durchführung der Versammlung unmittelbar gefährdet ist.

(2) Verbot oder Auflösung setzen voraus, dass Beschränkungen nicht ausreichen.

(3) Geht eine unmittelbare Gefahr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von Dritten aus, sind Maßnahmen der Gefahrenabwehr gegen diese zu richten. Kann dadurch auch unter Heranziehung von landes- oder bundesweit verfügbaren Polizeikräften eine unmittelbare Gefahr nicht abgewehrt werden, dürfen Maßnahmen nach den Absätzen 1 oder 2 auch zulasten der Versammlung ergriffen werden, von der die Gefahr nicht ausgeht. Ein Verbot oder die Auflösung dieser Versammlung setzt Gefahren für Leben oder Gesundheit von Personen oder für Sachgüter von erheblichem Wert voraus.

(4) Sollen eine beschränkende Verfügung oder ein Verbot ausgesprochen werden, so sind diese nach Feststellung der Voraussetzungen, die diese Verfügung rechtfertigen, unverzüglich bekannt zu geben.

(5) Die Bekanntgabe einer nach Versammlungsbeginn erfolgenden beschränkenden Verfügung oder einer Auflösung muss unter Angabe des Grundes der Maßnahme erfolgen. Widerspruch und Anfechtungsklage gegen Verfügungen nach Satz 1 haben keine aufschiebende Wirkung.

(6) Sobald die Versammlung für aufgelöst erklärt ist, haben alle anwesenden Personen sich unverzüglich zu entfernen. Es ist verboten, anstelle der aufgelösten Versammlung eine Ersatzveranstaltung durchzuführen.

§ 14 Untersagung der Teilnahme oder Anwesenheit und Ausschluss von Personen

(1)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einer Person die Teilnahme an oder Anwesenheit in einer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vor deren

Beginn untersagen, wenn von ihr nach den zur Zeit des Erlasses der Verfügung erkennbaren Umständen bei Durchführung der Versammlung eine unmittelbare Gefahr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ausgeht.

(2) Wer durch sein Verhalten in der Versammlung die öffentliche Sicherheit unmittelbar gefährdet, ohne dass die Versammlungsleitung dies unterbindet, oder wer einer Anordnung nach § 17 Abs. 2 oder § 18 Abs. 2 zuwiderhandelt, kann von der zuständigen Behörde ausgeschlossen werden. Wer aus der Versammlung ausgeschlossen wird, hat sich unverzüglich zu entfernen.

§ 15 Kontrollstellen

(1) Bestehen tatsächliche Anhaltspunkte dafür, dass Waffen mitgeführt werden oder der Einsatz von Gegenständen im Sinn von § 8 Nr. 2, § 17 oder § 18 die öffentliche Sicherheit bei Durchführung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unmittelbar gefährden wird, können auf den Anfahrtswegen zu der Versammlung Kontrollstellen errichtet werden, um Personen und Sachen zu durchsuchen. Die Durchführung der Durchsuchungen richtet sich nach dem Landespolizeirecht. Kontrollstellen sind so einzurichten, dass die Kontrollen zügig durchgeführt werden können.

(2) Identitätsfeststellungen sowie weitere polizei- und ordnungsrechtliche oder strafprozessuale Maßnahmen sind nur zulässig, soweit sich an der Kontrollstelle tatsächliche Anhaltspunkte für einen bevorstehenden Verstoß gegen §§ 8, 17, 18 oder für die Begehung strafbarer Handlungen ergeben.

§ 16 Aufnahmen und Aufzeichnungen von Bild und Ton

(1) Die zuständige Behörde darf Bild- und Tonaufnahmen sowie entsprechende Aufzeichnungen von einer Person bei oder im Zusammenhang mit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anfertigen, wenn Tatsachen die Annahme rechtfertigen, dass von der Person bei oder im Zusammenhang mit der Versammlung eine erhebliche Gefahr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ausgeht, und die Maßnahmen erforderlich sind, um diese Gefahr abzuwehren. Die Aufzeichnungen dürfen auch angefertigt werden, wenn andere Personen unvermeidbar betroffen werden.

(2) Die zuständige Behörde darf Übersichtsaufnahmen von öffentlichen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und ihrem Umfeld zur Lenkung und Leitung des Polizeieinsatzes nur dann anfertigen, wenn dies wegen der Größe oder Unübersichtlichkeit der Versammlung im Einzelfall erforderlich ist. Übersichtsaufnahmen und -aufzeichnungen von öffentlichen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dürfen angefertigt werden, soweit Tatsachen die Annahme rechtfertigen, dass von Versammlungen, von Teilen hiervon oder ihrem Umfeld erhebliche Gefahren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ausgehen. Die Identifizierung einer auf den Übersichtsaufnahmen oder -aufzeichnungen abgebildeten Person ist nur zulässig, soweit die Voraussetzungen nach Absatz 1 vorliegen.

(3) Aufnahmen und Aufzeichnungen sind offen vorzunehmen. Die Versammlungsleitung ist unverzüglich über die Anfertigung von Übersichtsaufnahmen und -aufzeichnungen in Kenntnis zu setzen.

Verdeckte Bild- und Tonaufnahmen oder entsprechende Aufzeichnungen sind nur zulässig, wenn anderenfalls die körperliche Unversehrtheit der die Aufnahme oder Aufzeichnung durchführenden Personen gefährdet würde.

(4) Die von einer Aufzeichnung nach Absatz 1 oder Absatz 2 Satz 3 betroffene Person ist über die Maßnahme zu unterrichten, sobald ihre Identität bekannt ist und zulässige Verwendungszwecke nicht gefährdet sind. Soweit verdeckte Aufnahmen angefertigt worden sind und keine Mitteilung an die betroffene Person erfolgt, sind der Versammlungsleitung die Gründe für die Anfertigung der verdeckten Aufnahmen mitzuteilen, sobald zulässige Verwendungszwecke nicht gefährdet sind.

(5) Die Aufzeichnungen dürfen auch verwendet werden

1. zur Verfolgung von Straftaten in oder im Zusammenhang mit der Versammlung,
2. zur Gefahrenabwehr, wenn von der betroffenen Person in oder im Zusammenhang mit der Versammlung die Gefahr einer Verletzung von Strafgesetzen ausging und zu besorgen ist, dass bei künftigen Versammlungen von dieser Person erneut die Gefahr der Verletzung von Strafgesetzen ausgehen wird,
3. zur befristeten Dokumentation des polizeilichen Handelns, sofern eine Störung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eingetreten ist,
4. zum Zweck der polizeilichen Aus- oder Fortbildung.

(6) Die Aufzeichnungen sind nach Beendigung der Versammlung oder zeitlich und sachlich damit unmittelbar im Zusammenhang stehender

Ereignisse unverzüglich zu vernichten. Dies gilt nicht, soweit sie für die in Absatz 5 aufgeführten Zwecke benötigt werden. 3Aufzeichnungen, die für die Zwecke des Absatzes 5 verwendet werden, sind ein Jahr nach ihrer Anfertigung zu vernichten, sofern sie nicht Gegenstand eines Rechtsbehelfs oder gerichtlichen Verfahrens sind.

(7) Soweit Aufzeichnungen zur polizeilichen Aus- und Fortbildung verwendet werden, ist hierzu eine eigene Fassung herzustellen, die eine Identifizierung der darauf abgebildeten Personen unumkehrbar ausschließt.

(8) Die Gründe für die Anfertigung von Bild-, Ton- und Übersichtsaufzeichnungen nach Absatz 1 und 2 und für ihre Verwendung nach Absatz 5 sind zu dokumentieren. Werden von Aufzeichnungen eigene Fassungen nach Absatz 7 hergestellt, sind die Anzahl der hergestellten Fassungen sowie der Ort der Aufbewahrung zu dokumentieren.

§ 17 Vermummungs- und Schutzausrüstungsverbot

(1) Es ist verboten, bei oder im Zusammenhang mit einer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Gegenstände mit sich zu führen,

1. die zur Identitätsverschleierung geeignet und den Umständen nach darauf gerichtet sind, eine zu Zwecken der Verfolgung einer Straftat oder einer Ordnungswidrigkeit durchgeführte Feststellung der Identität zu verhindern, oder
2. die als Schutzausrüstung geeignet und den Umständen nach darauf gerichtet sind, Vollstreckungsmaßnahmen eines Trägers

von Hoheitsgewalt abzuwehren.

(2) Die zuständige Behörde trifft zur Durchsetzung des Verbots Anordnungen, in denen die vom Verbot erfassten Gegenstände bezeichnet sind.

§ 18 Militanzverbot

(1) Es ist verboten, eine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zu veranstalten, zu leiten oder an ihr teilzunehmen, wenn diese infolge des äußeren Erscheinungsbildes

1. durch das Tragen von Uniformen, Uniformteilen oder uniformähnlichen Kleidungsstücken oder
2. durch ein paramilitärisches Auftreten oder auf vergleichbare Weise

Gewaltbereitschaft vermittelt und dadurch einschüchternd wirkt.

(2) Die zuständige Behörde trifft zur Durchsetzung des Verbots Anordnungen, in denen die vom Verbot erfassten Gegenstände oder Verhaltensweisen bezeichnet sind.

§ 19 Symbolträchtige Orte und Tage

(1)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die Durchführung einer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beschränken oder verbieten, die Versammlung nach deren Beginn auch auflösen, wenn

1. die Versammlung an einem Ort stattfindet, der als Gedenkstätte von historisch herausragender überregionaler Bedeutung an die

Opfer der menschenunwürdigen Behandlung unter der nationalsozialistischen Gewalt- oder Willkürherrschaft erinnert, oder an einem Tag stattfindet, der zum Gedenken an die Opfer der menschenunwürdigen Behandlung unter der nationalsozialistischen Gewalt und Willkürherrschaft bestimmt ist, und

2. nach den zur Zeit des Erlasses der Verfügung erkennbaren Umständen die unmittelbare Gefahr besteht, dass durch die Versammlung die nationalsozialistische Gewalt- und Willkürherrschaft gebilligt, verherrlicht oder gerechtfertigt und dadurch der öffentliche Friede gestört wird.

Die Orte nach Satz 1 und ihre räumliche Abgrenzung werden in der Anlage zu diesem Gesetz bestimmt. Tage nach Satz 1 sind der 27. Januar und der 9. November.

(2) Verbot oder Auflösung setzen voraus, dass Beschränkungen nicht ausreichen.

§ 20 Schutz des Landtags

(1) Zur Gewährleistung der verfassungsmäßigen Funktionen des Landtags wird eine örtliche Schutzzone gebildet. Diese Schutzzone umfasst [...].

(2) Wer innerhalb der nach Absatz 1 gebildeten Schutzzone eine öffentliche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veranstalten will, hat dies spätestens 72 Stunden vor der Einladung zu der Versammlung bei der zuständigen Behörde anzumelden. Für die Anmeldung gilt § 10 Abs. 1 Satz 2 und 3 und Abs. 2 entsprechend.

- (3)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innerhalb der nach Absatz 1 gebildeten Schutzzone eine öffentliche Versammlung im Benehmen mit dem Präsidenten des Landtags beschränken oder verbieten, wenn nach den zur Zeit des Erlasses der Verfügung erkennbaren Umständen die unmittelbare Gefahr besteht, dass bei Durchführung der Versammlung die Tätigkeit des Landtags, seiner Organe oder Gremien beeinträchtigt wird.
- (4)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die Versammlung auflösen, wenn die Voraussetzungen nach Absatz 3 vorliegen oder einer nach Absatz 3 ausgesprochenen Beschränkung zuwidergehandelt wird.
- (5) Verbot oder Auflösung setzen voraus, dass Beschränkungen nicht ausreichen.

§ 21 Öffentliche Verkehrsflächen in Privateigentum

Auf Verkehrsflächen von Grundstücken in Privateigentum, die dem allgemeinen Publikum geöffnet sind, können öffentliche Versammlungen auch ohne die Zustimmung der Eigentümerin oder des Eigentümers durchgeführt werden. Die Eigentümerinnen und Eigentümer sind in die Kooperation nach § 3 Abs. 2 einzubeziehen. Sind mehr als zehn Personen betroffen oder sind die Eigentumsverhältnisse nur mit unverhältnismäßigem Aufwand zu ermitteln, kann die Einladung zur Mitwirkung an der Kooperation durch öffentliche Bekanntmachung erfolgen.

Ⅲ. Versammlungen in geschlossenen Räumen

§ 22 Einladung

(1) Wer eine öffentliche Versammlung in geschlossenen Räumen veranstaltet, darf in der Einladung bestimmte Personen oder Personenkreise von der Teilnahme ausschließen.

(2) Die Leitung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in geschlossenen Räumen darf die Anwesenheit von Vertretern der Medien, die sich als solche durch anerkannten Presseausweis ausgewiesen haben, nicht unterbinden.

§ 23 Beschränkungen, Verbot, Auflösung

(1)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die Durchführung einer Versammlung in geschlossenen Räumen beschränken oder verbieten, die Versammlung nach deren Beginn auch auflösen, wenn nach den zur Zeit des Erlasses der Maßnahmen erkennbaren Umständen eine unmittelbare Gefahr

1. eines unfriedlichen Verlaufs der Versammlung,
2. für Leben oder Gesundheit von Personen oder
3. dafür besteht, dass in der Versammlung Äußerungen erfolgen, die ein Verbrechen oder ein von Amts wegen zu verfolgendes Vergehen darstellen.

(2) Verbot oder Auflösung setzen voraus, dass Beschränkungen nicht ausreichen.

(3) Bestehen tatsächliche Anhaltspunkte dafür, dass von einer öffen-

tlichen Versammlung eine Gefahr für die in Absatz 1 genannten Rechtsgüter ausgeht, dürfen Polizeibeamte in der Versammlung anwesend sein. 2 Sie haben sich der Versammlungsleitung zu erkennen zu geben.

(4) Geht eine unmittelbare Gefahr für die in Absatz 1 genannten Rechtsgüter von Dritten aus, sind Maßnahmen der Gefahrenabwehr gegen diese zu richten. Kann die Gefahr auch unter Heranziehung von landes- und bundesweit verfügbaren Polizeikräften nicht abgewehrt werden, dürfen Maßnahmen nach den Absätzen 1 oder 2 auch zulasten der Versammlung ergriffen werden, von der die Gefahr nicht ausgeht.

(5) Sollen eine beschränkende Verfügung oder ein Verbot ausgesprochen werden, so sind diese nach Feststellung der Voraussetzungen, die diese Verfügung rechtfertigen, unverzüglich bekannt zu geben.

(6) Die Bekanntgabe einer nach Versammlungsbeginn ergehenden beschränkenden Verfügung oder einer Auflösung muss unter Angabe des Grundes der Maßnahme erfolgen. Widerspruch und Anfechtungsklage gegen Verfügungen nach Satz 1 haben keine aufschiebende Wirkung.

(7) Sobald die Versammlung für aufgelöst erklärt ist, haben alle anwesenden Personen sich unverzüglich zu entfernen. Es ist verboten, anstelle der aufgelösten Versammlung eine Ersatzversammlung durchzuführen.

§ 24 Untersagung der Teilnahme oder Anwesenheit und Ausschluss von Personen

(1)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einer Person die Teilnahme an oder Anwesenheit in einer Versammlung in geschlossenen Räumen vor deren Beginn untersagen, wenn von ihr nach den zur Zeit des Erlasses der Verfügung erkennbaren Umständen bei Durchführung der Versammlung eine unmittelbare Gefahr im Sinn von § 23 Abs. 1 ausgeht.

(2) Wer durch sein Verhalten in der Versammlung eine unmittelbare Gefahr im Sinn von § 23 Abs. 1 verursacht, ohne dass die Versammlungsleitung dies unterbindet, kann von der zuständigen Behörde ausgeschlossen werden. Wer aus der Versammlung ausgeschlossen wird, hat sich unverzüglich zu entfernen.

§ 25 Kontrollstellen

(1) Bestehen tatsächliche Anhaltspunkte dafür, dass Waffen mitgeführt werden oder der Einsatz von Gegenständen im Sinn von § 8 Nr. 2 bei Durchführung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in geschlossenen Räumen Gefahren gemäß § 23 Abs. 1 verursacht, können auf den Anfahrtswegen zu der Versammlung Kontrollstellen errichtet werden, um Personen und Sachen zu durchsuchen. 2Die Durchführung der Durchsuchungen richtet sich nach dem Polizeirecht. 3Kontrollstellen sind so einzurichten, dass die Durchsuchungen zügig durchgeführt werden können.

(2) Identitätsfeststellungen sowie weitere polizei- und ordnung-

srechtliche oder strafprozessuale Maßnahmen sind nur zulässig, soweit sich an der Kontrollstelle tatsächliche Anhaltspunkte für einen bevorstehenden Verstoß gegen § 8 oder für die Begehung strafbarer Handlungen ergeben.

§ 26 Aufnahmen und Aufzeichnungen von Bild und Ton

(1)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 23 Abs. 1 darf die zuständige Behörde Bild- und Tonaufnahmen sowie entsprechende Aufzeichnungen von einer Person bei oder im Zusammenhang mit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in geschlossenen Räumen anfertigen, wenn die Maßnahmen erforderlich sind, um die Gefahr abzuwehren. Die Aufzeichnungen dürfen auch angefertigt werden, wenn andere Personen unvermeidbar betroffen werden. Aufnahmen und Aufzeichnungen sind offen vorzunehmen.

(2) Der von einer Aufzeichnung nach Absatz 1 Betroffene ist über die Maßnahme unverzüglich zu unterrichten, soweit seine Identität feststeht und zulässige Verwendungszwecke nicht gefährdet sind.

(3) Die Aufzeichnungen dürfen auch verwendet werden

1. zur Verfolgung von Straftaten in oder im Zusammenhang mit der Versammlung, von denen eine Gefahr im Sinn von § 23 Abs. 1 ausging,
2. zur Gefahrenabwehr, wenn von der betroffenen Person in oder im Zusammenhang mit der Versammlung eine Gefahr im Sinn von § 23 Abs. 1 ausging und zu besorgen ist, dass bei künftigen Versammlungen von dieser Person erneut Gefahren

im Sinn von § 23 Abs. 1 ausgehen werden.

(4) Die Aufzeichnungen sind nach Beendigung der Versammlung oder zeitlich und sachlich damit unmittelbar im Zusammenhang stehender Ereignisse unverzüglich zu vernichten. Dies gilt nicht, soweit sie für die in Absatz 3 aufgeführten Zwecke benötigt werden. Aufzeichnungen, die für die Zwecke des Absatzes 3 verwendet werden, sind ein Jahr nach ihrer Anfertigung zu vernichten, sofern sie nicht Gegenstand oder Beweismittel eines Rechtsbehelfs oder gerichtlichen Verfahrens sind.

(5) Die Gründe für die Anfertigung von Bild- und Tonaufzeichnungen nach Absatz 1 und für ihre Verwendung nach Absatz 3 sind zu dokumentieren.

IV. Straftaten, Ordnungswidrigkeiten, Einziehung, Kosten, Entschädigung und Schadensersatz

§ 27 Straftaten

(1) Wer in der Absicht, nicht verbotene Versammlungen zu verhindern oder sonst ihre Durchführung zu vereiteln, Gewalttätigkeiten vornimmt oder andro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2) Wer bei Versammlungen Waffen oder Gegenstände entgegen § 8 Nr. 2 mit sich führ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Ebenso wird bestraft, wer Waffen oder Gegenstände entgegen § 8 Nr. 2 auf dem Weg zu einer Versammlung oder im Anschluss an eine Versammlung mit sich führt, zu der

Versammlung hinschafft oder sie zur Verwendung bei ihr bereithält oder verteilt oder wer bewaffnete Ordnerinnen oder Ordner in öffentlichen Versammlungen einsetzt.

(3) Wer gegen die Leitung oder die Ordnerinnen oder Ordner einer Versammlung in der rechtmäßigen Ausübung von Ordnungsaufgaben Gewalt anwendet oder damit droht oder diese Personen während der rechtmäßigen Ausübung von Ordnungsaufgaben tätlich angreif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8 Ordnungswidrigkeiten

(1) Ordnungswidrig handelt, wer

1. eine öffentliche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ohne eine gemäß § 10 erforderliche Anzeige oder nach einer Anzeige durchführt, in der die Angaben gemäß § 10 Abs. 2 nicht oder in wesentlicher Hinsicht unrichtig enthalten sind,
2. der Aufforderung, Namen und Adressen der vorgesehenen Ordnerinnen und Ordner gemäß § 12 Abs. 2 Satz 1 mitzuteilen, nicht nachkommt oder von der zuständigen Behörde gemäß § 12 Abs. 2 Satz 2 abgelehnte Personen als Ordnerin oder Ordner einsetzt,
3. zur Teilnahme an einer Versammlung aufruft, deren Durchführung vollziehbar verboten oder deren Auflösung vollziehbar angeordnet ist,
4. wer trotz einer Anordnung, dies zu unterlassen, die Zufahrtswege zu einer Versammlung oder die für einen Aufzug vorgesehene

- Strecke blockiert oder die Versammlung auf andere Weise mit dem Ziel stört, deren Durchführung erheblich zu behindern oder zu vereiteln,
5. als veranstaltende oder leitende Person die öffentliche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wesentlich anders durchführt als in der Anzeige (§ 10) angegeben,
 6. unter den Voraussetzungen der § 13 Abs. 1 und 2, § 23 Abs. 1 und 2 erlassenen, vollziehbaren beschränkenden Verfügungen, Verboten oder Auflösungen zuwiderhandelt,
 7. gegen Anordnungen zur Durchsetzung des Vermummungs- und Schutzausrüstungsverbots (§ 17) oder des Militanzverbots (§ 18) verstößt,
 8. vollziehbaren beschränkenden Verfügungen oder Verboten gemäß § 19 zuwiderhandelt,
 9. ohne dass eine Anmeldung nach § 20 Abs. 2 erfolgt ist oder unter Verstoß gegen gemäß § 20 Abs. 3 und 5 ergangene vollziehbare beschränkende Verfügungen oder Verbote eine öffentliche Versammlung in einer Schutzzone nach § 20 Abs. 1 durchführt oder an ihr teilnimmt,
 10. einer im Verfahren des gerichtlichen Eilrechtsschutzes erfolgten Beschränkung der Ausübung des Versammlungsrechts zuwiderhandelt,
 11. ungeachtet einer gemäß § 14 Abs. 1, § 24 Abs. 1 ausgesprochenen Untersagung der Teilnahme an oder Anwesenheit in der Versammlung anwesend ist oder sich nach einem

gemäß § 14 Abs. 2, § 24 Abs. 2 angeordneten Ausschluss aus der Versammlung nicht unverzüglich entfernt,

12. sich trotz einer unter den Voraussetzungen der ~~mm~~¹³ 13, 23 erfolgten Auflösung einer Versammlung nicht unverzüglich entfernt.

(2) Die Ordnungswidrigkeit kann mit einer Geldbuße bis zu dreitausend Euro, in den Fällen der Nr. 1 und 4 bis zu eintausendfünfhundert Euro geahndet werden.

§ 29 Einziehung

Gegenstände, auf die sich eine Straftat nach § 27 oder eine Ordnungswidrigkeit nach § 28 bezieht, können eingezogen werden. 2§ 74a des Strafgesetzbuches und § 23 des Gesetzes über Ordnungswidrigkeiten sind anzuwenden.

§ 30 Kosten

Amtshandlungen nach diesem Gesetz sind kostenfrei.

§ 31 Entschädigung und Schadensersatz

Die allgemeinen Entschädigungsregelungen finden Anwendung. Weitergehende Ersatzansprüche, insbesondere aus Amtspflichtverletzung, bleiben unberührt.

V. Schlussbestimmungen

§ 32 Einschränkung von Grundrechten

Das Grundrecht auf Versammlungsfreiheit (Artikel 8 des Grundgesetzes) wird nach Maßgabe dieses Gesetzes eingeschränkt.

7. 니더작센 집회법

니더작센 집회법

2010년 10월 07일 제정

2011년 02월 01일 발효

제1장 총칙

제1조 원칙

- ① 누구든지 평화적으로 그리고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공개적으로 집회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기본법 제18조에 의해 집회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이 박탈된 자는 전항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2조 집회의 정의

이 법에서 의미하는 집회란 공동의, 공적인 의사형성에의 참여를 위한 토론이나 시위를 목적으로 하는 적어도 2인 이상의 어떤 장소에 고정 되거나 움직이는 회합을 말한다.

제3조 평화성 및 비무장성

① 집회에서 또는 그 외부로 폭력을 통하여 사람이나 물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② 무기 또는 그 성질상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적합하고 확실한 기타의 물건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1. 집회에 참가하러 가는 도중에 또는 집회에서 소지하는 것 또는
2. 집회장소로 운반하거나 또는 집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준비하거나 배포하는 것.

관할 관청은, 제1문에 따른 금지의 해제가 집회 참가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에 따라 이를 할 수 있다. 직무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는 제1문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③ 집회에서 제복, 제복의 일부 또는 기타의 착용을 통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협력하여 폭력지향의 인상을 전달하기에 적합하고 확실한 어떤 방식으로 등장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4조 질서문란행위 금지

금지되지 않은 집회의 질서 있는 거행을 방해할 의도로 질서문란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2장 옥외집회

제5조 신고

① 옥외집회를 거행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늦어도 그 집회의 공지 48시간 이전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기한의 계산 시 일요일, 법정 공휴일

및 토요일은 합산하지 아니 한다.

② 신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집회의 장소 및 움직이는 집회의 경우 그 예정된 진로,
2. 예정된 집회의 개시 및 종료,
3. 집회의 목적,
4. 주관자의 성명, 생일 및 주소(개인 정보) 그리고 전화 또는 기타 연락 방법 그리고
5. 예상되는 참가 인원수.

주관자는 제1문에 따라 신고된 상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관할 관청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관청은, 그것이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계획된 집회의 진행경과,
2. 집회를 거행하기 위하여 소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건, 특히 기술적 보조도구, 그리고
3. 질서유지인의 인원수 및 그들의 개인 정보.

주관자는 제1문에 따라 알려진 상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관할 관청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제1문에 거론된 기한은, 이를 준수하면 집회에 따른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긴급집회)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이러한 경우 그 집회는 지체 없이 신고 되어야 한다.

⑤ 집회의 공지가 집회의 개시와 동시에 있는 경우(우발적 집회) 신고의무는 면제된다.

제6조 협력

관할 관청은 옥외집회의 주관자에게 협력의 기회, 특히 집회의 거행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논의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 집회의 주관

① 제5조에 따라 신고 된 각각의 옥외집회에는 하나의 주관자가 있어야 한다. 주관자는 집회의 진행경과를 결정한다. 주관자는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특히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참가자에게 언동을 삼가도록 명할 수 있다. 주관자는 집회를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 주관자는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현존하여야 하고 관할 관청과 연락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 주관자는 그 임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질서유지인”이라고 적힌 백색 완장을 착용하여야 하는 질서유지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질서유지인은 제3조 제2항 제2문에 따른 해제를 받을 수 없다.

③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주관자 또는 질서유지인의 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8조 제한, 금지, 해산

① 관할 관청은 공공의 안전 또는 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관할 관청은 집회의 거행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되고 그 위험이 달리 방지될 수 없는 경우 집회를 금지하거나 해산할 수 있다. 금지된 집회는 해산되어야 한다. 해산 이후에는 모든 참가자들은 지체 없이 그 장소를 떠나야 한다.

③ 위험이 집회로부터 나오지 않아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거론된 조치가 허용된다.

1. 위험을 야기한 사람에 대한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적시에 불가능한 경우 또는 성공할 가망이 없는 경우 그리고
2. 관할 관청이 직접 또는 직무상 또는 집행상 원조를 통하여 보충되는 수단과 인력으로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없거나 적시에 방지할 수 없는 경우.

④ 집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다.

1. 무거운 상징효력에 의하여 나치의 폭력적이고 자의적인 통치를 상기하게 하는 의미내용을 지니고 있고 집회 거행의 방법을 통하여 공공의 평화가 희생자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되는 날짜나 장소에서 집회가 개최되는 경우, 또는
2. 집회를 통하여 나치의 폭력적이고 자의적인 통치가 승인, 찬양, 정당화되거나 그 해악이 과소평가 되고, 또한 나치즘을 이끌었던 대표자에 대한 추모를 통하여 그러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공공의 평화가 희생자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되는 경우.

제9조 호신장구 및 변장 금지

① 옥외집회에 참가하러 가는 도중에 또는 옥외집회에서 호신장구로 적합하고 경찰관의 집행조치를 저지하기에 확실한 물건을 소지하는 것은 금지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1. 집회에 사람의 신원 확인을 방해하기에 적합하고 확실한 변장을 하고 참가하거나, 집회에 그와 같은 변장을 하고 참가하러 가는 것 또는
 2. 집회에 참가하러 가는 도중에 또는 집회에서 사람의 신원 확인을 방해하기에 적합하고 확실한 물건을 소지하는 행위.
- ③ 관할 관청은, 그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질서가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를 해제한다.

제10조 특별 조치

- ① 관할 관청은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징구한 자료에 의거하여 관계인이 공공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지를 경찰 및 헌법보호기관에 문의하여 검증할 수 있다.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그 관청은 그 사람이 주관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질서유지인으로 임명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주관자가 거부된 경우 집회 신고자는 다른 사람을 주관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제1문에 따라 징구된 자료는 그것을 범죄행위 또는 질서위반행위 소추를 위하여 필요로 하지 않는 한 옥외집회 종료 후 지체 없이 파기되어야 한다.
- ② 관할 관청은 제3조 내지 제9조에 따른 금지의 실행 및 참가자에 의한 집회의 질서에 대한 현저한 문란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관할 관청은 특히 물건을 영치할 수 있다; 니더작센 주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관한 법률(Nds. SOG) 제27조 내지 제29조가 준용된다.
- ③ 관할 관청은 그것이 제3조 내지 제9조에 따른 금지의 실행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우 사람들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집회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관할 관청은, 집회의 질서가 달리 보장될 수 없는 경우 집회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참가자들을 집회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배제된 사람들은 지체 없이 집회를 떠나야 한다.

제11조 경찰의 참석

경찰은 이 법에 따른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옥외집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1문에 따라 참석하는 경찰관은 주관자에게 그 신분을 밝혀야 한다.

제12조 영상·음향 전송 및 자료화

① 경찰은, 어떤 특정인으로부터 야기된 공공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방지하지 위하여 옥외집회에 참가하려 가는 길에 또는 옥외집회에서 공개적으로 그 특정인에 대한 영상·음향 자료화를 할 수 있다. 그 조치는 다른 사람이 불가피하게 관계되는 경우에도 또한 시행될 수 있다.

② 경찰은, 그것이 집회에서 나오는 공공의 안전 또는 질서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음향 전송을 수단으로 하여 조망할 수 없는 집회와 그 주변을 공개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경찰은 공공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불특정 참가자들에 대한 영상·음향 자료화(조망영상 자료화)를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망영상 자료의 해독은 제1항에 따른 전제조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상·음향 자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집회 종료 후 지체 없이, 그렇지 않으면 늦어도 2월이 경과하기 까지 파기되거나 되돌릴 수 없게 익명화되어야 한다.

1. 범죄행위의 소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2. 입증곤란을 제거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경우.

제1문 제2호의 경우에 그 자료는 그 밖의 사용이 차단되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제2문에 따른 영상·음향 자료의 제작 그리고 제2항 제3문 및 제3항에 따른 그 사용은 개개의 경우 그 기초가 되는 목적이 문서화되어야 한다.

제3장 옥내집회

제13조 집회의 주관

- ① 옥내집회의 초청자는 그 주관자이다. 초청자 또는 그 집회는 다른 사람을 주관자로 정할 수 있다.
- ② 특정된 인물 또는 인적 범위는 초청 시에 집회 참가에서 배제될 수 있다.
- ③ 오로지 특정인만 초청되는 것이 아닌 경우, 언론사 기자들은 집회への 출입이 거부될 수 없다. 그들은 집회의 주관자 및 질서유지인에게 그 요청에 따라 기자로서의 신분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④ 주관자는 제3조 제2항에 위반하는 무기 또는 기타의 물건을 소지한 사람들의 출입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주관자는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참가자 및 기자들을 집회에서 배제할 수 있다. 주관자는 제3조 제2항에 위반하는 무기 또는 기타의 물건을 소지한 사람들을 배제할 수 있다. 배제된 사람들은 지체 없이 집회를 떠나야 한다.
- ⑥ 주관자에 대하여 그 외에 제7조가 준용된다.

제14조 제한, 금지, 해산

- ① 관할 관청은 집회의 평화성이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되는 경우 옥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관할 관청은 집회의 평화성이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되고 그 위험이 달리 방지될 수 없는 경우 집회를 금지하거나 해산할 수 있다. 금지된 집회는 해산되어야 한다. 해산 이후에는 모든 참가자들은 지체 없이 그 장소를 떠나야 한다.

③ 위험이 집회로부터 나오지 않아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거론된 조치가 허용된다.

1. 위험을 야기한 사람에 대한 조치가 불가능하거나 적시에 불가능한 경우 또는 성공할 가망이 없는 경우 그리고
2. 관할 관청이 직접 또는 직무상 또는 집행상 원조를 통하여 보충되는 수단과 인력으로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없거나 적시에 방지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 제1문에 따른 조치는 그 이유를 대어야 한다.

제15조 특별 조치

① 관할 관청은, 그것이 옥내집회의 평화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초청자에게 주관자의 개인 정보를 그리고
2. 주관자에게 질서유지인의 개인 정보를

주관자는 제1문에 따라 알려진 상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관할 관청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 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징구한 자료에 의거하여 관계인이 집회의 평화성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지를 경찰 및 헌법보호기관에 문의하여 검증할 수 있다.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그 관청은 그 사람을 주관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주관자가 거부된 경우 초청자는 다른 사람을 주관자로 지명하여야 한다. 제1문에 따라 징구된 자료는 그것을 범죄행위 또는 질서위반행위 소추를 위하여 필요로 하지 않는 한 집회 종료 후 지체 없이 파기되어야 한다.

③ 관할 관청은 제3조에 따른 금지의 실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집회 개시 전에 할 수 있다. 관할 관청은 특히 물건을 영치할 수 있다; 니더작센 주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관한 법률(Nds. SOG) 제27조 내지 제29조가 준용된다. 관할 관청은, 집회의 평화성 보장이 달리 가능하지 않은 경우 사람들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제16조 경찰의 참석

경찰은, 그것이 집회의 평화성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옥내집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제1문에 따라 참석하는 경찰관은 주관자에게 그 신분을 밝혀야 한다.

제17조 영상·음향 전송 및 자료화

① 경찰은, 어떤 특정인으로부터 야기된 집회의 평화성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옥내집회에서 공개적으로 그 특정인에 대한 영상·음향 자료화를 할 수 있다. 그 조치는 다른 사람이 불가피하게 관계되는 경우에도 또한 시행될 수 있다.

② 경찰은, 그것이 집회의 평화성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음향 전송을 수단으로 하여 조망할 수 없는 집회를 공개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경찰은 집회의 평화성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불특정 참가자들에 대한 영상·음향 자료화(조망영상 자료화)를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망영상 자료의

해독은 제1항에 따른 전제조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상·음향 자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집회 종료 후 지체 없이, 그렇지 않으면 늦어도 2월이 경과하기까지 파기되거나 되돌릴 수 없게 익명화되어야 한다.

1. 범죄행위의 소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2. 입증곤란을 제거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경우

제1문 제2호의 경우에 그 자료는 그 밖의 사용이 차단되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제2문에 따른 영상·음향 자료의 제작 그리고 제2항 제3문 및 제3항에 따른 그 사용은 개개의 경우 그 기초가 되는 목적이 문서화되어야 한다.

제4장 주 의회를 위한 평화구역

제18조 주 의회를 위한 평화구역에서의 집회 금지

- ① 주 의회를 위하여 평화구역을 설정한다. 평화구역 내에서는 제19조에 따라 허가되지 않은 옥외집회가 금지된다.
- ② (평화구역 범위 규정 번역 생략). 평화구역의 정확한 경계는 첨부에 나타낸다.

제19조 집회의 허가

- ① 평화구역 내에서 옥외집회는, 그로 인하여 주 의회, 그 교섭단체, 그 원로회의, 그 의장단과 그 위원회의 활동 및 주 의회 부지로의 자유로운 출입이 위태롭게 되지 않는 경우, 신청에 의해 허가될 수 있다. 그러한 위험은 통상 주 의회의 개회 일에 주어진다. 그 위험은 통상, 집회 날짜에 주 의회의 회의나 제1문에서 거명된 것들이 개최되지 않는 경우 주어지지

아니 한다. 허가는 제1문에서 거론된 허가 요건이 실현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부담과 결부될 수 있다.

② 허가 신청은 제5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동시에 제출되어야 한다. 관할 관청은 주 의회 의장과 합의하여 허가에 대하여 결정을 한다.

③ 이 법의 다른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5장 형벌 및 범칙금 규정

제20조 형벌 규정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제3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그곳에 묘사된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거나, 집회장소로 운반하거나 그러한 집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하거나 배포한 자로서 그 행위가 무기법 제52조 제3항 제9호에 따라 처벌될 위험이 없는 경우, 또는
2. 금지되지 않은 집회를 좌절시킬 의도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또는 집회 질서의 현저한 문란을 야기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제3조 제2항에 위반하여 무기 또는 그곳에 묘사된 기타의 물건을 소지한 질서유지인의 조력을 받은 주관자,
2. 공연히, 집회에서 또는 문서배포, 음향 또는 영상매체, 정보저장 장치, 삽화 또는 기타의 표현물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에 참가할 것을 호소한 자,
 - a. 그 거행이 집행 가능하게 금지되거나 그 해산이 집행 가능하게

명하여진 집회(제8조 제2항 및 제4항, 제14조 제2항) 또는

- b. 제18조 제1항 제2문에 의해 금지된 집회,
- 3. 집행 가능한 금지 또는 집행 가능한 해산(제8조 제2항 및 제4항, 제14조 제2항)에 위반하여 집회를 거행한 주관자,
- 4. 제9조 제1항에 위반하여 옥외집회에 참가하러 가는 도중에 또는 옥외집회에서 그 항에 묘사된 물건을 소지하고 그로 인하여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집행 가능한 조치에 위반한 자,
- 5. 제9조 제2항 제1호에 위반하여 그 호에 묘사된 변장을 하고 옥외 집회에 참가하거나 그와 같은 변장을 하고 참가하러 가고 그로 인하여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집행 가능한 조치에 위반한 자 또는
- 6. 옥외집회에 이어서 다른 사람들과 작당을 하는 한편, 제3조 제2항 또는 제9조 제1항에 묘사된 물건을 소지하거나 제9조 제2항 제1호에 묘사된 방법으로 변장을 한 자.

제1문 제2호 a목 및 제3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행위는 그곳에 적시된 명령이 정당한 경우에만 처벌된다.

제21조 범칙금 규정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질서위반으로 취급된다.

- 1. 제3조 제3항에 위반하여 집회에서 그 항에 묘사된 방법으로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집행 가능한 조치에 위반한 자,
- 2. 주관자 또는 질서유지인의 거듭된 제지에도 불구하고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계속한 참가자,
- 3. 참가자가 아닌 자로서 집행 가능한 경찰의 명령에 위반하여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계속한 자,

4. 제5조에 위반하여 기한에 맞는 신고가 전혀 되지 않은 옥외집회를 거행한 자,
5. 잘못된 줄 알면서 제5조 제2항 제1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게 신고를 한 신고자,
6. 잘못된 줄 알면서 제5조 제3항 제1문 제2호 또는 제3호 또는 제15조 제1항 제1문 제2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게 알려준 주관자,
7. 제5조 제2항 제1문 제1호 및 제2호에 근거한 신고 시에 신고한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옥외집회를 거행한 주관자
8. 제7조 제2항 제1문에 위반하여 그곳에 묘사된 완장을 착용하기 않은 질서유지인의 조력을 받은 주관자,
9.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집회에 참가한자,
 - a. 그 거행이 집행 가능하게 금지된 집회(제8조 제2항 및 제4항, 제14조 제2항) 또는
 - b. 제18조 제1항 제2문에 따라 금지된 집회,
10. 제8조 제1항 또는 제4항 또는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집행 가능한 제한 또는 법원의 집회 제한에 위반한 주관자 또는 참가자,
11. 집행 가능한 해산 명령 이후에 지체 없이 그 장소를 떠나지 아니한 자,
12. 지체 없이 집회를 떠나지 않은 집회 배제자,
13. 집행 가능하게 거부된(제10조 제1항 제2문, 제15조 제2항 제2문) 주관자를 임명한 신고자 또는 초청자,
14. 집행 가능하게 거부된(제10조 제1항 제2문, 제15조 제2항 제2문) 질서유지인을 임명한 주관자,
15. 제9조 제2항 제2호에 위반하여 옥외집회에 참가하러 가는 도중에

또는 옥외집회에서 그 호에 묘사된 물건을 소지하고 그로 인하여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집행 가능한 조치에 위반한 자,

16. 잘못된 줄 알면서 제15조 제1항 제1문 제1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하게 알려준 초청자 또는

17. 제19조 제1항 제4문에 따른 부담에 위반한 주관자 또는 참가자.

제1문 제1호, 제3호 및 제9호 a목 그리고 제10호 내지 제15호 및 제17호의 사안은 그곳에 적시된 명령이 정당한 경우에만 범칙금에 처할 수 있다.

② 제1항 제1문 제2호, 제3호, 제5호 내지 제8호, 제11호, 제12호, 제15호 및 제16호에 해당하는 질서위반행위는 1,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그리고 제1항 제1문 제1호, 제4호, 제9호, 제10호, 제13호, 제14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질서위반행위는 3,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각 처할 수 있다.

제22조 몰수

제20조 소정의 범죄행위 또는 제21조 제1항 제1문 제10호 또는 제15호 소정의 질서위반행위에 관계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형법 제74a조와 질서위반행위법 제23조가 적용된다.

제6장 종결규정

제23조 기본권의 제한

집회의 자유(기본법 제8조 제1항)에 관한 기본권은 이 법에 따라서 제한된다.

제24조 관할

① 관할 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회 개시 전에는 하급 행정관청 그리고
2. 집회 개시 후에는 경찰

하급 행정관청의 직무는 기초자치단체, 독립시, 대자치시 및 자치구에서 담당하고, 주도 하노버는 하노버 경찰청이 담당한다. 제21조에 따른 질서 위반의 소추는 하급 행정관청이 관할한다.

② 그 구역 내에서 집회가 개최되는 관청은 토지 관할권을 가진다. 옥외 집회가 여러 하급 행정관청의 관할 범위에 관계되는 경우, 관계된 기관에 공통된 법적 감독기관이 관할 관청을 결정한다.

③ 감독 직무는 자치구에 대하여는 기초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독립시 및 대자치시에 대하여는 경찰청이 상급행정관청으로서 그리고 내무부는 최상급행정관청으로서 담당한다. 니더작센 주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관한 법률(Nds. SOG) 제102조가 준용된다.

제25조 비용 면제

이 법에 따른 직무행위는 무료이다.

첨부 (생략)

Niedersächsisches Versammlungsgesetz (NVersG)

Vom 7. Oktober 2010 *)

Stand: letzte berücksichtigte Änderung: Berichtigung Nds. GVBl.
2010 S. 532

Fußnoten

* Verkündet als Artikel 1 des Gesetzes zur Neuregelung des
Versammlungsrechts vom 7. Oktober 2010 (Nds. GVBl. S. 465)

Inhaltsübersicht

Erster Teil Allgemeine Bestimmungen

- § 1 Grundsatz
- § 2 Versammlungsbegriff
- § 3 Friedlichkeit und Waffenlosigkeit
- § 4 Störungsverbot

Zweiter Teil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 § 5 Anzeige
- § 6 Zusammenarbeit
- § 7 Versammlungsleitung

§ 8 Beschränkung, Verbot, Auflösung

§ 9 Schutzausrüstungs- und Vermummungsverbot

§ 10 Besondere Maßnahmen

§ 11 Anwesenheitsrecht der Polizei

§ 12 Bild- und Tonübertragungen und -aufzeichnungen

Dritter Teil Versammlungen in geschlossenen Räumen

§ 13 Versammlungsleitung

§ 14 Beschränkung, Verbot, Auflösung

§ 15 Besondere Maßnahmen

§ 16 Anwesenheitsrecht der Polizei

§ 17 Bild- und Tonübertragungen und -aufzeichnungen

Vierter Teil Befriedeter Bezirk für den Landtag

§ 18 Verbot von Versammlungen im befriedeten Bezirk für den
Landtag

§ 19 Zulassung von Versammlungen

Fünfter Teil Straf- und Bußgeldvorschriften

§ 20 Strafvorschriften

§ 21 Bußgeldvorschriften

§ 22 Einziehung

Sechster Teil Schlussbestimmungen

§ 23 Einschränkung eines Grundrechts

§ 24 Zuständigkeiten

§ 25 Kostenfreiheit

Erster Teil Allgemeine Bestimmungen

§ 1 Grundsatz

- (1) Jedermann hat das Recht, sich friedlich und ohne Waffen mit anderen Personen zu versammeln.
- (2) Dieses Recht hat nicht, wer das Grundrecht auf Versammlungsfreiheit gemäß Artikel 18 des Grundgesetzes verwirkt hat.

§ 2 Versammlungsbegriff

Eine Versammlung im Sinne dieses Gesetzes ist eine ortsfeste oder sich fortbewegende Zusammenkunft von mindestens zwei Personen zur gemeinschaftlichen, auf die Teilhabe an der öffentlichen Meinungsbildung gerichteten Erörterung oder Kundgebung.

§ 3 Friedlichkeit und Waffenlosigkeit

- (1) Es ist verboten, in einer Versammlung oder aus einer Versammlung heraus durch Gewalttätigkeiten auf Personen oder Sachen einzuwirken.
- (2) Es ist verboten, Waffen oder sonstige Gegenstände, die zur Verletzung von Personen oder zur Beschädigung von Sachen geeignet und bestimmt sind,
 1. auf dem Weg zu oder in einer Versammlung mit sich zu führen oder
 2. zu einer Versammlung hinzuschaffen oder in einer Versammlung zur Verwendung bereitzuhalten oder zu verteilen.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auf Antrag eine Befreiung vom Verbot nach Satz 1 erteilen, wenn dies zum Schutz einer an der Versammlung teilnehmenden Person erforderlich ist. Auf Polizeibeamtinnen und Polizeibeamte im Dienst findet Satz 1 keine Anwendung.

(3) Es ist verboten, in einer Versammlung durch das Tragen von Uniformen oder Uniformteilen oder sonst in einer Art und Weise aufzutreten, die dazu geeignet und bestimmt ist, im Zusammenwirken mit anderen teilnehmenden Personen den Eindruck von Gewaltbereitschaft zu vermitteln.

§ 4 Störungsverbot

Es ist verboten, eine nicht verbotene Versammlung mit dem Ziel zu stören, deren ordnungsgemäße Durchführung zu verhindern.

Zweiter Teil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 5 Anzeige

(1) Wer eine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durchführen will, hat dies der zuständigen Behörde spätestens 48 Stunden vor der Bekanntgabe der Versammlung anzuzeigen. Bei der Berechnung der Frist werden Sonntage, gesetzliche Feiertage und Sonnabende nicht mitgerechnet.

(2) In der Anzeige sind anzugeben

1. der Ort der Versammlung einschließlich des geplanten Streckenverlaufs bei sich fortbewegenden Versammlungen,

2. der beabsichtigte Beginn und das beabsichtigte Ende der Versammlung,
3. der Gegenstand der Versammlung,
4. Name, Vornamen, Geburtsname, Geburtsdatum und Anschrift (persönliche Daten) der Leiterin oder des Leiters sowie deren oder dessen telefonische oder sonstige Erreichbarkeit und
5. die erwartete Anzahl der teilnehmenden Personen.

Die Leiterin oder der Leiter hat der zuständigen Behörde Änderungen der nach Satz 1 anzugebenden Umstände unverzüglich mitzuteilen.

(3)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von der Leiterin oder dem Leiter die Angabe

1. des geplanten Ablaufs der Versammlung,
2. der zur Durchführung der Versammlung voraussichtlich mitgeführten Gegenstände, insbesondere technischen Hilfsmittel, und
3. der Anzahl und der persönlichen Daten von Ordnerinnen und Ordnern

verlangen, soweit dies zur Abwehr einer Gefahr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erforderlich ist. Die Leiterin oder der Leiter hat der zuständigen Behörde Änderungen der nach Satz 1 anzugebenden Umstände unverzüglich mitzuteilen.

(4) Die in Absatz 1 Satz 1 genannte Frist gilt nicht, wenn bei ihrer Einhaltung der mit der Versammlung verfolgte Zweck nicht erreicht werden kann (Eilversammlung). In diesem Fall ist die Versammlung unverzüglich anzuzeigen.

(5) Fällt die Bekanntgabe der Versammlung mit deren Beginn zusammen (Spontanversammlung), so entfällt die Anzeigepflicht.

§ 6 Zusammenarbeit

Die zuständige Behörde gibt der Leiterin oder dem Leiter einer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die Gelegenheit zur Zusammenarbeit, insbesondere zur Erörterung von Einzelheiten der Durchführung der Versammlung.

§ 7 Versammlungsleitung

(1) Jede nach § 5 anzuzeigende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muss eine Leiterin oder einen Leiter haben. Die Leiterin oder der Leiter bestimmt den Ablauf der Versammlung. Sie oder er hat während der Versammlung für Ordnung zu sorgen und kann dazu insbesondere teilnehmende Personen, die die Versammlung stören, zur Ordnung rufen. Sie oder er kann die Versammlung jederzeit beenden. Sie oder er muss während der Versammlung anwesend und für die zuständige Behörde erreichbar sein.

(2) Die Leiterin oder der Leiter kann sich zur Erfüllung ihrer oder seiner Aufgaben der Hilfe von Ordnerinnen und Ordnern bedienen, die weiße Armbinden mit der Aufschrift “Ordnerin” oder “Ordner” tragen müssen. Ordnerinnen und Ordnern darf keine Befreiung nach § 3 Abs. 2 Satz 2 erteilt werden.

(3) Personen, die an der Versammlung teilnehmen, haben die zur Aufrechterhaltung der Ordnung getroffenen Anweisungen der Leiterin

oder des Leiters oder einer Ordnerin oder eines Ordners zu befolgen.

§ 8 Beschränkung, Verbot, Auflösung

(1)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eine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beschränken, um eine unmittelbare Gefahr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oder Ordnung abzuwehren.

(2)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eine Versammlung verbieten oder auflösen, wenn ihre Durchführung die öffentliche Sicherheit unmittelbar gefährdet und die Gefahr nicht anders abgewehrt werden kann. Eine verbotene Versammlung ist aufzulösen. Nach der Auflösung haben sich die teilnehmenden Personen unverzüglich zu entfernen.

(3) Geht die Gefahr nicht von der Versammlung aus, so sind die in den Absätzen 1 und 2 genannten Maßnahmen nur zulässig, wenn

1. Maßnahmen gegen die die Gefahr verursachenden Personen nicht oder nicht rechtzeitig möglich sind oder keinen Erfolg versprechen und
2. die zuständige Behörde die Gefahr nicht oder nicht rechtzeitig selbst oder mit durch Amts- und Vollzugshilfe ergänzten Mitteln und Kräften abwehren kann.

(4) Eine Versammlung kann auch beschränkt oder verboten werden, wenn

1. sie an einem Tag oder Ort stattfinden soll, dem ein an die nationalsozialistische Gewalt- und Willkürherrschaft erinnernder Sinngehalt mit gewichtiger Symbolkraft zukommt und durch

die Art und Weise der Durchführung der Versammlung der öffentliche Friede in einer die Würde der Opfer verletzenden Weise unmittelbar gefährdet wird, oder

2. durch die Versammlung die nationalsozialistische Gewalt- und Willkürherrschaft gebilligt, verherrlicht, gerechtfertigt oder verharmlost wird, auch durch das Gedenken an führende Repräsentanten des Nationalsozialismus, und dadurch der öffentliche Friede in einer die Würde der Opfer verletzenden Weise unmittelbar gefährdet wird.

§ 9 Schutzausrüstungs- und Vermummungsverbot

(1) Es ist verboten, auf dem Weg zu oder in einer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Gegenstände mit sich zu führen, die als Schutzausrüstung geeignet und dazu bestimmt sind, Vollstreckungsmaßnahmen von Polizeibeamtinnen und Polizeibeamten abzuwehren.

(2) Es ist auch verboten,

1. an einer Versammlung in einer Aufmachung teilzunehmen, die zur Verhinderung der Feststellung der Identität geeignet und bestimmt ist, oder den Weg zu einer Versammlung in einer solchen Aufmachung zurückzulegen oder
2. auf dem Weg zu oder in einer Versammlung Gegenstände mit sich zu führen, die zur Verhinderung der Feststellung der Identität geeignet und bestimmt sind.

(3) Die zuständige Behörde befreit von den Verboten nach den Absätzen 1 und 2, wenn dadurch die öffentliche Sicherheit oder Ordnung

nicht unmittelbar gefährdet wird.

§ 10 Besondere Maßnahmen

(1)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anhand der nach § 5 Abs. 2 und 3 erhobenen Daten durch Anfragen an Polizei- und Verfassungsschutzbehörden prüfen, ob die betroffene Person die öffentliche Sicherheit unmittelbar gefährdet. Besteht diese Gefahr, kann die Behörde die Person als Leiterin oder Leiter ablehnen oder ihren Einsatz als Ordnerin oder Ordner untersagen. Im Fall der Ablehnung muss die anzeigende Person eine andere Person als Leiterin oder Leiter benennen. Die nach Satz 1 erhobenen Daten sind unverzüglich nach Beendigung der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zu löschen, soweit sie nicht zur Verfolgung einer Straftat oder Ordnungswidrigkeit benötigt werden.

(2) 1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die Maßnahmen treffen, die zur Durchsetzung der Verbote nach den §§ 3 und 9 sowie zur Abwehr erheblicher Störungen der Ordnung der Versammlung durch teilnehmende Personen erforderlich sind. 2 Sie kann insbesondere Gegenstände sicherstellen; die §§ 27 bis 29 des Niedersächsischen Gesetzes übe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und Ordnung (Nds. SOG) gelten entsprechend.

(3)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Personen die Teilnahme an einer Versammlung untersagen oder diese von der Versammlung ausschließen, wenn dies zur Durchsetzung der Verbote nach den §§ 3 und 9 unerlässlich ist. Sie kann teilnehmende Personen, die die

Ordnung der Versammlung erheblich stören, von der Versammlung ausschließen, wenn die Ordnung der Versammlung nicht anders gewährleistet werden kann. Ausgeschlossene Personen haben die Versammlung unverzüglich zu verlassen.

§ 11 Anwesenheitsrecht der Polizei

Die Polizei kann bei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anwesend sein, wenn dies zur Erfüllung ihrer Aufgaben nach diesem Gesetz erforderlich ist. Nach Satz 1 anwesende Polizeibeamtinnen und Polizeibeamte haben sich der Leiterin oder dem Leiter zu erkennen zu geben.

§ 12 Bild- und Tonübertragungen und -aufzeichnungen

(1) Die Polizei kann Bild- und Tonaufzeichnungen von einer bestimmten Person auf dem Weg zu oder in einer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offen anfertigen, um eine von dieser Person verursachte erhebliche Gefahr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abzuwehren. Die Maßnahme darf auch durchgeführt werden, wenn andere Personen unvermeidbar betroffen werden.

(2) Die Polizei kann eine unübersichtliche Versammlung und ihr Umfeld mittels Bild- und Tonübertragungen offen beobachten, wenn dies zur Abwehr einer von der Versammlung ausgehenden Gefahr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oder Ordnung erforderlich ist. Sie kann zur Abwehr erheblicher Gefahren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offen Bild- und Tonaufzeichnungen von nicht bestimmten teilnehmenden

Personen (Übersichtsaufzeichnungen) anfertigen. Die Auswertung von Übersichtsaufzeichnungen mit dem Ziel der Identifizierung einer Person ist nur zulässig, wenn die Voraussetzungen nach Absatz 1 vorliegen.

(3) Die Bild- und Tonaufzeichnungen nach den Absätzen 1 und 2 sind nach Beendigung der Versammlung unverzüglich, spätestens aber nach zwei Monaten zu löschen oder unumkehrbar zu anonymisieren, soweit sie nicht

1. zur Verfolgung von Straftaten benötigt werden oder
2. zur Behebung einer Beweisnot unerlässlich sind.

In den Fällen des Satzes 1 Nr. 2 sind die Daten für eine sonstige Verwendung zu sperren.

(4) Die der Anfertigung von Bild- und Tonaufzeichnungen nach den Absätzen 1 und 2 Satz 2 sowie der Verwendung nach Absatz 2 Satz 3 und Absatz 3 im Einzelfall zugrunde liegenden Zwecke sind zu dokumentieren.

Dritter Teil Versammlungen in geschlossenen Räumen

§ 13 Versammlungsleitung

(1) Wer zu einer Versammlung in geschlossenen Räumen einlädt, ist deren Leiterin oder Leiter. Die oder der Einladende oder die Versammlung kann eine andere Person zur Leiterin oder zum Leiter bestimmen.

(2) In der Einladung kann die Teilnahme an der Versammlung auf bestimmte Personen oder Personenkreise beschränkt werden.

(3) Wenn nicht ausschließlich bestimmte Personen eingeladen worden sind, darf Pressevertreterinnen und Pressevertretern der Zutritt zur Versammlung nicht versagt werden. Diese haben sich gegenüber der Leiterin oder dem Leiter und gegenüber Ordnerinnen oder Ordnern nach Aufforderung als Pressevertreterin oder Pressevertreter auszuweisen.

(4) Die Leiterin oder der Leiter darf Personen, die entgegen § 3 Abs. 2 Waffen oder sonstige Gegenstände mit sich führen, keinen Zutritt gewähren.

(5) Die Leiterin oder der Leiter kann teilnehmende Personen sowie Pressevertreterinnen und Pressevertreter von der Versammlung ausschließen, wenn sie die Ordnung erheblich stören. Sie oder er hat Personen auszuschließen, die entgegen § 3 Abs. 2 Waffen oder sonstige Gegenstände mit sich führen. Ausgeschlossene Personen haben die Versammlung unverzüglich zu verlassen.

(6) Im Übrigen gilt für die Leiterin oder den Leiter § 7 entsprechend.

§ 14 Beschränkung, Verbot, Auflösung

(1)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eine Versammlung in geschlossenen Räumen beschränken, wenn ihre Friedlichkeit unmittelbar gefährdet ist.

(2)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eine Versammlung verbieten oder auflösen, wenn ihre Friedlichkeit unmittelbar gefährdet ist und die Gefahr nicht anders abgewehrt werden kann. Eine verbotene Versammlung ist aufzulösen. Nach der Auflösung haben sich die teilnehmenden Personen unverzüglich zu entfernen.

(3) Geht die Gefahr nicht von der Versammlung aus, so sind die in den Absätzen 1 und 2 genannten Maßnahmen nur zulässig, wenn

1. Maßnahmen gegen die die Gefahr verursachenden Personen nicht oder nicht rechtzeitig möglich sind oder keinen Erfolg versprechen und
2. die zuständige Behörde die Gefahr nicht oder nicht rechtzeitig selbst oder mit durch Amts- und Vollzugshilfe ergänzten Mitteln und Kräften abwehren kann.

(4) Maßnahmen nach den Absätzen 1 und 2 Satz 1 sind zu begründen.

§ 15 Besondere Maßnahmen

(1)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1. von der oder dem Einladenden die Angabe der persönlichen Daten der Leiterin oder des Leiters und
2. von der Leiterin oder dem Leiter die Angabe der persönlichen Daten von Ordnerinnen und Ordnern

verlangen, soweit dies zur Gewährleistung der Friedlichkeit der Versammlung in geschlossenen Räumen erforderlich ist. Die Leiterin oder der Leiter hat der zuständigen Behörde Änderungen der nach Satz 1 anzugebenden Umstände unverzüglich mitzuteilen.

(2)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anhand der nach Absatz 1 erhobenen Daten durch Anfragen an Polizei- und Verfassungsschutzbehörden prüfen, ob die betroffene Person die Friedlichkeit der Versammlung

unmittelbar gefährdet. Besteht diese Gefahr, kann die Behörde die Person als Leiterin oder Leiter ablehnen oder ihren Einsatz als Ordnerin oder Ordner untersagen. Im Fall der Ablehnung muss die oder der Einladende eine andere Person als Leiterin oder Leiter benennen. Die nach Satz 1 erhobenen Daten sind unverzüglich nach Beendigung der Versammlung zu löschen, soweit sie nicht zur Verfolgung einer Straftat oder Ordnungswidrigkeit benötigt werden.

(3)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vor Versammlungsbeginn die Maßnahmen treffen, die zur Durchsetzung der Verbote nach § 3 erforderlich sind. Sie kann insbesondere Gegenstände sicherstellen; die §§ 27 bis 29 Nds. SOG gelten entsprechend.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Personen die Teilnahme an einer Versammlung untersagen, wenn die Gewährleistung der Friedlichkeit der Versammlung nicht anders möglich ist.

§ 16 Anwesenheitsrecht der Polizei

Die Polizei kann bei Versammlungen in geschlossenen Räumen anwesend sein, wenn dies zur Abwehr einer unmittelbaren Gefahr für die Friedlichkeit der Versammlung erforderlich ist. Nach Satz 1 anwesende Polizeibeamtinnen und Polizeibeamte haben sich der Leiterin oder dem Leiter zu erkennen zu geben.

§ 17 Bild- und Tonübertragungen und -aufzeichnungen

(1) Die Polizei kann Bild- und Tonaufzeichnungen von einer bestimmten Person in einer Versammlung in geschlossenen Räumen

offen anfertigen, um eine von dieser Person verursachte unmittelbare Gefahr für die Friedlichkeit der Versammlung abzuwehren. Die Maßnahme darf auch durchgeführt werden, wenn andere Personen unvermeidbar betroffen werden.

(2) Die Polizei kann eine unübersichtliche Versammlung mittels Bild- und Tonübertragungen offen beobachten, wenn dies zur Abwehr einer Gefahr für die Friedlichkeit der Versammlung erforderlich ist. Sie kann zur Abwehr einer unmittelbaren Gefahr für die Friedlichkeit der Versammlung offen Bild- und Tonaufzeichnungen von nicht bestimmten teilnehmenden Personen (Übersichtsaufzeichnungen) anfertigen. Die Auswertung von Übersichtsaufzeichnungen mit dem Ziel der Identifizierung einer Person ist nur zulässig, wenn die Voraussetzungen nach Absatz 1 vorliegen.

(3) Die Bild- und Tonaufzeichnungen nach den Absätzen 1 und 2 sind nach Beendigung der Versammlung unverzüglich, spätestens aber nach zwei Monaten zu löschen oder unumkehrbar zu anonymisieren, soweit sie nicht

1. zur Verfolgung von Straftaten benötigt werden oder
2. zur Behebung einer Beweisnot unerlässlich sind.

In den Fällen des Satzes 1 Nr. 2 sind die Daten für eine sonstige Verwendung zu sperren.

(4) Die der Anfertigung von Bild- und Tonaufzeichnungen nach den Absätzen 1 und 2 Satz 2 sowie der Verwendung nach Absatz 2 Satz 3 und Absatz 3 im Einzelfall zugrunde liegenden Zwecke sind zu dokumentieren.

Vierter Teil **Befriedeter Bezirk für den Landtag**

§ 18 Verbot von Versammlungen im befriedeten Bezirk für den Landtag

(1) Für den Landtag wird ein befriedeter Bezirk gebildet. Im befriedeten Bezirk sind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die nicht nach § 19 zugelassen sind, verboten.

(2) Der befriedete Bezirk umfasst im Gebiet der Landeshauptstadt Hannover außer den Freiflächen auf dem Landtagsgrundstück die Schloßstraße, die Leinstraße, den Hinrich-Wilhelm-Kopf-Platz, den Bohlendamm einschließlich des östlich angrenzenden Arkadenganges, den Platz der Göttinger Sieben und die südlich angrenzende Wehranlage bis zum Fahrbahnrand der Karmarschstraße und die südwestlich der Leine zwischen Schloßstraße und Karmarschstraße gelegenen Grünflächen bis zum Fahrbahnrand des Leibnizufers und des Friederikenplatzes. Die genaue Abgrenzung des befriedeten Bezirkes ergibt sich aus der Anlage.

§ 19 Zulassung von Versammlungen

(1) Im befriedeten Bezirk ist eine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auf Antrag zuzulassen, wenn dadurch die Tätigkeit des Landtages, seiner Fraktionen, seines Ältestenrats, seines Präsidiums, seiner Ausschüsse und seiner Kommissionen sowie der freie Zugang zu dem Landtagsgrundstück nicht gefährdet werden. Eine solche Gefahr ist in der Regel an den Sitzungstagen des Landtages gegeben. Sie ist in der Regel nicht gegeben, wenn am Tag der Versammlung eine

Sitzung des Landtages oder seiner in Satz 1 genannten Stellen nicht stattfindet. Die Zulassung kann mit Auflagen verbunden werden, die sicherstellen sollen, dass die in Satz 1 genannten Zulassungsvoraussetzungen erfüllt werden.

(2) Der Antrag auf Zulassung soll gleichzeitig mit der Anzeige nach § 5 gestellt werden. Die zuständige Behörde entscheidet über die Zulassung im Einvernehmen mit der Präsidentin oder dem Präsidenten des Landtages.

(3) Die übrigen Vorschriften dieses Gesetzes bleiben unberührt.

Fünfter Teil **Straf- und Bußgeldvorschriften**

§ 20 Strafvorschriften

(1)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wird bestraft, wer

1. entgegen § 3 Abs. 2 Waffen oder sonstige dort bezeichnete Gegenstände mit sich führt, zu einer Versammlung hinschafft oder zur Verwendung bei einer solchen Versammlung bereithält oder verteilt, wenn die Tat nicht nach § 52 Abs. 3 Nr. 9 des Waffengesetzes mit Strafe bedroht ist, oder
2. in der Absicht, eine nicht verbotene Versammlung zu vereiteln, Gewalttätigkeiten begeht oder androht oder eine erhebliche Störung der Ordnung der Versammlung verursacht.

(2)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wird bestraft, wer

1. sich als Leiterin oder Leiter einer Ordnerin oder eines Ordners bedient, die oder der entgegen § 3 Abs. 2 Waffen oder sonstige dort bezeichnete Gegenstände mit sich führt,
2. öffentlich, in einer Versammlung oder durch Verbreiten von Schriften, Ton- oder Bildträgern, Datenspeichern, Abbildungen oder anderen Darstellungen zur Teilnahme an einer Versammlung aufruft,
 - a) deren Durchführung vollziehbar verboten oder deren Auflösung vollziehbar angeordnet ist (§ 8 Abs. 2 und 4, § 14 Abs. 2) oder
 - b) die nach § 18 Abs. 1 Satz 2 verboten ist,
3. als Leiterin oder Leiter entgegen einem vollziehbaren Verbot oder einer vollziehbaren Auflösung (§ 8 Abs. 2 und 4, § 14 Abs. 2) eine Versammlung durchführt,
4. entgegen § 9 Abs. 1 auf dem Weg zu oder in einer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einen dort bezeichneten Gegenstand mit sich führt und dadurch einer vollziehbaren Maßnahme nach § 10 Abs. 2 zuwiderhandelt,
5. entgegen § 9 Abs. 2 Nr. 1 in einer dort bezeichneten Aufmachung an einer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teilnimmt oder den Weg zu einer Versammlung in einer solchen Aufmachung zurücklegt und dadurch einer vollziehbaren Maßnahme nach § 10 Abs. 2 zuwiderhandelt oder
6. sich im Anschluss an eine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mit anderen zusammenrottet und dabei einen in § 3 Abs. 2

oder § 9 Abs. 1 bezeichneten Gegenstand mit sich führt oder in einer in § 9 Abs. 2 Nr. 1 bezeichneten Weise aufgemacht ist.

Eine Tat nach Satz 1 Nr. 2 Buchst. a und Nrn. 3 bis 5 ist nur strafbar, wenn die dort bezeichnete Anordnung rechtmäßig ist.

§ 21 Bußgeldvorschriften

(1) Ordnungswidrig handelt, wer

1. in einer Versammlung entgegen § 3 Abs. 3 in einer dort bezeichneten Art und Weise auftritt und dadurch einer vollziehbaren Maßnahme nach § 10 Abs. 2 zuwiderhandelt,
2. als teilnehmende Person trotz wiederholter Ordnungsrufe durch die Leiterin oder den Leiter oder durch eine Ordnerin oder einen Ordner fortfährt, eine Versammlung zu stören,
3. als nicht teilnehmende Person entgegen einer vollziehbaren polizeilichen Anordnung fortfährt, eine Versammlung zu stören,
4. eine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durchführt, deren fristgerechte Anzeige entgegen § 5 vollständig unterblieben ist,
5. als anzeigende Person wider besseres Wissen unrichtige oder unvollständige Angaben nach § 5 Abs. 2 Satz 1 macht,
6. als Leiterin oder Leiter wider besseres Wissen unrichtige oder unvollständige Angaben nach § 5 Abs. 3 Satz 1 Nr. 2 oder 3 oder § 15 Abs. 1 Satz 1 Nr. 2 macht,
7. als Leiterin oder Leiter eine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wesentlich anders durchführt, als es in der Anzeige

- aufgrund des § 5 Abs. 2 Satz 1 Nrn. 1 und 2 angegeben ist,
8. sich als Leiterin oder Leiter einer Ordnerin oder eines Ordners bedient, die oder der entgegen § 7 Abs. 2 Satz 1 keine dort bezeichnete Armbinde trägt,
 9. an einer Versammlung teilnimmt,
 - a) deren Durchführung vollziehbar verboten ist (§ 8 Abs. 2 und 4, § 14 Abs. 2) oder
 - b) die nach § 18 Abs. 1 Satz 2 verboten ist,
 10. als Leiterin oder Leiter oder als teilnehmende Person einer vollziehbaren Beschränkung nach § 8 Abs. 1 oder 4 oder § 14 Abs. 1 oder einer gerichtlichen Beschränkung der Versammlung zuwiderhandelt,
 11. sich nach einer vollziehbar angeordneten Auflösung der Versammlung nicht unverzüglich entfernt,
 12. als ausgeschlossene Person die Versammlung nicht unverzüglich verlässt,
 13. als anzeigende oder einladende Person eine Leiterin oder einen Leiter einsetzt, die oder der vollziehbar abgelehnt wurde (§ 10 Abs. 1 Satz 2, § 15 Abs. 2 Satz 2),
 14. als Leiterin oder Leiter eine Ordnerin oder einen Ordner einsetzt, die oder der vollziehbar abgelehnt wurde (§ 10 Abs. 1 Satz 2, § 15 Abs. 2 Satz 2+),
 15. entgegen § 9 Abs. 2 Nr. 2 auf dem Weg zu oder in einer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einen dort bezeichneten

Gegenstand mit sich führt und dadurch einer vollziehbaren Maßnahme nach § 10 Abs. 2 zuwiderhandelt,

16. als einladende Person wider besseres Wissen unrichtige oder unvollständige Angaben nach § 15 Abs. 1 Satz 1 Nr. 1 macht oder

17. als Leiterin oder Leiter oder als teilnehmende Person einer Auflage nach § 19 Abs. 1 Satz 4 zuwiderhandelt.

Die Tat kann in den Fällen des Satzes 1 Nrn. 1, 3 und 9 Buchst. a sowie Nrn. 10 bis 15 und 17 nur geahndet werden, wenn die dort bezeichnete Anordnung rechtmäßig ist.

(2) Die Ordnungswidrigkeit kann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Satz 1 Nrn. 2, 3, 5 bis 8, 11, 12, 15 und 16 mit einer Geldbuße bis zu 1 000 Euro und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Satz 1 Nrn. 1, 4, 9, 10, 13, 14 und 17 mit einer Geldbuße bis zu 3 000 Euro geahndet werden.

§ 22 Einziehung

Gegenstände, auf die sich eine Straftat nach § 20 oder eine Ordnungswidrigkeit nach § 21 Abs. 1 Satz 1 Nr. 10 oder 15 bezieht, können eingezogen werden. § 74 a des Strafgesetzbuchs und § 23 des Gesetzes über Ordnungswidrigkeiten sind anzuwenden.

Sechster Teil **Schlussbestimmungen**

§ 23 Einschränkung eines Grundrechts

Das Grundrecht der Versammlungsfreiheit (Artikel 8 Abs. 1 des Grundgesetzes) wird nach Maßgabe dieses Gesetzes eingeschränkt.

§ 24 Zuständigkeiten

(1) Zuständige Behörde ist

1. vor Versammlungsbeginn die untere Versammlungsbehörde und
2. nach Versammlungsbeginn die Polizei.

Die Aufgaben der unteren Versammlungsbehörde nehmen die Landkreise, kreisfreien Städte, großen selbständigen Städte und selbständigen Gemeinden wahr, auf dem Gebiet der Landeshauptstadt Hannover die Polizeidirektion Hannover. Für die Verfolgung und Ahndung von Ordnungswidrigkeiten nach § 21 sind die unteren Versammlungsbehörden zuständig.

(2) Örtlich zuständig ist die Behörde, in deren Bezirk die Versammlung stattfindet. Berührt eine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den Zuständigkeitsbereich mehrerer unterer Versammlungsbehörden, so bestimmt die den beteiligten Behörden gemeinsam vorgesetzte Fachaufsichtsbehörde die zuständige Behörde.

(3) Die Aufgaben der Fachaufsicht werden gegenüber den selbständigen Gemeinden von den Landkreisen, gegenüber den Landkreisen, kreisfreien Städten und großen selbständigen Städten von den Polizeidirektionen als oberen Versammlungsbehörden sowie von dem

für Inneres zuständigen Ministerium als oberster Versammlungsbehörde
wahrgenommen. § 102 Nds. SOG gilt entsprechend.

§ 25 Kostenfreiheit

Amtshandlungen nach diesem Gesetz sind kostenfrei.

Anlage (zu § 18 Abs. 2 Satz 2)

8. 작센 집회법

작센 집회 및 행진에 관한 법률

2012년 01월 25일 공포

2013년 12월 17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 ① 누구든지 공개집회 및 행진을 주최하거나 그러한 행사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항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 1. 기본법 제18조에 의해 집회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이 박탈된 자,
 - 2. 전항과 같은 행사를 거행하거나 참가함으로써, 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이라고 선언된 정당 또는 그 일부 내지 대체 조직이 목적하는 바를 조장코자 하는 자,
 - 3. 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이라고 선언된 정당, 또는
 - 4. 기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금지된 단체
- ③ 이 법에서 의미하는 집회란 공동의, 주로 공적인 의사형성에의 참여를

위한 토론이나 시위를 목적으로 하는 적어도 2인 이상의 장소적 회합을 말한다. 행진은 움직이는 집회이다.

④ 집회는, 그에의 참가가 개별적으로 확정된 인적 범위에 한정되지 않는 경우 공개적이다.

제2조

① 공개집회 또는 행진에 공연히 공중을 초청하는 자는, 초청 시에 주최자로서 그 이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공개집회 또는 행진 시 그 질서 있는 거행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질서문란행위를 야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공개집회 또는 행진 시, 무기 또는 그 성질상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적합하고 확실한 기타의 물건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기 또는 제1문에서 거명된 물건을,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공개집회나 행진에 참가하러 가는 도중에 소지하거나, 그와 같은 행사장소로 운반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준비하거나 배포하는 것도 역시 금지된다.

제3조

공연히 또는 집회에서 공동의 정치적 신념의 표현으로서 제복, 제복의 일부 또는 같은 종류의 의복을 착용하는 것은, 그 외관 때문에 또는 집회의 형태 구성을 통하여 폭력지향성을 전달하고 그것을 통하여 다른 집회참가자 또는 외부인들에게 위협적 효과를 미치는 경우 금지된다.

제2장 옥내공개집회

제4조

단지 개개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집회가 금지될 수 있다.

1. 주최자가 제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고, 제4호의 경우 그 금지가 관할 행정관청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2. 집회의 주최자 또는 주관자가 무기 또는 제2조 제3항 소정의 기타의 물건을 소지한 참가자들의 입장을 허용하는 경우
3. 주최자 또는 그 지지자들이 집회의 폭력적이고 선동적인 진행을 추구한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주최자 또는 그 지지자들이 중죄 또는 직권으로 소추될 수 있는 경죄를 대상으로 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거나 이를 수인할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제5조

- ① 특정된 인물 또는 인적 범위에 대하여는 집회 참가 초청 시에 이를 배제할 수 있다.
- ② 언론사 기자들은 배제될 수 없다; 그들은 집회의 주관자에게 기자증으로써 합법적으로 신분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6조

- ① 각각의 공개집회에는 한 명의 주관자가 있어야 한다.
- ② 집회의 주최자가 그 주관자이다. 집회가 단체에 의하여 개최되는 경우

에는 단체의 대표자가 주관자이다.

- ③ 주최자는 제3자에게 집회의 주관을 양도할 수 있다.
- ④ 주관자는 가택권을 행사한다.

제7조

주관자는 집회의 진행경과를 결정한다. 그는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는 집회를 언제라도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그는 중단된 집회가 언제 속행될 것인지 결정한다.

제8조

- ① 주관자는 제7조의 권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정한 수의 명예직 질서 유지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무기 또는 제2조 제3항 소정의 기타의 물건을 소지할 수 없고, 성년에 달하여야 하며, 오로지 단순히 “질서유지인”이라고만 표시할 수 있는 흰 완장을 착용함으로써 식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주관자는 그가 임명한 질서유지인의 수를 경찰이 요구하면 통지할 의무가 있다. 경찰은 질서유지인의 수를 적정하게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모든 집회 참가자들은 주관자 또는 그로부터 임명된 질서유지인의 질서 유지를 위한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제10조

- ① 주관자는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는 참가자를 집회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 ② 집회로부터 배제된 자는 즉시 그 장소를 떠나야 한다.

제11조

- ① 경찰관은,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거나 그러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할 있는 경우 공개집회에 파견될 수 있다.
- ② 경찰관들이 공개집회에 파견되었을 경우 주관자에게 그 신분을 밝혀야 한다. 그들에게는 적당한 자리가 주어져야 한다.

제12조

- ① 경찰은, 참가자들로부터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나온다는 사실적 근거가 이를 정당화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집회 시 또는 공개집회와 관련하여 공개적으로만 참가자들을 촬영·녹음할 수 있다. 그 조치는 제3자가 불가피하게 관계되는 경우에도 또한 시행될 수 있다.
- ② 그 자료들은, 참가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소추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닌 한 공개집회 또는 그와 시적 및 물적으로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건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파기되어야 한다.
- ③ 형사소송법 및 질서위반행위법에 따른 개인 정보의 수집권한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 집회의 해산

- ① 경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붙여 집회를

해산할 수 있다.

1. 주최자가 제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고, 제4호의 경우 그 금지가 관할 관청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
2. 집회가 폭력적 또는 선동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거나 참가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3. 주관자가 무기 또는 제2조 제3항 소정의 기타의 물건을 소지한 자들을 즉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배제를 집행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
4. 집회의 진행을 통하여 중죄 또는 직권으로 소추될 수 있는 경죄를 대상으로 하는 형법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또는 집회에서 그러한 범죄행위가 권유되거나 고무되고 주관자가 이를 지체 없이 제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경찰의 다른 조치, 특히 중지조치로서는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해산이 허용된다.

② 집회가 해산되었다고 선언되면 모든 참가자는 즉시 그 장소를 떠나야 한다.

제3장 옥외공개집회 및 행진

제14조

- ① 옥외공개집회 또는 행진을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늦어도 그 공지 48시간 이전에 관할 관청에 집회 또는 행진의 목적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신고 시 누가 집회 또는 행진의 주관에 대하여 책임을 질 것인지를 적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거론된 기한은, 이를 준수하면 집회에 따르는 목적이 위태롭게 되는 경우(긴급집회)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이러한 경우 그 집회는 지체 없이 신고 되어야 한다.
- ④ 집회의 공지가 집회의 개시와 동시에 있는 경우(우발적 집회) 신고의무는 면제된다.
- ⑤ 집회의 종류와 규모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관할 관청은 주최자 또는 주관자에게 질서 있는 집회 거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위험상태 및 기타 상황을 의논하기 위하여 적시에 협력대화를 제안한다. 협력의 범위 내에서 관할 관청은 주최자 또는 주관자에게, 그것이 집회의 종류 및 규모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집회 전 또는 도중에 위험상태의 현저한 변경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제15조

- ① 관할 관청은, 그 처분 발령 시 인식 가능한 상황에 따르면 집회 또는 행진의 거행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되는 경우, 그 집회 또는 행진을 금지하거나 특정한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집회 또는 행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히 금지되거나 특정한 제한이 부과될 수 있다.
 - 1. 집회 또는 행진이 다음 사람들을 상기하게 하는 역사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소에서 개최되고,
 - a. 나치 또는 공산주의 폭력적 통치 하에서 비인도적 취급의 희생자가 된 사람들,
 - b. 나치 또는 공산주의 폭력적 통치에 대하여 저항한 사람들, 또는
 - c. 전쟁의 희생자들

2. 그 처분 발령 시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정에 따르면 집회 또는 행진을 제1호 소정의 사람들의 존엄성이 침해되는 경우. 이는 특히 집회나 행진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 a. 폭력적 통치, 이를 통해 행해진 불법 또는 나치 정권의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책임 및 그 결과를 부정하거나, 그 해악을 과소 평가하거나 다른 상대방의 책임과 상쇄하는 경우,
- b. 나치나 공산주의의 기관 또는 대표자들을 모범적이거나 존경할 만하게 표현하는 경우, 또는
- c. 민족 간 화해와 합의에 반하게 나타나는 경우.

라이프치히의 민족전투기념물, 드레스덴의 성모교회 및 신시장 그리고 2월 13일과 14일 나아가 또한 드레스덴의 구시가지 북부 및 내측 신시가지 남부는 제1문 제1호에 따른 장소이다. 그 경계는 이 법의 첨부에 나타난다.

③ 관할 관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집회나 행진을 해산할 수 있다.

- 1. 신고 의무 있는 집회나 행진이 신고 되지 않은 경우, 신고 내용에서 벗어나거나 제한에 위반된 경우 그리고 공공의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집회나 행진을 속행하려는 경우 또는
- 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지의 전제조건이 주어지는 경우.

④ 금지된 집회 및 행진은 해산되어야 한다.

제16조

제14조 및 제15조는 옥외 종교의식, 종교상의 행렬, 성지순례행렬, 관습적인 장례의식, 혼례하객의 행렬 그리고 전통적인 민속축제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

- ① 옥외공개집회, 행진이나 그와 같은 옥외공개행사에서 또는 그에 참가하러 가는 도중에, 호신장구 또는 호신장구로 적합하고 상황에 따라 고권적 권한을 가진 당국자의 집행조치를 저지하기에 확실한 물건을 소지하는 것은 금지된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또한 금지된다.
 1. 그와 같은 행사에 사람의 신원 확인을 방해하기에 적합하고 상황에 따라 그러함에 적절한 변장을 하고 참가하거나, 그와 같은 행사에 그와 같은 변장을 하고 참가하러 가는 행위.
 2. 그와 같은 행사에서 또는 그에 참가하러 가는 도중에, 사람의 신원 확인을 방해하기에 적합하고 상황에 따라 그러함이 확실한 물건을 소지하는 행위.
- ③ 제16조 소정의 행사에는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관할 관청은 공공의 안전 또는 질서가 위태롭게 될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금지에 대한 더 이상의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 ④ 관할 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금지를 관철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관할 관청은 특히 위 금지를 위반하는 자들을 행사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18조

- ① 옥외집회에 대하여는 제6조 제1항, 제7조, 제8조 제1항, 제9조, 제10조 제2항, 제11조 및 제13조 제2항이 준용된다.
- ② 질서유지인의 사용에는 인가를 요한다. 인가는 신고 시에 신청되어야 한다.

③ 경찰은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는 참가자를 집회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제19조

① 행진의 주관자는 행진의 질서 있는 진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는 제8조 제1항 및 제18조가 적용되는 명예직 질서유지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② 참가자들은 주관자 또는 그로부터 임명된 질서유지인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③ 주관자는 자신의 의도대로 행진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행진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할 의무가 있다.

④ 경찰은 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는 참가자를 행진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제20조

① 경찰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나온다는 사실적 근거가 이를 정당화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집회 시 또는 공개집회와 관련하여 공개적으로만 그 사람들을 촬영·녹음할 수 있다. 그 조치는 제3자가 불가피하게 관계되는 경우에도 또한 시행될 수 있다.

② 경찰은,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 집회의 규모 또는 집회상태의 조망불가능성 때문에 경찰투입을 유도하고 지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적으로만 옥외집회와 행진 및 그 주변에 대한 조망영상 전송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람의 신원확인이나 조망영상 자료화는 행해지지 않는다.

③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이 준용된다.

제21조

집회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작센 주 헌법 제23조 제1항), 정보의 자기결정에 관한 기본권(기본법 제1조 제1항과 결합된 제2조 제1항) 및 정보보호에 관한 기본권(작센 주 헌법 제33조)은 이 법에 의해 제한된다.

제4장 형벌 및 범칙금 규정

제22조

금지되지 않은 공개집회 또는 행진을 저지 또는 해산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거행을 좌절케 할 의도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또는 심한 질서문란을 야기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23조

공개집회 또는 행진 시 그 주관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적법하게 질서유지권을 행사함에 있어 이에 폭력 또는 폭력적 협박으로 저항하거나 그가 적법하게 질서유지권을 행사하는 도중에 이에 폭력을 가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24조

집행 가능한 금지명령에 의하여 집회나 행진의 거행이 금지되거나 해산이 명하여진 후에, 공연히, 집회에서 또는 문서배포, 음향 또는 영상매체, 삽화 또는 기타의 표현물을 통하여 그러한 공개집회 또는 행진에 참가할 것을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25조

공개집회 또는 행진의 주관자로서, 무기 또는 그 성질상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데 적합하고 확실한 기타의 물건을 소지한 질서 유지인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26조

옥외공개집회 또는 행진의 주관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6월 이하의 자유형 또는 180일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 주최자가 신고 시 신고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게 집회 또는 행진을 거행한 자, 또는
2. 제15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집행 가능한 제한을 이행하지 않은 자.

제27조

주최자 또는 주관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공개집회 또는 행진을 집행 가능한 금지명령에 반하여 거행하거나 경찰에 의한 해산 또는 중지명령에 반하여 속행한 자 또는
2. 옥외공개집회 또는 행진을 제14조에 따라 필요한 신고 없이 거행한 자.

제28조

① 공개집회 또는 행진 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무기 또는 그 성질상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데 적합하고 확실한 기타의 물건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무기 또는 제1문 소정의 기타의 물건을, 공개집회나 행진에 참가하러 가는 도중에 소지하거나, 그와 같은 행사장소로 운반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준비하거나 배포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1. 제17조 제1항에 위반하여 옥외공개집회, 행진이나 그와 같은 옥외 공개행사에서 또는 그에 참가하러 가는 도중에, 호신장구 또는 호신장구로 적합하고 상황에 따라 고권적 권한을 가진 당국자의 집행조치를 저지하기에 확실한 물건을 소지한 자,
2.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위반하여 그와 같은 행사에 사람의 신원 확인을 방해하기에 적합하고 상황에 따라 그러함에 적절한 변장을 하고 참가하거나, 그와 같은 행사에 그와 같은 변장을 하고 참가하러 가는 자 또는
3. 그와 같은 행사에 이어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과 작당하고 그 때에,
 - a. 무기 또는 그 성질상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데 적합하고 확실한 기타의 물건을 소지한 자,
 - b. 호신장구 또는 제1호에 묘사된 기타의 물건을 소지한 자 또는
 - c. 제2호에 묘사된 방법으로 변장을 한 자.

제29조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30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질서위반으로 취급된다.

1. 집행 가능한 금지명령에 의해 그 거행이 금지된 공개집회 또는 행진에 참가한 자,
2. 제17조 제2항 제2호에 위반하여 옥외공개집회나 행진 또는 그와 같은 옥외공개행사에서 또는 그에 참가하러 가는 도중에, 사람의 신원 확인을 방해하기에 적합하고 상황에 따라 그러함에 확실한 물건을 소지한 자,
3. 관할 관청에 의한 공개집회 또는 행진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장소를 떠나지 아니한 자,
4. 옥외공개집회 또는 행진의 참가자로서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주관자 또는 질서유지인의 거듭된 제지에도 불구하고 공개집회 또는 행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계속한 자,
6. 공개집회 또는 행진으로부터 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장소를 떠나지 아니한 자,
7. 임명된 질서유지인의 수를 통보하라는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부정확한 숫자를 통보한 자(제8조 제2항),
8. 공개집회 또는 행진의 주관자 또는 주최자로서, 경찰이 허가하거나 인가한 숫자보다 많은 수의 질서유지인을 사용하거나(제8조 제2항, 제18조 제2항), 제9조 제1항에 의해 허용되는 바와 다른 표식을 한

질서유지인을 사용한 자, 또는

8. 주관자로서, 공개집회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의 참석을 거부하거나, 그들에게 적당한 자리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질서위반행위는 5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제1항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질서위반행위는 2,5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각 처할 수 있다.

제31조

제28조 또는 제29조 소정의 범죄행위 또는 제30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4호 소정의 질서위반행위에 관계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형법 제74a조와 질서위반행위법 제23조가 적용된다.

제5장 관할

제32조

① 기초자치단체 경찰관청은 제2항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사물관할권을 가진다, 특히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1. 제2조 제3항에 따른 무기 및 유사한 물건 소지 허가 부여,
2. 제4조에 따른 옥내집회의 금지,
3. 제14조 제1항에 따른 옥외공개집회 및 행진의 신고 수리,
4. 제15조에 따른 집회 또는 행진에 대한 금지와 해산 및 제한 부과,
5. 제17조 제3항 제2문에 따른 호신장구 및 변장 금지에 대한 예외 허가,

6.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1항 제2문에 따른 질서유지인의 사용에 대한 인가,
7. 집회법적인 규정 또는 명령의 시행을 조력하는, 1999년 8월 13일 공포되고 2012년 1월 25일의 법에 의해 최종적으로 개정된 작센 경찰법의 그때그때 적용되는 판에 따른 조치.

② 경찰집행부서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1. 제8조 제2항에 따른 질서유지인의 수 및 그 적절한 제한에 관한 안내권 행사,
2. 제12조 따른 촬영·녹음,
3. 제13조 제1항 및 제15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집회와 행진의 해산,
4. 제17조 제4항에 따른 호신장구 및 변장 금지의 시행을 위한 명령,
5. 제18조 제3항 및 제19조 제4항에 따른 사람 및 참가자의 배제

③ 작센경찰법(SächsPolG) 제60조 제2항에 따른 제1항에 거명된 조치에 관한 경찰집행부서의 사물관할권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33조

- ① 그 관할 구역 내에서 집회가 개최되는 기초자치단체 경찰관청은 토지 관할권을 가진다.
- ② 행진이 다수의 기초자치단체 경찰관청의 관할 구역에 관계되는 경우, 그 관할 구역에서 행진이 시작되는 경찰관청이 토지관할권을 가진다.
- ③ 여러 기초자치단체 경찰관청의 관할 구역에서 시작되는 다수의 행진들이 하나의 종착지를 가지는 경우, 그 관할 구역에 종착지를 가지는 경찰관청이 토지관할권을 가진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관할 경찰관청은 여타의 관계된 경찰관청과의 협의에서 결정권을 가진다.

첨부 (제15조 제2항 제4문에 대한, 생략)

각주 (생략)

개정규정 (생략)

Gesetz über Versammlungen und Aufzüge im Freistaat Sachsen (Sächsisches Versammlungsgesetz – SächsVersG)

erlassen als Artikel 1 des Gesetzes über das Sächsische
Versammlungsgesetz und zur Änderung des Polizeigesetzes des
Freistaates Sachsen Vom 25. Januar 2012

Abschnitt 1 Allgemeine Regelungen

§ 1

(1) Jedermann hat das Recht, öffentliche Versammlungen und Aufzüge zu veranstalten und an solchen Veranstaltungen teilzunehmen.

(2) Dieses Recht hat nicht,

1. wer das Grundrecht auf Versammlungsfreiheit gemäß Artikel 18 des Grundgesetzes verwirkt hat,
2. wer mit der Durchführung oder Teilnahme an einer solchen Veranstaltung die Ziele einer nach Artikel 21 Abs. 2 des Grundgesetzes dur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en Partei oder Teil- oder Ersatzorganisation

einer Partei fördern will,

3. eine Partei, die nach Artikel 21 Abs. 2 des Grundgesetzes dur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 worden ist, oder
4. eine Vereinigung, die nach Artikel 9 Abs. 2 des Grundgesetzes verboten ist.

(3) Versammlung im Sinne dieses Gesetzes ist eine örtliche Zusammenkunft von mindestens zwei Personen zur gemeinschaftlichen, überwiegend auf die Teilhabe an der öffentlichen Meinungsbildung gerichteten Erörterung oder Kundgebung. Aufzug ist eine sich fortbewegende Versammlung.

(4) Eine Versammlung ist öffentlich, wenn die Teilnahme nicht auf einen individuell bestimmten Personenkreis beschränkt ist.

§ 2

(1) Wer zu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oder zu einem Aufzug öffentlich einlädt, muss als Veranstalter in der Einladung seinen Namen angeben.

(2) Bei öffentlichen Versammlungen und Aufzügen hat jedermann Störungen zu unterlassen, die bezwecken, die ordnungsgemäße Durchführung zu verhindern.

(3) Niemand darf bei öffentlichen Versammlungen oder Aufzügen Waffen oder sonstige Gegenstände, die ihrer Art nach zur Verletzung von Personen oder zur Beschädigung von Sachen geeignet und

bestimmt sind, mit sich führen, ohne dazu behördlich ermächtigt zu sein. Ebenso ist es verboten, ohne behördliche Ermächtigung Waffen oder die in Satz 1 genannten Gegenstände auf dem Weg zu öffentlichen Versammlungen oder Aufzügen mit sich zu führen, zu derartigen Veranstaltungen hinzuschaffen oder sie zur Verwendung bei derartigen Veranstaltungen bereitzuhalten oder zu verteilen.

§ 3

Es ist verboten, öffentlich oder in einer Versammlung Uniformen, Uniformteile oder gleichartige Kleidungsstücke als Ausdruck einer gemeinsamen politischen Gesinnung zu tragen, wenn infolge des äußeren Erscheinungsbildes oder durch die Ausgestaltung der Versammlung Gewaltbereitschaft vermittelt und dadurch auf andere Versammlungsteilnehmer oder Außenstehende einschüchternd eingewirkt wird.

Abschnitt 2 Öffentliche Versammlungen in geschlossenen Räumen

§ 4

Eine Versammlung kann nur im Einzelfall und nur dann verboten werden, wenn

1. der Veranstalter unter die Vorschriften des § 1 Abs. 2 Nr. 1 bis 4 fällt, und im Falle der Nummer 4 das Verbot durch die zuständige Verwaltungsbehörde festgestellt worden ist,
2. der Veranstalter oder Leiter der Versammlung Teilnehmern

Zutritt gewährt, die Waffen oder sonstige Gegenstände im Sinne von § 2 Abs. 3 mit sich führen,

3. Tatsachen festgestellt sind, aus denen sich ergibt, dass der Veranstalter oder sein Anhang einen gewalttätigen oder aufrührerischen Verlauf der Versammlung anstreben,
4. Tatsachen festgestellt sind, aus denen sich ergibt, dass der Veranstalter oder sein Anhang Ansichten vertreten oder Äußerungen dulden werden, die ein Verbrechen oder ein von Amts wegen zu verfolgendes Vergehen zum Gegenstand haben.

§ 5

- (1) Bestimmte Personen oder Personenkreise können in der Einladung von der Teilnahme an einer Versammlung ausgeschlossen werden.
- (2) Pressevertreter können nicht ausgeschlossen werden; sie haben sich dem Leiter der Versammlung gegenüber durch ihren Presseausweis ordnungsgemäß auszuweisen.

§ 6

- (1) Jede öffentliche Versammlung muss einen Leiter haben.
- (2) Leiter der Versammlung ist der Veranstalter. Wird die Versammlung von einer Vereinigung veranstaltet, so ist ihr Vorsitzender der Leiter.
- (3) Der Veranstalter kann die Leitung einer anderen Person übertragen.
- (4) Der Leiter übt das Hausrecht aus.

§ 7

Der Leiter bestimmt den Ablauf der Versammlung. Er hat während der Versammlung für Ordnung zu sorgen. Er kann die Versammlung jederzeit unterbrechen oder schließen. Er bestimmt, wann eine unterbrochene Versammlung fortgesetzt wird.

§ 8

(1) Der Leiter kann sich bei der Durchführung seiner Rechte aus § 7 der Hilfe einer angemessenen Zahl ehrenamtlicher Ordner bedienen. Diese dürfen keine Waffen oder sonstigen Gegenstände im Sinne vom § 2 Abs. 3 mit sich führen, müssen volljährig und ausschließlich durch weiße Armbinden, die nur die Bezeichnung “Ordner” tragen dürfen, kenntlich sein.

(2) Der Leiter ist verpflichtet, die Zahl der von ihm bestellten Ordner der Polizei auf Anforderung mitzuteilen. Die Polizei kann die Zahl der Ordner angemessen beschränken.

§ 9

Alle Versammlungsteilnehmer sind verpflichtet, die zur Aufrechterhaltung der Ordnung getroffenen Anweisungen des Leiters oder der von ihm bestellten Ordner zu befolgen.

§ 10

(1) Der Leiter kann Teilnehmer, welche die Ordnung grob stören,

von der Versammlung ausschließen.

(2) Wer aus der Versammlung ausgeschlossen wird, hat sie sofort zu verlassen.

§ 11

(1) Polizeibeamte können in eine öffentliche Versammlung entsandt werden, wenn eine Gefahr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besteht oder eine solche Gefahr zu befürchten ist.

(2) Werden Polizeibeamte in eine öffentliche Versammlung entsandt, so haben sie sich dem Leiter zu erkennen zu geben. Es muss ihnen ein angemessener Platz eingeräumt werden.

§ 12

(1) Die Polizei darf Bild- und Tonaufnahmen von Teilnehmern bei oder im Zusammenhang mit öffentlichen Versammlungen nur offen und nur dann anfertigen, wenn tatsächliche Anhaltspunkte die Annahme rechtfertigen, dass von ihnen erhebliche Gefahren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oder Ordnung ausgehen. Die Maßnahmen dürfen auch durchgeführt werden, wenn Dritte unvermeidbar betroffen werden.

(2) Die Unterlagen sind nach Beendigung der öffentlichen Versammlung oder zeitlich und sachlich damit unmittelbar im Zusammenhang stehender Ereignisse unverzüglich zu vernichten, soweit sie nicht für die Verfolgung von Straftaten von Teilnehmern benötigt werden.

(3) Die Befugnisse zur Erhebung personenbezogener Informationen

nach Maßgabe der Strafprozessordnung und des Gesetzes über Ordnungswidrigkeiten bleiben unberührt. ¹

§ 13

(1) Die Polizei kann die Versammlung nur dann und unter Angabe des Grundes auflösen, wenn

1. der Veranstalter unter die Vorschriften des § 1 Abs. 2 Nr. 1 bis 4 fällt, und im Falle der Nummer 4 das Verbot durch die zuständige Verwaltungsbehörde festgestellt worden ist,
2. die Versammlung einen gewalttätigen oder aufrührerischen Verlauf nimmt oder unmittelbare Gefahr für Leben und Gesundheit der Teilnehmer besteht,
3. der Leiter Personen, die Waffen oder sonstige Gegenstände im Sinne von § 2 Abs. 3 mit sich führen, nicht sofort ausschließt und für die Durchführung des Ausschlusses sorgt,
4. durch den Verlauf der Versammlung gegen Strafgesetze verstoßen wird, die ein Verbrechen oder von Amts wegen zu verfolgendes Vergehen zum Gegenstand haben, oder wenn in der Versammlung zu solchen Straftaten aufgefordert oder angereizt wird und der Leiter dies nicht unverzüglich unterbindet.

In den Fällen der Nummern 2 bis 4 ist die Auflösung nur zulässig, wenn andere polizeiliche Maßnahmen, insbesondere eine Unterbrechung, nicht ausreichen.

(2) Sobald eine Versammlung für aufgelöst erklärt ist, haben alle

Teilnehmer sich sofort zu entfernen.

Abschnitt 3 Öffentliche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und Aufzüge

§ 14

(1) Wer die Absicht hat, eine öffentliche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oder einen Aufzug zu veranstalten, hat dies spätestens 48 Stunden vor der Bekanntgabe der zuständigen Behörde unter Angabe des Gegenstandes der Versammlung oder des Aufzuges anzuzeigen.

(2) In der Anzeige ist anzugeben, welche Person für die Leitung der Versammlung oder des Aufzuges verantwortlich sein soll.

(3) Die in Absatz 1 genannte Frist gilt nicht, wenn bei ihrer Einhaltung der mit der Versammlung verfolgte Zweck gefährdet würde (Eilversammlung). In diesem Fall ist die Versammlung unverzüglich anzuzeigen.

(4) Fällt die Bekanntgabe der Versammlung mit deren Beginn zusammen (Spontanversammlung), entfällt die Anzeigepflicht.

(5) Soweit es nach Art und Umfang der Versammlung erforderlich ist, bietet die zuständige Behörde der Person, die eine öffentliche Versammlung veranstaltet oder der die Leitung übertragen worden ist, rechtzeitig ein Kooperationsgespräch an, um die Gefahrenlage und sonstige Umstände zu erörtern, die für die ordnungsgemäße Durchführung der Versammlung wesentlich sind. Im Rahmen der Kooperation informiert die zuständige Behörde die Person, die eine

öffentliche Versammlung veranstaltet oder der die Leitung übertragen worden ist, vor und während der Versammlung über erhebliche Änderungen der Gefahrenlage, soweit dieses nach Art und Umfang der Versammlung erforderlich ist.

§ 15

(1)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die Versammlung oder den Aufzug verbieten oder von bestimmten Beschränkungen abhängig machen, wenn nach den zur Zeit des Erlasses der Verfügung erkennbaren Umständen die öffentliche Sicherheit oder Ordnung bei Durchführung der Versammlung oder des Aufzuges unmittelbar gefährdet ist.

(2) Eine Versammlung oder ein Aufzug kann insbesondere verboten oder von bestimmten Beschränkungen abhängig gemacht werden, wenn

1. die Versammlung oder der Aufzug an einem Ort von historisch herausragender Bedeutung stattfindet, der an

a) Menschen, die unter der nationalsozialistischen oder der kommunistischen Gewaltherrschaft Opfer menschenunwürdiger Behandlung waren,

b) Menschen, die Widerstand gegen die nationalsozialistische oder kommunistische Gewaltherrschaft geleistet haben, oder

c) die Opfer eines Krieges

erinnert und

2. nach den zur Zeit des Erlasses der Verfügung konkret feststellbaren Umständen zu besorgen ist, dass durch die

Versammlung oder den Aufzug die Würde von Personen im Sinne der Nummer 1 beeinträchtigt wird. Dies ist insbesondere der Fall, wenn die Versammlung oder der Aufzug

- a) die Gewaltherrschaft, das durch sie begangene Unrecht oder die Verantwortung des nationalsozialistischen Regimes für den Zweiten Weltkrieg und dessen Folgen leugnet, verharmlost oder gegen die Verantwortung anderer aufrechnet,
- b) Organe oder Vertreter der nationalsozialistischen oder kommunistischen Gewaltherrschaft als vorbildlich oder ehrenhaft darstellt oder
- c) gegen Aussöhnung oder Verständigung zwischen den Völkern auftritt.

Das Völkerschlachtdenkmal in Leipzig, die Frauenkirche mit dem Neumarkt in Dresden sowie am 13. und 14. Februar darüber hinaus auch die nördliche Altstadt und die südliche innere Neustadt in Dresden sind Orte nach Satz 1 Nr. 1. Ihre Abgrenzung ergibt sich aus der Anlage zu diesem Gesetz.

(3)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eine Versammlung oder einen Aufzug auflösen, wenn

- 1. eine anzeigepflichtige Versammlung oder ein anzeigepflichtiger Aufzug nicht angezeigt wurde, wenn von den Angaben der Anzeige abgewichen oder den Beschränkungen zuwidergehandelt wird und eine Fortsetzung der Versammlung oder des Aufzuges zu einer konkreten Gefahr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führen würde oder

2. die Voraussetzungen für ein Verbot nach Absatz 1 oder 2 vorliegen.

(4) Verbotene Versammlungen und Aufzüge sind aufzulösen.

§ 16

Die §§ 14 und 15 gelten nicht für Gottesdienste unter freiem Himmel, kirchliche Prozessionen, Bittgänge und Wallfahrten, gewöhnliche Leichenbegängnisse, Züge von Hochzeitsgesellschaften und hergebrachte Volksfeste.

§ 17

(1) Es ist verboten, bei öffentlichen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Aufzügen oder sonstigen öffentlichen Veranstaltungen unter freiem Himmel oder auf dem Weg dorthin Schutzwaffen oder Gegenstände, die als Schutzwaffen geeignet und den Umständen nach dazu bestimmt sind, Vollstreckungsmaßnahmen eines Trägers von Hoheitsbefugnissen abzuwehren, mit sich zu führen.

(2) Es ist auch verboten,

1. an derartigen Veranstaltungen in einer Aufmachung, die geeignet und den Umständen nach darauf gerichtet ist, die Feststellung der Identität zu verhindern, teilzunehmen oder den Weg zu derartigen Veranstaltungen in einer solchen Aufmachung zurückzulegen,
2. bei derartigen Veranstaltungen oder auf dem Weg dorthin

Gegenstände mit sich zu führen, die geeignet und den Umständen nach dazu bestimmt sind, die Feststellung der Identität zu verhindern.

(3) Die Absätze 1 und 2 gelten nicht, wenn es sich um Veranstaltungen im Sinne des § 16 handelt.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weitere Ausnahmen von den Verboten der Absätze 1 und 2 zulassen, wenn eine Gefährdung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oder Ordnung nicht zu besorgen ist.

(4)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zur Durchsetzung der Verbote der Absätze 1 und 2 Anordnungen treffen. Sie kann insbesondere Personen, die diesen Verboten zuwiderhandeln, von der Veranstaltung ausschließen.

§ 18

(1) Für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sind § 6 Abs. 1, §§ 7, 8 Abs. 1, §§ 9, 10 Abs. 2, §§ 11 und 13 Abs. 2 entsprechend anzuwenden.

(2) Die Verwendung von Ordnern bedarf polizeilicher Genehmigung. Sie ist bei der Anzeige zu beantragen.

(3) Die Polizei kann Teilnehmer, welche die Ordnung grob stören, von der Versammlung ausschließen.

§ 19

(1) Der Leiter des Aufzuges hat für den ordnungsmäßigen Ablauf zu

sorgen. Er kann sich der Hilfe ehrenamtlicher Ordner bedienen, für welche § 8 Abs. 1 und § 18 gelten.

(2) Die Teilnehmer sind verpflichtet, die zur Aufrechterhaltung der Ordnung getroffenen Anordnungen des Leiters oder der von ihm bestellten Ordner zu befolgen.

(3) Vermag der Leiter sich nicht durchzusetzen, so ist er verpflichtet, den Aufzug für beendet zu erklären.

(4) Die Polizei kann Teilnehmer, welche die Ordnung grob stören, von dem Aufzug ausschließen.

§ 20

(1) Die Polizei darf von Personen bei oder im Zusammenhang mit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oder einem Aufzug Bild- und Tonaufnahmen nur offen und nur dann anfertigen, wenn tatsächliche Anhaltspunkte die Annahme rechtfertigen, dass von diesen Personen eine

erhebliche Gefahr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und Ordnung bei oder im Zusammenhang mit der Versammlung ausgeht. Die Maßnahmen dürfen auch durchgeführt werden, wenn Dritte unvermeidbar betroffen werden.

(2) Die Polizei darf Übersichtsbildübertragungen von öffentlichen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und Aufzügen sowie ihrem Umfeld nur offen und nur dann anfertigen, wenn und soweit dies wegen der Größe der Versammlung oder Unübersichtlichkeit der Versammlungslage zur Lenkung und Leitung eines Polizeieinsatzes

im Einzelfall erforderlich ist. Eine Identifikation von Personen oder Aufzeichnung der Übertragung findet hierbei nicht statt.

(3) § 12 Abs. 2 und 3 gilt entsprechend. ²

§ 21

Das Grundrecht auf Versammlungsfreiheit (Artikel 8 Abs. 1 des Grundgesetzes und Artikel 23 Abs. 1 der Verfassung des Freistaates Sachsen), das Grund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Artikel 2 Abs. 1 in Verbindung mit Artikel 1 Abs. 1 des Grundgesetzes) sowie das Grundrecht auf Datenschutz (Artikel 33 der Verfassung des Freistaates Sachsen) werden durch dieses Gesetz eingeschränkt.

Abschnitt 4 Straf- und Bußgeldvorschriften

§ 22

Wer in der Absicht, nicht verbotene Versammlungen oder Aufzüge zu verhindern oder zu sprengen oder sonst ihre Durchführung zu vereiteln, Gewalttätigkeiten vornimmt oder androht oder grobe Störungen verursac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3

Wer bei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oder einem Aufzug dem Leiter oder einem Ordner in der rechtmäßigen Ausübung seiner Ordnungsbefugnisse mit Gewalt oder Drohung mit Gewalt Widerstand

leistet oder ihn während der rechtmäßigen Ausübung seiner Ordnungsbefugnisse tätlich angreif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4

Wer öffentlich, in einer Versammlung oder durch Verbreiten von Schriften, Ton- oder Bildträgern,

Abbildungen oder anderen Darstellungen zur Teilnahme an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oder einem Aufzug auffordert, nachdem die Durchführung durch ein vollziehbares Verbot untersagt oder die Auflösung angeordnet worden is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5

Wer als Leiter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oder eines Aufzuges Ordner verwendet, die Waffen oder sonstige Gegenstände, die ihrer Art nach zur Verletzung von Personen oder Beschädigung von Sachen geeignet und bestimmt sind, mit sich führe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6

Wer als Leiter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oder eines Aufzuges

1. die Versammlung oder den Aufzug wesentlich anders durch-

führt, als der Veranstalter bei der Anzeige angegeben hat,
oder

2. Beschränkungen nach § 15 Abs. 1 oder 2 nicht nachkomm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sechs Monaten oder mit Geldstrafe
bis zu einhundertachtzig Tagessätzen bestraft.

§ 27

Wer als Veranstalter oder Leiter

1. eine öffentliche Versammlung oder einen Aufzug trotz
vollziehbaren Verbots durchführt oder trotz Auflösung oder
Unterbrechung durch die Polizei fortsetzt oder
2. eine öffentliche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oder einen
Aufzug ohne eine nach § 14 erforderliche Anzeige durchführ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8

(1) Wer bei öffentlichen Versammlungen oder Aufzügen Waffen
oder sonstige Gegenstände, die ihrer Art nach zur Verletzung von
Personen oder Beschädigung von Sachen geeignet und bestimmt
sind, mit sich führt, ohne dazu behördlich ermächtigt zu sein,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Ebenso wird bestraft, wer ohne behördliche Ermächtigung Waffen
oder sonstige Gegenstände im Sinne des Satzes 1 auf dem Weg zu

öffentlichen Versammlungen oder Aufzügen mit sich führt, zu derartigen Veranstaltungen hinschafft oder sie zur Verwendung bei derartigen Veranstaltungen bereithält oder verteilt.

(2) Wer

1. entgegen § 17 Abs. 1 bei öffentlichen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Aufzügen oder sonstigen öffentlichen Veranstaltungen unter freiem Himmel oder auf dem Weg dorthin Schutzwaffen oder Gegenstände, die als Schutzwaffen geeignet und den Umständen nach dazu bestimmt sind, Vollstreckungsmaßnahmen eines Trägers von Hoheitsbefugnissen abzuwehren, mit sich führt,
2. entgegen § 17 Abs. 2 Nr. 1 an derartigen Veranstaltungen in einer Aufmachung, die geeignet und den Umständen nach darauf gerichtet ist, die Feststellung der Identität zu verhindern, teilnimmt oder den Weg zu derartigen Veranstaltungen in einer solchen Aufmachung zurücklegt oder
3. sich im Anschluss an oder sonst im Zusammenhang mit derartigen Veranstaltungen mit anderen zusammenrottet und dabei
 - a) Waffen oder sonstige Gegenstände, die ihrer Art nach zur Verletzung von Personen oder Beschädigung von Sachen geeignet und bestimmt sind, mit sich führt,
 - b) Schutzwaffen oder sonstige in Nummer 1 bezeichnete Gegenstände mit sich führt oder
 - c) in der in Nummer 2 bezeichneten Weise aufgemacht is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9

Wer der Vorschrift des § 3 zuwider handel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30

(1) Ordnungswidrig handelt, wer

1. an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oder einem Aufzug teilnimmt, deren Durchführung durch vollziehbares Verbot untersagt ist,
2. entgegen § 17 Abs. 2 Nr. 2 bei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einem Aufzug oder einer sonstigen öffentlichen Veranstaltung unter freiem Himmel oder auf dem Weg dorthin Gegenstände, die geeignet und den Umständen nach dazu bestimmt sind, die Feststellung der Identität zu verhindern, mit sich führt,
3. sich trotz Auflösung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oder eines Aufzuges durch die zuständige Behörde nicht unverzüglich entfernt,
4. als Teilnehmer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oder eines Aufzuges einer vollziehbaren Beschränkung nach § 15 Abs. 1 oder 2 nicht nachkommt,
5. trotz wiederholter Zurechtweisung durch den Leiter oder einen Ordner fortfährt, den Ablauf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 oder eines Aufzuges zu stören,
6. sich nicht unverzüglich nach seiner Ausschließung aus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oder einem Aufzug entfernt,
 7. der Aufforderung der Polizei, die Zahl der von ihm bestellten Ordner mitzuteilen, nicht nachkommt oder eine unrichtige Zahl mitteilt (§ 8 Abs. 2),
 8. als Leiter oder Veranstalter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oder eines Aufzuges eine größere Zahl von Ordnern verwendet, als die Polizei zugelassen oder genehmigt hat (§ 8 Abs. 2, § 18 Abs. 2), oder Ordner verwendet, die anders gekennzeichnet sind, als es nach § 8 Abs. 1 zulässig ist, oder
 9. als Leiter den in eine öffentliche Versammlung entsandten Polizeibeamten die Anwesenheit verweigert oder ihnen keinen angemessenen Platz einräumt.
- (2) Die Ordnungswidrigkeit kann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Nr. 1 bis 6 mit einer Geldbuße bis 500 EUR und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Nr. 7 bis 9 mit einer Geldbuße bis zu 2 500 EUR geahndet werden.

§ 31

Gegenstände, auf die sich eine Straftat nach § 28 oder § 29 oder eine Ordnungswidrigkeit nach § 30 Abs. 1 Nr. 2 oder 4 bezieht, können eingezogen werden. § 74a des Strafgesetzbuches und § 23 des Gesetzes über Ordnungswidrigkeiten sind anzuwenden.

Abschnitt 5 Zuständigkeiten

§ 32

(1) Die Kreispolizeibehörden sind sachlich zuständig für die Durchführung dieses Gesetzes, soweit in Absatz 2 nichts anderes bestimmt ist; sie sind insbesondere zuständig für

1. die Erteilung der Ermächtigung zum Tragen von Waffen und ähnlichen Gegenständen nach § 2 Abs. 3,
2. das Verbot von Versammlungen in geschlossenen Räumen nach § 4,
3. die Entgegennahme der Anzeige von öffentlichen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und von Aufzügen nach § 14 Abs. 1,
4. das Verbot und die Auflösung von Versammlungen oder Aufzügen sowie die Erteilung von Beschränkungen nach § 15,
5. die Zulassung von Ausnahmen von Schutzwaffen- und Vermummungsverbot nach § 17 Abs. 3 Satz 2,
6. die Genehmigung der Verwendung von Ordnern nach § 18 Abs. 2 und § 19 Abs. 1 Satz 2,
7. Maßnahmen aufgrund des Polizeigesetzes des Freistaates Sachsen (SächsPolG) in der Fassung der Bekanntmachung vom 13. August 1999 (SächsGVBl. S. 466), zuletzt geändert durch Artikel 2 des Gesetzes vom 25. Januar 2012 (SächsGVBl. S. 54, 59), in der jeweils geltenden Fassung, die der Durchsetzung versammlungsrechtlicher Vorschriften oder Anordnungen dienen.

(2) Der Polizeivollzugsdienst ist sachlich zuständig für

1. die Geltendmachung des Auskunftsrechts über die Zahl der Ordner und die angemessene Beschränkung der Zahl der Ordner nach § 8 Abs. 2,
 2. Bild- und Tonaufnahmen nach § 12,
 3. die Auflösung von Versammlungen und Aufzügen nach § 13 Abs. 1 und § 15 Abs. 3 und 4,
 4. die Anordnungen zur Durchsetzung des Schutzwaffen- und Vermummungsverbots nach § 17 Abs. 4,
 5. den Ausschluss von Personen und Teilnehmern nach § 18 Abs. 3 und § 19 Abs. 4.
- (3) Die sachliche Zuständigkeit des Polizeivollzugsdienstes nach § 60 Abs. 2 SächsPolG für die in Absatz 1 genannten Maßnahmen bleibt unberührt.

§ 33

- (1) Örtlich zuständig ist die Kreispolizeibehörde, in deren Bezirk die Versammlung oder der Aufzug stattfindet.
- (2) Berührt ein Aufzug die Bezirke mehrerer Kreispolizeibehörden, so ist die Kreispolizeibehörde örtlich zuständig, in deren Bezirk der Aufzug beginnt.
- (3) Haben mehrere, in Bezirken verschiedener Kreispolizeibehörden beginnende Aufzüge einen gemeinsamen Endpunkt, so ist die Kreispolizeibehörde örtlich zuständig, in deren Bezirk der Endpunkt liegt.

(4) In den Fällen der Absätze 2 und 3 entscheidet die zuständige Kreispolizeibehörde im Benehmen mit den übrigen betroffenen Kreispolizeibehörden.

Anlage

(zu § 15 Abs. 2 Satz 4)

1. Das Völkerschlachtdenkmal in Leipzig umfasst in nordöstlicher Richtung die Prager Straße, in südöstlicher und südwestlicher Richtung jeweils die Grenze zum Südfriedhof und in nordwestlicher Richtung das östliche Teilstück des Friedhofsweges und das östliche Teilstück der Straße An der Tabaksmühle sowie das von diesen umschlossene Gebiet.
2. Die Frauenkirche mit dem Neumarkt in Dresden umfasst die Plätze An der Frauenkirche und Neumarkt sowie die Straße An der Frauenkirche.
3. Die nördliche Altstadt und die südliche innere Neustadt in Dresden umfassen den Theaterplatz, den Schloßplatz, die Augustusbrücke, den Neustädter Markt, die Köpckestraße, den Carolaplatz, die Carolabrücke, die St. Petersburger Straße zwischen Carolabrücke und Pirnaischem Platz, den Rathenauplatz, den Pirnaischen Platz, die westliche Seite der Ringstraße bis zum Rathausplatz, die unmittelbar am Rathaus verlaufende Stichstraße nördlich des Dr.-Külz-Ringes, die Pfarrgasse und den sich anschließenden Teil der Straße An der Kreuzkirche bis zum Altmarkt, den Altmarkt, die Wilsdruffer Straße, den

Postplatz, die Sophienstraße und das von diesen umschlossene Gebiet.

¹§ 12 geändert durch Artikel 4 des Gesetzes vom 17. Dezember 2013 (SächsGVBl. S. 890, 891), beachte Artikel 5 “Einschränkung von Grundrechten” o.g. Gesetzes (SächsGVBl. S. 890, 892)

²§ 20 neu gefasst durch Artikel 4 des Gesetzes vom 17. Dezember 2013 (SächsGVBl. S. 890, 891); beachte Artikel 5 “Einschränkung von Grundrechten” o.g. Gesetzes (SächsGVBl. S. 890, 892)

Änderungsvorschriften

Änderung des Sächsischen Versammlungsgesetzes

Art. 4 des Gesetzes vom 17. Dezember 2013 (SächsGVBl. S. 890, 891)

9. 베를린 집회법

옥외집회 및 행진에서의 촬영·녹음과 영상·음향 자료화에 관한 법률

2013년 04월 23일 제정

2013년 04월 28일 발효

제1조 촬영·녹음의 실행

① 경찰은, 그들로부터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나온다는 사실적 근거가 이를 정당화하는 경우에 한하여 옥외공개집회나 행진 시 또는 그와 관련하여 그 참가자들에 대한 촬영·녹음을 할 수 있다. 그 조치는 제3자가 불가피하게 관계되는 경우에도 또한 시행될 수 있다.

② 그 자료들은, 다음 각 호의 1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닌 한 공개집회 또는 그와 시적 물적으로 직접적 관계가 있는 사건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파기되어야 한다.

1. 참가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소추 또는
2. 관계인이 공개집회에서 또는 공개집회와 관련하여 범죄를 준비하거나 범하였다는 의심이 있고, 그로 인하여 장래의 공개집회 또는 행진에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 그 위험

방지.

제1문 제2호에서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파기되지 아니한 자료들은, 도중에 제1문 제1호에서 규정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닌 한, 당해 자료가 생성된 때로부터 늦어도 3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③ 그 외에 경찰은, 개별적인 사안에 있어 집회의 규모 또는 조망불가능성으로 인하여 경찰투입을 유도하고 지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적으로만 옥외집회 및 행진과 그 주변에 대한 조망촬영을 할 수 있다. 조망촬영은 공개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조망영상 자료화나 참가자의 신원 확인에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조망촬영의 실행은 지체 없이 집회주관자에게 알려야 한다. *

각주 (생략)

제2조 집회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의 제한

이 법은 집회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기본법 제8조)을 제한한다.

제3조 집회법 제19a조 대체

이 법은 집회법 제19a조를 대체한다.

제4조 발효

이 법은 베를린 법령공보에 공포한 다음 날에 발효된다.

Gesetz über Aufnahmen und Aufzeichnungen von Bild und Ton bei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und Aufzügen Vom 23. April 2013

Das Abgeordnetenhaus hat das folgende Gesetz beschlossen:

§ 1 [Anfertigung von Bild- und Tonaufnahmen]

(1) Die Polizei darf Bild- und Tonaufnahmen von Teilnehmerinnen und Teilnehmern bei oder im Zusammenhang mit öffentlichen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und Aufzügen nur anfertigen, wenn tatsächliche Anhaltspunkte die Annahme rechtfertigen, dass von ihnen erhebliche Gefahren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oder Ordnung ausgehen. Die Maßnahmen dürfen auch durchgeführt werden, wenn Dritte unvermeidbar betroffen werden.

(2) Die Unterlagen sind nach Beendigung der öffentlichen Versammlung oder zeitlich und sachlich damit unmittelbar im Zusammenhang stehender Ereignisse unverzüglich zu vernichten, soweit sie nicht benötigt werden

1. für die Verfolgung von Straftaten von Teilnehmerinnen und Teilnehmern oder

2. im Einzelfall zur Gefahrenabwehr, weil die betroffene Person verdächtig ist, Straftaten bei oder im Zusammenhang mit der öffentlichen Versammlung vorbereitet oder begangen zu haben, und deshalb zu besorgen ist, dass von ihr erhebliche Gefahren für künftige öffentliche Versammlungen oder Aufzüge ausgehen.

Unterlagen, die aus den in Satz 1 Nummer 2 aufgeführten Gründen nicht vernichtet wurden, sind in jedem Fall spätestens nach Ablauf von drei Jahren seit ihrer Entstehung zu vernichten, es sei denn, sie würden inzwischen zu dem in Satz 1 Nummer 1 aufgeführten Zweck benötigt.

(3) Im übrigen darf die Polizei Übersichtsaufnahmen von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und Aufzügen sowie ihrem Umfeld nur anfertigen, wenn dies wegen der Größe oder Unübersichtlichkeit der Versammlung oder des Aufzuges im Einzelfall zur Lenkung und Leitung des Polizeieinsatzes erforderlich ist. Die Übersichtsaufnahmen sind offen anzufertigen und dürfen weder aufgezeichnet noch zur Identifikation der Teilnehmerinnen und Teilnehmer genutzt werden. Die Versammlungsleitung ist unverzüglich über die Anfertigung von Übersichtsaufnahmen in Kenntnis zu setzen. *)

Fußnoten

* [Red. Anmerkung: Entsprechend der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hofes des Landes Berlin vom 11.04.2014 - VerfGH 129/13 (GVBl. S. 103) gilt:

“§ 1 Absatz 3 des Gesetzes über Aufnahmen und Aufzeichnungen von Bild und Ton bei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und

Aufzügen vom 23. April 2013 (GVBl. S. 103) ist mit der Verfassung von Berlin vereinbar.

Das Verfahren ist gerichtskostenfrei.

Auslagen werden nicht erstattet.

Die vorstehende Entscheidungsformel hat gemäß § 30 Absatz 2 des Gesetzes über den Verfassungsgerichtshof Gesetzeskraft.”]

§ 2 [Einschränkung des Grundrechts der Versammlungsfreiheit]

Dieses Gesetz schränkt das Grundrecht der Versammlungsfreiheit (Artikel 8 des Grundgesetzes) ein.

§ 3 [Ersatz von § 19a VersammlG]

Dieses Gesetz ersetzt § 19a des Versammlungsgesetzes.

§ 4 [Inkrafttreten]

Dieses Gesetz tritt am Tage nach der Verkündung im Gesetz- und Verordnungsblatt für Berlin in Kraft.

Berlin, den 23. April 2013

Der Präsident des Abgeordnetenhauses von Berlin

Ralf Wieland

Das vorstehende Gesetz wird hiermit verkündet.

Der Regierende Bürgermeister

Klaus Wowereit

10. 쉐레스비히-홀슈타인 집회법

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집회자유법

2015년 6월 18일 제정

2015년 7월 01일 발효

제1장 총칙

제1조 집회의 자유

- ① 누구든지 신고나 허가 없이 평화적으로 그리고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집회를 하고 집회를 주최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기본법 제18조에 의해 집회의 자유에 관한 기본권이 박탈된 자는 전항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2조 공개집회의 정의

- ① 이 법에서 의미하는 집회란 공동의, 주로 공적인 의사형성에의 참여를 위한 토론이나 시위를 목적으로 하는 적어도 3인 이상의 장소적 회합을 말한다. 행진은 움직이는 집회이다.
- ② 집회는 그에의 참가가 개별적으로 확정된 인적 범위에 한정되지 않거나 집회가 그 주변의 공중에 대한 선언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공개적이다.

③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은 공개 및 비공개 집회에 모두 적용된다.

제3조 보호 직무 및 협력

① 공공행정 담당자는 그에게 이양된 직무 범위 내에서 평화적인 집회를 보호하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작용을 한다.

② 관할 관청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이 법에 따라 허용된 집회의 거행을 지원하는 것,
2. 질서문란행위로부터 집회의 거행을 보호하는 것,
3. 집회로부터 또는 집회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나오는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는 것.

③ 집회의 종류 및 규모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관할 관청은 공개 집회의 주최자 또는 그 주관권을 양도받은 사람에게 집회의 질서 있는 거행을 위하여 긴요한 위험상태 기타 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협력대화를 적시에 제안한다. 제13조 제1항, 제20조 제1항에 따라 금지나 제한을 할 수 있는 위협의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 예정된 집회에 대한 보충적 신고 또는 변경을 통하여 금지나 제한을 불필요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④ 집회의 종류 및 규모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 관할 관청은 공개 집회의 주최자 또는 그 주관권을 양도받은 사람에게 집회 전 또는 도중에 위험상태의 현저한 변경에 관하여 협력의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한다. 갈등관리는 협력의 구성요소이다.

제4조 집회의 주최

어떤 집회에 타인을 초청하는 자 또는 제11조에 따라 집회 신고를 하는

자가 집회를 주최한다.

제5조 집회의 주관

- ① 주최자가 집회를 주관한다. 단체가 집회를 주최하는 경우, 그 단체의 대표자가 집회를 주관한다. 주최자는 집회의 주관을 어떤 자연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② 집회의 주관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은 주관자가 특정된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집회에도 적용된다.

제6조 집회주관자의 권한

- ① 집회주관자는 집회의 질서 있는 진행을 위해 진력하고 집회의 평화가 유지되도록 한다. 그는 집회를 언제라도 중단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 ② 집회주관자는 질서유지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질서유지인은 옥외 집회에서 단지 “질서유지인”이라고만 표시할 수 있는 흰 완장을 착용함으로써 식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집회참가자에 대한 이 법의 규정은 질서유지인에게도 또한 적용된다.
- ③ 집회에서 질서 유지를 위한 집회주관자 또는 질서유지인의 지시에 복종하여야 한다.
- ④ 집회주관자는 집회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자를 집회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집회로부터 배제된 자는 지체 없이 그 장소를 떠나야 한다.

제7조 질서문란행위 금지

집회의 거행을 현저히 방해하거나 좌절시킬 의도로 질서문란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8조 무기 및 제복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1. 무기 또는
2. 그 성질상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에 현저한 손상을 초래하는 데 적합하고 상황에 따라 그러함이 확실한 기타의 물건을 집회에서 또는 집회에 가거나 오는 도중에 소지하거나, 집회장소로 운반하거나 또는 집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준비하거나 배포하는 것

② 집회에서 제복, 제복의 일부 또는 기타 통일적인 외관을 전달하는 의복의 착용을 통하여 다른 참가자들과 협력하여 폭력지향의 인상을 전달하고 그것을 통하여 위협적 효과가 나타나기에 적합하고 확실한 어떤 방식으로 등장하는 것은 금지된다.

③ 관할 관청은 위 금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금지의 대상이 되는 물건 또는 행태가 묘사되어 있는 명령을 발한다.

제9조 주 행정법률의 적용

① 이 법에서 개개의 참가자들에 대응하여 위협의 방지를 규정하지 않는 한, 그 조치 시점에 인식 가능한 상황에 따르면 집회 거행 전이나 도중 또는 그에 이어서 공공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그들로부터 나오는 경우 주 행정법률에 따라 그들에 대응하는 조치가 허용된다.

② 옥내집회의 경우 제1항은 참가자로부터 제20조 제1항에서 의미하는 위협이 나오는 사안에 적용된다.

③ 집회 개시 전 집회예의 참가를 저지하는 조치는 제14조에 따른 참가

금지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제10조 경찰의 참석

경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집회에 참석할 수 있다.

1. 옥외집회의 경우, 그것이 이 법에 따른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
2. 옥내집회의 경우, 집회의 평화성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제1문에 따라 참석하는 경찰부대는 집회주관자에게 그 신분을 밝혀야 한다, 옥외집회의 경우 이는 경찰의 현장책임자가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제2장 옥외집회

제11조 신고

- ① 옥외공개집회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늦어도 그 집회로의 초청 48시간 이전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여러 사람이 집회를 주최하는 경우에 하나의 신고만 제출할 수 있다.
- ② 신고에는 시간, 장소 및 목적에 따른 집회의 예정 경과가 기재되어야 하고, 행진의 경우 그 예정 진로도 포함되어야 한다. 신고에는 신고자 및 주관자가 정해진 경우 그 사람의 성명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집회주관자가 나중어야 정해진 경우 내정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관할 관청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집회주관자가 질서유지인의 조력을 받는 경우, 이를 그 예정 인원수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에 본질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관할 관청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1문에 따른 기한의 준수로 인해 집회의 목적이 위태롭게 되는 경우(긴급집회), 그 집회는 늦어도 그 초청과 동시에 관할 관청 또는 경찰에 신고 되어야 한다.

⑥ 집회가 즉흥적 결의에 의하여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우발적 집회) 신고의무는 면제된다.

제12조 허가 면제

옥외공개집회에 대하여 공용 도로의 사용과 관련된 관청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제한, 금지, 해산

① 관할 관청은, 그 조치 발령 시 인식 가능한 상황에 따르면 옥외집회의 거행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되는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집회 개시 후에는 해산도 할 수 있다.

② 금지 또는 해산은 제한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③ 제3자로부터 공공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나오는 경우 그에 대응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것을 통하여 또한 주 또는 연방 단위로 가용한 경찰병력의 개입으로도 그 위험이 방지될 수 없는 경우 그 위험이 나오는 곳이 아닌 집회에 대하여도 그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한 집회에 대한 금지나 해산은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 또는 현저한 가치의 물적 재산에 대한 위험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④ 관할 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옥외집회의 거행을 제한

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집회 개시 이후에는 해산할 수 있다.

1. 나치의 폭력적 및 자의적 통치 하에서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은 희생자에 대한 추모일로 정해진 날짜에 집회가 개최되는 경우, 그리고
2. 그 처분 발령 시 인식 가능한 상황에 따르면 집회를 통하여 나치의 폭력적 및 자의적 통치를 승인, 찬양 또는 정당화하고 그로 인하여 공공의 평화가 문란하게 될 직접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제1문의 날짜는 1월 27일 및 11월 9일이다.

- ⑤ 제한 처분 또는 금지가 발하여져야 할 경우, 그러한 처분을 정당화하는 전제조건이 확정된 후 지체 없이 집회주관자 및 참가자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⑥ 집회 개시 이후의 제한 처분 또는 해산의 공지는 그 조치의 이유를 첨부하여 행해져야 한다. 제1문의 처분에 대한 이의 및 취소소송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 ⑦ 집회가 해산되었다고 선언되자마자 참석한 모든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장소를 떠나야 한다.
- ⑧ 해산된 집회 대신으로 같은 장소에서 대체집회를 거행하는 것은 금지된다.
- ⑨ 공연히, 인터넷 상에서 또는 문서배포, 음향 또는 영상매체, 정보저장장치, 삽화 또는 기타의 표현물을 통하여, 집행 가능한 금지명령에 의하여 그 거행이 금지되거나 집행 가능한 해산명령이 발하여진 옥외집회への 참가를 권유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14조 사람의 참가 또는 현존의 금지 및 배제

- ① 관할 관청은, 그 처분 발령 시 인식 가능한 상황에 따르면 집회의

거행을 통하여 공공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경우 그 옥외집회에 그 사람이 참가 또는 현존하는 것을 집회 개시 전에 직접 금지할 수 있다.

② 집회에서 그 행태를 통하여 공공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사람임에도 집회주관자가 이를 저지하지 않거나, 제6조 제3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사람은 관할 관청에 의해 배제될 수 있다. 집회에서 배제된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장소를 떠나야 한다.

제15조 수색 및 신원확인

① 무기를 소지하거나 제8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 또는 제17조 소정의 물건 사용으로 옥외공개집회의 거행에 있어 공공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적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 사람과 물건을 수색할 수 있다. 발견된 제1문 소정의 물건은 영치할 수 있다. 수색의 집행은 쉴레스비히-홀슈타인 주 행정법률에 따른다.

② 신원확인 및 그 밖의 경찰 및 질서법적 또는 형사소송법적 조치는, 임박해 있는 제8조 또는 제17조 위반 또는 경죄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사실적 근거가 집회 장소, 행진 구역 또는 그곳으로 직접 가는 길에서 밝혀지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제16조 영상·음향 전송 및 자료화

① 경찰은, 어떤 사람으로부터 공공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나온다는 사실이 이를 정당화하는 경우에 한하여 옥외공개집회 시 또는 그와 관련하여 그 사람을 촬영·녹음하고 그에 상응하는 영상·음향 자료화를 할 수 있다. 영상·음향 자료화는 다른 사람이 불가피하게 관계되는 경우에도 또한 할 수 있다.

② 경찰은, 집회의 규모 또는 조망불가능성으로 인하여 필요하고 그 집회 참가자로부터 공공의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협이 나온다는 사실적 근거가 이를 정당화 경우에 한하여 경찰투입을 유도하고 지휘하기 위하여 옥외 공개집회와 그 주변에 대한 실시간 영상·음향 전송(조망촬영)을 할 수 있다.

③ 촬영·녹음 및 영상·음향 자료화를 위한 기술의 사용은 공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영상·음향 자료화 및 제2항에 따른 조망 촬영의 시행은 집회주관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영상·음향 자료화에 관계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람의 신원이 확인되고 영상·음향 자료화의 허용된 사용목적이 위태롭지 않게 되는 즉시 그 조치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그 조치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관계된 제1항 제2문 소정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신원확인이 과도한 수사에 의해서만 가능하거나 다른 관계인의 우월한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아도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영상·음향 자료는 집회 또는 그와 시적 및 물적으로 직접적 관계가 있는 사건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이는 다음 각 호의 1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집회에서 또는 집회와 관련한 범죄행위나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질서위반행위의 소추,
2. 관계인으로부터 집회에서 또는 집회와 관련하여 형법을 위반하려는 구체적 위협이 나오고 장래의 집회에 그로부터 형법을 위반하려는 위협이 새로이 나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위협 방지,
3. 공공의 안전에 대한 방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 대응의 기한 있는 문서화를 위하여, 또는
4. 경찰의 양성교육 및 재교육 목적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그것에 의한 사람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든

특별판을 제작하여야 한다.

제2문에서 거론한 사유로 인하여 파기되지 아니한 영상·음향 자료는, 도중에 제2문 제1호에 따른 범죄행위의 소추, 제2호에 따른 위협 방지 또는 제3호에 따른 문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닌 한, 당해 자료가 생성된 때로부터 늦어도 6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영상·음향 자료의 파기는 문서화되어야 한다. 영상·음향 자료는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거론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영상·음향 자료화 및 제4항에 따른 사용의 각 이유는 문서화되어야 한다. 제1문은 제1항에 따른 촬영·녹음 및 제2항에 따른 조망촬영의 문서화에 준용된다. 영상·음향 자료로부터 경찰의 양성교육 및 재교육을 위한 특별판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된 특별판의 수 및 그 보관 장소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⑥ 경찰의 관청 정보보호담당관은 제4항 제4문 및 제5항에 따른 문서화 의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17조 변장 및 호신장구 금지

① 옥외집회에서 또는 그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건을 소지하는 것은 금지된다.

1. 사람의 신원을 은폐하기에 적합하고 상황에 따라 범죄행위 또는 질서위반행위 소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람의 신원 확인을 방해하기 적절한 물건, 또는
2. 호신장구로 적합하고 상황에 따라 고권적 권한을 가진 당국자의 집행조치를 저지하기에 적절한 물건.

② 관할 관청은 위 금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금지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묘사되어 있는 명령을 발한다.

제18조 사유지 내 공용 도로

공중에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사유지 내의 공용 도로 상에서는, 그것이 기업의 소유이거나 전적으로 (공공재산의 관리자로서의) 국가의 소유이거나 그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개집회를 거행할 수 있다.

제3장 옥내집회

제19조 초청

- ① 옥내공개집회를 개최하는 자는 그 초청 시에 특정된 인물 또는 인적 범위에 대하여 집회 참가를 배제할 수 있다.
- ② 옥내공개집회의 주관자는, 인정된 기자증으로 그 신분을 증명한 언론사 기자들의 참석을 저지할 수 없다.

제20조 제한, 금지, 해산

- ① 관할 관청은, 그 조치 발령 시 인식 가능한 상황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1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있는 경우 옥내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집회 개시 후에는 해산도 할 수 있다.
 1. 집회의 평화롭지 않은 진행,
 2. 사람의 생명과 건강 또는
 3. 집회에서 증좌 또는 직권으로 소추 가능한 경죄를 나타내는 발언이 행해지는 것을 위해 존속되는 것.
- ② 금지 또는 해산은 제한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 ③ 제3자로부터 제1항에 거론된 법익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나오는 경우

그에 대응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것을 통하여 또한 직무상 또는 집행상 원조를 통하여 보충되는 수단과 인력으로도 그 위험이 방지될 수 없는 경우 그 위험이 나오는 곳이 아닌 집회에 대하여도 그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한 처분 또는 금지가 발하여져야 할 경우, 그러한 처분을 정당화하는 전제조건이 확정된 후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집회 개시 이후의 제한 처분 또는 해산의 공지는 그 조치의 이유를 첨부하여 집회주관자에게 행해져야 한다. 제2문의 처분에 대한 이의 및 취소소송에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⑤ 집회가 해산되었다고 선언되자마자 참석한 모든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장소를 떠나야 한다.

⑥ 해산된 집회 대신으로 같은 장소에서 대체집회를 거행하는 것은 금지된다.

⑦ 공연히, 인터넷 상에서 또는 문서배포, 음향 또는 영상매체, 정보저장 장치, 삽화 또는 기타의 표현물을 통하여, 집행 가능한 금지명령에 의하여 그 거행이 금지되거나 집행 가능한 해산명령이 발하여진 옥내집회への 참가를 권유하는 것은 금지된다.

제21조 질서문란자의 배제: 가택권

① 집회를 주관하는 자는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는 참가자를 집회로부터 배제할 수 있다.

② 집회를 주관하는 자는 다른 참가자에 대하여 가택권을 행사한다.

제22조 촬영·녹음 및 영상·음향 자료화

① 제20조 제1항의 요건 하에 경찰은 옥내공개집회 시 또는 그와 관련하여 어떤 사람에 대한 촬영·녹음과 그에 상응한 영상·음향 자료화를 할 수 있다. 영상·음향 자료화는 다른 사람이 불가피하게 관계되는 경우에도 또한 정당화 될 수 있다. 촬영·녹음 및 영상·음향 자료화는 공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상·음향 자료화의 대상이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람의 신원이 확인되고 허용된 사용목적이 위태롭지 않게 되는 즉시 그 조치에 대하여 알려야 한다. 그 조치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관계된 제1항 제2문 소정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신원확인이 과도한 수사에 의해서만 가능하거나 다른 관계인의 우월한 보호가치 있는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않아도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상·음향 자료는 집회 또는 그와 시적 및 물적으로 직접적 관계가 있는 사건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이는 다음 각 호의 1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 제20조 제1항 소정의 위험이 나오는 사람에 대한 집회에서의 또는 집회와 관련한 범죄행위나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질서위반 행위의 소추 또는
2. 관계인으로부터 집회에서 또는 집회와 관련하여 제20조 제1항 소정의 위험이 나옉고 장래의 집회에 그로부터 제17조 제1항 소정의 위험이 새로이 나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위험 방지.

제2문에서 거론한 사유로 인하여 파기되지 아니한 영상·음향 자료는, 도중에 제2문 제1호에 따른 범죄행위의 소추, 제2호에 따른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법률상 구제(불복신청)나 사법 절차의 대상물이나

증거물인 경우가 아닌 한, 당해 자료가 생성된 때로부터 늦어도 6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영상·음향 자료의 파기는 문서화되어야 한다. 영상·음향 자료는 제16조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거론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영상·음향 자료화 그리고 제3항에 따른 사용의 각 이유는 문서화되어야 한다.

⑤ 경찰의 관청 정보보호담당관은 제3항 제4문 및 제4항에 따른 문서화 의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4장 범죄행위, 질서위반행위, 몰수, 비용

제23조 범죄행위

① 금지되지 않은 집회를 저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거행을 좌절케 할 의도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무기 또는 제8조 제1항 제2호에 위반한 물건을 집회에서 또는 집회에 가는 길에 또는 집회 직후에 소지하거나, 집회장소로 운반하거나 또는 집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준비하거나 배포한 자는 그 행위가 무기법 제52조 제3항 제9호에 따라 처벌될 위험이 없는 경우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공개집회에서 무장한 질서유지인을 사용한 자도 같은 형에 처한다.

③ 적법하게 질서유지권을 행사하는 집회의 주관자 또는 질서유지인에 대항하여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으로 협박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질서유지권을 행사하는 도중에 그에게 폭력을 가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제24조 질서위반행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질서위반으로 취급된다.

1. 제11조에 의해 필요한 신고 없이 또는 제11조 제2항 소정의 사항이 포함되지 않거나 본질적인 관점에서 부정확하게 포함된 신고를 한 다음 옥외공개집회를 거행한 자,
2. 집회 거행이 집행 가능하게 금지되거나 집회 해산이 집행 가능하게 명령된 집회에의 참가를 호소한 자,
3. 그에 관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금지되지 않은 집회 또는 행진을 저지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거행을 좌절케 할 의도로 심각한 질서문란행위를 야기한 자,
4. 신고(제11조)의 내용과 본질적으로 다르게 옥외공개집회를 거행한 주최자 또는 주관자,
5. 제13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그리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 하에 관할 관청에 의해 또는 사법적 긴급권리보호 절차에서 발하여진 집행 가능한 제한 처분, 금지 또는 해산에 위반한 주관자 또는 주최자,
6. 제13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 그리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 하에 관할 관청에 의해 또는 사법적 긴급권리보호 절차에서 발하여진 집행 가능한 제한 처분, 금지 또는 해산에 위반한 참가자,
7. 제복 금지(제8조 제2항) 또는 변장 및 호신장구 금지(제17조)를 실행 하기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집회에의 참가나 현존의 금지 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참석하거나 또는 제14조 제2항,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배제 명령 이후에 지체 없이 그 장소를 떠나지 아니한 자,

9. 제13조, 제20조의 요건 하에 이루어진 집회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장소를 떠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 제1호, 제6호, 제8호, 제9호 소정의 질서위반행위는 500유로 이하의, 제1항 제3호, 제4호, 제7호 소정의 질서위반행위는 1,000유로 이하의, 제1항 제2호 및 제5호 소정의 질서위반행위는 2,000유로 이하의 범칙금에 각 처해질 수 있다.

제25조 몰수

제23조 소정의 범죄행위 또는 제24조 소정의 질서위반행위에 관계된 물건은 몰수할 수 있다. 형법 제74a조와 질서위반행위법 제23조가 적용된다.

제26조 비용

이 법에 따른 직무행위는 무료이다.

제5장 종결규정

제27조 관할

① 자치단체장으로서의 독립 시의 시장 및 군수는 옥외집회(제3조 제3항,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4항,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사물관할권을 가진다.

② 읍면장, 관공서의 장, 명예기관장은 옥내집회(제3조 제3항, 제20조)에 대하여 사물관할권을 가진다.

③ 그 관할 구역 내에서 집회가 개최되는 관청은 토지 관할권을 가진다. 옥외집회가 여러 자치단체장의 관할 범위에 관계되는 경우, 공통의 감독

기관이 관할 관청을 결정한다.

- ④ 내무 및 연방사무부는 지방행정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쉴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 해변해양 및 그 구역 내의 교량과 터널에서 개최되는 옥외공개집회 및 행진의 신고 접수에 대하여 사물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내무 및 연방사무부는 제3조 제3항, 제11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 제13조 제1항, 제4항, 제14조 제1항, 제2항, 제17조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대한 토지관할 관청을 결정한다.
- ⑤ 유예할 수 없는 사안의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대신하여 경찰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 기본권의 제한

집회의 자유(기본법 제8조 제1항), 표현의 자유(기본법 제5조 제1항 제1문)에 관한 기본권, 정보의 자기결정권(기본법 제1조 제1항과 결합된 제2조 제1항) 및 재산권(기본법 제14조 제1항 제1문)은 이 법에 따라서 제한된다.

Versammlungsfreiheitsgesetz für das Land Schleswig-Holstein (VersFG SH) Vom 18. Juni 2015 *

Fußnoten

* Verkündet als Artikel 1 des Gesetzes zum Versammlungsrecht in Schleswig-Holstein vom 18. Juni 2015 (GVObI. S. 135)

Übersicht

Abschnitt 1 Allgemeine Regelungen

- § 1 Versammlungsfreiheit
- § 2 Begriff der öffentlichen Versammlung
- § 3 Schutzaufgabe und Kooperation
- § 4 Veranstaltung einer Versammlung
- § 5 Versammlungsleitung
- § 6 Befugnisse der Versammlungsleitung
- § 7 Störungsverbot
- § 8 Waffen- und Uniformverbot
- § 9 Anwendbarkeit des Landesverwaltungsgesetzes (LVwG)
- § 10 Anwesenheit der Polizei

Abschnitt 2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 § 11 Anzeige
- § 12 Erlaubnisfreiheit
- § 13 Beschränkungen, Verbot, Auflösung
- § 14 Untersagung der Teilnahme oder Anwesenheit und Ausschluss von Personen
- § 15 Durchsuchungen und Identitätsfeststellungen
- § 16 Bild- und Tonübertragungen und -aufzeichnungen
- § 17 Vermummungs- und Schutzausrüstungsverbot
- § 18 Öffentliche Verkehrsflächen im Privateigentum

Abschnitt 3 Versammlungen in geschlossenen Räumen

- § 19 Einladung
- § 20 Beschränkungen, Verbot, Auflösung
- § 21 Ausschluss von Störern, Hausrecht
- § 22 Aufnahmen und Aufzeichnungen von Bild und Ton

Abschnitt 4 Straftaten, Ordnungswidrigkeiten, Einziehung, Kosten

- § 23 Straftaten
- § 24 Ordnungswidrigkeiten
- § 25 Einziehung
- § 26 Kosten

Abschnitt 5 Schlussbestimmungen

- § 27 Zuständigkeitsregelungen
- § 28 Einschränkung von Grundrechten

Abschnitt 1 Allgemeine Regelungen

§ 1 Versammlungsfreiheit

(1) Jede Person hat das Recht, sich ohne Anmeldung oder Erlaubnis friedlich und ohne Waffen mit anderen zu versammeln und Versammlungen zu veranstalten.

(2) Dieses Recht hat nicht, wer das Grundrecht der Versammlungsfreiheit gemäß Artikel 18 des Grundgesetzes verwirkt hat.

§ 2 Begriff der öffentlichen Versammlung

(1) Versammlung im Sinne dieses Gesetzes ist eine örtliche Zusammenkunft von mindestens drei Personen zur gemeinschaftlichen, überwiegend auf die Teilhabe an der öffentlichen Meinungsbildung gerichteten Erörterung oder Kundgebung. Aufzug ist eine sich fortbewegende Versammlung.

(2) Eine Versammlung ist öffentlich, wenn die Teilnahme nicht auf einen individuell bestimmten Personenkreis beschränkt ist oder die Versammlung auf eine Kundgebung an die Öffentlichkeit in ihrem räumlichen Umfeld gerichtet ist.

(3) Soweit nichts anderes bestimmt ist, gilt dieses Gesetz sowohl für öffentliche als auch für nichtöffentliche Versammlungen.

§ 3 Schutzaufgabe und Kooperation

(1) Die Träger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wirken im Rahmen der ihnen übertragenen Aufgaben darauf hin, friedliche Versammlungen

zu schützen und die Versammlungsfreiheit zu wahren.

(2) Aufgabe der zuständigen Behörde ist es,

1. die Durchführung einer nach Maßgabe dieses Gesetzes zulässigen Versammlung zu unterstützen,
2. ihre Durchführung vor Störungen zu schützen,
3. von der Versammlung oder im Zusammenhang mit dem Versammlungsgeschehen von Dritten ausgehende Gefahren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abzuwehren.

(3) Soweit es nach Art und Umfang der Versammlung erforderlich ist, bietet die zuständige Behörde der Person, die eine öffentliche Versammlung veranstaltet oder der die Leitung übertragen worden ist, rechtzeitig ein Kooperationsgespräch an, um die Gefahrenlage und sonstige Umstände zu erörtern, die für die ordnungsgemäße Durchführung der Versammlung wesentlich sind. Bestehen Anhaltspunkte für Gefährdungen, die gemäß § 13 Absatz 1, § 20 Absatz 1 zu einem Verbot oder Beschränkungen führen können, ist Gelegenheit zu geben, durch ergänzende Angaben oder Veränderungen der beabsichtigten Versammlung ein Verbot oder Beschränkungen entbehrlich zu machen.

(4) Im Rahmen der Kooperation informiert die zuständige Behörde die Person, die eine öffentliche Versammlung veranstaltet oder der die Leitung übertragen worden ist, vor und während der Versammlung über erhebliche Änderungen der Gefahrenlage, soweit dieses nach Art und Umfang der Versammlung erforderlich ist. Konfliktmanagement ist Bestandteil der Kooperation.

§ 4 Veranstaltung einer Versammlung

Wer zu einer Versammlung einlädt oder die Versammlung nach § 11 anzeigt, veranstaltet eine Versammlung.

§ 5 Versammlungsleitung

(1) Die Veranstalterin oder der Veranstalter leitet die Versammlung. Wird die Versammlung von einer Vereinigung veranstaltet, wird sie von der Person geleitet, die deren Vorsitz führt. Die Veranstalterin oder der Veranstalter kann die Leitung einer anderen Person übertragen.

(2) Die Vorschriften dieses Gesetzes über die Versammlungsleitung gelten für nichtöffentliche Versammlungen nur, wenn eine Versammlungsleitung bestimmt ist.

§ 6 Befugnisse der Versammlungsleitung

(1) Die Versammlungsleitung sorgt für den ordnungsgemäßen Ablauf der Versammlung und wirkt auf deren Friedlichkeit hin. Sie darf die Versammlung jederzeit unterbrechen oder schließen.

(2) Die Versammlungsleitung kann sich der Hilfe von Ordnerinnen und Ordnern bedienen. Diese müssen bei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durch weiße Armbinden, die nur die Bezeichnung “Ordnerin” oder “Ordner” tragen dürfen, kenntlich sein. Die Vorschriften dieses Gesetzes für Teilnehmerinnen und Teilnehmer der Versammlung gelten auch für Ordnerinnen und Ordner.

(3) Die zur Aufrechterhaltung der Ordnung in der Versammlung

getroffenen Anweisungen der Versammlungsleitung und der Ordnerinnen und Ordner sind zu befolgen.

(4) Die Versammlungsleitung darf Personen, welche die Ordnung der Versammlung erheblich stören, aus der Versammlung ausschließen. Wer aus der Versammlung ausgeschlossen wird, hat sich unverzüglich zu entfernen.

§ 7 Störungsverbot

Es ist verboten, eine Versammlung mit dem Ziel zu stören, deren Durchführung erheblich zu behindern oder zu vereiteln.

§ 8 Waffen- und Uniformverbot

(1) Es ist verboten,

1. Waffen oder
2. sonstige Gegenstände, die ihrer Art nach zur Verletzung von Personen oder zur Herbeiführung erheblicher Schäden an Sachen geeignet und den Umständen nach dazu bestimmt sind, bei Versammlungen oder auf dem Weg zu oder von Versammlungen mit sich zu führen, zu Versammlungen hinzuschaffen oder sie zur Verwendung bei Versammlungen bereitzuhalten oder zu verteilen.

(2) Es ist verboten, in einer Versammlung durch das Tragen von Uniformen oder Uniformteilen oder sonst ein einheitliches Erscheinungsbild vermittelnden Kleidungsstücken in einer Art und Weise aufzutreten,

die dazu geeignet und bestimmt ist, im Zusammenwirken mit anderen teilnehmenden Personen den Eindruck von Gewaltbereitschaft zu vermitteln und dadurch einschüchternd zu wirken.

(3) Die zuständige Behörde trifft zur Durchsetzung des Verbots Anordnungen, in denen die vom Verbot erfassten Gegenstände oder Verhaltensweisen bezeichnet sind.

§ 9 Anwendbarkeit des Landesverwaltungsgesetzes (LVwG)

(1) Soweit dieses Gesetz die Abwehr von Gefahren gegenüber einzelnen Teilnehmerinnen und Teilnehmern nicht regelt, sind Maßnahmen gegen sie nach dem Landesverwaltungsgesetz zulässig, wenn von ihnen nach den zum Zeitpunkt der Maßnahme erkennbaren Umständen vor oder bei der Durchführung der Versammlung oder im Anschluss an sie eine unmittelbare Gefahr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ausgeht.

(2) Für Versammlungen in geschlossenen Räumen gilt Absatz 1 für den Fall, dass von den Teilnehmerinnen oder Teilnehmern eine Gefahr im Sinne von § 20 Absatz 1 ausgeht.

(3) Maßnahmen vor Beginn der Versammlung, welche die Teilnahme an der Versammlung unterbinden sollen, setzen eine Teilnahmeuntersagung nach § 14 voraus.

§ 10 Anwesenheit der Polizei

Die Polizei kann anwesend sein

1. bei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wenn dies zur polizeilichen Aufgabenerfüllung nach diesem Gesetz erforderlich ist,
2. bei Versammlungen in geschlossenen Räumen, wenn dies zur Abwehr einer unmittelbaren Gefahr für die Friedlichkeit der Versammlung erforderlich ist.

Nach Satz 1 anwesende Polizeikräfte haben sich der Versammlungsleitung zu erkennen zu geben; bei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genügt es, wenn dies durch die polizeiliche Einsatzleitung erfolgt.

Abschnitt 2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 11 Anzeige

- (1) Wer eine öffentliche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veranstalten will, hat dies der zuständigen Behörde spätestens 48 Stunden vor der Einladung zu der Versammlung anzuzeigen. Veranstalten mehrere Personen eine Versammlung, ist nur eine Anzeige abzugeben.
- (2) Die Anzeige muss den geplanten Ablauf der Versammlung nach Ort, Zeit und Thema bezeichnen, bei Aufzügen auch den beabsichtigten Streckenverlauf. Sie muss Name und Anschrift der anzeigenden Person und der Person, die sie leiten soll, sofern eine solche bestimmt ist, enthalten.
- (3) Wird die Versammlungsleitung erst später bestimmt, sind Name und Anschrift der vorgesehenen Person der zuständigen Behörde

unverzüglich mitzuteilen. Wenn die Versammlungsleitung sich der Hilfe von Ordnerinnen und Ordnern bedient, ist ihr Einsatz unter Angabe der Zahl der dafür voraussichtlich eingesetzten Personen der zuständigen Behörde mitzuteilen.

(4) Wesentliche Änderungen der Angaben nach Absatz 1 bis 3 sind der zuständigen Behörde unverzüglich mitzuteilen.

(5) Wenn der Zweck der Versammlung durch eine Einhaltung der Frist nach Absatz 1 Satz 1 gefährdet würde (Eilversammlung), ist die Versammlung spätestens mit der Einladung bei der zuständigen Behörde oder bei der Polizei anzuzeigen.

(6) Die Anzeigepflicht entfällt, wenn sich die Versammlung aufgrund eines spontanen Entschlusses augenblicklich bildet (Spontanversammlung).

§ 12 Erlaubnisfreiheit

Für eine öffentliche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sind keine behördlichen Erlaubnisse erforderlich, die sich auf die Benutzung der öffentlichen Verkehrsflächen beziehen.

§ 13 Beschränkungen, Verbot, Auflösung

(1)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die Durchführung einer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beschränken oder verbieten, die Versammlung nach deren Beginn auch auflösen, wenn nach den zur Zeit des Erlasses der Maßnahmen erkennbaren Umständen die öffentliche Sicherheit bei Durchführung der Versammlung unmittelbar gefährdet ist.

(2) Verbot oder Auflösung setzen voraus, dass Beschränkungen nicht ausreichen.

(3) Geht eine unmittelbare Gefahr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von Dritten aus, sind Maßnahmen der Gefahrenabwehr gegen diese zu richten. Kann dadurch die Gefahr auch unter Heranziehung von landesoder bundesweit verfügbaren Polizeikräften nicht abgewehrt werden, dürfen Maßnahmen nach den Absätzen 1 oder 2 auch zulasten der Versammlung ergriffen werden, von der die Gefahr nicht ausgeht. Ein Verbot oder die Auflösung dieser Versammlung setzt Gefahren für Leben oder Gesundheit von Personen oder für Sachgüter von erheblichem Wert voraus.

(4)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die Durchführung einer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beschränken oder verbieten, die Versammlung nach deren Beginn auflösen, wenn

1. die Versammlung an einem Tag stattfindet, der zum Gedenken an die Opfer der menschenunwürdigen Behandlung unter der nationalsozialistischen Gewalt- und Willkürherrschaft bestimmt ist, und
2. nach den zur Zeit des Erlasses der Verfügung erkennbaren Umständen die unmittelbare Gefahr besteht, dass durch die Versammlung die nationalsozialistische Gewalt- und Willkürherrschaft gebilligt, verherrlicht oder gerechtfertigt und dadurch der öffentliche Friede gestört wird.

Tage nach Satz 1 Nummer 1 sind der 27. Januar und der 9. November.

(5) Sollen eine beschränkende Verfügung oder ein Verbot ausgesprochen werden, so sind diese nach Feststellung der Voraussetzungen, die diese Verfügung rechtfertigen, unverzüglich der Versammlungsleiterin oder dem Versammlungsleiter und den Teilnehmerinnen und Teilnehmern bekannt zu geben.

(6) Die Bekanntgabe einer nach Versammlungsbeginn erfolgenden beschränkenden Verfügung oder einer Auflösung muss unter Angabe des Grundes der Maßnahme erfolgen. Widerspruch und Anfechtungsklage gegen Verfügungen nach Satz 1 haben keine aufschiebende Wirkung.

(7) Sobald die Versammlung für aufgelöst erklärt ist, haben alle anwesenden Personen sich unverzüglich zu entfernen.

(8) Es ist verboten, anstelle der aufgelösten Versammlung eine Ersatzversammlung am gleichen Ort durchzuführen.

(9) Es ist verboten, öffentlich, im Internet oder durch Verbreiten von Schriften, Ton- oder Bildträgern, Datenspeichern, Abbildungen oder anderen Darstellungen zur Teilnahme an einer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aufzufordern, deren Durchführung durch ein vollziehbares Verbot untersagt oder deren vollziehbare Auflösung angeordnet worden ist.

§ 14 Untersagung der Teilnahme oder Anwesenheit und Ausschluss von Personen

(1)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einer Person die Teilnahme an oder Anwesenheit in einer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unmittelbar

vor deren Beginn untersagen, wenn von ihr nach den zur Zeit des Erlasses der Verfügung erkennbaren Umständen bei Durchführung der Versammlung eine unmittelbare Gefahr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ausgeht.

(2) Wer durch sein Verhalten in der Versammlung die öffentliche Sicherheit unmittelbar gefährdet, ohne dass die Versammlungsleitung dies unterbindet, oder wer einer Anordnung nach § 6 Absatz 3 zuwiderhandelt,

kann von der zuständigen Behörde ausgeschlossen werden. Wer aus der Versammlung ausgeschlossen wird, hat sich unverzüglich zu entfernen.

§ 15 Durchsuchung und Identitätsfeststellung

(1) Bestehen tatsächliche Anhaltspunkte dafür, dass Waffen mitgeführt werden oder der Einsatz von Gegenständen im Sinne von § 8 Absatz 1 Nummer 2, § 8 Absatz 2 oder § 17 die öffentliche Sicherheit bei Durchführung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unmittelbar gefährden wird, können Personen und Sachen durchsucht werden. Aufgefundene Gegenstände im Sinne des Satz 1 können sichergestellt werden. Die Durchführung der Durchsuchungen richtet sich nach dem Landesverwaltungsgesetz des Landes Schleswig-Holstein.

(2) Identitätsfeststellungen sowie weitere polizei- und ordnungsrechtliche oder strafprozessuale Maßnahmen sind nur zulässig, soweit sich an am Ort der Versammlung, im Bereich des Aufzuges oder auf

unmittelbaren Wege dorthin tatsächliche Anhaltspunkte für einen bevorstehenden Verstoß gegen § 8 oder § 17 oder für die Begehung strafbarer Handlungen ergeben.

§ 16 Bild- und Tonübertragungen und -aufzeichnungen

(1) Die Polizei darf Bild- und Tonaufnahmen sowie entsprechende Aufzeichnungen von einer Person bei oder im Zusammenhang mit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nur dann anfertigen, wenn Tatsachen die Annahme rechtfertigen, dass von der Person eine erhebliche Gefahr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ausgeht. Die Aufzeichnungen dürfen auch angefertigt werden, wenn andere Personen unvermeidbar betroffen werden.

(2) Die Polizei darf Bild- und Tonübertragungen in Echtzeit (Übersichtsaufnahmen) von öffentlichen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und ihrem Umfeld zur Lenkung und Leitung des Polizeieinsatzes nur dann anfertigen, wenn dies wegen der Größe oder Unübersichtlichkeit der Versammlung erforderlich ist und wenn tatsächliche Anhaltspunkte die Annahme rechtfertigen, dass von Versammlungsteilnehmerinnen oder Versammlungsteilnehmern erhebliche Gefahren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ausgehen.

(3) Der Einsatz von Technik für Aufnahmen und Aufzeichnungen ist offen vorzunehmen. Die Versammlungsleitung ist unverzüglich über die Anfertigung von Aufzeichnungen nach Absatz 1 und Übersichtsaufnahmen nach Absatz 2 in Kenntnis zu setzen. Die von einer Aufzeichnung nach Absatz 1 betroffene Person ist über die Maßnahme

zu unterrichten, sobald ihre Identität bekannt ist und zulässige Verwendungszwecke der Aufzeichnung nicht gefährdet werden. Bei einem durch die Maßnahme unvermeidbar betroffenen Dritten im Sinne des Absatzes 1 Satz 2 unterbleibt die Unterrichtung, wenn die Identifikation nur mit unverhältnismäßigen Ermittlungen möglich wäre oder überwiegend schutzwürdige Interessen anderer Betroffener entgegenstehen.

(4) Die Aufzeichnungen nach Absatz 1 sind nach Beendigung der Versammlung oder zeitlich und sachlich damit unmittelbar im Zusammenhang stehender Ereignisse unverzüglich zu löschen. Dies gilt nicht, soweit sie erforderlich sind

1. zur Verfolgung von Straftaten in oder im Zusammenhang mit der Versammlung oder von Ordnungswidrigkeiten nach § 24 Absatz 1 Nummer 7,
2. zur Gefahrenabwehr, wenn von der betroffenen Person in oder im Zusammenhang mit der Versammlung die konkrete Gefahr einer Verletzung von Strafgesetzen ausging und zu besorgen ist, dass bei einer künftigen Versammlung von dieser Person erneut die Gefahr der Verletzung von Strafgesetzen ausgehen wird,
3. zur befristeten Dokumentation polizeilichen Handelns, sofern eine Störung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eingetreten ist, oder
4. zum Zwecke der polizeilichen Aus- und Fortbildung; hierzu ist eine eigene Fassung herzustellen, die eine Identifizierung der darauf abgebildeten Personen unumkehrbar ausschließt.

Die Aufzeichnungen, die aus den in Satz 2 genannten Gründen nicht gelöscht wurden, sind spätestens nach Ablauf von sechs Monaten nach ihrer Anfertigung zu löschen, sofern sie nicht inzwischen zur Verfolgung von Straftaten nach Satz 2 Nummer 1, zur Gefahrenabwehr nach Nummer 2 oder zur Dokumentation nach Nummer 3 erforderlich sind. Die Löschung der Aufzeichnungen ist zu dokumentieren. Außer zu den in Nummern 1 bis 4 genannten Zwecken dürfen Aufzeichnungen nicht genutzt werden.

(5) Die Gründe für die Anfertigung von Bild- und Tonaufzeichnungen nach Absatz 1 und für ihre Verwendung nach Absatz 4 sind zu dokumentieren. Satz 1 gilt für die Dokumentation von Aufnahmen nach Absatz 1 und Übersichtsaufnahmen nach Absatz 2 entsprechend. Werden von Aufzeichnungen eigene Fassungen für die Verwendung zur polizeilichen Aus- und Fortbildung erstellt, sind die Anzahl der hergestellten Fassungen sowie der Ort der Aufbewahrung zu dokumentieren.

(6) Die behördlichen Datenschutzbeauftragten der Polizei können die Einhaltung der Dokumentationspflichten nach Absatz 4 Satz 4 und Absatz 5 regelmäßig überprüfen.

§ 17 Vermummungs- und Schutzausrüstungsverbot

(1) Es ist verboten, bei oder im Zusammenhang mit einer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Gegenstände mit sich zu führen,

1. die zur Identitätsverschleierung geeignet und den Umständen nach darauf gerichtet sind, eine zu Zwecken der Verfolgung einer

Straftat oder einer Ordnungswidrigkeit durchgeführte Feststellung der Identität zu verhindern, oder

2. die als Schutzausrüstung geeignet und den Umständen nach darauf gerichtet sind, Vollstreckungsmaßnahmen eines Trägers von Hoheitsgewalt abzuwehren.

(2) Die zuständige Behörde trifft zur Durchsetzung des Verbots Anordnungen, in denen die vom Verbot erfassten Gegenstände bezeichnet sind.

§ 18 Öffentliche Verkehrsflächen im Privateigentum

Auf Verkehrsflächen von Grundstücken in Privateigentum, die dem allgemeinen Publikum geöffnet sind, können öffentliche Versammlungen auch ohne die Zustimmung der Eigentümerin oder des Eigentümers durchgeführt werden, wenn sich die Grundstücke im Eigentum von Unternehmen befinden, die ausschließlich im Eigentum der öffentlichen Hand stehen oder von ihr beherrscht werden.

Abschnitt 3 Versammlungen in geschlossenen Räumen

§ 19 Einladung

(1) Wer eine öffentliche Versammlung in geschlossenen Räumen veranstaltet, darf in der Einladung bestimmte Personen oder Personenkreise von der Teilnahme ausschließen.

(2) Die Leitung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in geschlossenen Räumen darf die Anwesenheit von Vertretern der Medien, die sich

als solche durch anerkannten Presseausweis ausgewiesen haben, nicht unterbinden.

§ 20 Beschränkung, Verbot, Auflösung

(1) Die zuständige Behörde kann die Durchführung einer Versammlung in geschlossenen Räumen beschränken oder verbieten, die Versammlung nach deren Beginn auch auflösen, wenn nach den zur Zeit des Erlasses der Maßnahmen erkennbaren Umständen eine unmittelbare Gefahr

1. eines unfriedlichen Verlaufs der Versammlung,
2. für Leben oder Gesundheit von Personen oder
3. dafür besteht, dass in der Versammlung Äußerungen erfolgen, die ein Verbrechen oder ein von Amts wegen zu verfolgendes Vergehen darstellen.

(2) Verbot oder Auflösung setzen voraus, dass Beschränkungen nicht ausreichen.

(3) Geht eine unmittelbare Gefahr für die in Absatz 1 genannten Rechtsgüter von Dritten aus, sind Maßnahmen der Gefahrenabwehr gegen diese zu richten. Kann dadurch die Gefahr auch mit durch Amts oder Vollzugshilfe ergänzten Mitteln und Kräften nicht abgewehrt werden, dürfen Maßnahmen nach Absatz 1 auch zulasten der Versammlung ergriffen werden, von der die Gefahr nicht ausgeht.

(4) Sollen eine beschränkende Verfügung oder ein Verbot ausgesprochen werden, so sind diese nach Feststellung der Voraussetzungen, die

diese Verfügung rechtfertigen, unverzüglich bekannt zu geben. Die Bekanntgabe einer nach Versammlungsbeginn erfolgenden beschränkenden Verfügung oder einer Auflösung muss unter Angabe des Grundes der Maßnahme erfolgen und ist an die Versammlungsleitung zu richten. Widerspruch und Anfechtungsklage gegen Verfügungen nach Satz 2 haben keine aufschiebende Wirkung.

(5) Sobald die Versammlung für aufgelöst erklärt ist, haben sich alle anwesenden Personen unverzüglich zu entfernen.

(6) Es ist verboten, anstelle der aufgelösten Versammlung eine Ersatzversammlung am gleichen Ort durchzuführen.

(7) Es ist verboten, öffentlich, im Internet oder durch Verbreiten von Schriften, Ton- oder Bildträgern, Datenspeichern, Abbildungen oder anderen Darstellungen zur Teilnahme an einer Versammlung in geschlossenen Räumen aufzufordern, deren Durchführung durch ein vollziehbares Verbot untersagt oder deren vollziehbare Auflösung angeordnet worden ist.

§ 21 Ausschluss von Störern; Hausrecht

(1) Wer die Versammlung leitet, kann teilnehmende Personen, welche die Ordnung erheblich stören, von der Versammlung ausschließen.

(2) Die eine Versammlung leitende Person übt gegenüber anderen Personen als Teilnehmern das Hausrecht aus.

§ 22 Aufnahmen und Aufzeichnungen von Bild und Ton

(1) Unter den Voraussetzungen des § 20 Absatz 1 darf die Polizei Bild- und Tonaufnahmen sowie entsprechende Aufzeichnungen von einer Person bei oder im Zusammenhang mit einer öffentlichen Versammlung in geschlossenen Räumen anfertigen. Die Aufzeichnungen dürfen auch angefertigt werden, wenn andere Personen unvermeidbar betroffen werden. Die Aufnahmen und Aufzeichnungen sind offen vorzunehmen.

(2) Die von einer Aufzeichnung nach Absatz 1 betroffene Person ist über die Maßnahme zu unterrichten, sobald ihre Identität bekannt ist und zulässige Verwendungszwecke nicht gefährdet werden. Bei einem durch die Maßnahme unvermeidbar betroffenen Dritten im Sinne des Absatzes 1 Satz 2 unterbleibt die Unterrichtung, wenn die Identifikation nur mit unverhältnismäßigen Ermittlungen möglich wäre oder überwiegend schutzwürdige Interessen anderer Betroffener entgegenstehen.

(3) Die Aufzeichnungen nach Absatz 1 sind nach Beendigung der Versammlung oder zeitlich und sachlich damit unmittelbar im Zusammenhang stehender Ereignisse unverzüglich zu löschen. Dies gilt nicht, soweit sie erforderlich sind

1. zur Verfolgung von Straftaten oder Ordnungswidrigkeiten nach § 24 Absatz 1 Nummer 7 in oder im Zusammenhang mit der Versammlung, von denen eine Gefahr im Sinne von § 20 Absatz 1 ausging oder
2. zur Gefahrenabwehr, wenn von der betroffenen Person in oder im Zusammenhang mit der Versammlung eine Gefahr im

Sinne von § 20 Absatz 1 ausging und zu besorgen ist, dass bei einer künftigen Versammlung von dieser Person erneut Gefahren im Sinne von § 17 Absatz 1 ausgehen werden.

Die Aufzeichnungen, die aus den in Satz 2 genannten Gründen nicht gelöscht wurden, sind spätestens nach Ablauf von sechs Monaten nach ihrer Anfertigung zu löschen, sofern sie nicht inzwischen zur Verfolgung von Straftaten nach Satz 2 Nummer 1 oder zur Gefahrenabwehr nach Nummer 2 erforderlich sind oder Gegenstand oder Beweismittel eines Rechtsbehelfs oder gerichtlichen Verfahrens sind. Die Löschung der Aufzeichnungen ist zu dokumentieren. Außer zu den in § 16 Nummern 1 bis 4 genannten Zwecken dürfen Aufzeichnungen nicht genutzt werden.

(4) Die Gründe für die Anfertigung von Bild- und Tonaufzeichnungen nach Absatz 1 und für ihre Verwendung nach Absatz 3 sind zu dokumentieren.

(5) Die behördlichen Datenschutzbeauftragten der Polizei können die Einhaltung der Dokumentationspflichten nach Absatz 3 Satz 4 und Absatz 4 regelmäßig überprüfen.

Abschnitt 4 Straftaten, Ordnungswidrigkeiten, Einziehung, Kosten

§ 23 Straftaten

(1) Wer in der Absicht, nicht verbotene Versammlungen zu verhindern oder sonst ihre Durchführung zu vereiteln, Gewalttätigkeiten vornimmt oder androh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zwei Jahren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2)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wird bestraft, wer Waffen oder Gegenstände entgegen § 8 Absatz 1 Nummer 2 bei einer Versammlung, auf dem Weg zu einer Versammlung oder im Anschluss an eine Versammlung mit sich führt, zu der Versammlung hinschafft oder sie zur Verwendung bei ihr bereithält oder verteilt, wenn die Tat nicht nach § 52 Absatz 3 Nummer 9 des Waffengesetzes mit Strafe bedroht ist. Ebenso wird bestraft, wer bewaffnete Ordnerinnen oder Ordner in öffentlichen Versammlungen einsetzt.

(3) Wer gegen die Leitung oder die Ordnerinnen oder Ordner einer Versammlung in der rechtmäßigen Ausübung von Ordnungsaufgaben Gewalt anwendet oder damit droht oder diese Personen während der rechtmäßigen Ausübung von Ordnungsaufgaben tätlich angreift, wird mit Freiheitsstrafe bis zu einem Jahr oder mit Geldstrafe bestraft.

§ 24 Ordnungswidrigkeiten

(1) Ordnungswidrig handelt, wer

1. eine öffentliche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ohne eine gemäß § 11 erforderliche Anzeige oder nach einer Anzeige durchführt, in der die Angaben gemäß § 11 Absatz 2 nicht oder in wesentlicher Hinsicht unrichtig enthalten sind,
2. zur Teilnahme an einer Versammlung aufruft, deren Durchführung vollziehbar verboten oder deren Auflösung vollziehbar angeordnet ist,

3. wer trotz einer Anordnung, dies zu unterlassen, in der Absicht, nicht verbotene Versammlungen oder Aufzüge zu verhindern oder sonst ihre Durchführung zu vereiteln, grobe Störungen verursacht,
4. als veranstaltende oder leitende Person die öffentliche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wesentlich anders durchführt als in der Anzeige (§ 11) angegeben,
5. unter den Voraussetzungen der § 13 Absätze 1, 2 und 4, § 20 Absätze 1 und 2 von der zuständigen Behörde oder im Verfahren des gerichtlichen Eilrechtsschutzes erlassenen, vollziehbaren beschränkenden Verfügungen, Verboten oder Auflösungen als Leiterin oder Leiter oder Veranstalterin oder Veranstalter zuwiderhandelt,
6. unter den Voraussetzungen der § 13 Absätze 1, 2 und 4, § 20 Absätze 1 und 2 von der zuständigen Behörde oder im Verfahren des gerichtlichen Eilrechtsschutzes erlassenen, vollziehbaren beschränkenden Verfügungen, Verboten oder Auflösungen als Teilnehmerin oder Teilnehmer zuwiderhandelt,
7. gegen Anordnungen zur Durchsetzung des Uniformverbots (§ 8 Absatz 2) oder des Vermummungs- und Schutzausrüstungsverbots (§ 17) verstößt,
8. ungeachtet einer gemäß § 14 Absatz 1 ausgesprochenen Untersagung der Teilnahme an oder Anwesenheit in der Versammlung anwesend ist oder sich nach einem gemäß § 14 Absatz 2, § 21 Absatz 1 angeordneten Ausschluss aus der Versammlung

nicht unverzüglich entfernt,

9. sich trotz einer unter den Voraussetzungen der §§ 13, 20 erfolgten Auflösung einer Versammlung nicht unverzüglich entfernt.

(2) Die Ordnungswidrigkeit kann in den Fällen des Absatz 1 Nummern 1, 6, 8, 9 mit einer Geldbuße bis zu fünfhundert Euro und in den Fällen des Absatz 1 Nummer 3, 4 und 7 bis zu eintausendfünfhundert Euro und in den Fällen des Absatzes 1 Nummern 2 und 5 bis zweitausendfünfhundert Euro geahndet werden.

§ 25 Einziehung

Gegenstände, auf die sich eine Straftat nach § 23 oder eine Ordnungswidrigkeit nach § 24 bezieht, können eingezogen werden. § 74a des Strafgesetzbuches und § 23 des Gesetzes über Ordnungswidrigkeiten sind anzuwenden

§ 26 Kosten

Amtshandlungen nach diesem Gesetz sind kostenfrei.

Abschnitt 5 Schlussbestimmungen

§ 27 Zuständigkeitsregelungen

(1) Die Landrätinnen und Landräte und die Bürgermeisterinnen und Bürgermeister der kreisfreien Städte als Kreisordnungsbehörden sind sachlich zuständig für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 3 Absatz 3, § 11 Absatz 1, § 13 Absätze 1, 4, § 14 Absätze 1, 2).

(2) Die Bürgermeisterinnen und Bürgermeister der amtsfreien Gemeinden, die Amtsdirektorin oder der Amtsdirektor, in ehrenamtlich verwalteten Ämtern die Amtsvorsteherin oder der Amtsvorsteher sind sachlich zuständig für Versammlungen in geschlossenen Räumen (§ 3 Absatz 3, § 20).

(3) Örtlich zuständig ist die Behörde, in deren Bezirk die Versammlung stattfindet. Berührt eine Versammlung unter freiem Himmel den Zuständigkeitsbereich mehrerer Kreisordnungsbehörden, kann die gemeinsame Fachaufsichtsbehörde eine zuständige Behörde bestimmen.

(4) Das Ministerium für Inneres und Bundesangelegenheiten ist sachlich zuständig für die Entgegennahme der Anzeigen von öffentlichen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und von Aufzügen in nicht inkommunalisierten Küstengewässern Schleswig-Holsteins sowie auf Brücken und in Tunneln in diesen Bereichen. Das Ministerium für Inneres und Bundesangelegenheiten bestimmt in diesen Fällen die örtlich zuständige Behörde für Maßnahmen nach § 3 Absatz 3, § 11 Absätze 1, 3, 4, 5, § 13 Absätze 1, 4, § 14 Absätze 1, 2, § 17 Absatz 2.

(5) In unaufschiebbaren Fällen kann die Polizei auch an Stelle der zuständigen Behörde Maßnahmen treffen.

§ 28 Einschränkung von Grundrechten

Die Grundrechte der Versammlungsfreiheit (Artikel 8 Absatz 1 des Grundgesetzes), der Meinungsfreiheit (Artikel 5 Absatz 1 Satz 1 des Grundgesetzes), das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Artikel 2 Absatz 1 in Verbindung mit Artikel 1 Absatz 1 des Grundgesetzes) sowie das Recht auf Eigentum (Artikel 14 Absatz 1 Satz 1 des Grundgesetzes) werden nach Maßgabe dieses Gesetzes eingeschränkt.

알 림

본 연구에 게재된 주관적인 평가나 제시된 주장은 집필자의 견해이며
법무연수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독일 집회법 연구

2017년 6월 인쇄

2017년 6월 발행

발행처 | **법 무 연 수 원**

TEL. 043-531-1600

집필자 | 연구위원 **안영규**

인쇄처 | 남일문화주식회사

TEL. 02-720-1511~3

이 책자의 무단복제·전재행위를 금합니다.

